

발 간 등 록 번 호

11-1570100-000010-10



2012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발간사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열며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융합의 시대를 넘어 스마트 빅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제2기 위원회의 세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2년은 뜻 깊은 정책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고품질 방송 시청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은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미디어렙 법 제정으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를 갖추었으며,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화 등으로 방송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고화질 3DTV 시범방송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알뜰폰 활성화, 2014년 ITU전권회의준비기획단 출범 등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가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소통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201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침체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ICT 산업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성장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야흐로 ICT 분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루어진 ICT 생태계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세계 경제를 재편해 나가는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기기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ICT 강국이며, 경쟁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근면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다면 최고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위원회의 발자취와 심혈을 기울여 달성한 2012년 주요 정책성과를 담았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스마트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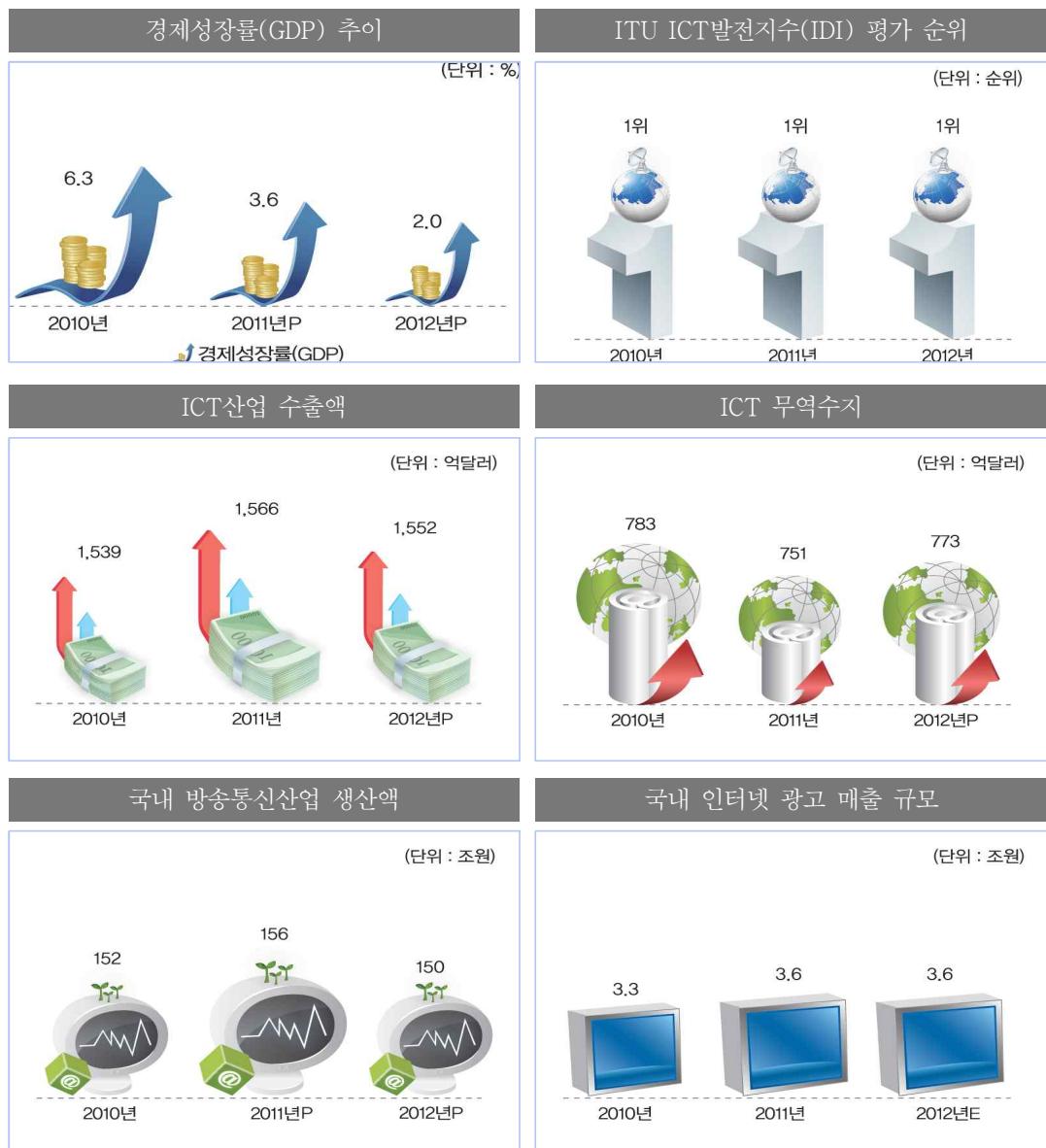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계 철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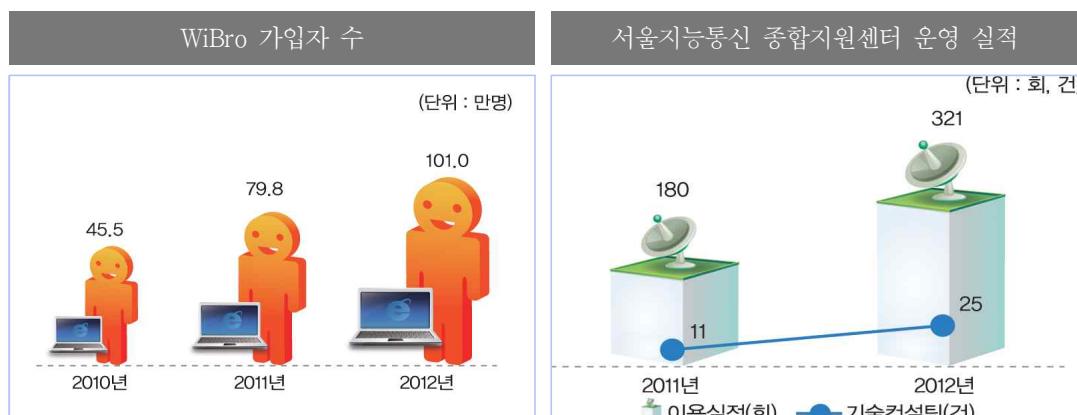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2년 방송통신산업은 ICT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주 E(Estimate) : 추정치(샘플을 이용하여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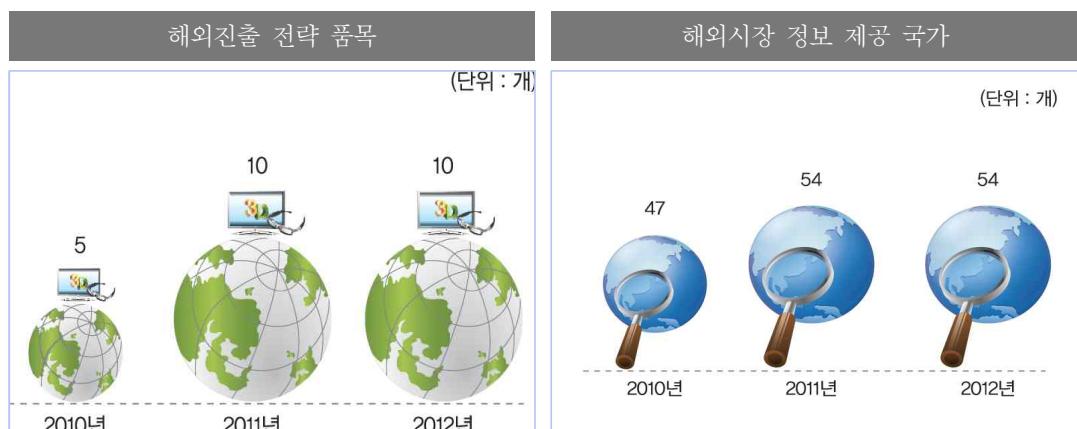
-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확산으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IPTV는 2012년 631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유료방송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스마트폰 가입자도 2011년 대비 45% 증가한 3,273만 명으로 늘어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 WiBro 가입자는 전년대비 26.6% 증가하여 101만여 명에 달하였고,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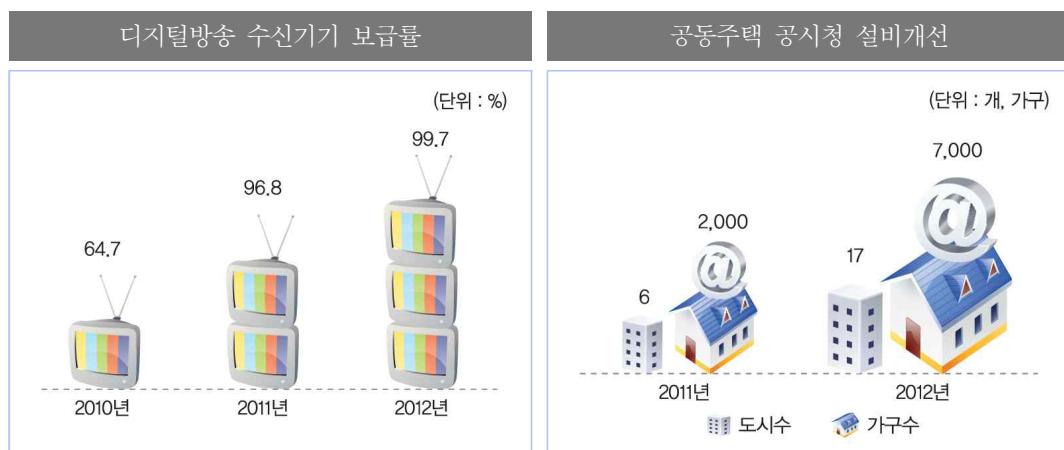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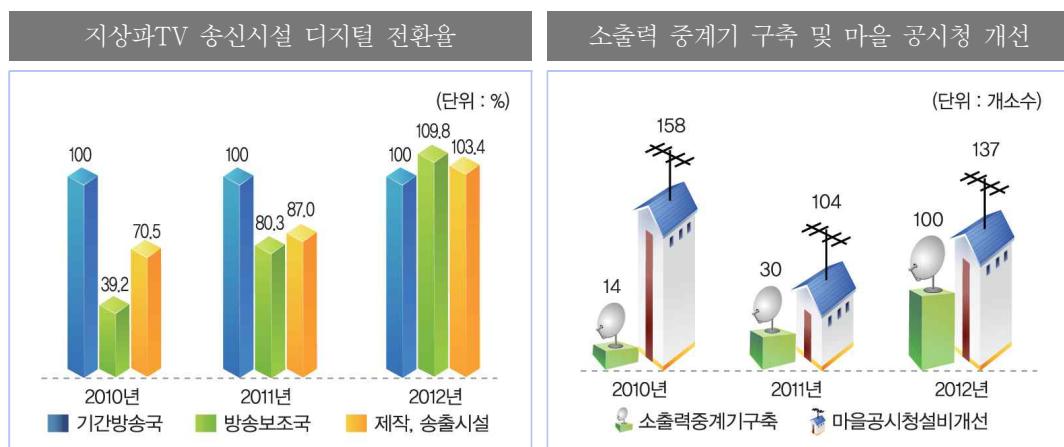
■ 글로벌 방송통신시장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해외진출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통합정보는 3,0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개도국 방송 장비 지원 국가를 기준 2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글로벌 방송통신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 품목을 10개로 선정하고, 54개국의 시장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방송통신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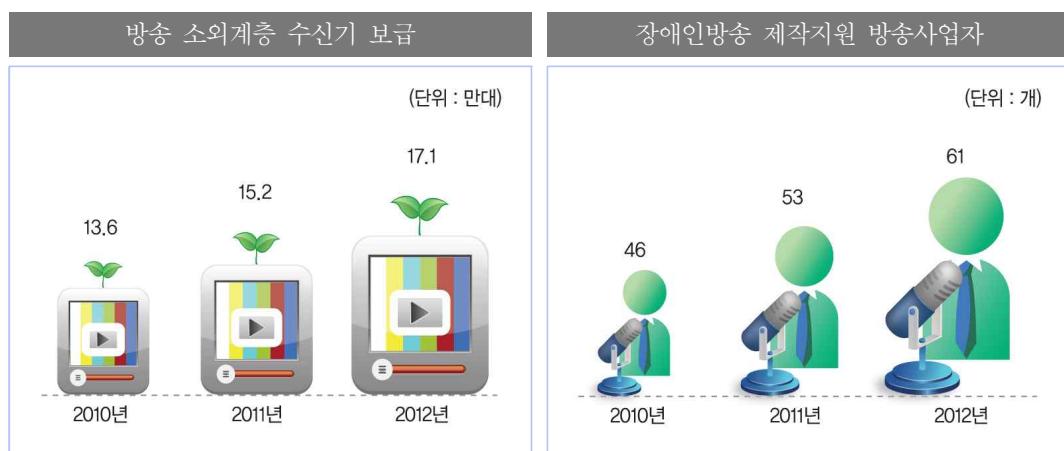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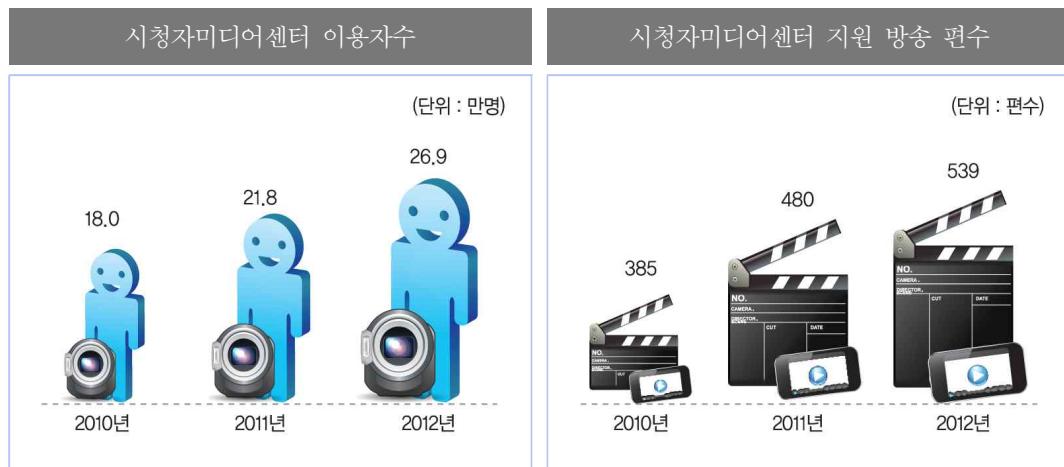
■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국민들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상파TV 방송의 송신시설을 기준 아날로그방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로 전환하였고, 소출력 중계기 등의 구축을 통해 방송 음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2012년 12월 말 기준 99.7%로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시청 서비스를 디지털로 개선하여 디지털방송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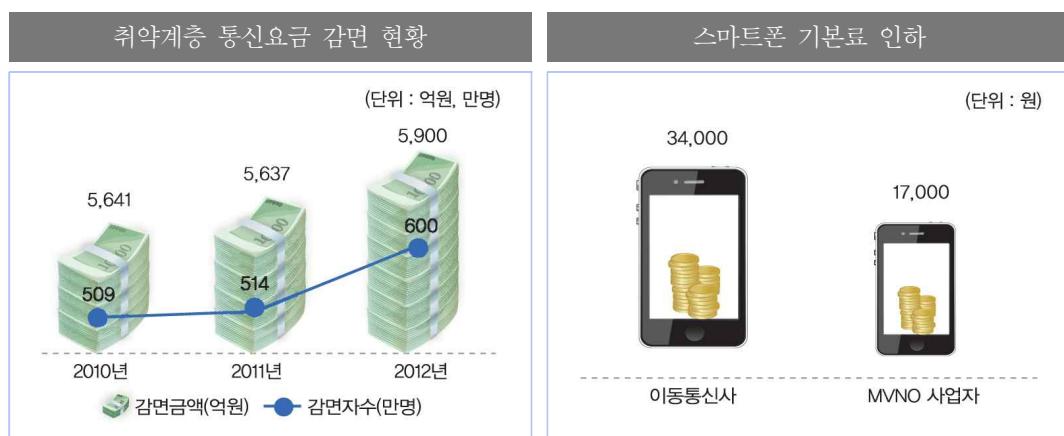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도에 26만 9천여 명에 달하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방송편수도 2011년 보다 59편 증가한 539편이 방송되었습니다.
-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수신기 보급은 2012년도에 17만 1천여 대로 증가하였고,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방송사업자도 53개사에서 61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주. 수신기 보급은 누적대수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통신요금 제도개선과 통신이용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자 수는 2011년 보다 86만 명 늘어난 600만 명에 달하였고, 기존 스마트폰 기본료 34,000원 보다 50% 저렴한 알뜰폰의 도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2011년에 비해 1인 1일 평균 0.79건이 줄어들었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도 매년 감소되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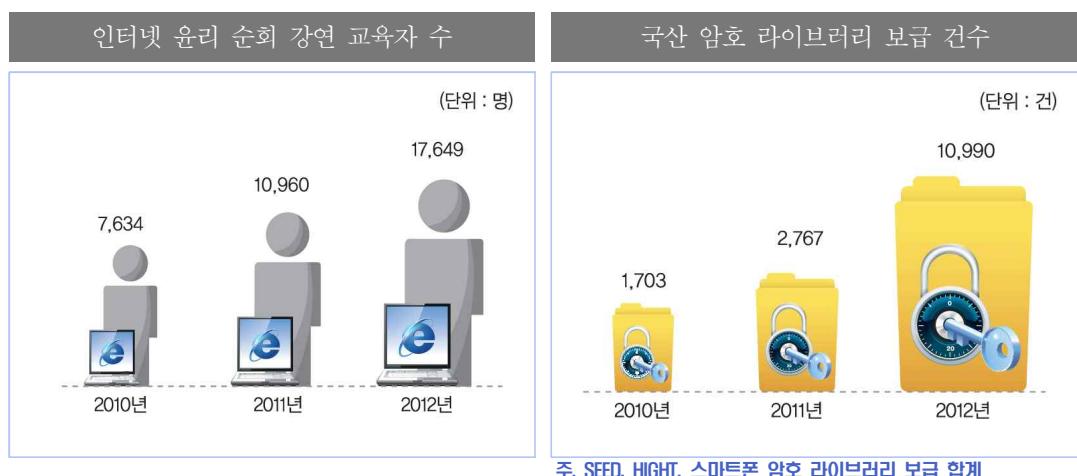
- 지속적으로 BcN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는 등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BcN 가입자가 6,073만 세대/명(유선 1,685만 세대, 무선 4,388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방송통신망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2년 말 기준, 3,812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송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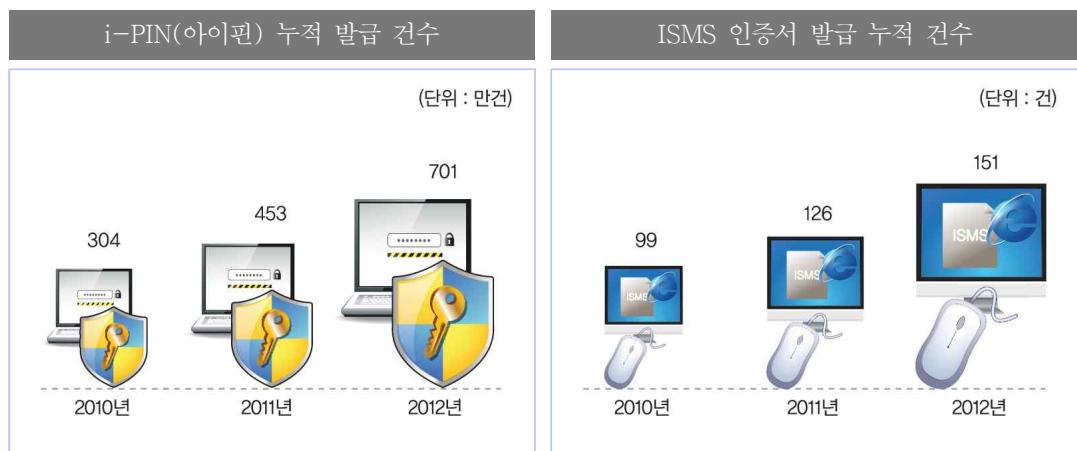


■ 미래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윤리 순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의 확대·보급으로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i-PIN 발급은 2011년 보다 54.8% 증가하여 2012년 말까지 701만 여 건이 발급되었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서는 151건이 발급되어 미래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 SEED, HIGH-T, 스마트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 합계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시장	3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3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4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7
2.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	9
가. 국내 방송통신시장 동향	9
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15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9
1. 일반현황	21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23
가. 조직 현황	23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26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0
라. 2012년 세출 예산	31
마. 2012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32
3. 업무체계 혁신 성과	34
가.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통신 행정지원 체계 확립	35
나.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지원	36
4. 2011년 주요 정책 성과	37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37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39
다.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40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42
5. 2012년 주요 정책 목표	44



III. 2012년도 방송통신 정책목표 45

제1절 글로벌 ICT 협력 Korea 실현	47
1.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래 네트워크 기술개발	47
가.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47
나.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49
다. 통신 공중선 정비	51
2. 전파자원의 확보 및 공급	54
가. 주파수 적기 공급	54
나.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58
다. 공공 주파수 이용 효율화	61
라.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64
3.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협으로 도약	66
가. 국내외 미래 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66
나. 스마트 인터넷 기술경쟁력 강화	68
다.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69
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70
4. 글로벌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 강화	72
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72
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74
다. 녹색 방송통신 환경 조성	76
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	78
마.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80
5.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	82
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82
나.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85
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구축	86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88
1.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88
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88
나.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기반 구축	90
다. 근접통신(NFC) 기반 산업 창출	93
라.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	94
마. 위치정보(LBS) 기반 산업 활성화	97
바. 3D 방송서비스 활성화	99
사.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103
2.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	104
가.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104
나. 벤처기업 성장 촉진	105
다.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	108
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지원	112
3.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113
가. 방송사업 허가제허가	113
나. IPTV 서비스의 견실한 성장 지원	115
다.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117
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제도 개선	120
마. 설비제공제도 개선	121
바. 회계분리 기준 고시 개정	123
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	124
4.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125
가. 방송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반 조성	126
나. 이용자 보호시책 강화	130
다. 방송통신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강화	136
5.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138
가.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38
나. 국제 ICT 협력활동 주도	143
다. 방송통신부분 통상협상 대응	154
라.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	157
마. 방송통신 남북협력 추진	160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162
1.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162
가. 방송사업 소유·경영 규제 개선	162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163
다. 편성 및 평가제도 개선	163
라.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167
마. 지상파 TV 방송시간 규제완화	171
바. 공익채널 선정 및 제도 개선	172
2.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180
가.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180
나. 방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육성	182
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	183
라. 외주제작 활성화	185
3.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187
가.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종소방송 지원방안 마련	187
나. 인터넷광고시장의 활성화 기반 조성	192
4.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194
가.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	194
나. 디지털전환 홍보사업	197
다. 디지털방송 송·수신환경 개선	199
라. 아날로그방송의 지역별 순차종료	202
마. 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지원	202
바.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203
사. 방송장비 산업 육성	204
5.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207
가.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	207
나. 사후심의, 제재조치 등 법적 규제 강화	208
다. 건전한 언어이용 환경 조성	208
라. 방송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210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211

1. 통신이용 편의 및 선택권 제고 211
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211
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 구축 212
다. 전국 대표번호 제도 개선 214
라. 통신요금 관련 이용자 불만 해소 215
마.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217
2.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강화 221
가.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 222
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 강화 224
다.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227
라.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230
마. 시청자 권리보호 활동 개선 231
바.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234
사. 통신증계서비스 추진 238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239
가. 전자파 대응체계 강화 239
나. 3D 시청 안전성 제고 242
다.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245
4.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247
가.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247
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강화 251
5.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254
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254
나.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 260
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62
라. 사이버 보안 글로벌 리더십 확보 265

부 록	267
1. 2012년도 회계 결산	269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72
3. 2012년도 주요 연월표	284
4.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305

표 목차

<표 I-1>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	4
<표 I-2> 세계 TV 광고시장 매출액 전망	6
<표 I-3> 세계 통신시장 매출액 전망	7
<표 I-4> 세계 부문별 통신시장 매출액 현황 및 전망	8
<표 I-5> 국내 GDP 성장을 추이	10
<표 I-6> ICT 산업 수출입 현황	10
<표 I-7>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현황	11
<표 I-8> 국내 방송 광고 매출액 전망	13
<표 I-9> 국내 인터넷 광고 및 모바일 광고 매출액 전망	14
<표 II-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22
<표 II-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28
<표 II-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0
<표 II-4>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30
<표 II-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사	30
<표 II-6>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31
<표 II-7> 2012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32
<표 II-8> 2012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33
<표 III-1> 연도별 광대역가입자망(BcN) 보급 실적	48
<표 III-2> OECD 국가 중 광통신 가입자망 보급률	48
<표 III-3> WiBro 사업 이행 상황	50
<표 III-4> 연도별 LTE 전국망 구축 현황	51
<표 III-5> WRC-12 주요결과	56
<표 III-6> 채택된 차기 WRC-15 특별의제	57
<표 III-7> WiBro 주파수 재할당	58
<표 III-8>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주파수 확보 계획	59
<표 III-9> IMT 후보대역(안)	60
<표 III-10> 사용승인 주파수의 체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62
<표 III-11> 사용승인 주파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63
<표 III-12> 사용승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63
<표 III-13> 유휴대역 보호 이격거리 검증 결과	64

<표 III-14> 2012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모델 주요 내용	71
<표 III-15> 2012년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주요 성과	73
<표 III-16>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 내용	79
<표 III-17> 생활 전파 산업 육성 기본계획	81
<표 III-18>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선정 결과	82
<표 III-19> 국내 및 전 세계 IE와 IE6 시장 점유율	84
<표 III-20> HTML5 확산 추진계획 정책과제	84
<표 III-21> 무선데이터 트래픽 공개 기준	87
<표 III-2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표시	88
<표 III-23>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89
<표 III-24>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90
<표 III-25> TV 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 지원분야 선정결과	96
<표 III-26> 2012년도 월별 위치정보(LBS) 사업자 지원현황	98
<표 III-27> K-스타트업 창업·서비스 상용화 및 투자유치 현황	107
<표 III-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공통 조건	114
<표 III-29> IPTV 가입자 현황	115
<표 III-30> IPTV 콘텐츠사업자 구성 현황	116
<표 III-31>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활성화 종합계획	117
<표 III-32> 알뜰폰 사업자 현황	120
<표 III-33>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 통합	123
<표 III-34>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개정	124
<표 III-35> 방송법상 금지행위 세부유형	127
<표 III-36>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고시 개정 관련 통계·사례조사	129
<표 III-37>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 전문	131
<표 III-3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주요내용	132
<표 III-39>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정보 제도개선	133
<표 III-40> 취약계층 증가 추세	133
<표 III-41> 서비스별 품질개선 현황	136
<표 III-42>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136
<표 III-43> 2012년도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138
<표 III-44> 2012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 로드쇼 개최 실적	139
<표 III-45> 2012년도 해외 컨설팅 추진 실적	140

<표 III-46> 2012년도 방송통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141
<표 III-47> 2012년도 해외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실적	142
<표 III-48>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추진 과정	146
<표 III-49> ITU 텔레콤 전시회 한국관 운영실적	147
<표 III-50> 2012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149
<표 III-51> 방송통신 장관회의 참석국가	150
<표 III-52>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 실적	150
<표 III-5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55
<표 III-54> 한·미 및 한-EU FTA 통신분야 협상결과	156
<표 III-55> 한·미 및 한-EU 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156
<표 III-56> 초청연수 사업실적	157
<표 III-57>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실적	159
<표 III-58> 2012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	160
<표 III-59> 2012년 남북 방송통신 포럼 운영	161
<표 III-60>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주요 경과	162
<표 III-6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을 위한 제작요소별 점수 기준	164
<표 III-6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적용비율	165
<표 III-63> 2012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166
<표 III-64> 평가영역별 및 평가항목	166
<표 III-65> 방송평가 4차 개정 주요내용	166
<표 III-66>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방송평가 배점	167
<표 III-67>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169
<표 III-68>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수렴과정	170
<표 III-69> 국내외 방송시간 규제 현황	171
<표 III-70>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완화 주요 경과	171
<표 III-71>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권고사항	172
<표 III-72> 공익채널 분야별 전문편성 내용	173
<표 III-73> DCS 서비스에 대한 양측의 입장	177
<표 III-74> DCS 서비스 관련 조치경과	178
<표 III-75> 방송제도연구반 주요 논의내용	178
<표 III-76>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180
<표 III-77>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현황	181

<표 III-78> 방송직군별 맞춤교육 현황	183
<표 III-79> 국내 외주제작시장의 규모변화	185
<표 III-80> 외주제작 인정기준 주요 사항	186
<표 III-81> 방송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양해각서 주요내용	187
<표 III-82>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위헌요소 해소안	188
<표 III-83> 중소방송 지원방향 발표 주요내용	190
<표 III-84>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191
<표 III-85> 결합판매 지원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192
<표 III-86> 직접수신가구 지원실적 현황	195
<표 III-8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196
<표 III-88>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198
<표 III-89> 연도별 소출력 중계기 구축현황	200
<표 III-90> 연도별 마을공시청설비 개선현황	201
<표 III-91>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 현황	201
<표 III-92> 150세대 이상 민영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실태조사 결과	202
<표 III-93>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지역별 종료일시	202
<표 III-94> 인증대상 방송장비 선정 및 시험인증 규격개발 실적	205
<표 III-95> 방송장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205
<표 III-96> 방송언어 및 저품격드라마 법정제재 현황	208
<표 III-97> 2012년 방송종사자 언어교육 현황	209
<표 III-98> 통신분야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211
<표 III-99> 기존 이동통신사 및 MVNO 요금상품 비교	212
<표 III-100>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 서비스 개요	213
<표 III-101> 전국 대표번호 제도 개선 주요내용	215
<표 III-102>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개선	223
<표 III-103> 국내 선불가입자 현황 비교	224
<표 III-104> MVNO 사업자 유형별 번호이동 현황	226
<표 III-105> 정보제공을 통한 통신요금 절감사례	227
<표 III-106>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228
<표 III-107> 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229
<표 III-108> 도·농간 광대역통합망(BcN) 가입률 비교	231
<표 III-109>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사업 총괄	232

<표 III-110>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개요	233
<표 III-11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주요내용	234
<표 III-112>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홍보 현황	236
<표 III-113> 취약계층 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	237
<표 III-114>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240
<표 III-115>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240
<표 III-116>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241
<표 III-117>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3.0)의 주요내용	243
<표 III-118>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Ver 2.0)의 개정 내용	244
<표 III-119>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대책	246
<표 III-120> 2012년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 현황	248
<표 III-121> 2012년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248
<표 III-122> 2012년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운영 현황	249
<표 III-123>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253
<표 III-124>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현황	255
<표 III-125> 2012년 악성코드 감염사실 통보현황	257
<표 III-126>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258
<표 III-127>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현황	259
<표 III-128>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262
<부록 표-1> 2012년도 회계결산 총괄 현황	269
<부록 표-2>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269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270
<부록 표-4> 프로그램 총괄 현황	271
<부록 표-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272
<부록 표-6> 2012년도 주요 연월표	284

그림 목차

<그림 I-1> 전 세계 TV 매출 성장률	5
<그림 I-2> 세계 TV 수신 형태별 변화 추이	5
<그림 I-3> 지역별 세계 통신시장 현황 및 시장점유율	9
<그림 I-4>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12
<그림 I-5>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12
<그림 I-6> 국내 광고 매출액 추이	13
<그림 I-7> 국내 IPTV 가입자 추이	14
<그림 I-8>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추이	15
<그림 II-1>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12년 12월 기준)	23
<그림 II-2>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24
<그림 II-3> 비전과 정책목표	44
<그림 III-1> Giga인터넷 관련 행사	49
<그림 III-2> 공중선 정비 사례	54
<그림 III-3> WRC-12 활동	55
<그림 III-4> TV White Space 정책 안내책자	65
<그림 III-5> KOREN 구성도	67
<그림 III-6> 국제 연구망(TEIN) 구성도	68
<그림 III-7>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2의 주요내용	75
<그림 III-8> 2012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주요 시범사업 내역	80
<그림 III-9>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 페이지	83
<그림 III-10> oneM2M 출범	91
<그림 III-11> 사물지능통신 원천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	92
<그림 III-12>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개요	95
<그림 III-13> LBS 사업자 증가 추이	99
<그림 III-14> 세계 최초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	100
<그림 III-15>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 전국 확대	101
<그림 III-16> 국내 독자 개발 고화질 3D 방송방식	101
<그림 III-17> 3D 서비스 홍보 및 진흥 활동	103
<그림 III-18> K-스타트업 프로그램 육성 과정	106
<그림 III-19>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108

<그림 III-20> 블루투스 적합성시험 테스트베드 구성도	110
<그림 III-21> Wi-Fi 상호운용성 테스트베드 구성도	111
<그림 III-22> NFC 포럼 및 EMVCo 테스트베드 제공 범위	111
<그림 III-23> ZigBee RF, 프로트콜 및 프로파일 시험 환경	112
<그림 III-24> MVNO 번호이동 시행 전·후 비교	118
<그림 III-25> MVNO 새명칭 공모전 포스터와 알뜰폰 홍보 포스터·신문 광고	119
<그림 III-26> 재판매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120
<그림 III-27> 060 전화정보서비스 전화등록 심의절차 제도개선	131
<그림 III-28> 이용자보호 업무 추진체계	135
<그림 III-29>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 로드쇼	140
<그림 III-30> 2012년 CIS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142
<그림 III-31> 2012년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145
<그림 III-32> KANZ Broadband Summit 2012	151
<그림 III-33>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153
<그림 III-34> 국제기구 협력사업	154
<그림 III-35> 초청연수 사업실적	158
<그림 III-36> 개도국 방송장비 전달	159
<그림 III-37> 2012년 남북 방송통신 학술세미나	161
<그림 III-38>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위원 위촉	163
<그림 III-39>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산출모형(안) 공청회	170
<그림 III-40> DCS 서비스 기술의 개념	177
<그림 III-41> OBS 본사	179
<그림 III-42> 결합판매 지원구조 행정예고안 및 변경 최종안	191
<그림 III-49> 신유형 인터넷·모바일광고 테스트패널 조사 프로세스	193
<그림 III-44>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인증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194
<그림 III-45> 직접수신가구 지원내용	195
<그림 III-46> DTV 기증사업 협약식	196
<그림 III-47> 자막고지방송·가상종료 화면 사례	198
<그림 III-48> 홍보비용 절감 생활 밀착형 홍보	199
<그림 III-49>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 개념	203
<그림 III-50> 방송장비 인증제품 전시홍보 사례	206
<그림 III-51> 올바른 우리말 사용	209
<그림 III-52>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210

<그림 III-53> 스마트 초이스 요금제 추천 서비스	213
<그림 III-54> 통신요금 표시방법 개선 전후 비교	217
<그림 III-55>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후 비교	218
<그림 III-56> 단말기 자급제 시행 지하철 홍보 포스터	220
<그림 III-57>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 현황	221
<그림 III-58> 요금감면 혜택을 통한 달성 효과	223
<그림 III-59>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방법	225
<그림 III-60> 자급 단말 분실·도난 조회 서비스	225
<그림 III-61> 요금제의 변화 추이 비교	227
<그림 III-62>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수신기 보급 및 지원 현황	228
<그림 III-63>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229
<그림 III-64> 지상파 4사 평균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229
<그림 III-65> 통신중계서비스 개요	238
<그림 III-66> 전자파 관련 정보공개	241
<그림 III-67>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홍보자료	242
<그림 III-68>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Ver3.0) 홍보자료	243
<그림 III-68> 인터넷리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교재	248
<그림 III-70> 인터넷 윤리 홍보	250
<그림 III-71>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252
<그림 III-72> 2012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265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시장
2.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글로벌 경제현황과 방송통신시장

2012년 세계 방송통신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오픈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수요가 확산되면서 3%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기하강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지속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 방송통신시장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면서 글로벌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기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통신, 금융, 제조 등 사회 전 분야의 생산 향상에 기여하면서 ICT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 경제성장둔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어려움 속에서 2012년 세계 경제동향과 방송통신시장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세계 거시경제 동향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3.1%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안요인이 확대되었다. 또한, 주요국들의 경기둔화 우려 및 국제유가 불안, 주요국 선거 등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2012년 5월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로 나타났으나, 2012년 10월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3.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OECD		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		평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세계	3.3	3.6	3.4	4.2	2.5	3.0	—	—	3.1	3.6
유로지역	△0.4	0.2	△0.1	0.9	△0.3	0.7	△0.6	0.5	△0.4	0.6
미국	2.2	2.1	2.4	2.6	2.1	2.4	1.9	2.1	2.2	2.3
일본	2.2	1.2	2.0	1.5	2.4	1.5	2.3	1.6	2.2	1.5
중국	7.8	8.2	8.2	9.3	8.2	8.6	7.7	8.1	8.0	8.6

주: 기관별 발표일은 IMF(2012년 10월), OECD(2012년 5월), World Bank(2012년 6월), 아시아 개발은행(2012년 10월)

자료 : 세계 주요 연구기관 경제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1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 재구성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4.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낙관적으로는 4.2%, 비관적으로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평균적으로는 3.6%로 예상되었다(<표 I-1> 참조).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재정 건전화 시한 연장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이 어려운데 있다. 즉, 유로존의 깊은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민간부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고, 주택시장 회복과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 고용개선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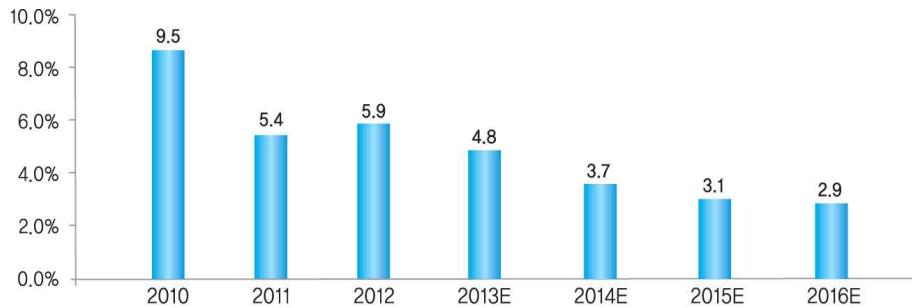
한국은행의 발표(2013년 1월)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3.1%)보다 1.1% 낮은 2.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교역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해보다 수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국내 경제는 구조적 하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환적 경기 상승이 예상되며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동반 개선되어 2012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세계 방송시장 동향

유럽의 통신, 인터넷, 미디어 조사기관인 IDATE(2012)에 의하면, 2009년 세계경제 침체 이후 2010년 TV산업이 회복되어 TV매출 성장률은 9.5%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세계 TV시장의 매출성장률은 감소하여 2012년에 5.9%, 2016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I-1> 참조).

<그림 I-1> 전 세계 TV 매출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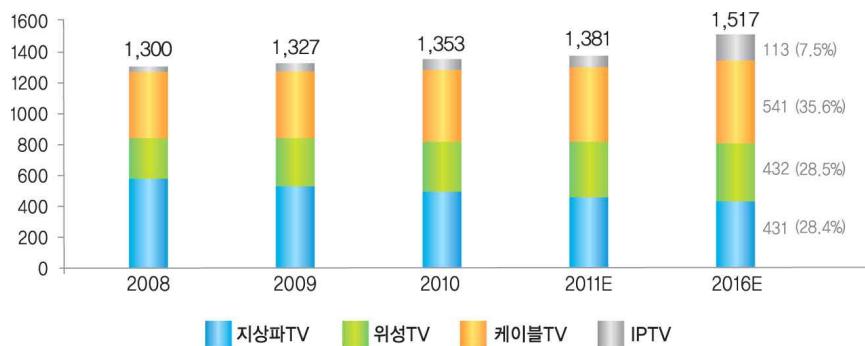


자료 : Television & Digital Content–World Television Market, IDATE, 2012년

세계 TV 수신 형태별 가구수는 지상파TV가 2008년 기준 5억 9,080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45.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상파TV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5억 1,500만 가구(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케이블TV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케이블TV 가구는 약 5억 4,100만 가구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35.6%)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의 포화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2> 참조). 한편, 유럽에서는 점차 케이블TV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가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륙에서는 여전히 케이블TV가 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I-2> TV 수신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백만 가구)



자료 : Television & Digital Content–World Television Market, IDATE, 2012년

TV 광고시장은 크게 방송TV 광고와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로 구분된다. 방송TV 광고는 지상파TV 광고, 다큐멘터리TV 광고,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는 모바일TV 광고와 온라인TV 광고로 구성된다. 광고매체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방송TV 광고는 케

이블, 위성, 통신회사, 공중파 등을 통해서 광고된다. 온라인TV 광고는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의 광고와 TV 웹사이트의 광고로 구성된다. 모바일TV 광고는 모바일TV 사이트 광고와 비디오 광고로 구성된다.

세계 TV 광고시장 규모는 2012년에 1,96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전년대비 6.2% 성장하였다. TV 광고시장이 성장한 주요 요인은 방송TV 광고의 성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다채널 플랫폼의 확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고화질(hight-definition)TV 보급 등은 TV 광고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TV 광고시장은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 광고시장은 2012~2016년 기간동안 연평균 6.7%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 2,547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와 중동에서는 웹에 연결된 TV와 태블릿PC가 인기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태블릿PC 보급의 성장은 모바일TV 이용과 광고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방송TV 광고는 1,903억 달러로 전체 TV 광고시장의 96.8%를 차지하였으며, 방송TV 광고 중 지상파TV 광고가 6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채널TV 광고는 지상파TV 광고보다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8.7%의 성장을 통해 2016년에는 76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시장은 62억 달러로 전체 TV 광고시장에서 약 3.2%를 차지하였다. 온라인TV 광고 시장은 모바일TV 광고시장보다 약 3배 큰 반면, 모바일TV 광고시장은 온라인TV 광고시장보다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광고시장은 2012~2016년 기간동안 연평균 27.3% 성장하여 2016년에는 시장규모가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2> 참조).

<표 I-2> 세계 TV 광고시장 매출액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	2011E	2012E	2013E	2014E	2015E	2016E	CAGR (2012~2016)
방송TV광고	1,756	1,800	1,903	1,961	2,151	2,201	2,410	6.1%
지상파TV광고	1,204	1,211	1,275	1,289	1,415	1,419	1,558	5.1%
다채널TV광고	467	504	544	587	648	693	760	8.7%
기타	85	85	84	85	88	89	92	2.3%
온라인 및 모바일TV 광고	39	50	62	78	96	114	137	21.9%
모바일TV광고	8	11	16	21	28	34	42	27.3%
온라인TV광고	31	39	46	57	68	80	95	19.9%
합계	1,795	1,850	1,965	2,039	2,247	2,315	2,547	6.7%

주 1) 독일 및 스페인의 방송TV 광고 매출액 임

자료: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PricewaterhouseCoopers, 2012년, KAIT 자료 재구성

다. 세계 통신시장 동향

2012년 세계 통신시장은 모바일 플랫폼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PC용 플랫폼과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태블릿 시장의 확대와 함께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브로드 밴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전 세계 인구 대비 1인 1대의 휴대폰 소유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인 에릭슨은 2012년 휴대폰 가입자 수는 66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13년에 이르면 세계 휴대폰 가입자가 75억 명으로 세계인구 7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IT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0.3%에서 2013년 48.8%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은 피처폰과 달리 동영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휴대폰을 통한 데이터 전송량이 2배로 늘었으며, 이는 음성통화 전송량이 이전 수준에 머무른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릭슨(2012년)은 2011~2017년까지 세계적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연평균 6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7년까지 약 1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IT 리서치 전문기관인 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통신시장 매출액은 2조 1,660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2013년에는 3.2% 성장한 2조 2,346억 달러로 전망되었다. 2011~2016년 기간동안 세계 통신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하여 2016년에는 2조 4,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2년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은 1조 6,547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세계 통신시장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6.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3> 참조).

<표 I-3> 세계 통신시장 매출액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1년~2016년)
세계 통신인프라	1,786	1,872	1,894	1,966	2,054	2,136	2,208	3.4%
세계 통신서비스	15,680	16,634	16,547	16,807	17,242	17,654	18,018	1.6%
모바일 기기(소매매출)	2,410	2,861	3,218	3,574	3,785	4,031	4,233	8.2%
합계(성장률)	19,876 (6.1%)	21,366 (7.5%)	21,660 (1.4%)	22,346 (3.2%)	23,081 (3.3%)	23,822 (3.2%)	24,460 (2.7%)	2.7%
통신서비스 비중	78.9%	77.9%	76.4%	75.2%	74.7%	74.1%	73.7%	

주) 통신서비스 비중은 세계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통신서비스의 비중임

자료: Gartner, 2012년 9월, KAIT 자료 재구성

부문별 세계 통신시장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모바일 서비스 시장매출액은 세계 통신시장의 47.1%(1조 191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성장의 전반적인 둔화로 인하여 세계 통신시장 또한 부문별로 둔화된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16년 기간동안 성장이 두드러진 부분으로 모바일 기기 시장을 들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소매매출 기준으로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I-4> 참조).

<표 I-4> 세계 부문별 통신시장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1년~2016년)
기업 통신 애플리케이션	161	164	165	171	178	181	184	2.3%
기업 네트워크 장비	363	383	415	436	451	463	475	4.4%
사업자 네트워크 인프라	798	828	793	812	857	904	945	2.7%
통신운영관리시스템	464	497	522	546	568	587	604	4.0%
기업 네트워크서비스	2,964	2,982	2,815	2,711	2,633	2,555	2,473	△3.7%
소비자 유선네트워크서비스	3,608	3,702	3,542	3,494	3,482	3,476	3,467	△1.3%
모바일 서비스	9,109	9,950	10,191	10,603	11,127	11,624	12,079	4.0%
모바일 기기	2,410	2,861	3,218	3,574	3,785	4,031	4,233	8.2%
합계	19,876	21,366	21,660	22,346	23,081	23,822	24,460	2.7%

자료: Gartner, 2012년 9월, KAIT 자료 재구성

2012년 기준 세계 통신시장의 지역별 점유율은 아시아 및 태평양이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24.6%), 서유럽(18.2%), 남미(10.7%), 중동 및 아프리카(9.5%), 동유럽(5.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3> 참조).

<그림 I-3> 지역별 세계 통신시장 현황 및 시장점유율



자료 : Gartner, 2012년 9월 KAIT 재구성

2.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

2012년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융합과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게임, 광고 등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 확산과 함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게임 이용증가 등의 요인들이 모바일 시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분야는 2013년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비즈니스의 확산이 기대된다.

가. 국내 방송통신시장 동향

2012년 국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미국, 유럽의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 결과 2012년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6% 하락한 2.0%(GDP 약 1,103조 원) 성장을 달성하였다. 2008~2012년 5년 동안 GDP 성장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한국은행(2013년 1월)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유가의 안정화 전망 등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3년 국내 GDP 성장률은 2012년 보다 0.8% 상승된 2.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I-5> 참조).

<표 I-5> ICT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성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년P	평균 (2008년~2012년)
GDP(실질, 십억 원)	978,499	981,625	1,043,666	1,081,594	1,103,467	1,037,770
GDP 성장률(실질, %)	2.3	0.3	6.3	3.6	2.0	3.1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AIT 자료 재구성

2012년 우리나라의 ICT 산업 수출액은 1,552억 달러로 2011년 대비 0.9%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2년 ICT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는 3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연초 감소폭이 높아 전년대비 14.7% 감소를 나타내었고, 그 외에 액정디바이스(0.3% 감소), 메모리(18% 감소) 등 주요 수출 부문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반도체의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기타 집접회로 반도체 등은 선전하여 수출을 견인하였다. 2012년 전체 수출액은 5,482억 달러로 2011년 대비 1.3%가 감소하였는데, ICT 산업수출의 비중 증가는 전체 수출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 ICT 산업 수입액은 779억 달러로 2011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5%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2년 전체 무역수지는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로 인하여 2011년도와 비교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 ICT 무역수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7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대비 2.9% 성장하였다.(<표 1-6> 참조).

<표 I-6> ICT 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수출	전체수출	4,220	3,635	4,664	5,552	5,482	
	ICT 산업수출	1,312	1,210	1,539	1,566	1,552	
	비 중	31.1%	33.3%	33.0%	28.2%	28.3%	
수입	전체수입	4,353	3,231	4,252	5,244	5,195	
	ICT 산업수입	735	620	756	815	779	
	비 중	16.9%	19.2%	17.8%	15.5%	15.0%	
전체 무역수지		△133	405	412	308	286	
ICT 무역수지		576	589	783	751	773	

자료: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AIT 자료 재구성

2011년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은 2010년 대비 2.9% 성장하여 약 1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은 2011년 대비 4.1% 하락한 약 150조 원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2년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중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생산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반면, 방송통신기기 생산액은 8.8% 감소하였다.

2012년 방송통신서비스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생산액은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은 2011년 보다 11.5%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도 16.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방송서비스 생산 규모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그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송통신기기 부문에서는 통신기기와 방송기기 모두 생산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7> 참조).

<표 I-7>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년P	증감률	CAGR (2008년~2012년)
방송통신산업	1,407,304	1,514,322	1,517,737	1,561,611	1,497,114	△4.1%	1.6%
방송통신서비스	579,912	605,033	630,427	656,225	671,572	2.3%	3.7%
통신서비스	426,617	435,981	436,355	440,924	440,750	0.0%	0.8%
방송서비스	92,878	95,194	107,382	116,224	120,346	3.5%	6.7%
방통융합서비스	60,417	73,858	86,690	99,077	110,476	11.5%	16.3%
방송통신기기	827,392	909,289	887,310	905,386	825,542	△8.8%	△0.1%
통신기기	698,457	768,389	732,179	745,908	681,060	△8.7%	△0.6%
방송기기	128,936	140,900	155,130	159,478	144,483	△9.4%	2.9%

주)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2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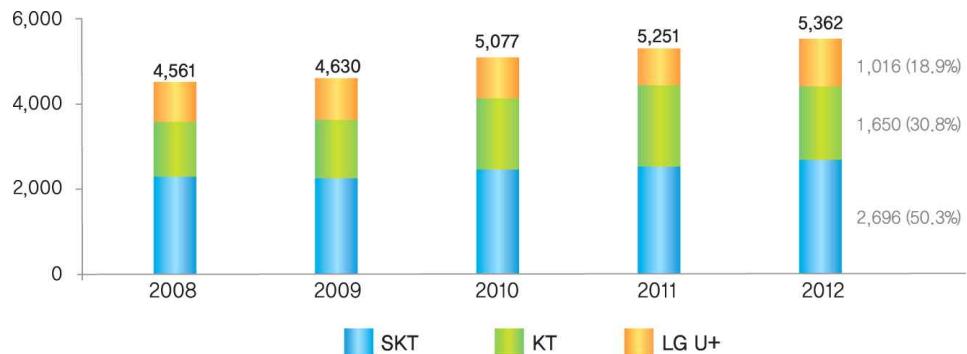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는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지연과 지속적인 유로지역의 경기불안 등으로 방송통신기기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약 5,251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2.1% 성장한 약 5,362만 명에 달하였다. 사업자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월 기준 SKT는 50.3%, KT는 30.8%, LG U+는 18.9%를 차지하였다. 가입자별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20.0%,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50.5%, LTE(Long Term

Evolution)는 29.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LTE 가입자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가입자수는 약 128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2.4%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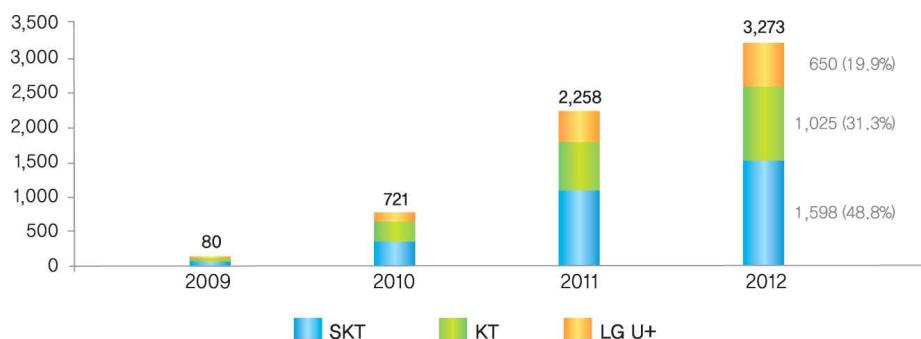
<그림 I-4>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1년 스마트폰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012년에 전년대비 약 45% 성장한 3,273만 명에 달하였다. 사업자별로 SKT가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KT, LG U+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5> 참조).

<그림 I-5>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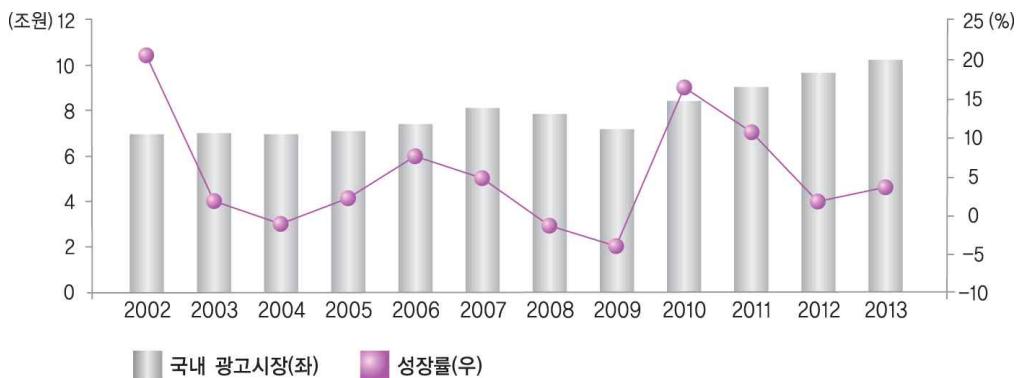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일기획(2013년 2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 호조는 2011년에도 지속되었으며, 2011년 국내 광고시장은 전년대비 10.9%가 성장한 9조 5,60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 국내 광고시장은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2011년 대비 2.2% 성장한 9조 7,706억 원을 달성하였다. 2013년 광고시장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가계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인

하여 전망하기 어렵지만, OECD가 예측한 3.1% 수준의 성장을 고려하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6> 참조).

<그림 I-6> 국내 광고 매출액 추이



자료 : 제일기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2년 국내 방송 광고시장은 약 3조 6,072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3년은 0.9% 하락한 약 3조 5,7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2년 지상파TV 광고 매출액은 2011년 대비 7.1% 감소하였는데, 이는 런던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광고주들의 보수적 광고집행이 감소의 주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2년 케이블TV(종편포함) 광고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2.6% 성장한 1조 3,218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매출액이 포함되어 높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0.6% 성장한 약 1조 3,300억 원으로 전망된다(<표 I-8> 참조).

<표 I-8> 국내 방송 광고 매출액 전망

(단위: 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2013년 성장률
지상파TV	18,997	16,709	19,307	20,775	19,307	18,800	△2.6
라디오	2,769	2,231	2,565	2,604	2,358	2,430	3.0
케이블TV(종편포함)	8,600	7,794	9,649	11,741	13,218	13,300	0.6
IPTV	53	114	205	170	235	280	19.1
스카이라이프	95	95	153	122	130	140	7.7
DMB ^{※1)}	114	176	271	267	168	150	△10.7
SO ^{※2)}	-	524	590	664	655	650	△0.8
합계	30,628	27,643	32,740	36,343	36,072	35,750	△0.9

주1) 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주2) SO : 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자료 : 제일기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2012년 인터넷 광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5.3% 성장한 약 1조 9,540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3년은 2012년 대비 6.4% 성장한 약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 약 20%의 성장을 보였던 인터넷 광고 매출액의 성장세가 둔화된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모바일 광고 매출액이 2011년 약 600억 원에서 2012년 약 2,100억 원으로 250% 성장하여 신규 광고 수요를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3년 모바일 광고 매출액은 약 4,000억 원으로 9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9> 참조).

<표 I-9> 국내 인터넷 광고 및 모바일 광고 매출액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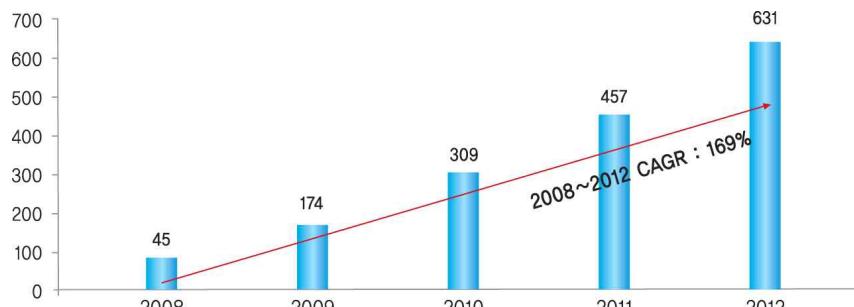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2013년 성장률
인터넷 광고	검색형 광고	7,500	8,250	10,440	12,440	12,950	5.4
	노출형 광고	4,400	4,180	5,030	6,120	6,590	8.5
	인터넷 계	11,900	12,430	15,470	18,560	19,540	6.4
모바일 광고	-	-	5	600	2,100	4,000	90.5

자료 : 제일기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해당되는 IPTV는 2012년 가입자가 약 631만 명으로 2008~2012년 연 평균 16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그림 I-7> 참조). 케이블TV는 600만 명에 도달하는데 약 7년이 소요되었으며, 위성방송은 300만 명을 달성하는데 9년이 걸렸다. 반면, IPTV는 서비스를 개시한지 5년이 못되어 6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IPTV는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개별기업의 수익모델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IPTV는 VoD(Video on Demand), 멀티앵글 등 기준의 TV, 케이블TV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융합 영역을 확장시키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7> 국내 IPTV 가입자 추이

(단위: 만 명)



2012년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약 1,894만 명에 달하며, 아날로그CATV(Cable Television)와 위성방송(일반위성방송+위성DMB) 가입자의 감소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유선 가입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CATV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날로그CATV 가입자는 감소하여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IPTV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위성방송 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8> 참조).

<그림 I-8>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추이 (단위: 만 명)



주 : 유료방송서비스는 종합유선(아날로그CATV+디지털CATV)+기타(중계유선+일반위성방송+위성DMB)로 구성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발표한 2012년 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세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이 가장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이 결과는 2012년 한 해에 불과한 것이 아닌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CT 발전지수는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이며,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해소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공인된 기준으로 ICT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C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방송통신 정책 가운데 방송에서의 종합편성채널과 통신에서의 LTE서비스 확산은 새로운 성장도약을 이루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효과는 방송분야에서 방송 광고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통신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이루게 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LTE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현재 LTE 이용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 12월 기준 1,581만 명을 넘어섰다. LTE의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인터넷 이용 속도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IT기기의 발전과 트래픽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영상과 음질 개선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운로드를 통한 콘텐츠 소유 대신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음원, 영상 등을 이용하는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환경 개선과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확산은 이용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무대를 글로벌 경쟁의 경연장으로 바꿈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점차 스마트 생태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IC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빠르게 개발될 것이다.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는 점차 지식기반 사회로 다가가고 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ICT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등이 새로운 ICT 기술과 융합 서비스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감성사회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고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가치문화를 창출하면서 ICT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및 유선통신 중심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컨버전스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CT 시장은 기기 업체나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ICT 시장이 C-P-N-D의 유기적 결합으로 변모하면서 경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이 확산되고 콘텐츠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고객) 중심의 서비스 수요가 중요시되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은 ICT 패러다임 변화의 결정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ICT 시장은 ICT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소셜, 정보, 클라우드 등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소셜이 콘텐츠가 되고, 모바일이 개인과 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시장이 창출되며,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 intelligence(지능)를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시대로 빠르게 발전될 것이다.

연결(connection)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즉, 더 많은 연결, 더 빠른 연결, 더 지능화된 연결을 통하여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한다. 과거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세상을 변하게 하였다. 오늘날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이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국가번영의 도약판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ICT 정책환경은 ‘소

통과 창조'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즉, 연결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는 일상생활, 기업활동, 경제활동 등에 활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CT를 통해 저성장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기회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고령화, 실업률 등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ICT 패러다임의 변화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ICT 패러다임의 변화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소와 이용자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성장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13년은 ICT의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3. 업무체계 혁신 성과
4. 2011년 주요 정책 성과
5. 2012년 주요 정책 목표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¹⁾,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에 맞춰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16개로 다음과 같다.

- ▶ 근거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융합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2개
- ▶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5개
- ▶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 ▶ 전파분야 : 전파법 1개

1) 3인의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 2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

<표 II-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법률명	주요 내용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사무조직 • 위원회의 소관사무, 운영방법 및 심의위 설치 	2008.02.29 제정 2012.05.23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의 진흥·기술기준·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010.03.22 제정 2012.02.22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IPTV 제공·콘텐츠 사업자) •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2008.01.17 제정 2011.07.14 개정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승인·재승인 	2000.01.12 제정 2012.02.22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 및 출자 • 임원의 임명, 이사회 구성 	2000.01.12 제정 2010.03.22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구성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근거 	1988.12.26 제정 2008.02.29 개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2008.03.28 제정 2009.04.22 개정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 절차 • 무선국 허가·검사 등 무선국 이용절차 	1961.12.30 제정 2012.05.23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 통신재난 관리 	1983.12.30 제정 2010.07.2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공정경쟁 제도 • 통신이용자 보호제도 	1983.12.30 제정 2012.01.1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협조 	1993.12.27 제정 2009.11.02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1986.05.12 제정 2012.02.17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주소자원의 사용·관리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004.01.29 제정 2009.06.09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업의 등록, 설계의 기술기준 • 공사의 분리 발주제, 하도급의 제한 	1971.01.22 제정 2012.01.17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 시장 진입 제도 •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 정보 이용 	2005.01.27 제정 2012.05.14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소유제한 • 방송광고 균형발전 지원방안 	2012.02.22 제정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가. 조직 현황

<그림 II-1>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12년 12월 기준)



이계철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65년)하고, 행정고시(5회)를 통해 체신부에 임용(1967년)되어 경북체신청장(1983년), 기획관리실장(1991년), 정보통신부 차관(1994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1996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2000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2002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2007년)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재직(2012년 3월~)하고 있다.



김충식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1977년)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1993년)을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2010년)를 받았다. 동아일보 기자(1978년), 정보과학부장(1995년), 동경지사장(2002년), 논설위원(2005년) 등을 거쳐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신문방송학과 정교수(2009년)로 임용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011년 3월~2012년 9월)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부위원장으로 재직(2012년 9월~)하고 있다.



홍성규 상임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1975년)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학 석사학위(1998년)를 받았다. 한국방송공사 정치부 부장(1992년), 보도국 국장(1999년), 특임본부 본부장(2002년) 등을 거쳐 TU Media Corp. 부장(2004년) 및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2007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2011년 3월~2012년 9월)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2년 9월~)하고 있다.



김대희 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1982년)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84년)을 거쳐 캐나다 칼튼대학원을 수료(1997년)하였다. 행정고시(26회)를 통해 임용(1983년)되어, 정보통신부 법무담당관(1998년), 전북체신청장(2004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장(2007년)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2010년),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2011년)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2년 11월~)하고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1993년)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1996년) 및 언론학 박사학위(2002년)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2006년),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2007년),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2008년) 및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2010년 7월~2011년 3월)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으로 재직(2011년 3월~)하고 있다.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광고시장 규제 및 진흥업무와 방송시장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 광고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신설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10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직제를 개정(2012년 6월 1일)하였다.

신설된 방송광고정책과를 통해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송광고 판매 대행시장의 경쟁정책과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장조사과는 통신시장조사과와 방송시장조사과로 나누고, 신설된 방송시장조사과를 통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관리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시청자 권리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부 직제를 개편하였다.

위원회 사무조직은 2실 4국 6관 34과 4팀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세부조직은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또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는 해당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등에 관한 사항
- 2의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 9의 2.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부서별 세부 업무분장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구 분		주요 업무
기 획 조 정 실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및 조직·정원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세입·세출 및 결산 •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소관 기금의 조성·운용
	정책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총괄, 행정제도 업무 총괄·지원 • 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의 입안, 심사 및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 행정심판 및 소송, 법인설립 허가 및 산하단체 임원 선임·승인 관련 업무
	비상계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보안업무 및 재난관리 •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국 제 협 력 관	의안조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 •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국제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 WTO^{주1)}, FTA^{주2)}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남북한간 방송통신 협력 업무
	국제기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
방 송 통 신 융 합 정 책 관	정책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중장기 방송·통신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평가 • 방송통신 및 융합관련 자료조사·연구총괄 및 조정
	융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전략수립
	방송통신진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프로그램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정책수립, 방송통신 인력양성 •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 정책,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방송통신녹색기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및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 •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
방 송 전 파 기 획 관	전파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 •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정책, 전파감시 및 전파자원 독과점 방지
	전파방송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정책
	주파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방 송 진 홍 기 획 관	방송진흥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 방송프로그램의 소외계층 보호정책,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심 심의 지원
	디지털방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수립 •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 및 시행
	방송광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편성·운영, 법제도 개선 •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 경쟁정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
	편성평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 방송평가 기본계획 및 협찬고지 관련 정책, 외주제작에 관한 정책

주 1)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주 2)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구 분		주요 업무
방 송 정 책 국	방송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서비스 정책 총괄,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및 공영방송 정책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정책 및 방송의 공익성 보장 시책 수립
	지상파방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뉴미디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방송·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방송채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방송채널사업자 등록·승인 • 방송콘텐츠 등등집근 정책,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통신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정책 총괄 •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와이브로 관련 활성화 정책
	통신경쟁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 •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합병, 재판매 제도 관련 정책
	통신이용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통신이용제도 수립 및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결합판매 관련 정책
	통신자원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인터넷진화 활성화 정책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 수립·시행
	조사기획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정책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운영,
이 용 자 보 호 국	통신시장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관련 정책
	방송시장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시청자 권리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제도 개선
	이용자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 • 통신이용자 권리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청자권익증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관리, 방송소외계층 지원 정책
	네트워크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네 트 워 크 정 책 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 건전한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
	인터넷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지능통신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인터넷 정책,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 활성화 • 국가 그리드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국제연구망 관리
	네트워크정보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 •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및 예·경보 발령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언론 브리핑 지원 •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상훈, 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의전 및 청사의 관리, 공무원의 복지·후생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주요 유관 기관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등 3개 기관이 있고, 소관 공사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으며, 설치 근거와 설립목적, 주요 기능은 <표 II-3, 4, 5>와 같다.

<표 II-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원장	양유석	전파법 제66조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방송·통신·전파의 진 흥을 위한 사업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 리, 정부 수탁 업무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원장	이기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개 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 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

<표 II-4>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김인규	방송법 제43조 1항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신용섭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제1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 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FBC)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 진흥회법 제1조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문 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

<표 II-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사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주요 기능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KOBACO)	사장	이원창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및 정부 수탁 업무 수행

라. 2012년 세출 예산

위원회의 2012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1,204억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844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1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8,259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5,36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36억 원이다. 또한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967억 원, 기본경비 153억 원, 주요 사업비 7,202억 원, 내부거래 200억 원, 보전지출 2,682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역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 (B-A)	%
	총계 <예산 + 기금>	8,653	11,204	2,551	29.5
	□ 예산	3,208	2,945	△263	△8.2
재 원 별	• 일반회계	3,050	2,844	△206	△6.8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8	101	△57	△36.1
	□ 기금	5,445	8,259	2,814	51.7
기 능 별	•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8,259	2,814	51.7
	□ 통신분야	5,409	5,368	△41	△0.8
	□ 문화 및 관광분야	3,244	5,836	2,592	79.9
	□ 인건비	947	967	20	2.1
	□ 기본경비	158	153	△5	△3.2
	□ 주요사업비	6,564	7,202	638	9.7
	1.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	1,364	2,055	691	50.7
	2.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975	1,016	41	4.2
	3. 네트워크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 ¹⁾	900	809	△91	△10.1
	4.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232	235	3	1.3
기 능 별	5.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²⁾	764	697	△67	△8.8
	6.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기반 조성(R&D)	1,993	2,085	92	4.6
	7. 기타 행정 지원 ³⁾	336	305	△31	△9.2
	□ 내부거래(회계간·기금간 전출금 등)	500	200	△300	△60.0
	□ 보전지출(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484	2,682	2,198	454.1

1) 감액사유 : KISA 운영지원(△53억원) 등 감액

2) 감액사유 : 전파자원총조사(△23억원) 등 '11년도 종료사업

3) 감액사유 : 방송통신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연차 소요 감소(△29억원) 등

마. 2012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2012년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방송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번호 발신안내 의무화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자파 인체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전파법」 개정,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작사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방통발전 기금 징수 권한 위임 조항 정비 등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저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II-7> 2012년 정부입법 추진 현황

법안명	국회 제출일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2012.9.24 (상임위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및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번호 발신안내 의무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전파법	2012.10.22 (상임위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외교적 목적의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자파인체보호센터 지정
방송법	2012.12.3 (상임위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개념 도입,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허용•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확인·고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2.12.27 (상임위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통발전기금 징수 권한 위임조항 정비•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시기 일치
정보통신공사업법	2012.12.28 (상임위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공사업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허용• 저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

2011년도에 방송, 통신, 네트워크, 전파 등 4개 분야 41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융합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분야에 융합분야를 포함하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분야를 추가하여 방송·융합, 통신, 이용자 보호, 네트워크, 전파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표 II-8> 2012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구 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추진현황
방송 · 융합	1 방송사업 소유·겸영 중복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진행중
	2 TV 수신료 선납절차 개선	시행령 개정 완료
	3 공익채널 선정절차 법제화	규칙 개정 완료
	4 '먹는 샘플'광고 규제 완화	규칙 개정 완료
	5 협찬규제 완화	규칙 개정 완료
	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고시 개정 완료
	7 IPTV 제공사업 허가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고시 개정 완료
	8 IPTV 콘텐츠사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감축	고시 개정 완료
	9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 개선	고시 제정 완료
	10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폐지	시행령 개정 진행중
통신	11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
	12 연동형 TV전자상거래 사업자격 요건 개선	지침 개정 완료
	13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 지원기준 마련	고시 제정 완료
	14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
	15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 개선	고시 개정 완료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개선	고시 개정 완료
	17 국제로밍 정산계약 승인제 완화	법률 개정 진행중
	18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운영상 조치 완료
	19 통신서비스 요금 부가세 표시방법 개선	지침 제정 완료
	20 선불요금제 충전 편리성 제고	운영상 조치 완료
이 용 자 보 호	21 통신설비 제공범위 확대	고시 개정 완료
	22 MVNO 서비스 번호이동성 허용	고시 개정 완료
	23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시행령 개정 완료
	24 통신요금 한도초과시 이용자 고지 절차 마련	고시 제정 완료
	25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통신시설 범위 축소	고시 제정 완료
	26 방송법 금지행위 세부유형 명확화	시행령 개정 완료
	27 IPTV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완료
	28 통신 이용자 피해확인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완료
	29 방송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마련	고시 제정 완료
	30 시정명령 공표크기 완화	고시 개정 완료

구 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추진현황
31	통신사업 과정금 부과기준 개선	고시 개정 완료
32	방송 금지행위 이의신청 제도 개선	고시 개정 완료
33	통신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마련 완료
34	방송취약계층 지원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
35	장애인 통신접근권 확대	지침 제정 완료
36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제도개선	지침 개정 완료
37	위치정보사업 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령 개정 완료
38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지침 제정 완료
네트워크	39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법률 개정 진행중
4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원칙허용 방식 전환	법률 개정 완료
41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시 청문절차 도입	법률 개정 완료
42	체납 과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법률 개정 진행중
43	이용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 완료
44	이동통신사업 전파사용료 부담 완화	시행령 개정 완료
45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	시행령 개정 완료
46	무선국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고시 개정 완료
47	채널재배치 DTV ^{주1)} 방송국 허가·검사절차 간소화	지침 제정 완료
48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현행화	고시 개정 진행중
전파	49 해수면 관측용 레이더 인가제도 개선	고시 개정 완료
50	아마추어국 설치장소를 복수로 허용	고시 개정 완료
51	전자제품 안전검사 중복규제 개선	고시 개정 완료
52	초소형지구국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시행령 개정 완료
53	조립PC 인증절차 개선	고시 개정 완료
54	비면허 무선마이크 대역 확대	고시 개정 완료

주 1) DTV : Digital Television

* 2013년 1월 10일 현재

3. 업무체계 혁신 성과

2012년 위원회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목표를 설정

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비한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성과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종합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국가 방재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결산을 통해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다.

가.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통신 행정지원 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통신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및 제도관리’, ‘앞서가는 규제개혁 및 체계적인 입법지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방송통신 재난관리체계 및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의 관리과제를 추진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와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 주요성과에 대한 ‘퍼즐퀴즈’, ‘아름다운 SNS 세상 만들기’, ‘무료 와이파이존 활용’ 등 각종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고,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웹툰 등을 통하여 알뜰폰, 디지털 전환, 무료와이파이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강화하였다.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자 종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울러, 산·학·연·민간협회 등의 정책고객 대표자들과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정책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위원회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교류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달의 좋은 정책’을 선정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및 정책 품질 제고에 힘썼으며,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총 7개 분야 중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 ‘정책만족도’ 부문에서 1위,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 이용자 편의증진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총 54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5건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방송통신 규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편의를, 기업에게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통신 행정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년 향상되어 위원회는 2012년 규제개혁 만족도 평가(총리실 주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하여 위원회 주요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여, 법률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5인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상임 위원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면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임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의 안건발의를 활성화하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위원 정책연구지원반을 구성·운영하였다.

위기상황의 사전인지와 상황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완벽한 방송통신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태풍 4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하였다. 또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여 속보, 특보, 자막방송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재난방송의 실시로 국민에게 재난상황(정보)을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2년 재난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02개 훈련 참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에서도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 및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 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나.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지원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함께 성장하는 직장,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 ‘기획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의 관리과제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업무특성과 규모, 현재 인력 구조 등을 분석하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핵심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신규자 임용 시 부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돋기 ‘다사랑 운동’ 추진과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통해 위원회의 사회공헌 활동 위상을 제고하였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 위원회와 방송·통신분야 민간 경영책임자간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청렴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렴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등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였다.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실한 미래예측을 통한 적실성 있는 인력계획 마련에 초점을 두고 ‘중기인력운영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유동정원제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인력운영의 경직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제 및 세칙을 개정(2012년 6월 1일)하였다. 이러한 위원회 직제개정 및 효율적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조직의 기획·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기여 하였다.

4. 2011년 주요 정책 성과

위원회는 미디어융합 및 빅뱅, 글로벌 IT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좌우,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가 2011년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011년 위원회는 스마트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여 위원회가 2013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계획을 담은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2011년 11월)함으로써 방송통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아울러, 2011년 7월에는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8월에는 주요 정책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무선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에 대응하고자 800MHz, 1.8GHz, 2.1GHz 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기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동통신용 신규주파수 확보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2012년 1월)함으로써,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여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또한, TV 유휴대역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대역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Wi-Fi(Wireless-Fidelity, 와이파이)와 재난·재해 서비스 등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2개의 실험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2011년 6월)하였으며, 실험 서비스를 통해 TV유휴대역의 높은 활용성이 검증(2011년 11월)됨에 따라 2011년 12월 TV 유휴대역 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스마트폰이 2천만대 이상 보급되고 점차 태블릿PC, 스마트TV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3월에는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와이브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LTE 상용서비스를 개시(SKT/LG U+, 2011년 7월)하는 등 스마트 시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였다.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보고를 거쳐 ‘Giga인터넷 상용화 추진전략(안)’을 수립(2011년 6월)하였다. 그리고 기존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망 구축과 아울러 2011년 9월에는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조기 개시 하는 등 대용량·고품질의 방통융합 시범서비스를 추가 발굴·제공하였다.

IT 비용절감, 그린IT 구현 기술방안으로 부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고도화,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관련 제도정비 등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자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조기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를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장기예측 모형 및 저감시나리오 개발·보급으로 방송통신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이 용이 해졌으며,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방송통신 분야 주요 사업자에 대한 전력사용실적, 감축방안 등을 점검·관리함으로써 2011년 방송통신분야 온실가스 목표치인 1만 5,700TOE(Ton of Oil Equivalent) 감축을 달성하였다.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통해 국제방송 표준 및 기술을 선도하고 차세대방송 산업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고화질 3D를 지상파 채널에서 생중계하여 상용화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였고,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디지털 방송표준위원회)는 한국 방식의 3D 방송기술을 후보안으로 3DTV 표준화 추진을 결정했으며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표준화기구산하 동영상 연구 모임)에서도 표준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을 국제표준에 최종 반영(2012년 1월)하여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국내에서 개발한 WiBro 및

LTE 진화기술을 4G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건의 기고문을 제출하였고, 국제표준에 따라 이동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국내 다수의 이동통신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ITU-R WP5D(ITU-R Working Party 5D) 부의장 및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단체) 최고 의결 조직의 부의장 등 14명이 의장단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 4G 표준화와 관련하여 APG-12(APT Preparation Group 2012) 5차회의(2011년 9월, 부산), 제29차 한중일 IMT 표준협력 회의(2011년 9월, 서울),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HoD/SC/OP(2011년 4월, 서울) 등을 국내에서 4회 개최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ICT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2011년 12월)함으로써 망중립성 기본원칙을 확립함과 동시에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일탈적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2011년 5월)하였다. 산·학·연·관 전문가 중심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추진단회의를 통해 기존 법령 정비, 인력 양성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루션 등을 개발, 시험·검증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였다.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를 구축(2011년 5월)하는 한편, 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SmartFarm)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차세대 사물 지능통신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과제를 수행하였다.

2011년 3월 스마트·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근접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근접통신(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NFC 결제 및 응용서비스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11월 ‘명동 NFC Zone’을 선포하고 다양한 NFC 기반의 시범 응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급성장하는 스마트TV와 관련하여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2011년 4월)을 수립하였고, 국내 스마트 미디어 관련 관계자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미래 정책수요 발굴 및 업계 간 협력을 유도 하였다. 또한, 2011

년 6월 ‘스마트TV 표준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9월에는 14개 표준화 추진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CT 표준화 전략맵에 반영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IPTV는 2009년 1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이후 457만명을 돌파(2011년 12월)하여 유료방송 시장에 안착하였고, 양방향 특성을 기반으로 학교 (3만 8천개 학급), 군부대(2만 9천개소), 공부방 (900여개) 등 공공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파수 또는 설비가 없는 사업자의 이동 통신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MVNO 관련 사업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SKT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하여, 도매제공 절차, 이용대가, 책임 한계, SKT의 MVNO 번호 부여 등 사업자간 원활한 협정 체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MVNO 관련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 지원 전담반 운영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2011년 4~5월)하였다. 또한, MVNO 사업자도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와 동일하게 ‘010’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2011년 5월)하였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통위 고시)’ 개정을 통해 MVNO 사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11년 7월)하였다. 아울러,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MVNO의 구매량에 따라, 최대 6%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기준을 마련(2011년 7월)하였고,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 추가 할인을 적용 받는 ‘데이터 전용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사·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스토어 (K앱스) 서비스를 개시(2011년 11월)하였다. 통합 앱스토어는 콘텐츠 등의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앱 도매 장터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의 기술 규격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콘텐츠 및 R&D 등에 투자하도록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1년 11월)하는 한편,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인터넷 포털업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함에 따라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시정조치(2011년 9월) 및 규제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하였고,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 및 약관관련 시정조치(2011년 2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2011년 12월에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방송을 개시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향상 및 방

송 다양성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공급자(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조사, 기준 정비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조건 부과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한 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였다. 홈쇼핑사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의 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선정(2011년 3월, 쇼핑원)하여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지원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소유제한·광고시간 제한·방송시간 양도 등)에 따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해당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변경승인 심사에 반영하였다.

프로그램공급자,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 등 중소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유통 시스템을 구축(2008년~2011년)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에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송출 종합 지원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2010년~2013년, 2,276억 원)중에 있다. 시청자가 품격높은 방송통신융합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보급(2011년 총 116편 제작, 180억 원)하였다.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를 2013년부터 전면 허용하였다. 먹는 샘물의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하여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먹는 샘물 방송광고 금지 규정 개정(2011년 12월)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광고수요 기반확대에 기여하였다.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북 울진(2010년 9월), 전남 강진(2010년 10월), 충북 단양(2010년 11월), 제주도(2011년 6월)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을 전면 실시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전환 홍보강화로 디지털전환 인지도(90.8%)과 보급률(94.4%)이 향상되어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자발적인 준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시청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1년 3월)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스포츠 중계권 관련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여 시청자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 지상파방송 3사간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KS)를 설치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하여 합동방송에 의한 순차편성 등을 유도(2011년 7월)하였으며,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안) 마련(2011년 10월)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한 국산 방송장비에 대한 인증제 추진으로 국내 업체의 신뢰성 제고 및 시장 판로가 확대되었다. 15종의 방송장비에 대한 인증 규격을 마련하고 개발 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 기술 상담 및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2012년 1월 시행)하고, 인터넷전화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전화 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비·기본료 면제, 무료통화 450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서 소량 이용자의 요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불요금제 제공서비스 확대(음성·SMS; Short Message Service→데이터·MMS; Multimedia Messaging System), 선·후불간 번호 이동 도입 추진, 온라인 가입 절차 마련, 다양한 충전 방식 활성화 및 최소 충전금액 인하 등이며, 이에 대한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011년 10월)를 실시하였다. 대표번호서비스 번호 이동 시행(2011년 10월)을 통해 대표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기업들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 이동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동통신사 중심의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마트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도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IME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을 허용하되,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도입방안을 마련(2011년 11월)하였다.

농어촌 마을 등 전국 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 전화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200억 원 규모의 망 구축비용 저리용자, SK브로드밴드, LG U+의 농어촌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통합망) 구축현황 실태점검(2011년 4월),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 망 구축(2011년 11월) 등 광대역통합망(BcN)의 농어촌 지역 구축 확대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혜택이 증대되었다. 통신사 미환급액의 환급방안 마련(2011년 8월),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제도개선(2011년 8월), 이동전화 청소년 요금제 제도개선(2011년 11월), 휴대폰 보험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에게 보험상품 주요설명 의무화,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보상신고를 접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011년 6월) 등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2011년 11월)을 통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당과금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 관련하여 민원예보를 발령(2011년 5월)하고 이용자 캠페인을 전개(2011년 7~8월)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통한 시정조치(2011년 4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용정보 제공 등의 활동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용자 보호수준 평가방안을 마련(2011년 12월)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방송통신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연중 실시하였고,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개최(2011년 11월)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3D 시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청 권고안 V2.0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V1.0을 제정(2011년 12월)하여 3D 시청환경이 개선되었다.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보급(2010년 누적 13.6만 대→2011년 누적 15.2만 대)하는 동시에, 「방송법」(2011년 7월) 및 시행령(2011년 10월)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향상시켰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1년 12월)하여 장애인 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TV, PP 등 유료방송 매체에 대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2010년 46개→2011년 53개 사업자)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 참여 인프라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방송 활용 환경을 조성하였다. 미디어 교육과 제작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방송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초·중학 전용 인터넷 사이트 구축(2011년 3월), 초·중학 교육프로그램(2,941편) 및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24,967편), 스마트폰 등을 통한 수능 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2011년 4월) 등 EBS 초·중학 강의 이용 활성화 및 모바일 수능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태양흑점 폭발(2013년 극대기)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충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태양흑점 폭발에 대한 관측·분석과 예·경보 업무를 전담할 기구로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우주전파센터를 구축(2011년 8월)하였으며, 우주전파가 방송통신장애 등 IT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우주전파 재난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2011년 12월)하였다.

5. 2012년 주요 정책 목표

위원회는 항상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로 진입하고, 지식과 서비스 중심의 소프트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 실현’과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제2기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ICT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송통신이 국민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가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II-3> 비전과 정책목표



III

2012년도 방송통신 정책목표

제1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III. 2012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제1절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래 네트워크 기술개발

가.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1) 광대역 유선인터넷망 지속적 구축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기존 초고속 정보통신망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방송·통신, 유·무선, 음성·데이터를 IP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기 위한 50~100Mbps(Mega bit per second)급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광대역통합망을 보급·확산하는 완성단계에 진입하여, 2012년 1 월말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가구(1,729만 가구) 중 약 88%에게 50~100Mbps급의 광대역 유선인터넷이 보급되었다.

위원회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도시와 농어촌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초고속 공중망 구축 융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광대역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가구(1,825만 가구) 중 약 93%가 광대역 유선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 인프라의 확산으로 IPTV, 인터넷전화 등의 신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본격 상용화 되었으며,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서비스 개시 3년 10개월 만인 2012년 9월 을 기점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유선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사의 Wi-Fi 확충을 적극 유도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1만 개소의 Wi-Fi 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관공서 민원실, 터미널 등 공공장소 2,000개소에서 통신사간 Wi-Fi 공동구축 및 개방을 통해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초광대역융합망(uBcN;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보급·확산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2년에는 OECD 광가입자망(Fiber/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보급률(인구 100명당 보급률 기준) 및 무선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ITU의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등 전 세계 IT인프라 선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표 III-1> 연도별 광대역가입자망(BCN) 보급 실적

(단위 : 만세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선(가입자 수)	962	1,179	1,475	1,604	1,685

* 2012년 9월 기준

<표 III-1> OECD 국가 중 광통신 가입자망 보급률

(단위 : 100명당)

한국	일본	스웨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1위(20.6)	2위(17.2)	3위(9.7)	4위(6.8)	5위(6.5)

* 출처 : OECD 벌표, 광통신은 Fiber/LAN 방식임

2)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위원회는 점차 증가하는 대용량, 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고, 급증하는 유무선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BcN보다 최대 10배 빠른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3D, UHD(Ultra-HD, 초고화질) 등의 미래 고품질·실감형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 대내외적으로 Giga인터넷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국내 ICT 기술 및 인프라를 국민들이 선도적으로 시범 이용할 수 있도록 Giga급 가입자망 구축 등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D 원격교육, UHDTV(Ultra HDTV, 초고화질방송), 3D 무안경 디지털 사이니지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17개 시 지역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iga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고품질·실시간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Giga인터넷 서비스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10G-EPON(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 수동 광통신망), RFoG(Radio Frequency over Glass) 등 기술을 개발·적용·검증함으로써 관련 장비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위원회는 Giga인터넷 선도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2011년까지 KT, CJ헬로비전, LG U+ 3개 사업자에서 2012년 SKT, 티브로드 2개 사업자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Giga 인터넷 확산 의지를 고취하였다. 또한, Giga 인터넷의 상용화 확산과 산·학·연 간 유무선 네트워크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5월 12일~8월 12일) 동안 국내외 정부관계자 및 자원봉사자가 머무는 엑스포타운 500세대에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의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발맞춰 차세대 디지털인프라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실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Giga인터넷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9월 개최된 ‘2012 IT EXPO BUSAN’ 행사에서는 Giga인터넷 시범사업의 성과물인 실시간 초고화질 영상서비스, 무안경 3D 디지털 사이니지, Giga Wi-Fi 등 응용서비스를 시연하여 우리나라의 Giga인터넷 기술 및 연구 성과에 대해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12월에 티브로드가 세종시에서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 확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Giga인터넷 이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시험·검증, 품질기준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1> 각종 Giga인터넷 관련 행사

< 여수엑스포 Giga인터넷 개통식 >



< Giga인터넷 현장체험교육 실시 >



나.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고, 태블릿 PC와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휴대 단말이 출시되면서 무선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2010년 17,036TB(Tera Byte)에서 2011년 141,803TB로 약 8.3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172,135TB를 기록하여, 이미 전년도 트래픽 양을 초과하였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TE, WiBro 등 사업자의 차세대 이동 통신망 구축 환경을 조성하였다.

WiBro 서비스는 2006년 6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KT와 SKT가 무선 데이터 전용 상품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대용량의 무선 데이터를 LTE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WiBro 네트워크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LTE와의 병행발전과 국내 원천기술인 WiBro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WiBro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11년 3월까지 1조 9,205억 원(KT 10,908억 원, SKT 8,297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84개 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 망 구축을 완료하였다(<표 III-3> 참조). 2012년 3월 주파수 재할당 이후에는 부산 지하철 1~3호선, 수도권 신규 개발지(영종, 광교 등)와 지하철 연장 구간(분당선, 경의선), 세종시 등 커버리지를 확장하였다. 스마트폰 요금제와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개인용 공유기(에그/브릿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2012년 12월 말 기준 WiBro 가입자 101만 명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말 대비 26.6% 증가하였다.

<표 III-3> WiBro 사업 이행 상황

구 분	투자비	커버리지(84개시 기준)			설비설치
		도시수	면적	인구	
KT	10,908억원	84개 시	26.0%	88.0%	54,834식
SKT	8,297억원	84개 시	10.9%	72.4%	24,348식

LTE(Long Term Evolution)는 기존 3G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사업자가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T와 LG U+가 2011년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LTE 지원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었다. 사업자별 전국망 구축 시기는 LG U+가 2012년 1월에 전국 84개 시를 시작으로 3월에 전국 읍·면·동 지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가장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하였고, 곧이어 SKT가 6월에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KT는 LTE용 주파수로 사용하려 한 2G서비스의 종료 시점이 연기되면서, 2012년 1월부터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2012년 10월에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였다(<표 III-4> 참조). 2013년부터는 각 통신사별로 LTE망 최적화 및 보강작업을 지속하고 3G망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는 도심 등 트래픽 집중 지역의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캐리어(Multi Carrier), 쿼드안테나(Quad Antenna) 등 차세대 LTE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멀티캐리어는 서로 다른 주파수대역을 동시에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며, 쿼드안테나 기술은 2개의 기지국에서 총 4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사용해 체감 데이터 속도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전국망이 신속하게 구축됨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지역적 격차없이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는 VoLTE(Voice over LTE,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차세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빠른 데이터 속도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아 LTE 가입자는 서비스 개시 1년 2개월만인 2012년 8월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 12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는 SKT 750만 명, LG U+ 438만 명, KT 39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I-4> 연도별 LTE 전국망 구축 현황

년도	SKT	KT	LG U+
2011년	전국 27개 시	-	전국 82개 시
2012년	전국 84개시(3월) 전국망(6월)	84개시(4월) 전국망(10월)	전국망 (3월)
2013년	최적화 및 보강	최적화 및 보강	최적화 및 보강

※ 행정구역 변경·확대로 2011년 82개 시에서 2012년 84개 시로 변경

위원회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시책은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세계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기술방식 도입 및 신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트래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 통신 공중선 정비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최근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신선은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과다·난립된 공중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

로 대두되었다. 난립된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공중선 설치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며 전주 전복사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동안 공중선 정비는 사업자 자율로 추진돼 왔으나, 단편적인 정비로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국토해양부가 공중선 정비를 위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방안 등을 입법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이 크고,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차원의 공중선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11월 관계부처와 함께 ‘공중선(전선 및 통신선) 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1)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기반 마련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를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 2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정비하고, 2022년까지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도시에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 하에 공중선의 지중화 가능성, 기존 공중선 정비대상 규모 및 재원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정비목표를 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공중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중선 설치 및 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연도별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대상 지역은 ‘집중 지역’, ‘관심 지역’,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총 1조 5,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향후 5년간 인구 50만 명 이상 20개 도시(7대 특별·광역시, 13개시)의 공중선 정비에 투자하게 되며, 향후 매년 2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저리 융자하여 정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2) 공중선 집중 정비 및 관리

공중선 정비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연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 기존 공중선에 대해서는 난립된 공중선의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 기법을 개발하여 실제 정비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중선 정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공중

선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6개월) 사업자의 공중선 자율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도로 관리기관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과 위원회 소속의 지역 전파관리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자별로 공중선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공중선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모든 공중선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공중선 종합정보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3)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자에게 공중선의 설치, 정비, 유지 등 스스로 공중선을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선 지중화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전주 및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할 경우에는 지하 관로 점용료 감면율(지하통신관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50% 감면 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신규통신선 관리를 위해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지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도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중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전주 허가를 최소화하고, 기존 통신선 및 관로의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공중선 난립방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주 임대시 지중화가 불가능한 지역, 정비된 지역에 한하여 임대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 규제 방안도 마련하였다.

4)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통신·CATV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 : 김대희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201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향후 5년간(2013~2017년)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는 지역별 정비대상 지역의 선정, 실태조사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중선 정비의 종합적인 실무지원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내에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산된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비의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5) 추진실적 평가

이번 공중선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중선 정비실적을 2015년 상반기에 총리실 주관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 방안으로 점용료 부과를 비롯하여 공중선에 대한 관리규제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림 III-2> 공중선 정비 사례



2. 전파자원의 확보 및 공급

가. 주파수 적기 공급

1)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활동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광대역 공공 서비스 등을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1월 23일부터 4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2012년 세계전파 통신회의(WRC-12;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2)에 참가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 통신협의체(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이해당사국 등을 대상으로 전파외교를 통한 주파수 확보에 힘쳤다.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에는 전 세계 ITU 153개 회원국, 국제기구 대표단 등 약 3,500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총 55

명이 대표단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총 33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등 국내 산업에 과급효과가 큰 의제뿐만 아니라 해양 레이더용, 공공용 주파수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의제들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림 III-3> WRC-12 활동



논의 결과, 첫째로 항공·해상용 약 273MHz 폭, 레이더용 약 302MHz 폭, 과학용 약 1,650MHz 폭, 방송용 약 700MHz 폭 등 총 2,925MHz 폭의 신규 주파수가 분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국방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인항공기용(기상·해양관측), 해양 레이더용(쓰나미 등 해상재난감시)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표 III-5> 참조).

이에 따라,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21GHz 대역 방송위성용 주파수(700MHz 폭)를 확보하여 차세대 방송용 기기산업과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시장 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 등 공공 및 민간용으로 이용 확대가 전망되는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61MHz 폭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기름 유출, 쓰나미 발생 등 해상 재난 방지를 위해 해양 레이더용으로 3~50MHz 대역에서 2.425MHz 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다. 이에 따라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발생 시 해류 방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오염지역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쓰나미 발생 시 조기경보(약 1시간 전)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및 아랍지역 국가들이 긴급 제안한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분배에 대해 동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되, 그 효력은 WRC-15(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15,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직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동 대역이 제1지역²⁾에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향후 5년간 국내생산 2,416억 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 2,867억 원, 부가가치유발 986억 원의 효과 전망

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됨에 따라, 700MHz 대역은 2015년부터 2.1GHz 대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대역이 될 전망이다.

〈표 III-5〉 WRC-12 주요결과

구분	결정사항	기대효과																																												
차기 의제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분배”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주파수대역을 검토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향후 3년간의 ITU-R^{주1)}에서의 연구를 통해 차기 회의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성공적 수행이 기대됨 																																												
제1지역도 700MHz 방송 대역을 이동통신 용으로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지역에서 방송용으로 분배된 700MHz대역(694~790MHz)을 이동업무용 분배 및 IMT용도로 지정, (효력은 WRC-15 이후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 																																												
21GHz 대역 방송위성 망과 지상망간 공유 기준마련 (의제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위성망 국제등록절차 및 기술제원 관련 기준, 지상망간의 공유기준을 마련 방송위성서비스를 위한 기존 피더링크용 주파수에 100MHz 폭 추가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위성방송 가능 주파수 확보 지상망으로도 운용 가능하므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주파수 신규분배 (총 2,925.75375MHz)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분배 용도</th><th>대역폭(MHz)</th><th>기대효과</th></tr> </thead> <tbody> <tr> <td>항공</td><td>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주파수</td><td>61.000</td><td>•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td></tr> <tr> <td>해상</td><td>항공이동업무용 신규 주파수</td><td>209.975</td><td>•국내공항항행시설 확충 및 운용 능력 확대</td></tr> <tr> <td></td><td>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상이동통신용 주파수</td><td>1.17325</td><td>•해상통신 디지털 전환</td></tr> <tr> <td></td><td>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한 주파수</td><td>1.1775</td><td>•선박의 위치추적 고도화에 따른 해상 안전 보안시스템 강화</td></tr> <tr> <td rowspan="2">레이더</td><td>3~50MHz 해양레이더용 주파수</td><td>2.425</td><td>•쓰나미 조기경보, 해양오염 방제, 재난 시 신속한 수색</td></tr> <tr> <td>15.4~15.7GHz 고해상 영상레이더 주파수</td><td>300.000</td><td>•공공업무 활용대역 확대</td></tr> <tr> <td rowspan="4">과학 업무</td><td>낙뢰감지용 주파수</td><td>0.003</td><td>•인명안전과 공공이익</td></tr> <tr> <td>22.55~23.15GHz 우주연구업무 주파수</td><td>600.000</td><td>•달 탐사, 우주개발 등 우주과학 분야 기술개발 기반마련</td></tr> <tr> <td>37~38GHz 수동업무용 주파수</td><td>1,000.000</td><td>•전파천문 등 기초과학분야 연구 기반 마련</td></tr> <tr> <td>기상위성업무용 주파수</td><td>50.000</td><td>•기상관측 고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 강화</td></tr> <tr> <td>방송</td><td>21.4~22GHz UHDTV 위성방송용 주파수</td><td>700.000</td><td>•UHDTV, 3DTV 등 차세대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가능</td></tr> </tbody> </table>	분야	분배 용도	대역폭(MHz)	기대효과	항공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주파수	61.000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해상	항공이동업무용 신규 주파수	209.975	•국내공항항행시설 확충 및 운용 능력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상이동통신용 주파수	1.17325	•해상통신 디지털 전환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한 주파수	1.1775	•선박의 위치추적 고도화에 따른 해상 안전 보안시스템 강화	레이더	3~50MHz 해양레이더용 주파수	2.425	•쓰나미 조기경보, 해양오염 방제, 재난 시 신속한 수색	15.4~15.7GHz 고해상 영상레이더 주파수	300.000	•공공업무 활용대역 확대	과학 업무	낙뢰감지용 주파수	0.003	•인명안전과 공공이익	22.55~23.15GHz 우주연구업무 주파수	600.000	•달 탐사, 우주개발 등 우주과학 분야 기술개발 기반마련	37~38GHz 수동업무용 주파수	1,000.000	•전파천문 등 기초과학분야 연구 기반 마련	기상위성업무용 주파수	50.000	•기상관측 고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 강화	방송	21.4~22GHz UHDTV 위성방송용 주파수	700.000	•UHDTV, 3DTV 등 차세대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가능	
분야	분배 용도	대역폭(MHz)	기대효과																																											
항공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주파수	61.000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해상	항공이동업무용 신규 주파수	209.975	•국내공항항행시설 확충 및 운용 능력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상이동통신용 주파수	1.17325	•해상통신 디지털 전환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한 주파수	1.1775	•선박의 위치추적 고도화에 따른 해상 안전 보안시스템 강화																																											
레이더	3~50MHz 해양레이더용 주파수	2.425	•쓰나미 조기경보, 해양오염 방제, 재난 시 신속한 수색																																											
	15.4~15.7GHz 고해상 영상레이더 주파수	300.000	•공공업무 활용대역 확대																																											
과학 업무	낙뢰감지용 주파수	0.003	•인명안전과 공공이익																																											
	22.55~23.15GHz 우주연구업무 주파수	600.000	•달 탐사, 우주개발 등 우주과학 분야 기술개발 기반마련																																											
	37~38GHz 수동업무용 주파수	1,000.000	•전파천문 등 기초과학분야 연구 기반 마련																																											
	기상위성업무용 주파수	50.000	•기상관측 고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 강화																																											
방송	21.4~22GHz UHDTV 위성방송용 주파수	700.000	•UHDTV, 3DTV 등 차세대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가능																																											

주1) ITU-R :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2) ITU는 세계 전파 관리를 위해 세계를 3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지역 별로 주파수를 분배함. 제1지역(Region 1)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구소련연방 및 몽골, 제2지역(Region 2)은 미주(Americas), 그린란드, 일부 동태평양연안 섬들, 제3지역(Region 3)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해당

둘째로, 차기 회의인 2015년 세계전파통신 회의의 의제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 방안’ 등 27개의 제(특별의제 18건, 영구의제 9건)가 채택되었다(<표 III-6> 참조). 특히 위원회는 각 참가국 수석대표, ITU 대표부 주요 인사 등과 WRC-12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수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를 의제로 결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의제와 관련하여 향후 3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5년에 신규 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WRC-12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 12월 5일 관련 고시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무선설비규칙’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6> 채택된 차기 WRC-15 특별의제

의제	주요내용
1.1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1.2	제1지역(유럽, 아프리카, 아랍) 694~790MHz 대역 이동통신업무 분배 연구
1.3	공공안전재난구조(PPDR) ^{※1)} 관련 결의646(Resolution 646) 광대역 사항 검토 및 개정 연구
1.4	5,300MHz 대역 아마추어 2순위 업무 분배 연구
1.5	무인항공기(UAS) ^{※2)} 운용지원 주파수 분배 연구
1.6	(1.6.1) 1지역 10~17GHz 대역 내 고정위성(FSS) ^{※3)} 250MHz 대역폭 분배 연구 (1.6.2) 2, 3지역 10~17GHz 대역 내 고정위성(FSS) 250MHz 대역폭 분배 연구
1.7	5091~5150MHz 비정지궤도 이동위성(MSS) ^{※4)} 상향피더링크와 항공무선 항행 업무 공유 연구
1.8	ESV(선박위치 지구국) 관련 규정 개정 연구
1.9	(1.9.1) 7,150~7,250MHz(우주 대 지구), 8,400~8,500MHz(지구 대 우주)에서 고정위성(FSS) 추가 분배 연구 (1.9.2) 해상이동위성업무에 7,375~7,750 / 8,025~8400MHz 추가 분배 연구
1.10	22~26GHz 대역 내 이동위성업무 추가 분배 가능성 연구
1.11	7~8GHz 주파수의 지구탐사위성업무(EESS) ^{※5)} (지구 대 우주) 분배 연구
1.12	8,700~9,300MHz / 9,900~10,500MHz 대역에서 600MHz 대역폭 내 지구탐사위성업무 추가 분배 연구(현 9,300~9,900MHz 지구탐사위성업무(EESS) 확장)
1.13	우주연구업무(SRS) ^{※6)} 용 전파규칙 5.268번 규정 제검토(5km거리 제한 삭제 등)
1.14	세계협정시(UTC) ^{※7)} 관련 개정 연구
1.15	선상 통신(On-board Communication)을 위한 스펙트럼 요구조건 연구
1.16	해상통신용 자동식별 시스템(AIS) ^{※8)} 스펙트럼 요구조건/분배 연구
1.17	항공기내 무선통신(WAIC) ^{※9)} 지원 관련 스펙트럼 요구 조건 및 규제 연구
1.18	77.5~78GHz 대역 차량 안전 운행용 레이더 무선탐지업무 분배 연구

주 1) PPDR :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2) UAS : Unmanned Aircraft Systems

3) FSS : Fixed Satellite Service

4) MSS : Mobile Satellite Service

5) ESV : Earth Station on Board Vessel

6) EESS : Earth Exploration-Satellite Service

7) SRS : Space Research Service

8) 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

9)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10) WAIC : Wireless Avionics Intra-Communications

2) WiBro 주파수 재할당

위원회는 2012년 3월 15일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3월 29일자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GHz 대역 WiBro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KT와 SKT에 대하여 WiBro 주파수 재할당을 승인하였다. 이는 WiBro 추진전략으로 LTE·WiBro 병행발전을 설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3G·LTE 트래픽 분산과 데이터 중심 서비스망으로 WiBro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WiBro 정책방향을 고려한 것이다.

재할당 대상 WiBro 주파수는 KT의 2,330~2,360MHz 대역 30MHz폭과 SKT의 2,300~2,327MHz 대역 27MHz폭 등 총 57MHz 폭이었다. 위원회는 재할당을 심사하기 위해 방송통신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50점), 재정적·기술적 능력(각25점)을 평가하였다(<표 III-7> 참조).

평가결과, KT와 SKT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KT와 SKT는 재할당 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 이행 후 30MHz 폭과 27MHz 폭 전부를 재할당 받아 2012년 3월 30일부터 향후 7년 동안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재할당 시 WiBro 주파수를 무선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중계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에 대응 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7> WiBro 주파수 재할당

할당주파수	• KT: 2.3GHz 대역의 30MHz, SKT: 2.3GHz 대역의 27MHz
사용기간	• 7년(3년, 5년 후 중간 점검을 통해 단축 할 수 있음)
용도	• WiBro 서비스 및 무선랜 중계
기술방식	• WiBro 또는 이후의 진화된 방식
재할당 조건	•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성실 이행 및 점검, 전파간섭 대책, 무선랜 공동구축·이용 등
재할당 대가	• 예상매출액 기준 KT 193억 원, SKT 173억 원(실제매출액 기준 매년 2% 부과)

나.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1)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의결

최근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의

3) 지하철·버스 등에 설치된 공공용 에그/브릿지를 통해 Wi-Fi를 중계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모바일 트래픽은 2011년 대비 2020년까지 약 11~13배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파수 소요량은 2020년까지 약 450~610MHz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⁴⁾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 20일, 600MHz폭 이상의 주파수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본격적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표 III-8> 참조).

<표 III-8>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주파수 확보 계획

확보시기	단기(~2013년)	중기(~2016년)	장기(~2020년)
주파수 (폭)	700MHz대역(40MHz) 1.8GHz대역(70MHz) 2.1GHz대역(60MHz)	2GHz대역(40MHz) 2.6GHz대역(30MHz) 3.5GHz대역(160MHz)	추가확보대역 (200MHz)
합 계	170MHz	230MHz	200MHz

2) 단기 및 중기 주파수 확보

위원회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말까지 단기 확보 주파수의 조기 할당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신규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국내외 사례분석, 할당대상 주파수 검토,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6GHz대역에서 한·일 주파수 조정협상을 추진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이동통신용 주파수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는 2016년까지 중기 확보 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된 2.6GHz 대역을 일본이 사용중인 위성 주파수와 간섭없이 이동통신 주파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장기 주파수 추가 확보

아울러, 위원회는 차기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공급을 위해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추

4) 한국전자과학회 연구용역 결과 (2011년 4~12월)

가 확보 가능한 IMT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도출된 IMT 후보대역을 국제표준화(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IMT 후보대역 평가반’을 운영하여 5GHz 이하 전 대역에 대해 이동통신용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분석을 실시 하였다. 평가반은 5GHz 이하의 11개 검토대역의 간섭분석을 실시하여 확보 가능한 4개 대역을 선정하고, 기존 업무와 공유가능 여부, 충분한 가용대역폭 확보 여부, 기존 업무와 공유 불가 시 기존 업무 이전 가능성(대역), 국제 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 대역별 확보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후보 대역을 선정하였다(<표 III-9> 참조).

<표 III-9> IMT 후보대역(안)

우선순위	대역 (가용대역폭)	비고
1	3600~3800MHz (200MHz)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럽에서 이미 채널 배치(안) 확정위성 지구국과 이격 필요(금산, 아산)
2	1442~1502MHz (40MHz)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럽에서 광대역서비스용 활용 검토 중인 대역으로 향후 국제공통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3	3800~4200MHz (70MHz)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영국 등에서 동대역 활용 검토대역위성 지구국과 이격 필요
4	4800~4830 (30MHz)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미 이동업무 대역이며 높은 주파수로서 넓은 커버리지 서비스는 어려우나 도심의 핫스팟용 등으로 검토 가능
합계	340MHz폭	

한편, 선정된 IMT 후보대역에 대해서는 ITU-R에 국제 표준화 기고를 실시하고, 우선 확보가 필요한 후보대역의 조기 선정을 통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R WP5D 제13차 회의에 참가하여 총 6건의 국제기고서를 제출하여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WRC-15 의제 1.1로 채택된 IMT 추가 주파수 발굴과 관련하여 작업 문서 작성을 위한 후보대역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위원회는 앞서 선정된 우리나라의 후보 대역을 제안하여 전달하는 등 국제 표준화 및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단기 확보 주파수에 대해서는 최적의 할당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할당을 실시하고, 중·장기 확보 대역에 대해서는 인접 국 간 조정 협상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후보 대역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WRC-15에서 신규 IMT 국제공통대역이 분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후보 대역을 발굴하여 이를 국제기구에 적극 제안함으로써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와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주파수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 공공 주파수 이용 효율화

주파수 사용승인은 군용통신, 외국공관의 외교업무 등을 위한 무선국에 대해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주파수 이용(승인요청)단계에서 혼·간섭 분석을 통해 개별 무선국별 별도 허가·신고 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는 사용승인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무선국 개설·운용 등에 관한 관리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무선국의 혼·간섭 발생 시 이를 해결하거나 사용승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미래 전장(戰場) 환경이 전자전·정보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이동통신 등의 주파수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민·군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사용승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제도의 법적·절차적 명확한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자를 보호하며, 사용승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2012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1) 주파수 사용승인 체계 명확화

제도 정립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전파법」 제 2조(정의)에서는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핵심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주파수 사용 승인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정의 조항에 주파수 사용승인의 정의 규정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추가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 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로, 주파수 사용승인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기존 주파수 사용승인 절차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서 접수, 적부 심사, 사용승인 통보 등 무선국 허가의 절차 및 심사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주파수 사용 가능 여부, 주파수 사용승인신청서의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준의 문서로 통보하던 방식 대신 법적 근거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에 대한 ‘승인증’ 발급이 가

능해지게 되었다.

셋째로, 주파수 사용승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 대상 무선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승인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상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하는 것과 허가·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이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변경 필요시 허가·신고처럼 변경 승인 절차도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신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통한 무선국 개설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국방, 외교, 국제행사 등을 위한 경우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승인 대상 무선국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행정 절차 구현이 가능해졌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사용승인 주파수의 체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구분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주파수 사용승인	
	현행	현행	개정
정의 신설	법 제2조(정의)에서 주파수분배, 주파수 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등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 있음	용어규정 없음	사용승인 정의 규정 신설
사용승인 행정 절차 마련	법 제21조(변경허가), 법 제22조의2(변경신고)에서 허가·신고 사항 중 변경 시 변경허가 및 변경검사를 받도록 함	별도의 근거규정 및 준용규정이 없음	사용승인 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사용승인 무선국 개설 근거 마련	법 제21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에서 무선국 허가의 적부심사 기준 명시	허가의 적부심사 기준에 준하여 처리	사용승인에 따른 무선국 개설 및 변경승인 근거 마련

2)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자 보호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이 「전파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취소, 운용정지, 운용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후에는 해당 무선국이 기술기준이나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사후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거나 위원회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의 취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파이용자가 혼·간섭 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전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의 운용 범위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통해 개설한 무선국은 허가·신고의 범위에서 무선국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통해 개설한 무선국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었다. 이에 위원회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통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사용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무선국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파수 사용승인을 통해 개설한 무선국의 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사용승인 주파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구분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주파수 사용승인	
		현행	개정
사후관리	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서 개설허가·신고의 효력 상실, 개설허가 취소 등에 따라 제재처분의 근거 명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 없음	사용승인 무선국의 운용정지·승인 취소 근거 마련
무선국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법 제25조(무선국 운용), 법 제25조제3항(신고 무선국 운용)에서 준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근거로 무선국 운용 개시 시점 명시	무선국 운용시점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승인증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3) 사용승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촉진

현재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당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폐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용승인 주파수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미사용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절차를 통해 미사용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보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향상시켰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사용승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구분	무선국 허가 및/또는 신고	주파수 사용승인	
		현행	개정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법 제25조(무선국 운용)에서 무선국 폐지 또는 휴지 시 위원회에 신고하여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무선국 폐지에 대한 신고의무 없음, 주파수 반납의 법적 근거 미비	무선국 폐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라.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TV 화이트 스페이스(TV유휴대역; TV White Space)는 TV 방송대역(채널 2~51 : 54~698MHz, 총300MHz)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파수 채널로, 전파 특성이 우수하여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TV White Space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TV White Space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 중 Super Wi-Fi 서비스(제주컨소시엄, 제주도)와 지하 재난·재해 영상 서비스(소방방재청 컨소시엄, 남양주)를 선정하여 실험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그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본격적인 TV White Space 활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TV White Space에 활용될 신규서비스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45호)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안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13호, 2012년 9월 21일)하였다. 또한, TV 방송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도입될 서비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서비스와 혼·간섭을 발생 시키지 않으면서 TV White Space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내외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내 검증에서는 DTV 서비스 보호기준, 무선마이크 보호기준을 각각 검증하였으며, 실외검증에서는 DTV 서비스 보호 실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환경 운영 하에서의 보호 기준을 검증하였다 (<표 III-13> 참조).

<표 III-13> 유휴대역 보호 이격거리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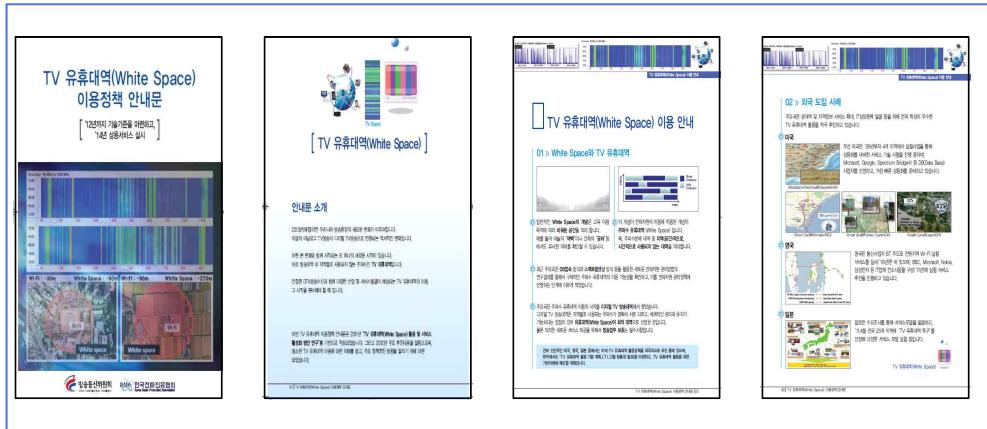
구분	장치	출력	안테나높이	고도	보호이격거리
동일채널 (20번)이용	고정형	4W EIRP ^{주1)}	10m	103m	8.5km
	이동형	100mW EIRP	1.5m	28.5m	1.5km
인접채널 (21번)이용	고정형	4W EIRP	1.5m	28.5	350m
	이동형	40mW EIRP	1.5m	16.5m	16m(방송구역 내에서 사용가능 확인)

* 주1)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 등가등방성 복사전력으로, 목적하는 방향을 향하여 방사되는 전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

또한, TV White Space 활용 정책에 대한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의견수렴은 지자체, 공공기관, 통신사, 방송사 등 각계 분야를 대상으로 TV White Space에 대한 인지도 평가, 이용 수요 검토,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범서비스 등 서비스 발굴 및 주파수 이용 정책(인증제/비면허 등)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TV White Space 활용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III-4> TV White Space 정책 안내책자



TV White Space의 이용 활성화는 전파특성이 우수한 주파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위원회는 TV White Space의 기존 서비스와 신규서비스 상호간의 전파간섭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TV방송서비스 보호를 위한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활용 가능한 가용채널 정보를 제공하는 전파환경 DB를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발굴과 주파수 공유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 환경을 갖춘 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혼브로 도약

가. 국내외 미래 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1) 국내 연구망(KOREN)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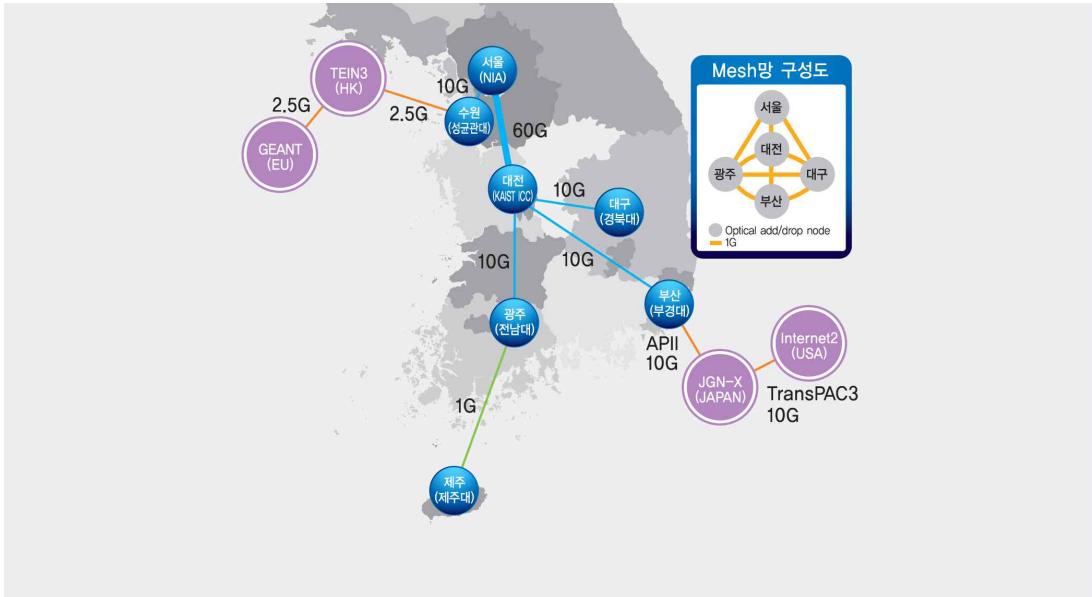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미래인터넷 및 차세대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인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KOREN은 비영리 선도시험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산·학·연 등에 광대역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기술의 시험 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R&D를 지원하고 있다. KOREN의 백본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 등 6개 대도시 간 10~60Gbps로 구축되어 있으며, 연구 수요가 많은 서울-대전에는 60Gbps 회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라우터 기반에서 광 스위치 기반으로 망 구성을 단순화하였다.

KOREN에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66개 기관에게 1G~10Gbps 속도의 회선서비스 및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이용규정 개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KOREN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해 NOC(Network Operation Center, 망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 to Machine),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의 연구시험 시설을 KOREN과 연동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REN의 성과로는 연구시험망을 활용하여 연간 151여 건의 국내외 공동연구를 이룬 것이다. 2012년 7월에는 KOREN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망 활용 연구 과제를 공모하였고, 그 중 CPS(Cyber Physical Systems,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IoT 프레임워크 연구, 모바일네트워크 가상화 제어 아키텍처 연구 등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KOREN에서 지원하는 연구시험망은 일반 상용 인터넷망과 달리 연구 상황 조건에 따라 망의 구성 및 경로 조정이 가능하며, Giga급 대용량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로 KOREN을 이용하여, 개발 기술 및 장비의 성능을 분석 하고,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다.

<그림 III-5> KOREN 구성도



2) 국제 연구망(TEIN) 협력 선도

국제 연구망(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은 아시아 19개국 및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으로 2001년 12월에 처음 개통되었다. 이는 아시아·유럽 간 차세대 인터넷 및 응용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IT 기반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한국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홍콩-싱가포르 구간의 회선자원(10Gbps)을 구축 및 제공하여 TEIN4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eTEIN-KOREN 과제를 새롭게 추진하여, 국내 미래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도약을 위한 OpenFlow⁵⁾ 기반 SDN(Service Digital Network, 디지털 정보 통신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원격의료영상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개방형 IPTV 플랫폼 서비스 연구 등의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5) OpenFlow는 SDN 아키텍처의 제어계층과 전달계층 사이에 정의된 최초의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이러한 OpenFlow는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패킷 전달기능에 직접 접속하여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

<그림 III-6> 국제 연구망(TEIN) 구성도



OpenFlow 기반 SDN 인프라 구축 과제는 TEIN 내 6개 회원국(한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구축하고, OpenFlow 기반 SD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협업을 수행 중이며, 글로벌 원격의료교육을 위한 원격의료영상 플랫폼 구축 과제는 TEIN 회원국 9 개국(네팔,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일본)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솔루션 구축 및 공동활용을 추진하며, 글로벌 개방형 IPTV 플랫폼 서비스 연구과제는 웹기반의 IPTV 콘텐츠 통합 및 콘텐츠 분배기술 구현을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IPTV 서비스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나. 스마트 인터넷 기술경쟁력 강화

2011년 6월에 발표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12년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선점 및 국제 표준화를 통

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술개발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0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유무선망 고도화, 스마트 인터넷, 미래혁신 등 매년 20여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의 고속화, 저가화, 광역화를 실현하는 제2세대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Passive Optical Network, 파장분할다중 수동 광네트워크) 기술(파장가변 및 어레이 광원 방식)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시연 하였으며, 경쟁사 서버 콘텐츠 이용 시 나타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해결하고 구글, 아카마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네트워크 시장 잠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시험망을 활용한 미래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수립(2012년 12월)하여 KOREN/TEIN 등을 활용한 미래인터넷 기술개발, 시험검증, 실증시험, 시범서비스를 통해 상용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순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에 따른 유·무선 트래픽 확대 등에 대비 및 고속·고품질 기술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1) IPv6전환 본격화 추진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번호 관리기관)의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신규 할당 중지 선언(2011년 2월)과 아·태지역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인 APNIC(Asia-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관)의 IPv4 신규 할당 중지 선언(2011년 4월)에 따라 국내도 ‘최종 할당정책6’을 시행하여 IPv4주소 할당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IPv4 고갈에 따른 주소 부족 문제의 해결과 IPv4와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공존환경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2011년 12월)하고 IPv6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포털, 제조사 등 22개 기관이 참여한 ‘Korea IPv6 Day’ 행사를 개최(2012년 5월 31일)하여 국내 IPv6도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 인터넷 기관인

6) 최종 할당정책(Final/8) : APNIC에 잔여 IPv4 주소가 약 1,600만 개 남는 시점부터 기관 당 1회에 한해 최대 1,024개 주소만 할당. 1,024개 이상은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IPv4 주소 할당 종료를 의미

ISOC(Internet Society)에서 전세계 IPv6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최한 ‘World IPv6 Launch’ 행사에 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하여 실제 서비스 망에 IPv6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IPv6 전환 본격화를 위해 ▶미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IPv6 활용기반 마련 ▶IPv6 종합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인식제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원의 3대 중점 과제 설정 ▶IP 주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및 미래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IPv6 서비스 기반 마련 ▶Korea IPv6 Day를 통해 분야별 IPv6를 실제로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자 및 이용자가 IPv6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양성, 컨설팅, IPv6 우수사례 등 IPv6관련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털, ISP, 장비 제조사 등의 주요기업 임원급으로 구성된 IPv6전환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IPv6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IPv6 적용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12년 말까지 국내 IPv6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주요 ISP의 백본망에 IPv6를 적용하고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 교환노드)간 IPv6연동을 추진하여 실제 IPv6 트래픽이 소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 분야별 IPv6전환 목표 점검을 통해 2014년까지 국내 백본망 IPv6 적용 완료, 100대 사이트 대상 IPv6전환유도, 제조사 대상 IPv6적용 장비 개발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전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1) 스마트워크 활성화 여건 조성

최근 무선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 폰의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중화, IPTV 등을 활용한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정책 목표를 ‘빈틈없이 따뜻한 스마트워크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2012년 1월 ‘사회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스마트 워크 활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본 추진계획은 ▶보급형·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근로취약계층 스마트워크 취업 및 도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장애인 스마트워크 접근성 강화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실행과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성숙도 모델 및 컨설팅 방법론’, 스마트워크의 기

업간·업종간 수준차이, 업무 효율성 등 정량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스마트워크 지수」,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품질등급제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발하고, 민간 스마트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포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워크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보호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추진 등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을 통해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해소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스마트워크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품질인증, 보호조치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근로자·사용자 지원 등 스마트워크 촉진 및 참여 장려 등이다.

2)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는 국가전반의 스마트워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련사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워크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에는 ‘빈틈없이 따뜻한 스마트워크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보급형·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3년부터 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2012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모델 주요내용

주관(참여) 기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씨아랩 (성남시,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소셜콘텐츠 기반 상권활성화 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성남시 상권활성화 구역(수정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소셜 고객관리, 상점정보, 상권관리등 스마트마켓 서비스 제공
KT	개방형 협업 솔루션 개발	· IPTV·PC·스마트기기(아이패드, 갤럭시노트 10.1) 등 다양한 단말간 영상협업 솔루션 개발
행복ICT (청소대안기업 연합회)	모바일 기반 청소사업 관리시스템 개발	·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업무편의성(이동, 스케줄링 등)을 고려 한 청소 사업관리의 모바일화

2012년 상반기에 보급형·복지형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말에는 IT 소외계 충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도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모바일, IPTV, 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영상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범서비스를 발굴·개발하는 동시에 사용자를 위한 이용편의성 제고 및 저렴한 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글로벌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 강화

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 크기, 형태의 기기들이 나타나고 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광대역화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급진전되고 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 신산업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비스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선도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 R&D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2010년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제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위원회 독자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R&D의 창의적 기획, 효율적 관리,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였으며, R&D 사업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는 등 독자적인 R&D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중소벤처의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R&D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혁신기술에 투자하여 길목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식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다양한 미래 유망 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에 1,527억 원을 투자하였다. 우선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고화질 3DTV, 현재 보다 4~16배 선명하고 안경없이 3DTV를 시청할 수 있는 UHDTV, 음성 및 동작으로 작동하고 지능형 검색·양방향광고·증강방송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 TV 기반 기술 등 유망 미디어 기술에 투자하였다. 둘째, 무선인터넷 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물지능통신,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정보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셋째, MRI 수준으

로 정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차원 유방암 진단 기술,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를 선 없이 충전·이용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등 전파를 활용한 신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였다. 넷째,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 새로운 통신망 구조 등의 구현을 위하여 4G 이후의 혁신적 이동통신(Beyond 4G)과 고속·고품질·보안 보장 등 현존 인터넷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미래 인터넷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ICT의 역기능 방지, 안전한 사회기간망 구현 등 방송통신을 활용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하였다.

6개 분야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원천기술에 집중한 결과, 위원회의 기술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차세대방송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서비스호환 3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제정하여, 기존 지상파 방송시스템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양방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형 지상파 Full HD 3DTV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표III-15> 2012년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주요 성과

구 분	추진 성과
차세대방송	o 한국형 지상파 Full-HD 3DTV 기술의 국제 표준화(2012년 12월)
모바일·전파	o 600Mbps급 4G 표준완료 및 LTE-Adv(2011년 1월), WiBro-Adv(2012년 1월) 시연
미래인터넷	o 10배 빠른 Giga급 인터넷 개발(2012년 9월)
융합기술	o 장애인용 Interactive 시점제어 기술(2012년 4월)
정보보호	o AES ^{※1)} 보다 2.7배 빠르고 전력소모가 적은 임베디드용 LEA ^{※2)} 암호 개발(2012년 7월)

주1) AES :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주2) LEA : Lightweight Low-power Encryption Algorithm, 고속/저전력 표준 알고리즘

모바일 분야와 관련해서 2011년 1월에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시연하였고, 2012년 1월에는 WiBro-Advanced 기술까지 개발하여 그 결과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였다. 시연장비는 세계 최초로 LTE-Advanced 릴레이 HW·SW 장비 및 IMT-Advanced(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WiBro 개방형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미래인터넷 분야에서는 인터넷 트래픽 폭증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하여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을 위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도 개발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2012년 9월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개발·시연하였다. DVD급 영화 한편을 단 10초 만에 내려받기가 가능한 Giga급 인터넷 서비스는 어레이 광원과 파장가변 기술을 적용한 제 2세대 WDM-PON 기술(고속화, 기능화, 저가화, 광역화 실현)을 세계 최

초로 개발·시연한 서비스로서 2012년 상용제품 출시 이후 2013년 말까지 약 3,000억 원의 수출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2월 유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위해 서로 다른 광네트워크 장비의 동시 제어, 다중-도메인 간 연동, 동적경로(Self-healing Path) 자동 재구성 등이 가능한 통합 경로제어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원-클릭 자동관리가 가능한 광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하였다.

위원회는 국가 우주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의 위성통신 시스템 검증, 안정적 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여 위성통신 공공서비스(소방방재청, 기상청) 및 방송서비스 (KBS, KT-Skylife)의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확보하고 고화질 3DTV 위성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였다. 또한 일상 생활의 안전한 전파확보를 위해 국제 ITU-R 수준의 저주파수 노이즈 장해 평가기술을 개발 하여 ‘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에 관한 세계 첫번째 국제표준을 확보하였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역량을 집중시켰다. 2012년 4월 IPTV 환경에서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의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Interactive 시점제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는 자체장애인용 인터페이스에 적용하여 눈동자 시선만으로도 이용자 행위를 전달 가능한 기술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 시키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10G급 DDoS 공격대응 시스템의 상용화 이외에, 2012년 7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기술인 AES보다 최고 2.7배 빠르고 전력소모도 적은 임베디드 환경용 LEA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였다(<표 III-15> 참조).

향후 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특히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글로벌 ICT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소프트웨어 및 융합기술로 발전하는 트렌드를 적극 고려하여 차세대 원천기술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서 길목특허 확보를 위한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고품질 연구개발기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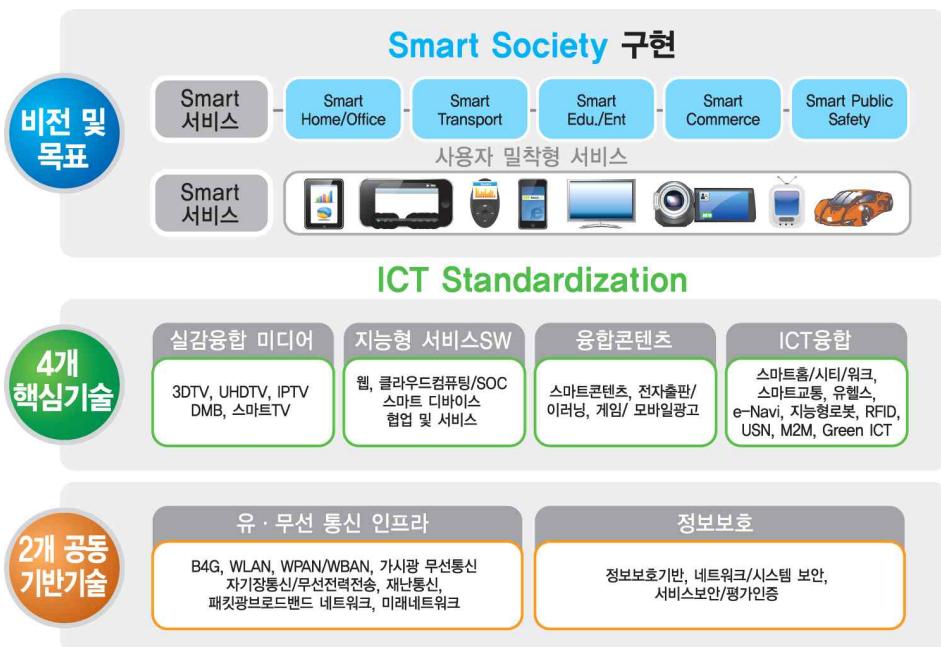
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최근 정보기술 분야에서 개방과 공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으로 통용이 가능한 개방형 표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표준화 및 민간 표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2년 위원회는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M2M), 차세대이동통신, 3DTV, 스마

트TV 등 스마트 전략서비스 도입에 맞춘 선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ICT 분야의 종합 국제 표준화 전략을 담은 'ICT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맵 Ver.2012'를 수립하였다(<그림 III-7> 참조). 발표된 표준화 전략맵에서는 ICT 표준화 분야를 실감융합 미디어, 지능형 서비스 SW, 융합 콘텐츠, ICT 융합 등 4개 핵심기술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정보보호 등 2개 공동기반기술로 재편하고, 스마트 TV, 사물지능통신 등 선제적 표준화가 필요한 31대 표준화 대상기술⁷⁾을 선정하여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본 표준화 전략맵은 민간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표준기획전담반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기술개발과 표준개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R&D 사업을 총괄 하고 있는 PD(Project Director) 및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기술별 담당관이 검토하여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림 III-7>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2의 주요내용



7) 31대 표준화 대상기술 : 실감융합미디어 분야(3DTV, UHDTV, DMB, IPTV, 스마트TV), 지능형서비스SW 분야(웹, 클라우드컴퓨팅 /SOA, 스마트기기 협업 및 서비스), 융합콘텐츠 분야(스마트콘텐츠, 전자출판/이러닝, 게임/모바일광고), ICT 융합 분야(RFID, USN, M2M, 유헬스, 스마트교통, e-Navigation, 지능형 로봇, 스마트홈/시티/워크, Green ICT), 유무선 통신 인프라 분야(B4G, WLAN, WPAN/WBAN, VLC, 자기장통신/무선전력전송, 미래네트워크, 패킷광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재난통신), 정보보호 분야(정보보호기반,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서비스보안/평가인증)

위원회는 ICT 표준화 전략맵 수립과 더불어 ‘기술개발-특허-표준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국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및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전략적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6월부터 다음년도에 반영될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선도 항목 발굴 및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Ver.2013은 기존 전략맵보다 표준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여 분야별 서비스 구조도 및 종합 정보 매핑맵을 개발할 예정이며, 기술개발-특허-표준 연계전략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맵은 정부의 국가 기술표준 개발사업 추진시 기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기술별 현황분석 자료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시장 및 표준화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학·연과 합의된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다. ITU는 정부 간 조약에 의해 통신·방송·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각 국은 국가 조직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ITU연구위원회 및 한국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 전파 통신 회의)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ITU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등 ITU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연구협력으로 ITU 및 APT 등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대응활동을 통해 핵심 전파자원 확보 및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위해 방송통신전문 기술 인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국제표준화 전문가와 표준화위원회와의 연계 활동체계를 구축하였으며, ITU 권고의 국내 정책, 기술기준, 표준과의 조화 및 활용 방안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통신 전략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육성·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전문가와 표준화 전략 포럼 간 연계를 통한 민간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접형 표준개발 지원을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반영에 따른 진출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응용기술 개발에 적용을 유도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 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 녹색 방송통신 환경 조성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 12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자체의 에너지 소비 절감 활동(Green of ICT)과 방송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최적 활용을 통한 타 분야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관련 산업의 발전(Green by ICT)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위원회의 2012년 주요 추진 사업은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목표 관리, 녹색 방송통신 사업모델 개발, 녹색 방송통신 기반조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2010년 ‘부처별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ICT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 관리를 추진하였다. ICT분야 온실가스 다배출 17개 사업자⁸⁾를 대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였다.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2년 절감목표치를 1만 8,000TOE로 설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3분기까지의 전력사용량 실적을 점검한 결과 4만 9,579TOE로 275%를 달성하였다.

둘째, 방송통신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제조·유통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 10종을 발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사업개발단 심사회의 등을 통해 M2M 기반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 교통정보 스마트 앱서비스, 그런 IDC(Internet Data Center,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등 3종을 시범사업 후보 모델로 선정하였다.

셋째, 위원회는 녹색 방송통신 기반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녹색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기술인증 13건, 녹색사업 2건 등 총 15건의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신속한 성장 유인을 위해 녹색기술·사업 인증범위 확대, 녹색기술제품확인제 도입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고, 녹색 인증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그런 ICT 포럼 설립·운영,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 표준화부문)·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 기구) 등 국제표준 대응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거래제 대응, 그런 ICT 분야 정책·제도 마련 등을 위한 논의 기구 설립을 통해 녹색 방송통신의 민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 ICT 포럼’을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6월 고효율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런 ICT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 ICT 포럼은 포럼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포럼 추진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4개의 분과위원회, 정책개발지원·이슈 대응 및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로 구성되었다. 특히, 분과 위원회는 방송통신 산업의 국제 동향분석과 국가간 협력, 방송통신 기술 표준화, 정책과 제도의 개선, 인

8) KT, SKT, LG U+, SKB, KBS, MBC, SBS, 다음, NHN, SK컴즈, 티브로드, CNM, 현대HCN, CJ, CMB, 현대정보기술, LG CNS로 구성

력양성과 대국민 홍보분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의 성과물은 정부의 그린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제 표준화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위원회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총 7개 분야 중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표준개발, 그린 ICT 포럼 및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ICT를 활용한 녹색성장(Green by ICT)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

방송통신 산업의 중심축이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S/W기반의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에 기반을 둔 콘텐츠 및 앱스토어와 같은 S/W의 경쟁력이 단말기 등 H/W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한 S/W콘텐츠·서비스 발굴, 사용자 확대로 이어지는 ‘소프트파워 선순환 구조’로 방송통신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어,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IT융합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2월 특정 단말기에 종속되지 않는 차세대 웹 플랫폼 환경 마련,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5, 차세대 웹 표준 규격)를 적극 활용하는 공통 플랫폼 및 TV용 공통 앱스토어 구축, 산업주체 간 협력체계 확립 등을 반영하여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미래 IT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바일, 홈, 아웃도어 영역을 아우르는 3대(m-클라우드, Adv-스마트TV, Tele-Screen)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이 주요한 내용이다.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의 배경은 스마트화 등 급변하는 IT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래 IT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표 III-16> 참조).

모바일 분야에서는 특정 단말기에 종속되지 않는 웹기반 m-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OS 및 단말기의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HTML5 기반의 웹 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라이프로깅(life logging), 스마트교육 등 개인맞춤·상황인지형 생활응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홈 분야에서는 실시간 방송과 대화면 앱을 손쉽게 즐기는 통합 Adv-스마트TV 생태계 조성을 위해 IPTV·디지털케이블TV·스마트TV 등에 공통 적용이 되는 통합 TVweb 플랫폼을 개발하고 TV용 앱개발지원센터 구축, 동작·음성·이미지 인식 등이 가능한 차세대 TV리모콘(UI; User Interface/UX; User eXperience)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아웃도어 분야에서는 옥외스크린에 광고, 생활정보 등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Tele-Screen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상 디

스플레이], 위치기반 상황인지, 이용자인지 등이 가능한 웹기반의 양방향 Tele-Screen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Tele-Screen 시범 Zone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산업주체 간 협력체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II-16>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 내용

영역	주요내용
(모바일) m-클라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웹 기반 앱 개발 환경 구축o 클라우드 기반 웹 콘텐츠 가상 기술 개발o 모바일 클라우드 선도 시범서비스 추진
(홈) Adv 스마트TV	<ul style="list-style-type: none">o 통합 스마트TV 개발 촉진o 대화면 웹 앱 제작 기반 조성o 차세대 리모콘(UI/UX) 기술 개발
(아웃도어) Tele-Sc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o Tele-Screen 시스템 기술 개발o Tele-Screen 시범 Zone 조성o Tele-Screen 산업협회 설립·운영

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시범사업, 기반조성 사업을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랩(Open-Lab) 구조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범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조성은 제조업체,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개발사 등이 협력하는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12년 3월 미래 IT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2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공모하였다. 시범사업은 상용화를 전제로 참여기관의 대규모 매칭을 유도하여, 시범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동시에 참여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다.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TV 및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제4의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텔레스크린’까지 포함시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정보 제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장 홍보 등의 N스크린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 개발한 6대 신(新) 방통융합 공공서비스는 모바일 생활방송, 시민참여형 야외스튜디오방송, 텔레스크린 기반 공공 아웃도어 서비스, HTML5기반 지자체 통합 미디어 서비스,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서비스, 문화공연 라이브방송 서비스를 스마트폰, 스마트 TV, 텔레스크린 등의 N스크린 매체를 통해 모바일, 홈, 아웃도어 분야 영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II-8> 참조).

<그림 III-8> 2012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주요 시범사업 내역



위원회는 선도 시범사업을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기술시험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상용서비스로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개발은 새로운 웹기반의 개방적 플랫폼 환경 구축을 통해 모바일콘텐츠, Adv-스마트 TV의 대화면 양방향 콘텐츠, 아웃도어의 광고·홍보·생활 정보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수요를 창출하여 IT융합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전파산업 활성화 지원

1)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생활전파산업이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소출력의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무선랜, 무선 헤드셋, 교통카드 등 국내 생활전파기기 시장은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힘입어 인증건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규모 또한 2011년 기준 1.1조 원에서 연평균 21.5% 성장하여 2015년에는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에너지·교통·의료·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파기술이 응용됨에 따라 생활전파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전파 관련 국내기업은 전체 기업의 97%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자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비율도

40.2%에 이르고 있어 자금난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개발 보다는 단순 조립·생산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아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위원회는 2012년 6월 21일,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 수립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 ▶생활 전파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전파인력 양성 등 4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생활 전파 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계획	주요내용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속한 주파수 분배를 위해 3년 단위의 비면허 주파수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비면허 주파수 폭을 13.8GHz에서 2015년까지 20.7GHz폭으로 확대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 안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전파 현장 자문단’을 운영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운영 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 지원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시제품 개발 지원 확대생활전파분야의 산업동향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 유명 B2B, SNS 사이트용 영문 블로그 제작지원을 실시
생활전파 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TV White Space, 전파 의료기기 등 시범서비스 실시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체가 지원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DB를 구축4대 미래 유망분야(전파의료진단, 무선에너지 전송, 가시광통신, 투시/감지/보안)의 R&D 비중을 2015년까지 5%수준으로 확대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전파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직자/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파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인력풀 확대를 위해 5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하고, 전파 장학금 지원, 우수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업 후 대학진학 연계프로그램 마련

이번 기본계획의 마련을 통해 소출력 무선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증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등 건전한 경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시제품 제작지원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하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실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파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소출력 전파기기, 전파방송 장비, 안테나 등 전파방송 관련 중소기업에 7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11명을 ‘전파방송 옴브즈만’으로 위촉하였다. 옴브즈만은 ▶산업체의 시급한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로 제안하고 ▶전파산업 진흥 정책, 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반기 별 옴브즈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옴브즈만 제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전파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전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우수 기술력 및 제품기획 아이 디어를 보유한 전파방송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비용을 매칭 펀드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발기술의 경쟁력, 사업성, 파급효과 및 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Super Wi-Fi용 중계기 등 중소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 결과

제품명	제품개요
Super Wi-Fi용 AP ^{주1)}	통신범위가 3km에 이르는 TV White Space Super Wi-Fi용 접속장치
저전력 LTE 중계기	기존 중계기보다 전력, 효율 등을 향상시킨 친환경 LTE 중계기
컨테이너 모니터링 시스템	WCDMA / GSM ^{주2)} 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위치, 온도, 습도, 충격, 문개폐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내 이동통신 중계 장치	무전력으로 밀폐된 엘리베이터내로 전파가 도달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장치
실내용 DTV 중계기	건물 등 방송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ATSC(국내)/DVB ^{주3)} (유럽) 규격 지원 초소형·초경량 DTV 중계기

주 1) AP : Access Point 주 2) GSM : Global System for Communication 주 3) DVB : Digital Video Broadcasting

5. 인터넷기반사회 대응역량 강화

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1)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위원회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등 웹 호환성 및 악성코드 감염 경로로 사용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확산과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 환경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추진 계

획’(2011년 3월)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X 주요 기능인 보안, 파일처리기술, 그래픽·차트 표현, 멀티미디어 재생 등 12개 기술에 대해 대체기술이 포함된 ‘액티브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을 발간·보급하였다. 이 가이드 라인은 새로운 규제와 최신의 웹 기술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액티브X가 있는 20개 사이트, 2012년에는 2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까지 금융(로그인, 방화벽), 포털(전자결재, 파일 업로드), 게임(키보드 보안) 등 사이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액티브X 대체기술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요 100대 사이트는 물론 P2P(Peer to Peer) 및 개인 쇼핑몰 등 취약 사이트 기술실무자를 대상으로 ‘웹 표준 및 액티브X 대체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약 250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다음으로, IE(Internet Explorer)에 편중된 웹브라우저 이용환경과 사용률이 높은 구버전 IE6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그림 III-9> 참조).

<그림 III-9>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캠페인 페이지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side-by-side. On the left is the homepage of the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캠페인' (Korea Internet Environment Improvement Campaign). It features a green header with the campaign name, a main content area with sections like '주 친 목적' (Main Purpose), '제작 및 출시' (Production and Release), and '주 내용' (Main Content), and a footer with logos for various partners. On the right is a NAVER advertisement titled '보안을 위협하는 익스플로러 6! 이제는 헤어질 시간입니다.' (Internet Explorer 6 poses a threat to security! It's time to say goodbye.). The ad includes a large 'D-170' counter, a small car icon, and a group of people cheering. Text at the bottom encourages users to upgrade to Internet Explorer 8.

이러한 캠페인 결과 국내 IE 및 IE6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었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국내 및 전 세계 IE와 IE6 시장 점유율

(단위 : %)

구 분	IE 시장 점유율			IE6 시장 점유율		
	2010년	2012년		2010년	2012년	
		6월	12월		6월	12월
국내	94.32	77.46	76.26	35.4	1.95	2.33
전 세계	51.45	32.31	33.23	8.73	–	–

출처 : <http://gs.statcounter.com>

한편,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 개발자들에게 기술과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웹 기술 지원센터 (web.kisa.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웹 브라우저 기능 소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가 있으며, 액티브X 대체기술, 웹 표준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 ICT 트렌드가 스마트기기와 OS 플랫폼 중심에서 표준 기술 기반의 개방된 웹으로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에 맞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2년 7월에 ‘차세대 웹 표준(HTML5) 확산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표 III-20> 참조).

<표 III-20> HTML5 확산 추진 계획 정책과제

핵심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웹 기반의 개방형 기술 개발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기반 공인인증서 등 개발 · W3C^{주1)} 국제 표준 활동 강화 · HTML5 보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구
HTML5 전환 및 수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개 웹 사이트의 HTML5 전환 지원 · 웹 표준 진단 도구 보급 및 모범 사례 확산 · HTML5 Flagship Project (시범사업) 실시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사례·기업 공모전 및 캠페인 실시 · 20종의 HTML5 표준 문서 한글 번역 및 보급 · 웹 개발 RFP 가이드라인 마련
5년간 3,000명의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인력 재교육 · 대학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 · HTML5 취업 교육
HMTL5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ML5 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 · HTML5 지원센터 구축 · 공통 모듈의 보급 등을 통한 웹 앱 개발 지원

주 1) W3C : World Web Consortium, 국제 웹 표준화 단체

동 계획 마련을 위해 국내 HTML5 전문가들로 구성된 ‘HTML5 리더스 캠프’ 발족 및 운영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 국내 인터넷 현황 및 산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웹 기반의 개방형 기술 개발 및 표준화 ▶HTML5 전환 및 수요확산 ▶HTML5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향후 5년간 3,000명의 HTML5 전문 인력 양성 ▶HTML5 기반 인터넷 산업 활성화 등이며, HTML5 최종 표준문서는 2014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나.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다양한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네트워크 발전이 상호보완적 관계였으나, 트래픽 증가와 인터넷 가입자시장의 포화로 인해 투자와 수익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망 투자 유인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불합리한 트래픽의 차단이나 차별 등 인터넷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의 주관 부처인 위원회는 2011년 망 중립성 포럼 운영을 통해 국내 망 중립성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망 중립성 포럼 활동의 결과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설정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차단 금지(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불합리한 차별 금지(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망의 보안성, 안정성, 혼잡관리, 법령 집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따른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허용이라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종합유선방송사 등), 소비자단체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장분석, 해외사례 연구,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을 제고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시장 현황, 해외 사례, 정책자문위원회 의견, 공개 토론회(2012년 7월) 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유형과 함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을 제시(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 함으로써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이에 따른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 우편, SMS 등을 통해 고지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전체회의에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구축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널리 쓰이면서 통신이용 행태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통계자료는 유선통신망의 음성 통화량 위주로 산출되고 있어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 제출 방법과 공개 범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매월 이동통신 3사, 연구기관 등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트래픽 통계 구축 전담반’을 운영하였다. 전담반 논의를 토대로 현행 법령상 음성통화 위주로 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대상을 데이터 통계까지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산출 하였다.

트래픽 통계는 무선통신 기술방식별(2G/3G/ 4G/WiBro/Wi-Fi 등), 이동전화 단말기별 (스마트폰/피처폰), 이용자 특성별(해비유저/무제한/일반)로 구분하여 조사·분석되었으며, 통계 유형에 따라 정기적(월별/분기별)으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보다 심층적인 트래픽 통계분석을 위한 콘텐츠 유형별(게임·동영상·SNS 등) 트래픽 이용 현황은 통신사업자의 장비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이후에 통계자료를 산출하기로 협의 하였다.

트래픽 통계 구축으로 정부의 통신망 정책, 주파수 정책, 망 중립성 정책 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되었고, 효율적인 통신정책 수립으로 이용자의 통신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21> 참조).

<표 III-21> 무선테이터 트래픽 공개 기준

구 분	내 용	공개 방식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2G/3G/4G/WiBro/Wi-Fi 트래픽 이용량	매월 공개
이동전화 단말기별	피처폰, 스마트폰(3G/4G) 트래픽 이용량	
이용자 특성별	해비유저(3G/4G), 무제한/일반요금제(3G) 트래픽 이용량	분기별 공개

제2절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1.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1)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도입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품질·고안정성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인증제 시행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 획득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정부 출연 사업 가산점 부여, 세제 지원, 포상 등)를 발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성숙 및 시장 활성화에 따라 정부 인증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인증제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취약한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표시

-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인증 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보호·기반 제공 분야(가용성·확장성·보안 등 7개 항목)를 심사하여,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심사 영역 >

서비스 품질	서비스 정보 보호	서비스 기반
1. 가용성 2. 확장성 3. 성능(속도)	+ 4. 데이터 관리 5. 보안	+ 6. 서비스 지속성 7. 서비스 지원

2) 클라우드 관련 법령 정비

글로벌 IT 시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7월 10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 o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창업·인력양성·세계상 지원 등 규정
 - o (클라우드 이용시 전산설비 보유 인정) 새롭게 대두되는 클라우드 환경에 부합되도록, 전산설비 구비 의무(통신, 생명연구, 특허기술 등)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추진
 - o (이용자 보호)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
-

3)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산 지원방안 수립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 영향력 확대 및 신규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경쟁적으로 CDC(Cloud Data Center,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로도 빨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는 CDC 확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전략은 ①CDC 구축·운영 및 해외 진출 지원 ②CDC 확산 기반 마련 ③CDC 이용 활성화 등 3대 정책과제와 9대 실천과제를 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전략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CDC 전환·구축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CDC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CDC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CDC로 구축·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사업자가 CDC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CDC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CDC 도입·전환을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CDC 운영 기준 및 CDC 활용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대규모

CDC 수요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시범서비스에 CDC의 활용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4) 국민 인식 제고 및 국내외 클라우드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는 클라우드 관련 국내·외 기술과 정책의 공유 및 홍보, 국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The Clouds 2012 컨퍼런스’와 함께 아시아 클라우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기존의 한·중·일 3국외에도 베트남이 참석하여 각국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 및 참여기관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 표준화, 인증 등 클라우드 분야 이슈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클라우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참여국 확대를 통해 이 분야의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나.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기반 구축

1) 사물지능통신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2011년 5월) 이용기업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험환경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4G(WiBro, LTE) 시스템 구축, 전파차폐 박스 등 장비 추가 구비, 신규 서비스(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은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에 적기 진입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기회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팅’을 두 차례 개최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그리고, 국내 사물지능통신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의 유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사물지능통신 기초교육을 통해 초급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구 분	이용실적	기술컨설팅	신규회원가입
2011년도	180회	11건	114건
2012년도	321회	25건	135건

2) 사물지능통신 글로벌 표준개발 및 표준화 추진

위원회는 향후 미래 융합서비스 분야인 사물지능통신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물지능통신 표준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 표준화 과제는 ‘이동통신망 기반 기술 표준 개발’, ‘개방형 M2M 서비스 기술 표준 개발’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를 위한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목표로 TTA,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학회), 3GPP,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oneM2M(M2M 글로벌 표준 협력체) 등에 활발한 표준 기고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M2M 글로벌 표준 협력체인 oneM2M의 출범(2012년 7월)에 대응하여 전문기관 및 국내기업체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고, 기술총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등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그림 III-10> 참조).

<그림 III-10> oneM2M 출범



- o 개요 : TTA, ETSI 등 전세계 7개 표준개발기관, 26개 글로벌 기업, 스마트 자동차홈 가전스마트미터 등 국제표준화 단체가 참여한 M2M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 o 표준화 범위 : M2M 공통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2012년 표준화 과제인 ‘개방형 M2M 서비스 기술 표준 개발’ 과제는 응용서비스별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표준화 추진을 위해 차량통신·스마트홈·헬스케어·스마트 그리드 등 4개 주요 서비스별 표준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별 요구사항 정의 및 기본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표준 개발에 착수하고, oneM2M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3) 차세대 사물지능통신의 핵심기술 확보 추진

위원회는 2012년부터 사물지능통신 관련 응용서비스 개발 등 서비스 관련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사물지능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WiBro/LTE 기반 사물지능통신 단말 표준 플랫폼 개발’, ‘1nJ(nano Joule)/bit ULP(Ultra Low Power) 통신 핵심기술 개발’, ‘모바일 실시간 인접 서비스를 위한 분산형 단말 간 통신 기술개발’ 등 사물지능통신 R&D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III-11> 참조).

<그림 III-11> 사물지능통신 원천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



‘WiBro/LTE 기반 사물지능통신 단말 표준 플랫폼 개발’ 과제는 사물지능통신 단말의 HW/SW 및 서비스 시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MWC 2012(Mobile World Congress 2012)나 ETSI M2M 워크샵 등 국제 전시회에 다수 참여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 국내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에 기술을 이전하여 국내 중소 사물지능통신 업체들이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nJ/bit ULP 통신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초저전력 통신 회로 설계를 위한 원천 핵심 지적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격 의료와 관련하여 IEEE 802.15 등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이 사물지능 통신을 활용한 원격의료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실시간 인접 서비스를 위한 분산형 단말 간 통신 기술 개발’ 과제는 기지국 및 유선 코어망을 통해 송수신이 이루어지던 기존 통신방법을 개선하여, 인접한 단말 간에는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통신망 인프라의 부하를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응용 서비스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공모를 통해 ‘센서 융합기술을 활용한 4G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지능형 원격 영상감시 시스템 개발’ 및 ‘물리공간과 가상공간과의 공간융합 UX기술을 이용한 실내위치 추적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 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 근접통신(NFC) 기반 산업 창출

1) NFC 결제 인프라 전국 확산 및 응용서비스 표준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NFC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조정, 합의점 도출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위원회는 NFC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통해 NFC 응용서비스 표준 개발, 시범서비스 추진 등 NFC 결제 및 응용서비스의 저변확대를 위해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카페 등 국내 주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NFC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만 2,000여개의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용자들이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멤버십 적립, 쿠폰 할인 등을 한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터치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발해왔으며, 2012년 10월 국가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향후에도 NFC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다양한 NFC 기반의 응용서비스들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교통,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각종 응용서비스들을 스마트폰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2) 근접통신(NFC) 시범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NFC 결제 및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NFC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VAN(Value Added Network)사, 솔루션사, 가맹점 등이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NFC 응용서비스들을 실제로 시연,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을 2011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여 2012년 2월 종료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은 이동통신사의 NFC 결제 인프라 구축과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관련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VAN사는 NFC 결제기 교체 지원을, 가맹점은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에서 모바일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S/W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에서 NFC에 대한 국내 전업카드사들은 모바일카드 발급 체계를 갖추고 모바일카드 결제 오류 수정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NFC 응용서비스 개발사들은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5월에는 ‘명동 NFC Zone’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여수세계박람회 NFC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방문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물 정보 음성안내, 가상스토어, 주차위치 확인 등 다양한 NFC 응용서비스들을 박람회장내에서 제공하였다. 또한, NFC를 통해 변화될 미래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스마트(NFC) 라이프 체험관’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NFC 관련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임으로써 IT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 표지석 30곳에 NFC 태그를 부착하여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박물관 및 전시관을 대상으로 NFC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240여개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일반 이용자 및 장애우들이 손쉽게 시청각 장비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교통카드사,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력하여 NFC 기반의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NFC 기반 서비스들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규 NFC 응용서비스 출시에 앞서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표준 적합성 등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NFC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NFC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라.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 (Display Search)사는 2012년 전 세계 스마트TV 시장 규모는 4,300만 대에 이르러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6년에는 9,5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마트TV는 TV의 주류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TV 구매 습성도 점차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TV 앱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웹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현도 미진하여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2년 주요 사업으로 TV 앱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HTML5 기반 TV 플랫폼 표준화 추진 및 표준규격 검증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TV 앱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TV 앱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앱 개발 공간·테스트베드, 온라인 정보포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TV 앱 개발 촉진을 위한 제조·통신·케이블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

며, TV 앱 제작 공모전 및 앱 개발자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19개 팀을 선정하여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10월에는 스마트TV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경쟁요소인 TV 앱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TV 앱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희망하는 청년인력 150명을 모집하였다.

위원회는 5월 스마트TV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스마트TV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TV 분야의 ‘카카오톡’과 같은 글로벌 앱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TV 관련 주요 사업자·협회 등 총 13개 기관⁹⁾이 모여 민·관 공동으로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을 위해 협력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TV 앱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는 스마트TV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TV 분야의 글로벌 앱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생, 중소벤처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앱 개발 공간, 교육장, 테스트 단말, 온라인 정보 포털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앱 개발환경 및 기술 지원, 벤처 창업 지원, 앱 개발자 전문교육 등 TV 앱 개발자의 창의적인 앱 개발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III-12>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개요



센터 구축과 더불어 위원회는 혁신적인 TV 앱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TV 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2012’를 추진하였다. 6월달 공모결과 창업 공간, 창업 비용,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분야에 총 20개 팀이 응모하여 4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각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앱 개발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공모전의 경우 총 48개 팀이 응모하여 15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각 2,000~3,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였다. 특히, 예비 창업자 4개 팀은 센터 내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집중적인 창업 멘토링을 지원받고 있다 (<표 III-25> 참조).

9) 참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TV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케이블TV MSO(티브로드, CJ헬로비전, C&M, CMB, HCN), IPTV(KT, SKB, LG U+), 앱센터운동본부

<표 III-25> TV 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 지원분야 선정결과

연번	팀 명	앱 구성	플랫폼	내 용	예산 지원
1	에스티브이엔 (4명)		C&M	< TV MOD(Music On Demand) 서비스 > TV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음원 및 뮤직비디오 서비스 제공 / 웹, 모바일과 연계한 N-스크린 지원	6천 만원
2	보아스씨엠티 (6명)		C&M	< 다중접속 TV 게임 > 스마트폰을 리모콘으로 활용하는 다중 이용자 동시접속 이용 게임	6천 만원
3	드립2 (4명)		삼성 Smart TV	< 3D 기반 TV 게임 – 골든 펜던트 > 애니메이션과 영화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3D 기반 TV 체험 게임	6천 만원
4	스태킹컴퍼니 (3명)		삼성 Smart TV	< N스크린 서비스 – 큐스테커와 애드몬 >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등)에서 정취한 콘텐츠를 TV 환경에서 연동하여 보여주는 서비스	6천 만원

향후 위원회는 2012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이미 5대 광역경제권에 설치된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와 연계하여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를 전국 주요거점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지역에서의 TV 앱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에는 TV 앱 개발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5일 과정으로 TV 앱 개발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TV 앱 아카데미’로 명칭된 본 교육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춘 청년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화면·리모콘

· 가족 미디어 등 스마트폰과 차별화되는 TV의 기본 특징과 TV 앱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UI/UX), 실습 프로젝트 등을 교육하여 실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TV 앱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TV 앱 개발 업계의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과 취업을 긴밀하게 연계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둘째, 위원회는 2012년 2월 발표한 미래 IT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 중 ‘스마트TV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5월부터 특정 OS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HTML5 기반의 TV 플랫폼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IPTV·DCATV(Digital CATV, 디지털케이블방송)·스마트TV 등 각 사업자의 플랫폼이 특정 OS에 종속되어 콘텐츠 시장이 과편화되고 앱 개발 불편 및 비용 증가를 야기하여 TV 앱 생태계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상호호환 가능한 개방형 TV 플랫폼 환경 구축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가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IT산업 전반의 플랫폼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고, W3C에서 HTML5를 TV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IPTV·DCATV·스마트TV 간의 앱 상호호환이 가능하고, 특정 OS에 종속되지 않는 HTML5 기반의 개방형 TV 플랫폼 표준 개발, HTML5 기반 표준 플랫폼을 적용한 시범 모델 개발·검증 및 확산지원, 국내 표준화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인 W3C 국제표준화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HTML5 기반 TV 플랫폼 표준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컨퍼런스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플랫폼 표준화 추진에 따라 새로운 HTML5 웹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여 특정 OS의 종속성을 탈피하여 ‘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앱 등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1인 창조 및 벤처기업의 탄생을 더욱 촉진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 위치정보(LBS) 기반 산업 활성화

1) 위치정보(LBS) 산업 육성기반 조성

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기반 산업인 위치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와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위치정보(LBS) 상생전략 포럼’을 구성·운영 하였다. 또한, 소규모 위치정보사업자의 법률상담 및 허가·신고 지원, 산업통계 구축,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위치정보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망위치 정보서비스 공모를 통한 수익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중소벤처 육성·지원, 위치정보 산업발전 방안 등 수평적 논의를 통해 위치정보 산업의 도약을 견인하고자 2012년 5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치정보 상생전략 포럼을 출범하여 위치정보 산업 인프라 구축방안, 중소벤처 동반성장 발전 방안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등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112 신고시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년 5월)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112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Wi-Fi 인프라를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소규모 위치정보(LBS) 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에 위치정보(LBS)산업협의회를 통해 개소한 위치정보(LBS)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소규모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신고관련 상담 및 운영지원 ▶위치정보(LBS) 관련 통계작성 및 동향조사 ▶위치정보(LBS) 관련 사업자 공동애로사항 지원 ▶불법사업자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 통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2012년도 월별 위치정보(LBS) 사업자 지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률지원	173	184	193	185	176	206	252	242	171	176	207	91
신고지원	500	631	453	431	424	467	503	452	282	242	352	207
합 계	673	815	646	616	600	673	755	694	453	418	559	298

출처 :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 LBS 산업협의회, 2012

또한, 위원회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망 LBS App & Web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내 위치정보 시장의 대규모 사업자에 의한 독점적 시장지배 구조에서 개인 또는 소규모 위치정보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고자 투자자 연계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 정책계획' 시행(2010년 6월) 이후 이러한 정부 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그림 III-13> 참조).

<그림 III-13> LBS 사업자 증가 추이



2) 위치정보(LBS) 사업자 규제 개선

위원회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 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2년 6월 25일 공포·시행)하고,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12-40호)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 허가 신청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표준을 정할 때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 표준화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또한, 경찰관서가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년 5월 14일 개정,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방법·절차 및 구조대상자의 의사확인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바. 3D 방송서비스 활성화

최근의 방송서비스 시장은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3D 및 스마트TV 등 실감 미디어가 새로운 성장기회로 부상하는 등 방송서비스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화질 3D 방송 기술 적용을 통한 3D 방송서비스 상용 기반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1)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 실시

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2012년 4월 한 달 간 EBS¹⁰⁾와 SBS¹¹⁾채널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고화질 3D 시범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지상파 방송사는 실제 운용중인 채널과 설비를 활용하여 정파 시간을 통해 듀얼스트림 방식¹²⁾으로 3D 시범 방송을 송출하였다.

<그림 III-14> 세계 최초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



또한, 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66번 채널을 통해 런던 올림픽 3D 중계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에 돌입하였다. 2012년 10월부터는 고화질 3D 방송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해 2개월간 MBC와 EBS 등 두 개의 지상파 정규채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3D 시범방송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 때 주요 콘텐츠로는 런던올림픽 주요 장면 편집본과 방송사 자체 제작물 등이 방송되었으며, 지난 4월 수도권에 한정된 세계 최초 시범방송과 달리 전국에 걸쳐 자동제어방식으로 송출되었다.

10) EBS는 2012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일 02시 정각부터 03시 정각까지 한 시간 동안 지상파 디지털레비전방송 채널(관 악산 송신소 가상채널10-1번, 물리채널18번)을 통해 자체 제작한 3D 방송 프로그램 <한반도의 인류 – 전곡리 사람들>과 3D 애 니메이션 <냉장고 나라 코코몽>을 기준 HD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혼용하여 시범방송을 실시

11) SBS는 02시 정각부터 02시 40분까지 디지털레비전방송 채널(관 악산 송신소 가상채널6-1번, 물리채널16번)을 통해 <울림 – 악가무사대천왕>이라는 국악 공연 실황을 방송

12)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3D 방송 송출 방식으로, 한 채널의 6MHz 주파수에서 동시에 3D와 2D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3DTV로는 3D 화면으로, 일반 2DTV로는 2D 화면으로 방송 시청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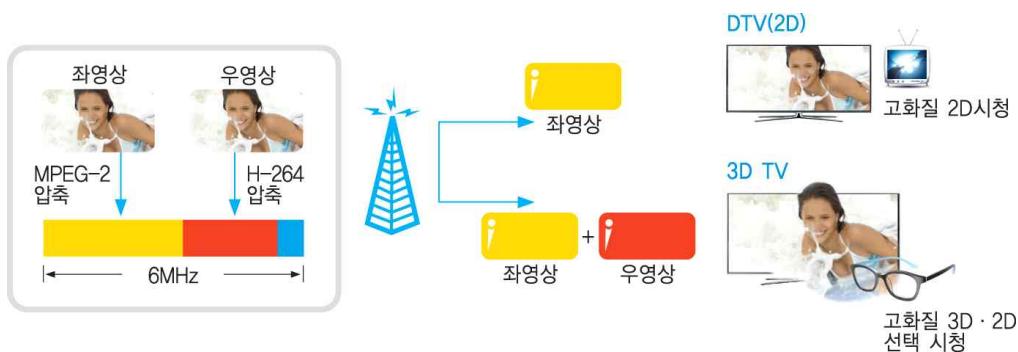
<그림 III-15> 지상파 고화질 3D 실험방송 전국 확대



2) 3DTV 표준화 및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위원회는 3DTV 방송 표준에 대한 각계의 소통과 세계 3D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화질 3D 방송 방식인 듀얼스트리밍방식의 기술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듀얼스트리밍 방식은 기존 방송채널(6MHz)에서 추가 주파수 필요 없이 HD(High Definition, 고화질)급 2D와 3D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 스스로, 주파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2DTV 보유 국민에게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판 차세대 방송 기술로 호평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국내 표준을 제정한 이후 위원회는 국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3년 1월에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로부터 국내 3D 방송방식이 ATSC 국제표준으로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III-16> 국내 독자 개발 고화질 3D 방송방식



또한, 위원회는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현재의 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의 UHD 영상서비스 및 안경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무안경 3D 전송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2012년 9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2 IT 엑스포 부산 전시회’에서 기가인터넷 기반 초고화질(UHD) 영상서비스, 무안경 3D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¹³⁾ 등을 선보였다. 위원회는 차세대 방송관련 압축코덱, 송수신 안테나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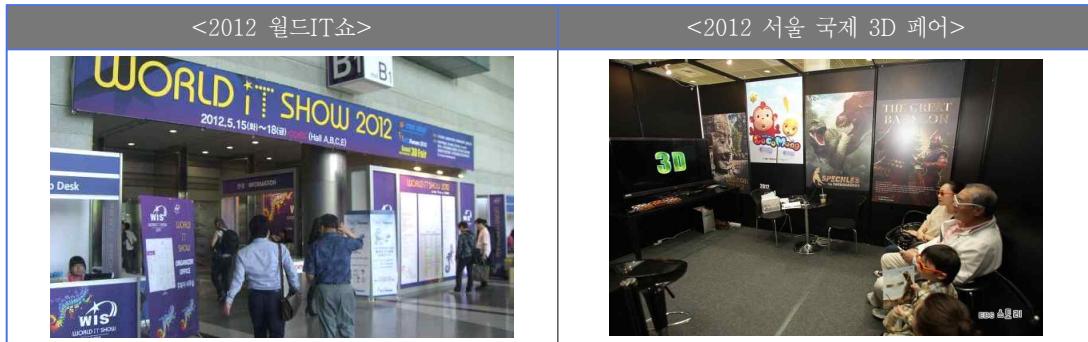
3) 3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진흥

위원회는 빠르게 바뀌는 방송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D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방송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술 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실험·시험방송)를 허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90호, 2012년 10월 17일). 고화질 3D 방송의 전국 규모의 실험 방송을 위해서는 기준에는 200 ~300개의 방송국별로 실험국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규칙 개정으로 한번의 허가만으로도 전국 실험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3D방송, HD DMB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송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원회는 3D 서비스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먼저 2012년 4월에는 프랑스 깐느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마켓인 MIPTV 2012 (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2012)에서 3D 콘텐츠 쇼케이스 부스를 운영하였다. 동 부스에서는 위원회가 제작 지원한 3D 콘텐츠 등을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분야로 나누어 시연 하였으며, 선판매(pre-sale)를 통한 제작비 조달 또는 공동제작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월드 IT쇼(World IT Show 2012)’와 ‘2012 서울 국제 3D 페어(Seoul International 3D Fair 2012)’를 통해 장비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워크숍, 해외 방송 및 영화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비즈니스 마켓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국내외 30개 업체들의 3D 콘텐츠, 장비, 신기술을 선보였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3D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등 3D 방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진흥 활동을 실시하였다(<그림 III-17> 참조).

13) 일종의 전자간판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평면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 등에 의해 영상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매체.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

<그림 III-17> 3D 서비스 홍보 및 진흥 활동



사진출처 : EBS(우상단),

위원회는 앞으로도 고화질 3D 시험 방송과 상용화 추진, 고품질 3D 콘텐츠 확대, 3D 시청 안전 보장 등 3D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3D 콘텐츠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원회는 IPTV, 디지털케이블TV, 스마트TV 보급 확대 및 기술 발전으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연구반’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4월 26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홈쇼핑방송사업자,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사업자, 일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5월에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TV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편리한 상품 검색 및 결제방식 개발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이 담겨 있다.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요인인 사업 자격요건의 불명확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 제9조 제3항을 개정하여 ‘검증받은 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였으며, ‘검증받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¹⁴⁾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사업자¹⁴⁾로 규정하였다. 또한, 연동 상품검색·결제 등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IPTV사업자, CATV사업자, 개발업체, 금융결제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여 TV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을 표준화하고, 리모콘 UI/UX 기술개선 및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을 개선하였다.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6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반을 운영해 사업 추진 방안 논의 및 사업 수행 컨소시엄 구성을 진행했다. 2012년 8월에는 관련 사업자들로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0월부터 KT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컨소시엄, CJ E&M컨소시엄 등이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TV 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 시청 중 상품 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리모컨 결제 편의 제고 등의 기술 개선, 시청자 경험 확대 및 인식 개선, 신규 시장 개척 및 매체별 특성 분석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TV 연동형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연매출 1,000조 원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방송통신사업자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러 TV채널에서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시청 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청자의 융합 서비스 선택 기회가 확대 되고 생활 편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혁신적 생태계 및 벤처 인프라 조성

가.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과거에는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중심의 무선포털을 이용해야 했으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P; Content Provider)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오픈마켓은 이동통신사 중심의

14) 홈쇼핑 5개사, KTH, SKB, TV벼룩시장, 화성산업, 아이디지털홈쇼핑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콘텐츠 유통구조에 비해 참여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수익 배분과 콘텐츠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애플,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도매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통합 앱스토어인 K앱스(K-Apps)를 설립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우수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K앱스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공동 협력으로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만들어졌으며, 웹 기반 콘텐츠를 3사 공동으로 수급함으로써 콘텐츠를 원활히 수급하고 수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자 측면에서도 단일 표준규격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K앱스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합앱스토어(WAC; 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마켓에 동시 판매할 수 있어 글로벌 유통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K앱스에서 개발한 웹 플랫폼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2년 2월 글로벌 통합앱스토어의 표준 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약 28억 원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개발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까지 확대하여 국내의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용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K앱스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개발자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 하였으며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의 발전 추세에 따라 이를 통한 K앱스의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담반 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개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앱 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536종의 앱이 개발되었다.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는 대기업인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와 중소기업인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환경 조성의 대표적 사례로써 의미가 깊으며, 국내 사업자의 효과적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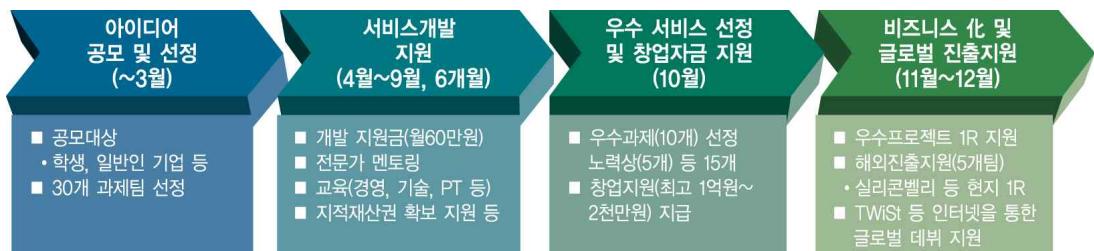
나. 벤처기업 성장 촉진

1) 인터넷 스타트업(IBS) 육성

스마트 시대로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은 모바일,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로 무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경제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는 성장 정체기에

있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부터 신규 인터넷 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화 지원과 오픈플랫폼(OpenAPI 등;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활용 교육으로 구성된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구글과 연계하여 글로벌 진출지원 부문을 강화한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III-18> K-스타트업 프로그램 육성 과정



2012년 1월, 구글과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접수 하였다. 접수된 246건의 아이디어를 산·학·연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29개팀을 선정한 후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개발지원금(월 60만원), 전문가 1:1멘토링, 기술·경영·외국어 등 분야별 전문교육, 특허출원, 네트워킹데이 등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29개팀을 대상으로 최종 인터뷰 심사를 통해 우수 서비스 15개를 선정하고 총 4억 4천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창업을 유도하였다. 15개 우수 서비스 중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6개팀에게는 2012년 11월 런던, 실리콘밸리 현지에 방문하여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s)과 네트워킹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9개팀 중 17개팀이 창업을 하고 총 10개의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으며,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2차 투자의 경우도 5개팀이 총 30억원 상당의 투자를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표 III-27> 참조).

한편, 위원회는 2012년 11월 (사)앱센터 운동본부와 구글코리아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창업보육센터 구축·운영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 개

발장비 등 물리적인 기반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과 시장 진작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27> K-스타트업 창업·서비스 상용화 및 투자유치 현황

(단위 :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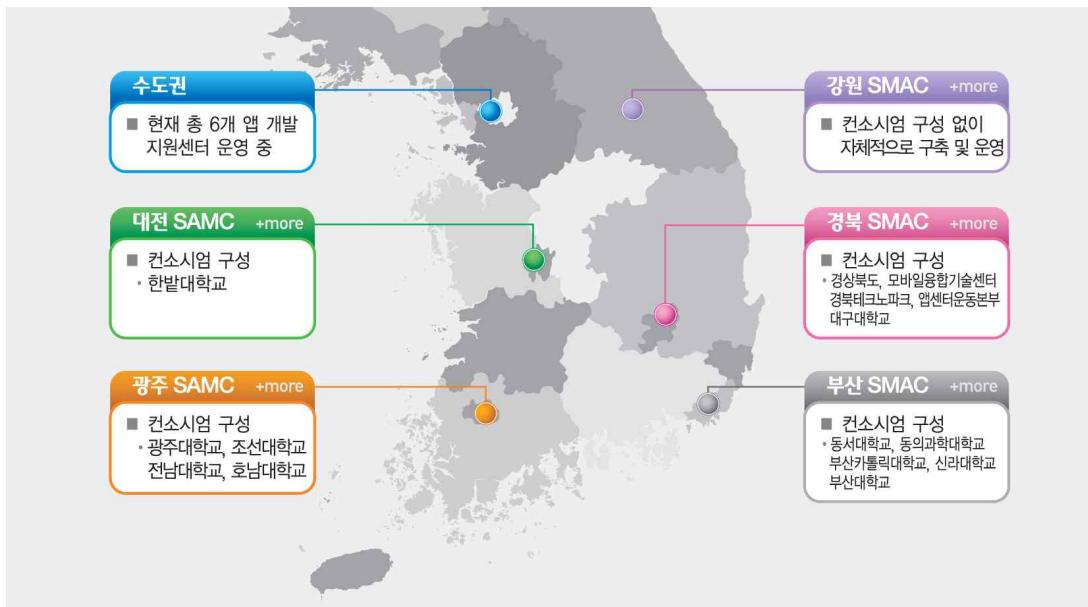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창업 수	2	9	17	28
서비스 상용화 수	2	6	10	18
투자유치(팀수)	-	-	30(5)	30(5)

아울러, 위원회는 급속한 인터넷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오픈플랫폼 활용교육을 강원, 부산, 제주, 충청, 전라, 경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약 450명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인터넷 트렌드의 이해와 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자료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홍보, 교육인프라 확보 등에 대해 각 지역 공공기관 및 대학교와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2)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과거 PC통신에서 웹 기반의 인터넷 세상으로의 변혁이 있었듯이 스마트폰에 의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마트 모바일 중심의 신산업 창출 및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가 도래하였다. 국내 IT·인터넷 시장은 스마트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4월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모바일 전반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고 스마트 모바일 산업의 핵심인 앱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앱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는 개발자 교육 및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지역거점센터로 수도권에 6개소, 지방거점으로 5개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릉) 설립하여 지역의 개발자 및 기업이면 누구나 비치된 단말을 이용해 개발 앱을 테스트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지원센터(www.smac.or.kr)를 구축하여 오픈플랫폼, 공개S/W모듈, 전문가 협력채널 및 국내외 스마트 모바일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11,000여명이 방문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III-19>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다.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

스마트 혁명으로 인한 개방·협력적 생태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은 매년 크게 증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발전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2012년 방송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역량 제고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는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R&D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내비게이션 등의 방송통신 기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핵심 공통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블루투스, ZigBee¹⁶⁾, NFC, Wi-Fi 기술은 성장 잠재력과 과급효과가 크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그러나,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테스트장비가 고가이므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도

16) 무선 네트워킹 분야에서 10~20m 내외의 근거리 통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Wi-Fi의 경우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준장비는 Wi-Fi 국제표준기구인 Wi-Fi Alliance 회원사만 구입이 가능하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최소 5주간의 현지 교육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연간회비는 미화 1만 5,000달러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노하우, 인력, 시장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로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 분야 기술지원 환경 구축 및 운영,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였다.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기술지원의 경우 블루투스, ZigBee 등 차세대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근거리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 기술 지원, NFC 기술지원, 차세대 Wi-Fi 기술지원 환경 구축·운영이 포함된다.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사업화 지원은 기술 정보 제공, 컨설팅 제공, 애로기술 지원, 시험기술 지원으로 나누어 R&D를 추진하였다.

블루투스 테스트베드는 무선(RF) 적합성, 프로토콜 적합성 및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환경으로 구성된다. 블루투스 테스트베드는 제품의 특성이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¹⁷⁾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되며 무선 규격 시험기, 프로토콜 시험기, 상호운용성 기준장비 및 가상 이동망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블루투스 LE (Low Energy)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저전력 응용서비스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셀룰러통신산업협회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전송 기반의 유헬스케어,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다양한 상호운용성 대상 장비를 구축하여 개발지원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술표준, 시험규격 및 인증프로그램 등 시험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품개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숙련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전문가들이 직접 시험수행 및 결과분석을 함으로써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개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9월 기준 블루투스 분야로 총 9개 업체에서 13건의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였으며, 유헬스케어 및 스마트 자동차는 신규 분야인 만큼 신속한 개발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7) 근거리 무선통신의 세계 표준인 블루투스 기술의 다국적 연합체를 블루투스 SIG라고 부르며, 블루투스 기술 및 제품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조직. 직접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이 블루투스 지원 제품을 개발하면 로고를 라이센스 해주며, 이를 통해 블루투스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III-20> 블루투스 적합성시험 테스트베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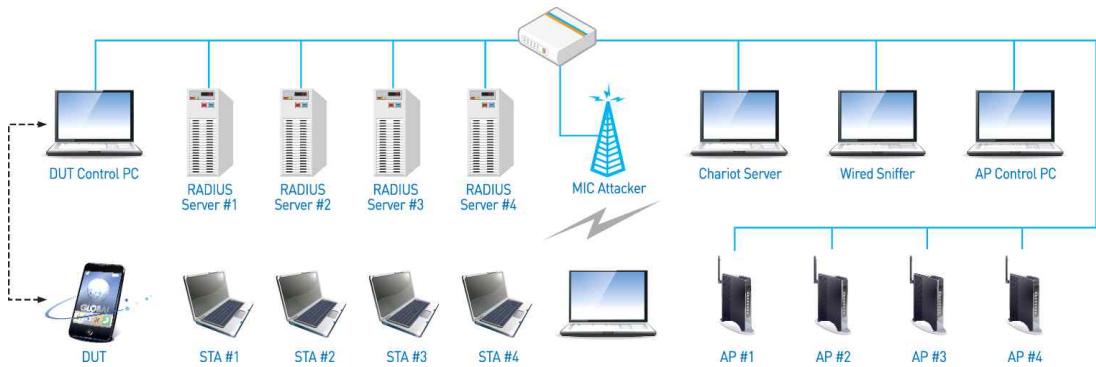
Wi-Fi 테스트베드는 IEEE 802.11 무선랜 표준 규격에 근간하여 개발되는 칩, 모듈, 네트워크 장치, 단말기 등에 대해 Wi-Fi Alliance 상호운용성 시험규격 뿐만아니라 성능, 보안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한다. 주요 제공 장비로서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 IxChariot 성능측정기, 프로토콜분석기 및 IxVeriWave 무선랜 성능시험기 등이 있다.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는 Wi-Fi 무선기술을 탑재한 각종 단말기와 네트워크장치가 Wi-Fi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대 600Mbps급 802.11n 기반의 보안, 품질, 저전력, 간편접속, P2P 통신 분야의 테스트베드를 모두 구축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기가급 무선랜 기술인 802.11ac 테스트베드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Wi-Fi Alliance SIGMA 테스트베드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Wi-Fi 폰, 내비게이션, 모듈, 셋톱박스 등의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팹리스업체¹⁸⁾인 텔레 칩스는 순수 국산 Wi-Fi 칩 개발을 위해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지원 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Wi-Fi 테스트베드에는 고성능 무선랜 성능측정기를 도입하여 다양한 무선채널 환경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데이터 처리 속도, 안정성, 확장성, 로밍성능 등의 성능지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Wi-Fi 상호운용성과 성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제품개발의 완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림 III-21> Wi-Fi 상호운용성 테스트베드 구성도



NFC 테스트베드는 NFC 포럼 및 EMVCo (Europay, Mastercard and Visa Corporation)¹⁹⁾ 국제 규격의 표준적합성 시험에 대한 제품개발 및 제품 검증을 지원한다. 주요 제공 장비로는 NFC 포럼 디지털 프로토콜 시험기 및 RF 아날로그 시험기, EMVCo Level 1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험기, NFC 스파이 툴 등이 있다. 특히, NFC 제품의 레벨1 플랫폼 기술지원을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험기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NFC 포럼과 EMVCo 규격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NFC 스파이 툴과 디버깅 툴도 함께 제공하여 개발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2> NFC 포럼 및 EMVCo 테스트베드 제공 범위



ZigBee 테스트베드는 RF/MAC 및 프로토콜 적합성,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제공 장비로는 IEEE 802.15.4 ZigBee 플랫폼 기술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기, 신호발생기 및 오실로스코프와 ZigBee Smart Energy 1.x/2.0 프로파일 시험기, RF4CE 프로파일 시험기 등이 있다. 현재까지 총 5개 업체에서 6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4개 제품이 스마트에너지 응용제품이며, 앞으로도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ZigBee 제품이

19)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국제적인 호환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카드 3사(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공동으로 IC카드 거래에 필요한 국제 표준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한 영국의 비영리단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3> ZigBee RF, 프로토콜 및 프로파일 시험 환경



위원회는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기술지원 환경 구축 및 운영과 더불어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분야별 최신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과 중소벤처기업 제품 상용화 촉진 및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사업전략 및 차별화 된 제품개발에 필요한 분야별 최신 기술 및 시장동향 제공을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및 업체 개발이슈, 성공 사례 등을 조사한 뉴스레터를 격월로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방송통신 기술워크숍을 통해 최신 기술트렌드 및 국제공인시험에 대한 인증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임원과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개발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산업계 간담회를 분야별로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nbtc.tta.or.kr>)를 통해 분야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향후, 유헬스케어, 스마트자동차 등 융합 IT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지원

위원회는 스마트 시대로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신규 인터넷 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화 지원 등을 시작으로 2012년 글로벌 진출 지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스마트 모바일 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고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자 교육 및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다.

3.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가.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업무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들 중 하나이다. 2012년도에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DMB 7개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66개 사업자, 보도채널 1개 사업자, 홈쇼핑 채널 사업자 2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1) 보도 전문채널 및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2012년 3월 12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와이티엔, (주)씨제이 홈쇼핑과 (주)지에스홈쇼핑 3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2012년 2월)가 이루어졌다.

보도 채널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는 심사 위원장 및 7명의 방송·법률·경영·회계 및 시청자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2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주)와이티엔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재승인 조건 및 직원 교육훈련 계획 이행,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부과받았으며,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향후 5년간(2012년 3월 13일~2017년 3월 12일) 재승인 되었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역시 심사위원장과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2월 15~17일까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향후 5년간(2012년 3월 13일~2017년 3월 12일) 재승인을 받게 되었다. 다만, 양 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및 시청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되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위원회는 보도·홈쇼핑 채널 재승인과 더불어 3월 말에서 4월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및 방송평가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시되었다. 심사결과 35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향후 5년간 재허가 되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된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2012년 7월말부터 12월 말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1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2012년 7월)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31개 사업자 중 26개사는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으나, 5개사는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2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재허가를 하였으며, 허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5개사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해 향후 3년간 재허가를 하였다.

심사위원회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명시하였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공통 조건

- 디지털전환율(당해년도 6월말 기준)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디지털전환율 10%미만 : PP프로그램사용료 25% 이상 지급
 - 디지털전환율 10%이상~30%미만 : PP프로그램사용료 26% 이상 지급
 - 디지털전환율 30%이상~50%미만 : PP프로그램사용료 27% 이상 지급
 - 디지털전환율 50%이상 : PP프로그램사용료 28%이상 지급
- 위 기준 적용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유료채널과 유료, 무료VOD 제외) 인상을이 전년대비 각각 5%, 2.5% 미만일 경우, 5%이상, 2.5% 이상 확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본채널과 무료 VOD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기본채널 수신료 수익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 반기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허가 신청시 제출된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상파 DMB 사업자 재허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2012년 11월). 심사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6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재허가를 하였으며, 1개 사업자는 기준 점수를 미달하여 재허가를 보류하고 「방송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지상파 DMB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게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이행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에 재허가를 받게된 광주 MBC의 경우에는 2009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중 삼공 방송보조국 구축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4)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경인제1DTV방송국, KBS한민족 방송단파방송국, KBS제3표준 FM방송국 등 한국방송공사의 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3개 방송국 모두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재허가 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방송국들의 재허가를 허용하되 ‘자체 프로그램 제작 계획 이행’ 등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해당 방송국들의 허가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이는 한국방송공사 전체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나. IPTV 서비스의 견실한 성장 지원

IPTV는 2009년 가입자 174만 명, 2010년 309만 명, 2011년 457만 명을 확보한데 이어 2012년에는 631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유료방송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2012년 8월 기준 유료방송가입자 2,413만 명 중 IPTV 가입자는 약 23.5%를 차지해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콘텐츠·인프라 투자확대 촉진, 신규 서비스 개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IPTV 가입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PTV	174만	309만	457만	631만

IPTV 3사는 2009~2011년의 3년 간 총 2.7조 원을 투자하여(콘텐츠 7,433억 원, 설비 2조 69억 원)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IPTV 콘텐츠사업자는 2012년 9월 기준 총 472개사이며, 이 중 콘텐츠 제공사업자 286개, 채널사업자(PP) 118개, 종편 4개, 홈쇼핑 6개, 보도채널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30> 참조). IPTV 제공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사용 수 신료는 2009~2011년 평균 79%대로 높은 비율(2011년 수신료 4,582억 원, 매출액 5,73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플랫폼과 비교하여 수신료 대비 콘텐츠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0> IPTV 콘텐츠사업자 구성현황

콘텐츠사업자(CP)	채널사업자(PP)	종편사업자	홈쇼핑	보도채널	기타	총 계
286개	118개	4개	6개	2개	56개	472개

IPTV의 가장 큰 성과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도입으로 도입 4년째 600만 가입자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기존 케이블TV 위주의 독점적 유료방송시장에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였다. 상대적으로 위성방송은 300만 가입자 달성에 9년, 케이블TV는 400만 가입자 달성에 6년이 소요된 바 있다. IPTV 도입 이후 단방향·실시간 위주의 케이블에서도 VoD 서비스 등을 적극 도입하여 타 플랫폼 서비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IPTV 도입으로 공익적 사고 중심의 방송시장에 경제 메커니즘에 의한 시장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규제완화 및 케이블 산업 내 M&A를 촉진하였다.

IPTV 확산의 또 다른 성과는 새로운 유형과 분야의 콘텐츠 확산을 들 수 있다. IP 기반의 IPTV 서비스는 교육/정보/게임/노래방/투표/멀티앵글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프로야구 편파중계 등 양방향 프로그램 및 비실시간 VoD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매체선택권 확대 및 시청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였다. 주문형 비디오 제공 등으로 시청자들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형태로 시청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2년 3월 DMC미디어가 전국 51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날로그 방송이용자들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시 VoD로 인해 IPTV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IPTV 이용자도 VoD서비스에 가장 큰 매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학교·국방·보건의료·교통 IPTV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확산하여, IPTV 공부방, 방과 후 학교 활용 등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IPTV 확산으로 콘텐츠 유통 경로가 다각화됨에 따라 PP 등 콘텐츠 업체의 수익이 확대되었으며, 유료 플랫폼 시장 내 디지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플랫폼 시장의 디지털화를 견인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IPTV의 성공적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뉴미디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외 뉴미디어 시장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스마트TV를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TV의 등장으로 IPTV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

어, 위원회는 해외 진출, 양질의 콘텐츠 확보, 시청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여 IPTV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유사 방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IP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규제에 공평성을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Daum TV, 지상파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TV인 콘팅, 케이블사가 제공하는 인터넷TV인 Tving 등 다양한 인터넷TV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한 방송서비스 시청, 이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리모컨 기술 개발 등 IPTV와 관련된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MVN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파수 및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2년 3월에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활성화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	①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②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③ 재판매 시장 불확실성 해소
10대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단말기 수급환경 개선②국제로밍, 부가서비스 등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③무선랜(Wi-Fi) 망 도매제공④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⑤가입자 식별카드(USIM) 이동화대⑥번호이동 제도개선⑦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⑧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 할인 기준 완화⑨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⑩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검토

종합계획은 2011년 10월부터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VNO 활성화 전담반 논의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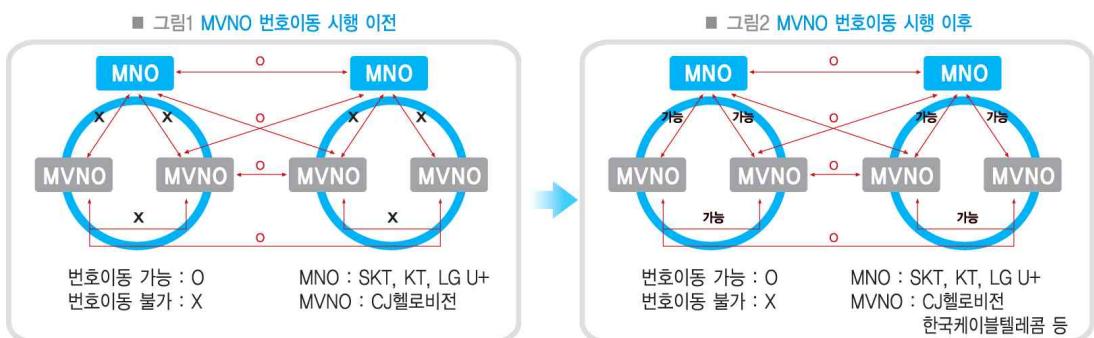
위원회는 종합계획에 ①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②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③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3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담아 추진하였다.

첫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단말기 수급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재판매 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국제로밍, 부가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Wi-Fi망을 도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매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재판매 사업자는 약 15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입자 식별카드(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동 확대, 번호이동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번호이동 전담반을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재판매사업자(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등)를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KT와 LG U+의 재판매사업자(CJ헬로비전 등 18개사)에 대한 번호이동은 2012년 1월에, SKT의 재판매사업자(한국케이블텔레콤 등 8개사)에 대한 번호이동은 2012년 4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림 III-24> MVNO 번호이동 시행 전·후 비교



※ 기존에는 망사업자(MNO)를 통해 타 사업자(MNO, MVNO)로 번호이동만 가능하였으나(그림1),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망사업자와 그 망을 빌려쓰는 재판매사업자(MVNO)간 또는 동일한 망을 쓰는 재판매사업자간 번호이동도 가능하게 되었음(그림 2)

그 결과, MVNO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6월까지 월 1,000명을 밑돌았지만 7월 5,200명, 8월 8,500명, 9월 9,900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2013년 4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 명칭을 공모하여, ‘알뜰폰’을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홍

보용어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알뜰폰’ 홍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MVNO협회 등과 협력하여 7~8월 사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여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KBS 라디오 등 3개 채널에 알뜰폰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유관기관, 사업자 대리점, 대학교, 전국 3,815개 지자체 등에 알뜰폰 홍보 포스터 약 2만부를 배포하였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가지(메트로) 지면 광고와 지하철 객차 내 400매의 포스터 광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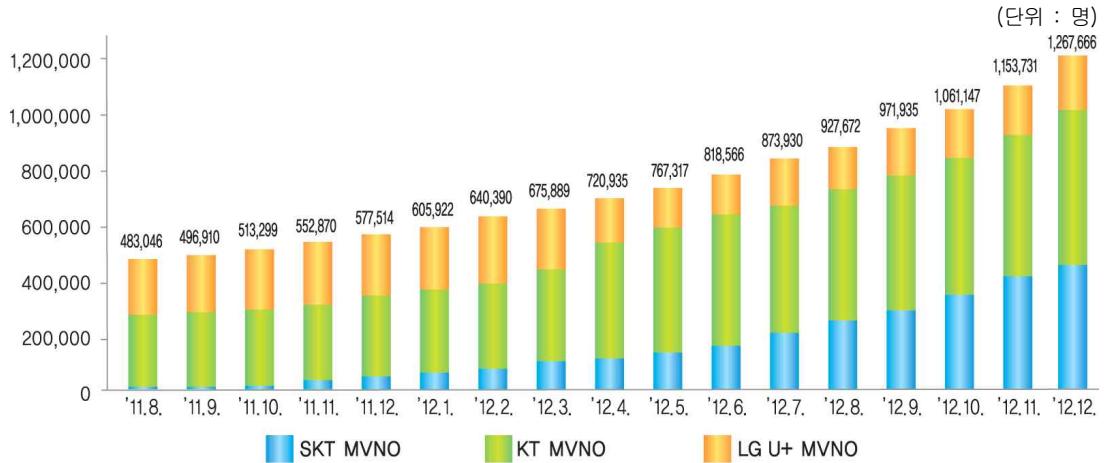
<그림 III-25> MVNO 새명칭 공모전 포스터와 알뜰폰 홍보 포스터·신문 광고



셋째,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량구매할인율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각각 5만 명씩 하향 조정(가입자 15만 명 이상 1% 추가 할인~가입자 115만 명 이상 6% 추가 할인)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매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 및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20% 이상 값싼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케이블텔레콤(KCT), CJ헬로비전, 온세 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2013년 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등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재판매 서비스 가입자는 전월 대비 평균 5~6% 정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순증 가입자만 보면 MVNO가 기존 이동통신사 보다 성과가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9월부터 일부 재판매 사업자를 통해 LTE 서비스도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재판매 서비스 가입자는 2012년 12월 말 기준 약 127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림 III-26> 참조).

<그림 III-26> 재판매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표 III-32> 알뜰폰 사업자 현황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SKT(8개)	아이즈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한국정보통신, 유니컴즈, SK텔링크, 에스원,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KT(9개)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S로밍,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LG U+(9개)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엔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 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 2012.12월 기준 26개

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제도 개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통신사업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경우 허가심사와 함께 「전과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도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과 사업계획서 심사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2012년 6월에 현행 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심사와 관련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였고, 배점율을 상향조정(5점→10점)하였으며,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16점→11점)하였다. 과거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경우 일시출연금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허가심사 시 가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시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을 매출액 기준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심사사항과 일시출연금 관련 조항(심사절차, 납부, 일시출연금 가점 계산방법 등)도 삭제하였다.

역무통합에 따라 역무 구분은 폐지되며,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하여 신청법인이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일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간주하는 관련 조항도 삭제하였다.

한편,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등 계량평가 시 기준 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 (60점→40점)하여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평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실화(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개월→60일,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개월→120일)하였다.

아울러, 허가심사 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 확약서와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확인 등을 통해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하여 시장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 설비제공제도 개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통신망설비 개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사업자 협상에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을 2003년 12월 전부개정하여 필수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쟁사업자와 의무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가입자구간의 관로, 전주 및 케이블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설비제공 대가의 조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KT와 KTF의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에 의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 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설비제공

기관에 포함 되었다.

2012년에는 광케이블 제공 기준, 관로제공 조건, 설비제공 거부사유, 광케이블 최소 이용대가 등을 개선하고 관로 용어 정의 신설, 설비제공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설비제공고시’를 일부 개정 하였으며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제공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광케이블 제공 기준을 개선하였다. 광케이블 제공대상을 2004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하되, 2004~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케이블 예비율을 운용 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하여 요청사업자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둘째, 관로제공 조건을 개선하였다. 제공 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과 관련하여, 인입구간은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 내관의 137%로 신설하였고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관로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수식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설비제공 거부사유를 개선하였다. 설비제공 거부사유 중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광케이블 최소이용대가를 합리화하였다. 광케이블은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최소 이용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에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광케이블 이용대가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하였다 (인입구간: 100m→50m, 비인입구간: 200m→100m). 참고로 최소이용대가는 인입구간이 100m기준으로 월 15,835원, 비인입구간은 200m기준으로 월 16,464원이다.

다섯째, 2014년 12월 31일까지 광케이블 제공 범위·조건, 설비의무제공사업자 지정기준 등 재검토할 사항을 고시 부칙에 명시하였다.

관련 용어 및 절차의 명확화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관로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다. 그간 ‘관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관로’ 개념에 인상분선관로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그간 KT는 지하관로와 전주를 연결하는 ‘인상분선관로’가 의무제공대상의 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왔으나, 최근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둘째, 관로 및 광케이블의 설비 제공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바. 회계분리 기준 고시 개정

위원회는 2012년 11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 혈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²⁰⁾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기준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영업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²¹⁾의 경우 각 사업자의 IR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를 분리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총28개) 중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또는 기타서비스)와 통합하였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 통합

현행		개정안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기타서비스 (별도분리 불필요)

한편, 최근 LTE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LTE 서비스 도입 이후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 주파수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던 이동통신서비스를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표 III-34> 참조).

20) 간이보고 : 전체 영업보고서 서식(30종) 중 2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제출

21) 상반기 회계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수익명세서, 판매영업비 명세서 등 총 5종

<표 III-34>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개정

현행	개정안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 최근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주파수대역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구분 곤란(예, 2.1GHz : 기존 IMT2000(3G) 용도 ⇒ 3G, LTE 공용)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의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행화하였다. 개정 고시는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단위 시장을 확정하여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를 결정하고 비경쟁시장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 인가의무 부과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경쟁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기간통신서비스시장을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 중 국내 유선전화 시장은 종전에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로 구분하였으나, 인터넷전화의 시내·시외 전화에 대한 대체성 증가 등에 따라 동일 시장(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전용회선 시장은 종전에는 국내, 인터넷, 국제로 구분하였으나, 기술발달로 설비 구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을 국내전용회선 시장에 포함하여 확정하였다.

경쟁상황 평가 결과 유선전화 시장(시내·시외·인터넷전화, 국제전화)에서는 시내전화 시장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KT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유지되는 등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전화 시장에서도 SKT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유지되는 등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도입되고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매(MVNO)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제도 도입의 효과와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MVNO 시장상황 평가 전담반’을 운영하여 재판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시장상황 평가 체제를 마련하였다. 통신사(MNO)와 재판매사업자(MVNO) 간의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분석을 통해 도매 수급 여건을 파악 하는 한편, 재판매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거래시장인 소매시장 분석에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시장 내에서 재판매 서비스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등 3개 부문별로 도매시장은 7개 지표, 소매시장은 8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밖에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 대상 고시(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고시, 설비 제공 의무사업자 고시 등)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용어 혼동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방송통신시장 가입자 포화 및 성장 정체로 인한 사업자간에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요금할인, 서비스 혜택 등을 앞세운 결합형 통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계약의 해지와 가입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보급 확대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기 시작하여 망 과부하에 따른 통신장애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유형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 불공정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유료방송의 도입에 따른 이용자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보다는 품질 향상이나 요금 인하 외에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 등의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개방형 생태계 확산 및 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및 법제화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사후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자보호시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오픈마켓 등의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가. 방송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반 조성

1)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및 법제화

위원회는 방송시장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11년 7월 14일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관련 규정의 미비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방송시장 사후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2012년도에 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12년 1월 15일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경쟁 상황평가제도 도입, 방송분쟁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법, 시행령, 고시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법령의 시행에 따라 6가지의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시행령을 통해 다시 24가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6가지 금지행위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중단·거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에 관한 내용 등을 주요 핵심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지상파·종합유선 방송국(SO)·종합 편성 방송채널(PP) 등에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였다(<표 III-35> 참조).

한편, 이러한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및 법제화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으로 한정되었던 분쟁 조정 대상이 IPTV 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IPTV콘텐츠의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되어 건전한 방송시장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추가로 다양한 방송분쟁 조정제도를 정비하여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도에 방송시장 금지 행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법 개정 후속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표 III-35> 방송법상 금지행위 세부유형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 채널·프로그램 제공, 필수설비 접근 거부, 채널편성 변경 등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다른 방송사업자 등이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II.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III. 방송시청의 방해 등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단체계약 체결을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한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과다한 이익제공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IV. 부당한 시청자 차별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장기, 다량, 가입전환 또는 가입미전환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제5장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시청자 정보 보호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결합판매 시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부당하게 시청자 차별
V. 이용약관 위반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VI.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기타	위원회는 위 I.~VI.까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 금지행위의 기준을 고시 할 수 있음

2) 방송통신 사후규제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방송통신서비스의 금지행위 규제 도입에 따라 2012년도에는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전규제 완화 및 사업자간 경쟁 심화, 신규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 유형이 점차 복잡·다양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이용자 보호시책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하여 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모색하였다.

첫째, 방송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 등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였다.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현행·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에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관련 조항을 인용 조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자료 등 제출명령, 시정조치안 작성, 이의신청 방법 등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에 「방송법」 금지행위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동향을 분석·활용하여 사전·사후규제 체계화 및 제도개선 기반을 조성하여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방송시장조사과를 신설(2012년 6월)하였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예시 및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2년 5월)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과 관련된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여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여부를 예측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2년 7월)하였다.

셋째,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채널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2년 7월)하였다. 이를 통해, 지상파 디지털전

환 정책에 편승한 종합유선방송국 (SO)사업자들의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행위 관련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2012년 9월)하였다.

이처럼 위원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시장 사후규제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금지행위 관련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사업자들의 제도 도입 및 취지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업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시장의 금지행위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제재수단 구체화를 위한 세부기준 연구(2012년 12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방송·통신 시장의 정책동향, 시장별 경쟁상황, 사회적 이슈 등 전반적인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사후규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표 III-36> 참조).

<표 III-36>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고시 개정 관련 통계·사례조사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방송시장 불공정행위·시청자권익침해 행위 등 판단 세부기준 연구
– 내용 : 금지행위 관련 고시 개정 관련, 금지행위 업무처리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이용자보호국 소관 사후규제제도(금지행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조사

구분	금지행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근거조항	법 제85조의2	법 제35조	법 제35조의3
제도취지	방송시장 공정경쟁, 시청자 이익보호	시청자권익증진 시청자불만처리	사업자 간의 분쟁
규제범위	방송사업자 및 제3자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구속력	높음(제재수단 보유)	낮음(심의 후 건의, 의견제시)	높음(조정성립 시 화해와 동일)
파급력	높음(시장상황에 영향)	낮음(신청자에 국한)	낮음(분쟁조정 신청자에 국한)

- 결과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사-시청자의 관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방송사의 관계에 한정되므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계는 상호 독립적임. 금지행위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모두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행위는 위법성을 전제로 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사실상 금지행위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역시 독립적임

나. 이용자 보호시책 강화

1)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리 증진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장애발생 시 손해배상 절차 및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보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감소 및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통신서비스 계약의 해지절차에 관한 이용자 불만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용계약의 해지절차를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정(2012년 9월)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이용약관과 민원 등을 분석(2012년 4~6월)하였으며, 인터넷(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추진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계약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는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통신사업자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군입대, 장기입원, 해외체류 등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하였다. 또한, 임대장비 회수기간도 이용자와 사업자간 정하도록 하고 회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명의자 사망시 위약금을 당연히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불가로 해지하는 경우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 시 타사 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확인하여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넷째, 060 전화정보서비스 심의업무 및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시스템²²⁾을 구축·운영(2012년 1월)하고, 주요 심의업무 절차를 개선(2012년 5월)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홍보(2012년 3월)하여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다(<그림 III-27> 참조).

22) 전화정보사업자(CP, 약 362개)가 음성으로 제공하는 060서비스의 필수사항 고지 및 성인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

<그림 III-27> 060 전화정보서비스 전화등록 심의절차 제도개선



<표 III-37>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 전문

- 제 31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 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희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과 기술 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 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부 손해배상청구 연락처는 홈페이지 <http://www.tworld.co.kr> 참고)

다섯째, 이동전화 장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 발생 피해보상 실태 및 해외사례 조사(2012년 3월)를 실시하였으며,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상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망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동전화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2012년 6월)하였다(<표 III-37> 참조).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 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결합상품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인정되고, 이 경우, 계약전부를 해지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 기준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사업자는 무조건 경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표 III-38> 참조).

<표 -3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주요내용

- | |
|--|
| ① 결합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
| - 협의·과장 등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치행위 금지 |
| - 계약 체결 시 할인율과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 |
| -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인정 |
| ② 결합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
| - 이용 중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
| - 계약 시 약속한 서비스 품질기준 유지 의무 |
| ③ 결합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
| -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 불능 시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 인정(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권 제한함) |
| -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 불능 시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함(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 남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결합 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로 함) |
| -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해지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 -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함 |

2)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이용정보 개선

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시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였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LTE 커버리지를 표기할 것을 명령(2012년 3월)함으로써 가입자들은 LTE 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고, LTE 서비스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동전화 해외로밍서비스의 요금 및 사업자를 이용자가 한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2012년 4월)을 통하여 방송통신 이용정보 제공 수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통신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2012년 5월)하고, 개선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2012년 10월)을 실시하여 이용요금 청구 관련 민원 해소에 노력하였다(<표 III-39> 참조).

<표 III-39>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정보 제도개선

- LTE 커버리지 사전고지 제도 시행(2012년 3월)
 - LTE 음영지역 사전설명 등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자 보호
-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2012년 3~5월)
 -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요금비교 자료, 국제사업자별 로밍요금 비교, 국가별 요금 시뮬레이션, 해외로밍 서비스 가입절차 강화 등
- 요금고지서 개선(2012년 5월)을 통한 민원 감소 및 이용자 해지권 보장, 선택권 제고, 시각장애인 편의성 제고
 - 예상 해지비용(3개월에 한번씩), 약정기간 기산일·만료일 등 해지정보와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설구입가 등 단말기 가격 정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고지서 제공 등 요금고지서 개선(2012년 5월)

한편, 위원회는 장애인, 고령층, 주한 외국인 등의 소외계층 증가추세에 맞추어 소외계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표 III-40> 참조).

<표 III-40> 취약계층 증가 추세

(단위 : 만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고령층	459	481	502	519	536
장애인	197	211	225	243	251
결혼이주자	9	11	12	13	14

* 출처 :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첫째,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연중 운영하여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관련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미디어 활용교육 정보제공 게시판을 신설(2012년 3월)하였고, ‘서비스별 주요 상품 비교’ 정보제공 콘텐츠 신설(2012년 5월)로 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IPTV 요금상품 비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하였다.

둘째, 계층별 방송통신명예기자단(12명)을 운영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 이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이용자목소리 게시판 게재, 8건)하였으며, 해외 이용자 보호 동향분석 및 시사점을 게재(해외 이용자 정보 게시판 게재, 6건)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증진에 기여하였다.

셋째, 고령층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 피해예방 강사단’을 구성(2012년 4월)하여 전국 200여개의 노인 종합복지관 회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50 회 교육(2012년 5~11월)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예방 리플렛을 제작·보급하여 스마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주한 외국인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화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예방법 등을 담은 다국어²³⁾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보급(2012년 5월)하고 피해예방 및 활용 교육,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진(2012년 4월)함으로써 주한 외국인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3) 스마트폰 오픈마켓 민원해소

위원회는 개방형 생태계의 도래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오픈 마켓 시장에서 모바일콘텐츠 결제 등의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콘텐츠 고지 강화, 결제 시 인증절차 마련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2012년 6월)하였다.

4) 이용자보호 환경 개선

위원회는 지금까지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요금고지, 품질평가 등의 정책현안을 식별하고 이용자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 등 가입자가 적은 사업자의 요금고지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특성에 따른 사업자간 이견으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요금고지서가 제공되도록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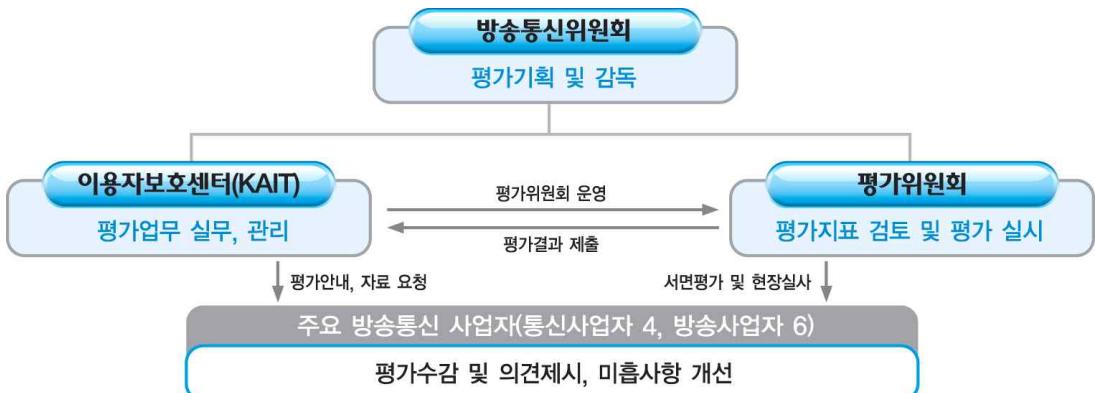
둘째, 스마트 기기 확산 등 급변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중장기적인 피해예방 교육 및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과 활성방안을 마련(2012년 12월)하였다. 또한, 이용자 보호 수준 평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모델을 빌굴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2012년 12월)하였다.

셋째,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ARS시스템 (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자동 응답시스템)의 복잡한 이용방법과 요금부담 등으로 이용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발표(2012년 2월)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ARS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유도하였다. 2011년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상담원 연결기능, 메뉴 표준화, 이용요금 등

23) 출신비중을 고려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등으로 제작하여 활용도 제고

이 공공부문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우수한 AR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자체(버스정보안내시스템), 제조업, 운수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ARS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2012년 2월)하여 ARS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전년도 평가결과 대비 개선 폭이 큰 4개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2012년 4월)하였다.

<그림 III-28> 이용자보호 업무 추진체계



넷째,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품질 개선 유도와 이용자에게 향상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2011년도 결과를 발표(2012년 4월)하였다. 서비스별 품질 평가 결과, 이동전화의 통화성공률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S(매우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농어촌지역 중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일부지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3G, Wi-Fi, WiBro)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업자 자체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용자의 영상체감만족도와 채널전환시간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한 유료 디지털방송(IPTV, DCATV, 위성)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며 국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1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수준이 높은 분야는 사업자 자율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최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같은 신규 및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도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III-41> 참조).

특히, 품질평가에 대한 결과를 이용자보호 관련 정보 게시 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

(<http://www.wiseuser.go.kr>)’를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수준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41> 서비스별 품질개선 현황

서비스	품질미흡지역 감소			통화성공률(3G 음성) 및 망속도 개선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3G 음성	223개	10개	4개	97.1%	98.3%	98.5%
3G 데이터	304개	7개	0개	1.3Mbps	1.7Mbps	1.9Mbps
W-iFi	–	–	–	–	9.6Mbps	11.3Mbps
초고속인터넷	198개	13개	0개	90Mbps	89Mbps	94Mbps

다. 방송통신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강화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는 방송통신 분쟁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 분쟁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2012년 1월 16일, 방송3사(KBS·MBC·SBS)와 CJ헬로비전 간의 재송신 협상 협의에 따라 전국 84개 케이블TV에서 중단되었던 KBS-2TV 방송이 정상화되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의거하여 여타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송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동일한 분쟁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는 ‘직권 조정’, ‘재정’ 제도 도입을 통한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및 방송 중단 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을 의결하였다(2012년 2월)(<표 III-42> 참조). 동시에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시청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였다.

<표 III-42>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분류	내용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현행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충 절차 폐지와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의 근거 및 방송분쟁 관련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 마련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재송신 분쟁으로 야기된 방송중단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제도개선	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를 폐지

한편, 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쟁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던 검색광고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표준약관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정립하였다.

검색광고 시장은 월 10~2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분쟁조정 및 상담건수는 총 440건 중에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한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주체가 되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하였다. 특히, 표준계약서·약관은 주요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동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5.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 방송통신 해외 정보제공

위원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지만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및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제도, 시장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급 속도로 변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해외 정보제공시스템 CONEX (www.conex.or.kr)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국가 32개, 정보수요국가 22개 등 총 54개국의 스마트4G, 인터넷기반TV,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등 방송통신 10개 품목에 대한 정책과 사업자 동향 등 심층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모바일 웹(<http://m.conex.or.kr>)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무선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CONEX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색광고, 퀴즈 이벤트, SNS 연동 등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 해외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3> 2012년도 정보제공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대륙	해외진출 유망국가 (32개)	정보수요 국가 (22개)	대상품목 (10개)
아시아/ 태평양	말레이,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4G· 한국형모바일TV
미주/ 대양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폐루, 호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기반TV·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서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유선통신
동유럽/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 전파관리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남아공, 르완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서비스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CONEX)

2) 해외 로드쇼 개최

로드쇼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 등을 대상으로 전략국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계 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한 개최 지역 선정 및 방송통신 전반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였다. 2012년에는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지역, 중남미, 일본, 동남아지역 등 주요 전략국가에서 융합 로드쇼를 총 6회 개최하였다. 2012년에 실시한 해외 로드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4> 2012년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 로드쇼 개최 실적

구분	일자	장소	참여기업(분야)
1	5월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A&D엔지니어링, KT(전파관리시스템), 디라직(PA), 세이퍼존(정보보호), LG CNS(IPTV), 현대U&I(재난방지솔루션), 에코포스(LED), 코발트레이(태블릿PC), PKB월드(IPTV)
2	5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	A&D엔지니어링, KT(전파관리시스템), 디라직(PA), 세이퍼존(정보보호), LG CNS(IPTV), 에코포스(LED), 코발트레이(태블릿PC), PKB월드(IPTV)
3	9월 11일~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 이레스	이미지넥스트(영상시스템), 정직한기술(멀티미디어S/W), 다크텍, 에코포스(모바일 주변기기), 다림비전(화상회의시스템)
4	9월 19일	일본 동경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레몬, 다비오, 망고앱스, 말랑스튜디오, 앱포스터, 엔타즈, 옴니텔, 인사이트미디어, 코튼, 큐앤플브, 페타프레임(모바일앱)
5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큐앤플브(NFC솔루션), D2S(방송시스템), 한드림넷(네트워크보안), 갤럭시아컴즈(IPTV), 선명전자통신(보안장비), 래피드정보통신(디지털사운드시스템), 솔박스(클라우드), 갭소프트(디지털사이니지), 네오콤(물리보안), 파이오링크(정보보호), 포엔티(광전송장치), OJ월드(어플리케이션서비스)
6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	큐앤플브(NFC솔루션), D2S(방송시스템), 한드림넷(네트워크보안), 3D아이피쳐스(3D영상), 갤럭시아컴즈(IPTV), 세이퍼존(정보보호), 선명전자통신(보안장비), 래피드정보통신(디지털사운드시스템), 솔박스(클라우드), 갭소프트(디지털사이니지), 네오콤(물리보안), 파이오링크(정보보호), 포엔티(광전송장치), 다산네트웍스(FTTH), OJ월드(어플리케이션서비스)

<그림 III-29>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 로드쇼



3) 방송통신 해외 컨설팅 지원

위원회는 방송통신, 정보보호 및 ICT분야 등 우리 방송통신 기술·서비스에 적극적이고 실제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지 정부 및 기업에게 동 사업의 타당성 분석(F/S; Feasibility Study)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사업을 총 4회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과 시험 서비스를 통하여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기술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 실시한 해외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5> 2012년도 해외 컨설팅 추진 실적

제안사	대상국	프로젝트	해외파트너	사업기간
인터시큐테크	르완다	(F/S) 정부보안	개발위원회	4월 25일~10월 24일
A&D Eng	카자흐스탄	(F/S) 전파관리시스템	전기통신기술 지원분석센터	4월 25일~9월 25일
위니텍	벨라루스	(F/S) 긴급구조시스템	비상사태부	7월 11일~12월 31일
나노트로닉스	이라크	(F/S) 정부위성통신망	통신부	7월 13일~11월 30일

4) 방송통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수출 상담 지원

위원회는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방송통신 유망 중소기업을 공모·선정하여 진출 희망 국가에 정통한 컨설팅기업과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정보, 해외시장조사, 인증정보, 계약

및 법률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고충 해소를 위해 부산, 인천 등지에서 ‘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점차 개최지를 확대할 예정이다(<표 III-46> 참조).

<표 III-46> 2012년도 방송통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구 분	지원 내용
수출 지원	· 타켓 국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
기술 제휴	·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해외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수출 무역대행	·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판로개척 대행
현지법인 대행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원활히 하기위한 해외 현지 법인업무 대행
수출역량 컨설팅	· 중소기업 수출구조(역량)분석, 마케팅전략, 시장진출 실행계획 수립
기타 컨설팅	· 상기분야별 지원사항외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업 (단, 방송통신 해외진출 컨설팅기업역량 범위내에서 신청기업과 합의된 사업)

5) 핵안보정상회의 ICT 홍보관 운영

2012년 3월에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정상, 기자 및 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상회의장 1층 미디어센터 내에 주제별로 홍보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 ICT 홍보관은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방송, 통신, 방송통신 융합을 주제로 LTE Booth, 키봇2, 스마트홈패드 및 u-Cloud Music 서비스, 첨단 3D방송 등을 전시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시연을 통해 스마트 라이프를 체험하고, 기자들이 휴게시설을 겸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홍보관을 조성한 결과, 내국인 996명, 외국인 160명등 총 32개국 1,156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ICT 서비스들을 체험하였다.

6)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위원회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오세아니아, CIS, 유럽, 중동에서 총 4회 개최하였다. 2012년도 사업의 특징은 우리 방송콘텐츠의 불모지였던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CIS(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유럽(헝가리, 영국), 중동(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등에서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을 지

원한 것이다. 이는 ‘K-POP’ 등 전 세계적 신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콘텐츠 진출시장의 다변화 및 진출확대를 위한 적기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2년 쇼케이스에는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채널A, CJ E&M, 아리랑TV, YTN, 현대미디어, 방송대학TV, CU미디어 등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PP 방송사업자들이 참여하였다. 2012년 쇼케이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현지 방송사 방문·면담, 방송프로그램 상영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네트워킹 행사, 한류 문화체험 행사 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한류화 산에 기여하였다. ‘오세아니아 쇼케이스’는 한국의 방송콘텐츠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월 5~11일간 개최하여 635,500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였다. ‘CIS 쇼케이스’는 CIS 지역 한류 확산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5월 21~26일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하여 468,100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표 III-47> 참조).

<그림 III-30> 2012년 CIS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표 III-47> 2012년도 해외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실적

구 분	장 소	일 시	내 용	성 과
오세아니아 쇼케이스	호주, 뉴질랜드	2월 5~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YTN, CU미디어 등 총 7개사 참가, 총 55건 상담 · 호주 ABC, SBS 면담 및 뉴질랜드 TVNZ, SKY TV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액 635,500불 달성 - 호주 31만달러, 뉴질랜드 32만달러
CIS 쇼케이스	카자흐스탄 , 우크라이나	5월 21~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아리랑TV, KCTA 등 총 5개사 참가 총 51건 상담 · 카자흐스탄 Khabar TV, Kazakhst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액 468,100달러 달성 - 카자흐스탄 43만달러, 우크라이나 3만달러

			TV 면담 및 우크라이나 NTU, INTER 면담	
유럽 쇼케이스	헝가리, 영국	6월 25일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CJ E&M, 아리랑TV, YTN, CU미디어, 대한미디어월드 등 10개사 참가 총 122건 상담 · 헝가리 MTV,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NMHH) 및 영국 ITV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액 1,208,590달러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101만달러, 영국 19만달러
중동 쇼케이스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11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채널A, 현대미디어, 방송대학TV, Skylife, KCTA 참가 총 165건 상담 · 불가리아 bTV, 터키 Kanal D, 요르단 JRTV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액 1,564,830불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39만달러 터키 67만달러, 요르단 : 49만 달러

나. 국제 ICT 협력활동 주도

1) 국제기구 의제대응 체계 강화

위원회는 OECD, ITU 등 다자 국제기구 및 APT,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등 UN 산하기구의 핵심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기술 표준화에 우리 기술 반영 등을 위해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및 산하작업반 회의, 무역위원회(TC) 회의에 참석하여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정례회의에서는 인터넷경제 아웃룩, 무선인터넷 요금 비교, 실버경제와 ICT, 봇넷²⁴⁾과 정보보호 관련 보고서에 우리측 정책적 성공사례를 반영하는 등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TU의 6선 이사국이자 ITU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의 차기회의(2014년) 개최국이 되어 ITU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위상과 이에 따른 책임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동안 ITU 이사회(7월 3~14일) 및 각종 이사회 작업반(3~12월)에 참가하

24) 봇넷(Botnet)은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악성코드 봇(Bot)에 감염되어 해커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좀비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임

여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위원회는 2012년도에도 각종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64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 (프랑스 파리, 10월 23~24일) 우리나라의 고상원 박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6년 연속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제 ICT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33차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10월 18~19일) 및 제47차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 and Services Policy) 회의(12월 10~11일) 제32차 정보경제작업반(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회의(12월 7~8일)에서는 우리나라 정태명 교수(성균관대)와 이내찬 교수(한성대), 남상열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가 각각 2013년도 부의장으로 재선출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CCP와 ICCP 산하 4개 작업반 전체에서 부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번 의장단 진출을 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각 작업반의 국제적인 논의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U에서는 전파부문(IU-R), 전기통신 표준화부문(IU-T) 및 전기통신 개발부문 (ITU-D; 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등 3개 부문 총 19개 연구반(Study Group)에서 14명의 의장단이 활동하고 있다.

첫째, ITU-R 부문에서는 2012년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 전파통신 총회(RA; Radio Assembly)에서 WRC 준비회의 (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전파 통신자문그룹(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연구반6(방송), 연구반7 (과학)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규진 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 성향숙 연구관, 김경미 연구관, 한국천문연구원 정현수 박사가 의장단으로 재선출 되었다.

둘째, ITU-T 부문에서는 연구반 2(번호 및 망관리), 연구반 3(과금 및 요금정책), 연구반 5(전자파관리/환경), 연구반 11(신호방식), 연구반 12(서비스품질), 연구반 13(미래네트워크), 연구반 16(멀티미디어), 연구반 17(정보보호) 및 아시아태평양 과금 그룹에서 서울전파관리소의 강성철 전파업무2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기식 박사, 이병남 박사, 이형호 박사, 이재섭 박사, KT의 이인섭 부장과 김형수 부장, 한국 외대의 정성호 교수, 순천향대의 염홍열 교수가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11월 20~29일까지 두바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2 세계전기 통신표준화 총회(WTSA-12;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12)’에서 우리나라는 ITU-T 차기 회기 의장단에 진출하였고, ITU-T의 연구반 의장 및 부의장 10석, 전략검토위원회 부의장 1석

등 총 11석이 의장단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셋째, ITU-D 부문에서는 전기통신개발 자문위원회(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에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KISDI의 서보현 박사가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ITU의 3개 부문 내 의장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전파, 정보통신 표준화,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슈 논의를 주도하며, ITU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 하고 있다.

2) 국제기구 회의 개최 및 참가

위원회는 2010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 차기 2014년 ITU 전권 회의(PP-14; 2014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를 유치한 바 있다. ITU 전권회의의 유치 이후, 위원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전권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1년 5~8월에는 국내 및 ITU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개최도시를 부산광역시로 확정하였으며, 2011년 12월 'ITU 전권회의 준비 TF'를 발족 시켰다. 2012년 7월 「2014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 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별도 정원을 협의하고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을 발족하여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III-31>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위원회는 전권회의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개최도시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2년 1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ITU 전권회의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 하였다(<표 III-48> 참조).

〈표 III-48〉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추진 과정

시기	내용
2009년 9월	2014년 ITU 전권회의 유치타당성 연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통과
2009년 9월	ITU에 한국의 ITU 전권회의 유치의향서 전달
2009년 10월~2010년 10월	ITU 전권회의 유치를 위한 한국, ITU 실무자간 업무협의
2010년 10월	2010년 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의 유치의사 공식 발표, 회원국 승인
2011년 5월, 8월	ITU 전권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국내 선정위원회 및 ITU 실사 개최, 개최도시 선정
2011년 10월	ITU 이사회에서 2014년 전권회의 개최도시 및 일정 승인
2011년 12월	ITU 전권회의 준비 TF 발족
2012년 4월	ITU 전권회의 준비팀 발족
2012년 7월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대통령훈령 시행
2012년 10월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2012년 12월	제1차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2014년 ITU 전권회의의 국내개최는 세계 193개국 150명 이상의 장차관급 대표단을 포함한 3,0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ICT 발전상 및 미래비전 등을 보여줌으로써 ICT 외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권회의 기간 동안 ICT 정상회의, 아시아 최고 ICT 전시회 및 한류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ICT 기업과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ITU 전권회의가 이처럼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기업 진출 지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는 인식 하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13~18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Telecom World 2012’ 전시 행사에 한국홍보관을 구성하여 방송, 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를 시연·홍보하였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한전선 등 총 8개사가 참여, 기업관(3개 테마, 통신, 방송, 융합), 회의실, ITU 전권회의 홍보부스 등 총 13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위상을 알리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차기 전권회의(PP-14) 개최국으로 국제회의 회원국과 국내외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산업의 인지도 및 국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III-49> ITU 텔레콤 전시회 한국관 운영실적

년도	추진경위
2008년	ITU 텔레콤 아시아(방콕) 및 아프리카(카이로) 전시회 한국관 운영(총 18개사 25개 부스)
2009년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제네바) 한국관 운영(8개사 11개 부스)
2010년	ITU 텔레콤 아메리카(아르헨티나) 개최 취소
2011년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제네바) 한국관 운영(7개사 10개 부스)
2012년	ITU 텔레콤 월드 전시회(두바이) 한국관 운영(8개사 13개 부스)

* 2010년 행사는 취소되어 개최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보 통신 실무그룹(2012년 4월, 7월), 한-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통신장관회의(2012년 8월, 11월), UN ESCAP총회(2012년 5월) 등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정보통신 정책논의에 참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11월 제 36차 APT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정책발표 및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관리위원회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APT에 대한 기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역내 공동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새로운 EBC-K(Extra Budgetary Contribution-Korea, 한국특별분담금)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EBC-K는 기존의 EBC를 확대하고 회원국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한국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국으로서 제1차 APT 전권회의 준비회의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준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2013년 4월초 개최를 확정했으며, 2012년 한해 동안 APT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핵심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APT 내의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회원규정 논의를 위한 2013년 규정 개정 작업반 6, 7, 8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한-ASEAN 통신장관회의 (TELMIN; 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의 경우, 2012년도에는 제8차 한-ASEAN 고위관료회의 및 제7차 한-ASEAN 통신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제7차 한-ASEAN 통신장관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한국의 주요 ICT 정책현황 및 성과에 대한 소개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추진을 위한 ICT 마스터플랜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ASEAN과의 ICT 협력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2011년 제6차 한-ASEAN 통신장관회의에서 한-ASEAN ICT 협력프로젝트로 채택된 ‘한-ASEAN ICT 파트너쉽 협력사업’의 1차년도 주요 실적과 향후 협력계획을 발표하였다. ‘한-ASEAN ICT 파트너쉽 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인프라 활용 협력, 신기술 및 서비스 확산 협력, 역량배양 협

력과 지식공유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제45차, 46차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TE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우리의 선진적인 ICT 정책을 홍보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APEC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APEC TEL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 하였다. 차세대 네트워크 정책, 소셜 미디어 정책,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등을 소개하여 APEC 회원체의 관심을 널리 확보하고, 규제 원탁회의에서 한국의 모바일 번호 이동성 모범 사례를 발표해 홍보를 하였다. 그와 더불어, ICT 역기능 방지 교육을 위한 APEC 훈련 프로그램 사업 등의 진행현황 및 개최결과를 널리 홍보하고, 회원국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 역내 방송 분야 국제기구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 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7월 26~28일)된 2012 AIBD 11차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집행이사국자격으로 신규 집행 이사국 및 집행이사회 의장 등을 선출하였고, AIBD 사무국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회원국 들의 수요 파악, 위원회의 개도국 방송 전문 인력을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램 지원 및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진출 확대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경에서 제1차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대표간 양자 면담을 가졌다. 한중 간 인터넷 분야의 이해증진과 협력촉진, 양국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을 추진한 이 회의에 한국측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전문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가했고, 중국측은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주임(장관급)을 수석 대표로 부주임(차관급) 외에 문화부, 국무원, 공안부,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외교부, 국가인터넷 긴급센터(CNCERT;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 Coordination Center of China) 등 정부관계자와 기업체, 학계 등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이 매년 번갈아가며 행사를 개최한다.

이 외에, 위원회는 2013년 한국에서 개최될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의제 준비를 위해 유관부처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제 준비반을 구성하고 매월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의제 분석 및 신규의제를 발굴하는 등 내실있는 총회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국제 ICT 발전지수 제고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2년 10월 11일에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 ICT-Development Index)에서 조사 대상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 정도,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도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영국은 9위, 미국은 15위였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8위, 홍콩 11위, 싱가포르 12위, 마카오 14위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위 내에 5개국만 랭크되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및 활용력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접근성(11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지표별로는 유선전화 회선 수(3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1위),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3위),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4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1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표 III-50> 참조).

<표 III-50> 2012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부 문	세 부 지 표	지표순위
ICT 접근성 (11위)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3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수	66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70
	④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1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
ICT 이용도 (1위)	⑥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비율	11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4
	⑧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3
ICT 활용력 (1위)	⑨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40
	⑩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
	⑪ 성인 문해율	16

4) 정부간 글로벌 협력 확대

위원회는 세계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및 미래 방송통신 산업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2년 5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17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방송 통신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표 III-51> 참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5월 15~16일까지, ‘월드IT쇼’를 15~18일까지 개최하였다. 제8차 방송통신장관회의는 ‘연결된 사

회에서의 새로운 경제’라는 주제로 최근 모바일 세상의 확대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onnectivity(소통·연계성)와 관련, 이를 활용한 새로운 IT 시장 창출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데 그 뜻을 함께 하였다. 더불어, 5월 15~16일까지 ‘스마트 방송통신 : 혁명과 진화(Smart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Evolution)’라는 주제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국내외 7개국에서 방송·통신 정책 입안자, 기업 대표들 및 전문가 36명이 연사로 참가하여 각국의 방송·통신 정책과 산업동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일반참가자는 1,597여명에 달하였다(<표 III-52> 참조).

<표 III-51> 방송통신 장관회의 참석국가

구 분	참석 국가	계
장관급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 우간다,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호주	12개국
차관급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캐냐, 베네수엘라	5개국

<표 III-52>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개최 실적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행사명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09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0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1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12
주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구KIIC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형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IT쇼(전시회) 연계 개최	G20 정상회의와 연계 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IT쇼(전시회) 연계 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 및 월드IT쇼(전시회) 연계 개최
논의주제	미디어 컨버전스시대의 트랜드 분석 및 향후 기업의 방향과 비전 제시	Digital Future of Smart Society	Smart Big Bang ; New Opportunities	Smart Communications : Revolution and Evolution
규모	세션수	12개	15개	10개
	참관자	2,209명	2,200명	1,441명
	참관자 만족도	90%	90%	91%
				84%

그리고, 위원회는 특정 국가와의 지역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하나는 한국·호주·뉴질랜드 장관급 회담인 ‘KANZ Broadband Summit’이다. ‘KANZ(Korea Australia New Zealand)’는 2003년 한국-호주 Broadband Summit으로 개최되었으며, 2차 회의 때부터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3개국의 지역 회의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제7차 KANZ Broadband Summit’이 방송통신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5월 14~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3국 장관이 모두 참석 하여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한국·호주·뉴질랜드 3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 및 기술 관련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월드IT쇼’와 연계하여 3국 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마련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당 지역 진출을 지원하였다.

<그림 III-32> KANZ Broadband Summit 2012



두 번째로, 제7차 한-ASEAN 통신장관회의와 이와 연계한 ‘한·중·일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국의 시궈화 공업정보화부 차관, 일본의 야마카와 테츠오 총무성 차관이 참여하여 협력약정의 개정을 비롯한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기존 8개로 나누어진 워킹 그룹을 재구성하여 총괄하는 실무협의체와 이를 통해 운영되는 6대 협력 분야를 정의하였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포럼 등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협력 및 글로벌 기업의 초기시장 선점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존 민간 표준화 협력활동을 정부간 협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5)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위원회는 국제 방송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2012년 총 4개사에 4편의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 하였다. 특

히,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어 EU 27개국과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2년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EU(27개국) 등 총 33개국과 공동 제작이 가능하여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 제작의 다원화가 가능해졌다.

위와 같이 진행된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중 아시아의 미디어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동 제작한 ‘싱가포르 맛객, 한식을 만나다’는 한국의셰프들이 싱가포르 요리학교를 방문하여 한식을 특별 강의를 하는 등 싱가포르의 우수한 요리사를 선정하고 싱가포르에서 진짜 ‘한국의 맛’을 하나씩 배워가는 에피소드를 그리며 한식을 세계화하는 문화 외교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 벨기에, 스웨덴 3국이 공동제작한 ‘State of Play’는 한국의 프로게이머의 세계를 주제로, 프로게이머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2011년 유럽연합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원작으로 선정되었고,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마켓인 IDFA(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포럼에 선보이자마자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 전 세계 5개국 방송사에 선판매 될 정도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K-Pop Star Hunt’는 싱가포르와 공동제작한 작품으로 싱가포르 뿐만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에서 10,000명이 넘는 온라인 응모를 통해 현지 로컬 오디션 진행 및 선발된 아시아 재원들을 국내에서 최종 오디션을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대중음악에서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한류 열풍을 조명하고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와 공동으로 제작한 디자인 다큐멘터리 ‘데지그나레’는 자연중심, 인간중심, 실용성, 창의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북유럽 디자인을 조명하고 2012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어 조용한 혁명을 이끄는 핀란드와 북유럽 디자인 최강국인 덴마크를 취재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진정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해외 공동제작을 통해 프로그램 및 대상국가의 다원화를 도모하고, 특정 장르·지역에 편중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해외 유통구조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은 국가 간 쌍방향 교류 차원의 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고양, 한류의 지속 확산,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방송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기여 및 국내 방송기술 수준향상과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III-33>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싱가포르 맛객, 한식을 만난다’



State of Play

6) 국제기구 등과 협력 활동 확대

위원회는 World Bank, APCICT(Asian and Pacific Centre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센터), ITU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N 산하의 ICT 전문 교육기관인 APCICT와의 협력활동은 아태지역 ICT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포럼 및 정보보호·프라이버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방송통신 분야 개도국 인력양성 수행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월드뱅크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방송통신 기술·정책 지원, 정보보호 자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2년 3~12월까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보보호 워크숍’, 4월에는 ‘안티구아바부다 정보보호 및 전자정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칠레 정보보호 워크숍’, 12월에는 ‘콜롬비아 정보보호 워크숍’, 카자흐스탄 ‘ICT분야 일자리 창출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ITU 표준화 협력사업에서도 개도국의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해 라오스 우정 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에 협력의 일환으로 표준화 자문을 수행하고, 기술자문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수혜국 담당자가 연구방문 목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및 국내산업체·연구기관 등의 R&D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ITU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III-34> 국제기구 협력사업



다. 방송통신부분 통상협상 대응

1) FTA 협상

2008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확산되고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대변되는 다자무역 자유화의 한계가 드러나며 전 세계적으로 FTA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FTA 협상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 체제와 달리 서비스, 투자, 환경과 같은 최근 통상 환경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양자간에 심도 깊게 논의하기 때문에 방송통신 분야 협상을 제고하여 전략적·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환경 하에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통상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방송통신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 따라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필두로 총 9건의 협상을 타결하여 이 중 8건은 발효되었고, 7건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위원회는 FTA 협상 상대국의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제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협상에 참여하여, 전략적 진출 대상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III-53> 참조).

<표 III-5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구 분	건수	국가명
발효	8건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 ^{주1)} (2006년 9월), ASEAN(200년 5월), 인도(2010년 1월), EU(2011년 7월), 폐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협상타결	2건	콜롬비아(2012년 6월), 터키(2012년 8월 :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협상진행	7건	중국(2012년 10월 4차), 인도네시아(2012년 12월 2차), 캐나다(2008년 3월 13차), 베트남(2012년 9월 1차), 터키(2012년 9월 1차), 한중일(2012년 11월 개시선언), RCEP ^{주2)} (2012년 11월 개시선언)
협상준비· 공동연구	5건	일본(2004년 11월 6차), 멕시코(2008년 6월 2차), 호주(2010년 5월 5차), 뉴질랜드(2010년 5월 4차), GCC ^{주3)} (2009년 7월 3차)

* 터키는 2012년 8월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타결(서비스 및 투자 협상 진행중)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주 2)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FTA

주 3)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2011년 12월말부터 2012년 2월말까지 5차례 대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 이행점검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분야에서도 협정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 사항들에 대한 '상호 확인'이 이루어졌다.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5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측 박태호 통상 교섭본부장과 미측 론 커크(Ron Kirk) 무역 대표(USTR)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협정 발효(3월 15일) 2개월 후 개최된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향후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 체계를 성공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일부 분야별 위원회(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중소기업작업반)가 6월 7~8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미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 분야에 있어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표 III-54> 한·미 및 한·EU FTA 통신분야

구분		국내법 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 이후	한·EU FTA 개방수준
외국인 투자제한(기 간통신, KT·SKT 제외)	직접 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좌동
	간접 투자*	49%까지 가능	공익성 심사 통과시 100%까지 가능 (유예기간 2년)	좌동
국경간 공급 제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을 체결해야 함	좌동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를 면제(국내 지점간 위성 중계 제외)

*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투자하는 것

* 현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이상 지분 소유한 국내법인을 통해서는 49%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한미 FTA 결과에 따라 '공익성 심사' 통과시 100%까지 투자 가능(유예기간 2년)

<표 III-55> 한·미 및 한-EU 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구 분		국내법 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 이후
PP에 대한 외국인투자 (종편, 보도, 홈쇼핑 제외)	직접투자	49%까지 가능	49%까지 가능
	간접투자*	49%까지 가능	100%까지 가능 (유예기간 3년)
편성 쿼터	비지상파(SO·PP등)의 장르별 국내편성 쿼터	- 애니메이션 : 35% - 영화 : 25%	30% 20%
	수입물중 1개국 편성 쿼터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경우 각각 수입물 총량의 60%	80%로 상향

*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통해 PP에 투자하는 것

* 현재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50%이상 지분 소유한 국내법인을 통해서는 49%까지만 투자 가능하나,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시 100%까지 투자 가능(유예기간 3년)

2) WTO 협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결의에 의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후속협상인 DDA 협상이 출범한 아래 WTO 회원국들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 확대를 논의하였다.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고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WTO DDA 협상 동향파악과 적극적인 협상대응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협상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였다. 위원회는 우리의 주

요 교역국에 대한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제도 분석을 통해 협상의제를 발굴하고 복수국 및 양자 협상에 참여하여 방송통신 분야 시장개방 협상에 대응 하였고, ICT 서비스 교역원칙, 국제 모바일 로밍요금, 통신서비스 및 시청각서비스 분류 체계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대변하였다. 한편,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무역정책검토보고서(TPR; Trade Policy Review)를 작성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동 검토회의와 관련 하여 위원회는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WTO측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리지 않도록 대응하여 통상분쟁 가능성은 사전에 예방하였다.

라.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

1) 개도국 방송통신 초청연수 사업

위원회는 개도국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하여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이를 통해 ICT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1998년 APT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으로 출발하여 2012년으로 15년째를 맞이하였다. 2012년에는 방송콘텐츠 정책 및 유통과정,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과정 등 17개 과정을 운영하여, 93개국 349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였다. 그리고, 연수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몽골 초청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지 동창회도 결성하였다. 특히, 초청연수 사업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연수생 DB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추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및 정부간 교류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방송통신 인적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III-56> 참조).

<표 III-56> 초청연수 사업실적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가수	74	48	74	85	93	374
과정수	27	23	21	21	17	109
연수생수	415	339	450	439	349	1,992
예산(백만원)	4,000	2,900	2,900	2,450	2,450	14,700

<그림 III-35> 초청연수 사업실적



2) 개도국 방송장비지원 사업

위원회는 2007년부터 저개발 국가 중 FTA 또는 방송협력 MOU 체결국을 중심으로 방송장비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국가간 방송분야 교류 협력을 증진하였다. 우리나라 방송장비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방송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지상파TV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됨에 (2012년 12월 31일) 따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아날로그 장비 등 중고 장비도 지원계획에 포함하였다. 중고 아날로그 방송장비 지원을 위해 KBS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지, 몽골, 파푸아뉴기니, 부탄, 네팔 등 7개국에 중계차 위주의 중고 장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한 방송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는 미얀마에 국산기술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장비를 지원하였다. 다양한 방송데이터를 생성, 보관, 유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편집, 색인, 보관을 통합 관리하는 국산 솔루션을 지원함으로써 미얀마의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역내 방송 분야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표 III-57> 참조).

<그림 III-36> 개도국 방송장비전달



<표 III-57>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실적

연도	지원국	지원 장비
2007년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오디오 레코더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8년	라오스	SD급 카메라 1식, 위성 업컨버터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09년	캄보디아	SD급 카메라 1식, 비디오 스위치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10년	캄보디아 라오스	H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SD급 카메라 1식, 기타 부대장비 등
2011년	통가 미얀마	재난방송용 안테나 1식 인코더, 디코더, HD-SD 변환기, 방송용 카메라
2012년	피지	소형중계차(중고)
	몽골	중형중계차(중고)
	파푸아뉴기니	소형중계차(중고)
	부탄	소형중계차(중고)
	네팔	오디오믹서(RNE) 등
	방글라데시	소형중계차(중고)
	키르기즈스탄	소형중계차(중고)
	미얀마	콘텐츠관리시스템(CMS)

3)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부터 개도국의 방송통신현황 분석과 한국의 통신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수혜국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정책자문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전문가 중장기 파견사업 대신 정책자문을 기준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정책자문 국가 중 필리핀은 전파관리 분야, 페루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분야, 네팔은 방송통신 융합 규제 분야, 인도 네시아는 정보보안 기술

정책 분야에 정책 자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책수립 경험이 풍부한 방송통신분야 퇴직관료들이 자문단의 정책전문가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추진의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폐루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주개발은행(IDB;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사업 연계 및 중남미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필리핀의 자문사례를 보면 전파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네팔의 경우는 방송통신 융합 등의 변화되는 환경에 적합한 통신규제체계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의 정보보안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형 방송통신 발전모델의 확산으로 인해 친한국적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마. 방송통신 남북협력 추진

남북간 직접교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위원회는 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추진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연구·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연구·발굴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방송부문의 남북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2011년 5월 기준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총 4회 회의 개최를 통해 남북간 우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연구·발굴하였다(<표 III-58> 참조).

<표 III-58> 2012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운영

구분	일자	내용
1차 회의	2월 2일	(보고안건) 2012년 교류추진위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안) (주제발표) 독일의 통신통합 사례와 시사점 (영상물 상영) 독일통일 스토리
2차 회의	4월 20일	(보고안건) 북한주민의 방송통신 활용실태 조사결과 (영상물 상영) 2011년 북한의 10대 인기상품
3차 회의	7월 4일	(보고안건) 통일 전후 방송통신부문의 정책과제 연구 (영상물 상영) 독일통일의 성공요인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수
4차 회의	10월 10일	(토의내용)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전망과 방향 (주제발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과제

2) 남북 방송통신 포럼 운영

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통신정책 변천과 인력양성,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및 특수경제지대법제 정비,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통일 이후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남북관계 현안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전망 관련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표 III-59> 참조).

<표 III-59> 2012년 남북 방송통신 포럼 운영

구분	일자	내용
1차 회의	3월 28일	• 북한 통신정책의 변천과 인력양성
2차 회의	6월 28일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및 특수경제지대법제 정비의 의미와 특징 •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3차 회의	9월 26일	• 통일전후 방송통신부문의 정책과제 연구
4차 회의	12월 26일	• 남북간 방송통신 전망 및 2013년도 기관별 사업 추진 방향

3) 남북 방송통신 학술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과의 공동 학술행사가 사실상 개최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측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 방송통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남북관계 전망과 부문별(방송,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III-37> 2012년 남북 방송통신 학술세미나



제3절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1.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가.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최근 방송통신환경은 융합을 넘어 스마트 환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스마트 환경은 통합 멀티플랫폼 환경을 이끌며 사업자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신생 서비스의 출현을 가속화시키고 사업자들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 산업에 자본 투자 확대를 유인하여 사업자들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점유율 규제가 실시되어 여론집중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제 요소들을 거둬들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규제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먼저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워크샵을 통해 개선안을 점검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견을 바탕으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규제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표 III-60> 참조).

<표 III-60>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주요 경과

-
- 2010. 3. ~ 2011. 6.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안 마련
 - 2011. 8.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
 - 2012. 2.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 2012. 2. ~ 2012. 4. 입법예고, 자체 규제심사
-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여론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적 보완 수단이 있는 중복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둘째,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셋째, 공청회 결과 이견이 없는 규제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시장의 팽창과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 및 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모니터 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부터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2년 1월에 개정된 「방송법」의 시행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4월, 총 9명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 법률, 회계,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4년 4월까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III-38>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위원 위촉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주관하고, 직접적인 조사와 연구는 조달청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한다. 2012년에 실시한 20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 편성 및 평가제도 개선

한-미 FTA의 발효,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등의 방송환경의 변

화로 인해, 이를 반영하는 방송편성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와 방송시장의 확대를 위해 편성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1) 방송편성제도 개선

위원회는 먼저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012년 2월 17일 의결하였다. 개정 고시안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개선,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 등이 있다.

위원회는 먼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이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총점(22점)의 60% 이상(14점)인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으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는 창작산업으로 변화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16점(30점 만점) 이상인 애니메이션’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수익분배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에 한정하였다(<표 III-61> 참조).

<표 III-6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을 위한 제작요소별 점수 기준

구 분	2D		3D		스톱모션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저작권/수익분배권	2	-	2	-	2	-
사전제작	12	14	10	14	10	14
제 작	11	12	13	12	13	12
후반제작	5	4	5	4	6	4

한편, 위원회는 2012년 7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대상사업자를 확대하였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대상 사업자를 기준의 지상파방송사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연간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이하 전문PP)로 확대하여 연간 약 29편(30분물, 26부작 기준)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은 종편PP의 경우 방송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연간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전문PP의 경우 50억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그리고, 기준의 가중치 부여 사례 등을 참고 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의 주시청 시간대 편성을 유도하였다(<표 III-62> 참조).

<표 III-6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적용비율

(단위: 억원, %)

종편PP	700 이상	700~600	600~500	500 미만
	1	0.7	0.5	0.3
전문PP	200 이상	150~200	100~150	50~100
	1	0.8	0.6	0.3
제외				

2)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와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 반영되고 있다.

가) 2012년도 방송평가 실시

위원회는 2012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였다. 2012년도 방송평가는 총 150개 사업자 339개 채널을 대상으로 2011년도 방송내용·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표 III-63> 참조).

<표 III-63> 2012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지상파			SO	위성		PP		합계
	TV	R	DMB		일반	DMB	보도	홈쇼핑	
사업자 수 (채널수)	46개+3개(DMB전용) (TV 64개, R 155개, DMB 19개)	94개	1개	-	1개	5개	150개 (339개)		

<표 III-64> 평가영역별 및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내용	프로그램 우수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 등을 평가
편성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사회기여 프로그램(어린이·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재난방송 등), 매체특성에 따른 편성의 적정성을 평가
운영	제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방송사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여부 등을 평가

2012년도 방송평가의 평가기준은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

당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이 크게 단순화된 반면, ‘경영진의 비전과 조직 관리 능력 등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방송 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항목은 신설되었다(<표 III-65> 참조).

<표 III-65> 방송평가 4차 개정 주요내용

- o 평가항목 간소화(전체항목 31개→10개, 세부척도 69개→35개)
- o (전체) ‘경영진의 비전과 조직관리 능력 등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방송 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항목 신설
- o (지상파TV)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항목 신설
- o (SO·위성·보도/홈쇼핑PP)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 신설
- o (홈쇼핑 PP)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항목 신설

2012년도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방송평가결과를 의결(2012년 11월 20일)하고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2013년 방송평가 기준 마련

위원회는 2011년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방송평가의 대상을 종편 PP까지 확대하였다. 2011년 12월 종편PP가 첫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도 방송분부터 종편PP에 대한 방송평가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 방송 평가 배점을 정하였다(<표 III-66> 참조).

<표 III-66>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방송평가 배점

구분	지상파	종편	보도PP
내용영역	300	210	120
편성영역	300	215	130
운영영역	300	275	250
합계	900	700	500

또한, 당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평가항목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의 배점은 지상파TV는 100점 (총점 900점에서 1,000점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50점(총점 500점에서 550점으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평가항목은 지상파TV의 경우 2013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2015년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국의 디지털전환 등으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방송장비 시장에서 방송장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관련 국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 운영 영역의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방송기술투자 평가’ 항목에 ‘인증제품 투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은 지상파TV 5점, 그 외 매체는 지상파TV의 2/3로 환산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이처럼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에 따라 2013년 방송평가에 적용할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2012년 6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라.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7월, 소유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은 소유제한 규

정 완화에 따라 여론독과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방송법」은 위원회 산하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 제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개정된 「방송법」 제35조의4를 근거로 2010년 3월에 구성된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5월, 제2기 미디어다양성위원들을 임명하였다. 제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정기 한양대 교수를 포함하여 4명의 각계 전문가들을 새로 위촉하고 1기 미디어다양성위원 중 4명의 연임을 통해 구성되었다. 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신문방송, 통계, 미디어경영,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2년이다.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 기준 및 방법의 결정, 미디어 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1기에서 수행해오던 업무를 이어받아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의 마무리 작업을 하였으며, 시청점유율 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1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검토, 2012년 시청점유율 조사 계획 수립,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심의·의결검토,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매체교환율을 통해 환산되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과 합산된다. 시청 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5일에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와 산정에 활용된 매체교환율을 발표하였다. 산정 대상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3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3개 채널이었다. 시청점유율은 (주)AGB 닐슨미디어리서치에 위탁해 실시한 2011년도 시청점유

을 조사 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6월 26일 완료된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 구독가구 부수인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가 35.951%로 산정 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30% 초과금지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 되었다.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7>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사업자	시청점유율	사업자	시청점유율
한국방송공사	35.951%	(주)조선방송	9.102%
(주)문화방송	18.374%	(주)제이티비씨	7.380%
(주)SBS	11.173%	(주)채널에이	3.771%
CJ E&M(주)	9.168%	(주)매일방송	2.809%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2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 된다.

3)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2009년 7월 개정된 「방송법」은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로 하여금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0년 1기 때부터 꾸준히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는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라디오 등 매체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복합 매체사업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각각의 조사 연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였다(<표 III-68> 참조).

<그림 III-39>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산출모형(안) 공청회



<표 III-68>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

구 분	시 행 일	내 용
가중치개발 조사	2010년 11월	매체속성에 대한 수용자 인식 및 매체이용행태 조사
	2011년 8월 29일	전문가 멤버파이 조사
	2011년 10월	매체이용행태조사
매체별 지표 검토 조사	2012년 5~7월	인터넷 이용점유율 시범조사
	2012년 7월	라디오 청취점유율 시범조사
토론회, 공청회	2011년 7월 7일	전문가 토론회
	2011년 11월 25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주최 세미나
	2012년 3월 1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2년 9월 27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모형(안) 공청회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는 텔레비전 방송 및 인접 매체영역에서 보유한 영향력의 가중 합산을 통해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방송 매체영역 및 인접 매체영역 각각에서 사업자 단위의 이용점유율을 산출한 후, 매체영역별로 산출된 이용점유율 각각에 텔레비전 방송 대비 환산비율을 곱하여 시청점유율 형태의 환산 영향력을 산출하여 각 값들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지수가 산출된다.

현행법은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수의 활용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지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시장 전반의 여론집중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 지상파 TV 방송시간 규제완화

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개국이후 줄곧 실시해오던 정책이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지상파 방송사 이외에 방송시간 규제가 적용되는 매체는 없다. 최근 매체환경의 변화로 지상파PP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자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표 III-69> 국내외 방송시간 규제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국내	· 지상파TV를 제외한 케이블, 위성, IPTV, DMB, 라디오 등에는 시간 규제 없음	24시간 범위내 자율 편성
해외	·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방송시간 규제 없음 ※ 미국의 경우, 전국 네트워크 방송사에 대해 1일 18시간 이상 방송운용 의무 부과	24시간 범위내 자율 편성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시간 제한 완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조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 시청자 권익 증진, 지상파 방송 편성 자율화 보장, 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12년 9월, 51년간 유지되어오던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규제를 폐지하였다.(<표 III-70> 참조).

<표 III-70>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완화 주요 경과

· 2009년 12월	2010년 업무보고서, 방송시간 제한완화 검토 발표
· 2009년 12월	방송협회 환영 성명 발표
· 2010년 1월	케이블TV협회 반대의견서 제출
· 2010년 11월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1년 11월	방송시간 규제완화 추진계획 전체회의 보고
· 2011년 12월	전자공정회 및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012년 7월	한국방송협회,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 완화 건의서 제출
· 2012년 8월	지상파TV 방송사업자 방송시간 규제 완화 계획 등 조사

<표 III-71>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권고사항

-
-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 ~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할 것
 -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시간의 확대·축소 등 방송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 할 것
 -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성있고 참신한 편성정책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 할 것
-

방송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시간규제 완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심야시간대 청정 방송의 실현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기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

바. 공익채널 선정 및 제도 개선

1) 공익채널의 선정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의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소수자 이익을 대변하고 유료방송채널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채널 의무편성제도가 2005년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의무편성대상이 되는 공익채널의 선정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위원회는 공익성 분야를 정하여 공표하고 각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익성 분야는 2006년 10개에서 시작하여 2007년 8개, 2008년 6개, 2009년 6개로 매년 달라지다가 2010년부터는 3개 분야로 축소 조정되어 201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익성 분야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3개 분야로,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3개 채널을 선정, 총 9개 채널을 매년 공익채널로 선정해서 의무전송토록 하고 있다(<표 III-72> 참조).

<표 III-72> 공익채널 분야별 전문편성 내용

방송분야	전문편성 내용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학·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2012년에도 위원회는 2013년의 공익채널을 선정하였다.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2013년도 공익채널은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법률TV(이상 사회복지 분야), 아리랑TV, 예술TV Arte, 사이언스 TV(이상 과학·문화 진흥),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이상 교육지원)이다. 선정된 채널들의 의무전송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2) 공익채널 제도 개선

위원회는 공익채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2012년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장애인복지 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장애인 복지채널이 의무전송 채널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 공익 분야별 의무편성에서 장애인 복지채널의 중복 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익성 방송 분야를 개정하였다. 또한, 공익성 분야별 전문편성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시를 삭제하는 등 전문편성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공익성 방송분야」의 고시를 개정하였다.

3)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계획 수립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지역방송체제가 구축되어 방송을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방송사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특히, 경쟁상황의 변화는 지역방송사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채널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상파방송 자체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민영 미디어렙 진입으로 인한 광

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확산으로 방송 권역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점은 지역방송사에게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방송사들이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지역성 구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원회는 지역 방송 콘텐츠 제공 촉진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목표로 총 4가지의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이다.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 청취자의 방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건의 한계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지역방송의 제작 투자가 미미한 편이며, 유통창구 또한 제한적이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지역방송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방송통신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지역방송사의 공공·공익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의 아카이브, 제작, 유통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지역방송의 재정기반 전문화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면서 방송 광고시장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방송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역방송사들의 광고 판매 및 전파료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방송사와 중앙 방송사의 결합 판매 지원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민영미디어렙 허가심사 시 전파료 배분 등에 대한 조건을 심사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 뿐 아니라 지역방송사가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방의 경우 2011년 수익 배당금이 21.2%로 전체 산업을 상회하는 수준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배당성향, 배당률, 제작비 투자, HD제작설비 시설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시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셋째,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역방송사의 자체 편성과 외주제작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행법으로 보장된 지역방송 편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외주제작 규제를 완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방송시장 전반에 관한 정책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상파방송 정책과에 팀단위 업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 방송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방송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상황을

살피고 있다.

4) 방송통신요금 소득 공제 입법 지원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이용 가구는 2012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약 2천 4백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유료방송 서비스가 이미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가계 지출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방송 산업 활성화 및 국민의 보편적 복지요구 추세 등을 고려하여 방송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의 의원 발의를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관련 내용들을 모아 박대출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지원하였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 120만원 한도내에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민생활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당초 목표에 따라 게임 및 VOD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지출비용은 제외하였다. 개정법의 시행은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이슘이다. 유료방송서비스에 케이블TV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재송신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으나, 다매체화가 진행되면서 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지상파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자사 채널의 재송신을 유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송환경 변화로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에는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침해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원칙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였다.

가) 분쟁해결 절차 보완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시작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은 쉽지 않았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책임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총 4가지 이다.

먼저, 방송분쟁 일방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에 불응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둘째, 재송신 분쟁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가 당사자의 조정신청 없이도 분쟁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긴급히 회복하기 위하여 방송 재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방송유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중재자로서의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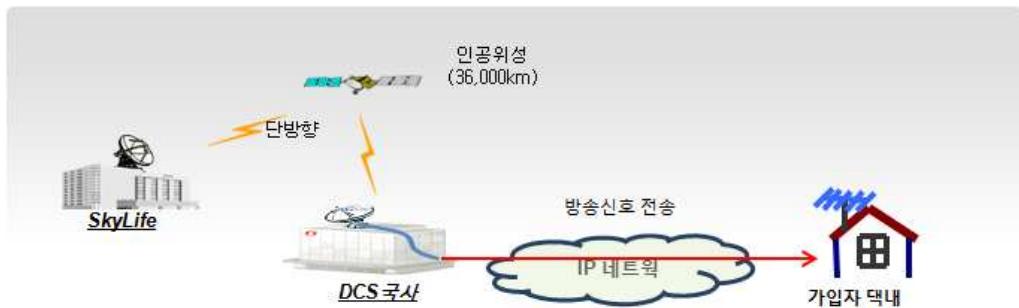
위원회는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위성방송의 역내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행 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때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역내·역외재송신 모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규제 형평성 구현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성 방송사업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간 위성방송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역내 재송신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성방송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등한 기준에서 콘텐츠를 수급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6) DCS서비스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주)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2012년 5월부터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방식을 통한 위성 방송 가입자를 모집해왔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IPTV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기술로, (주)KT스카이라이프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KT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III-40> DCS 서비스 기술의 개념



(주)KT스카이라이프 측이 DCS 기술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 협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행위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주)KT스카이라이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표 III-73> 참조).

<표 III-73> DCS 서비스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구분	케이블 및 IPTV 업계	KT스카이라이프
전파법 위반	위성방송은 위성 장비로, IPTV는 인터넷망으로 서비스해야하는 기술 기준에 어긋남	이미 아파트 등에서 비슷한 기술을 활용해온 데다 법에 규정된 서비스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짐
IPTV 서비스 침해	위성방송 콘텐츠로 사실상 IPTV와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해 IPTV 서비스 영역 침해	IPTV는 전 구간이 인터넷 망으로 서비스되는 반면 DCS는 일부 구간만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일종의 보조 수단

이러한 문제제기에 위원회는 법적 검토를 통해 DCS를 통한 위성방송 서비스가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범위 및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DCS를 통한 위성방송 서비스가 사실상 IPTV와 다름없고 이러한 서비스가 전송방식별 방송역무 허가라는 현행 규제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2012년 8월 (주)KT스카이라이프 측에 DCS방식을 통한 위성방송사업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가 이러한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을시 청문회를 비롯한 행정처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주)KT스카이라이프는 시정권고 내용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였다(<표 III-74> 참조).

<표 III-74> DCS 서비스 관련 조치 경과

-
- 2012년 5월 1일 (주)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상용 개시(서울시내 5개 KT 전화국 중심)
 - 2012년 6월 1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DCS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문제제기
 - 2012년 8월 29일 위원회,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
 - 2012년 8월 30일 위원회,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등 시정권고 및 행정처분·청문을 위한 사전 통지
 - 2012년 9월 13일 (주)KT스카이라이프, DCS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의사 표명
-

DCS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방송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우리나라 방송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방송제도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7) 방송제도연구반 운영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DCS 서비스와 같이 급변하는 방송 기술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도모하고자 위원회는 기준 「방송법」 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방송제도연구반을 운영하였다. 연구반은 김충식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분야 등 9인의 외부 전문가와 케이블, 위성, IPTV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연구반은 지속적인 회의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 및 매체 등의 융합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례,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이행과제를 빌굴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반은 2013년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장·단기 과제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표 III-75> 참조).

<표 III-75> 방송제도연구반 주요 논의내용

구 분	주요내용
단기 (2012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기술방식별 방송사업 허가 체계의 보완사항 검토· 매체별 전송기술 결합 등 관련 법제 정비방안 마련
중기 (2013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N스크린 등 통신망을 활용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 방안 마련·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새로운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8) OBS 역외재송신 승인

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였다. OBS의 역외재

송신 승인은 서울지역의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2011년에 모두 승인된 바 있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원활한 유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위원회는 5월 말에 심의·의결된 위성방송의 재송신 승인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위성방송의 OBS 재송신 승인을 가시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서울지역 OBS 재송신 허용 여부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방송·법률·경영·기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위성방송의 OBS역외재송신의 허용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심사단은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 권리 보장, 방송의 공익성, 기술적 안정성 등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9월, 전문가 심사단은 IPTV 방송 제공사업자인 KT, SKB, LG U+ 3사의 OBS 서울지역 재송신을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 등 다른 방송 매체에 재송신이 이미 허용되었으며, 시청자의 선택권 향상, 지역문화 이해 증진 등을 위해 IPTV를 통한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OBS의 역외재송신 허용을 통해 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의 선택권 향상, 양질의 콘텐츠 경쟁 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III-41> OBS 본사



2.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우리나라 대부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독립제작사는 자본금 규모나 인력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제작자에 대한 투자 확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추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송출·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자 중소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송출·유통 등의 통합 지원시설로서 차세대 방송콘텐츠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201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디지털방송텐츠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예정 공정대로 정상 추진중이며, 향후 구축된 인프라는 중소·영세 PP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표 III-76> 참조).

<표 III-76>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조성규모	부지10,702m ² (3,237평), 연면적56,594m ² (17,120평), 지상20층, 지하4층
주요시설	스튜디오 6실(대형 1, 중형 1, 소형 4), 중계차 2대, 편집실 17개
총사업비	4년간(2010~2013년) 2,276억 원(방송통신위원회 1,10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1,172억 원)
이용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B), 독립제작사 등
공정률	건설 44%(골조 20층), 방송 인프라(20% 발주)

2012년 2월부터는 최적의 방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기술자문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관련 분야는 방송시스템, 중계차, 조명, 유통, 송출, 아카이브, 클라우드, 네트워크·보안 등이다. 2012년 6월에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관련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실적을 점검 하였다. 2012년 7월부터 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담반(TFT)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는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최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둘째,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익적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3D 콘텐츠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다. 2012년 3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20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표 III-77> 참조).

<표 III-77>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현황

지원 분야	지원 실적
경쟁력 강화 우수 프로그램	125억 원, 83편
공공·공익 프로그램	45억 원, 73편
창의·실용적 양방향 프로그램	30억 원, 6개 프로젝트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	5억 원, 1개 프로젝트

2012년에는 실험적인 드라마 제작 유도 및 신인 작가, 배우, 연출자 등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총 16편의 단막극 및 단막극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TV영화 3편도 지원하였다. 드라맥스의 ‘닥터’의 경우 부산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되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막극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양으로서 단막극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방통융합 콘텐츠인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 양방향 방송 활성화를 위한 PP나 제작사의 양방향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T-커머스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의 우수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을 모색하기 위해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포맷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올해 해외 판로개척 및 사업자간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3D 제작지원 사업의 방식을 기준 기획안 심사를 통한 본제작 지원 방식에서 트레일러 제작지원 후 해외 유명 콘텐츠 마켓 지원을 거쳐 그 성과를 포함한 심사를 통해 본제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2월 4월초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프로그램 마켓인 MIPTV 2012에 3D콘텐츠 제작지원작품 17편을 비롯한 국내 우수 3D콘텐츠 총 44편을 소개하는 ‘KOREA 3D SHOWCASE’ 개최를 통해 CJ파워캐스트, 3D플랜, 크리스피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110만 달러 이상의 판매 및 투자참여 성과를 올렸다. 이번 MIPTV 2012 참가를 통해 이루어낸 대표적인 실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D콘텐츠 제작·유통사 ‘CJ 파워캐스트’는 2012년 제작지원작인 3D오락다큐멘터리 <숨겨진 고수 3D(LIFE MASTER in 3D)>를 미국의 대표 3D배급사 3NET과 영국의 CAN COMMUNICATE, 아르헨티나 MEDIA & CONTENT 등에 판매 확정하였으며, 거대 3D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CCTV와 일본의 TV ASAHI와도 수출 상담을 벌여 큰 호응도를 이끌어 내고 본편제작 완료 시점에 맞춰 적극적 구매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3D콘텐츠 전문 제작사 ‘3D플랜’이 제작한 <FRUIT ANGELS 3D>, <ROBOT SOCCER

3D>, <EXTREME RIDERS 3D>도 이탈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방송채널과 배급사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독립제작사 ‘크리스피’는 <흑백인간의 탄생 (THE B/W MAN)> 유럽 배급권을 조건으로 독일의 배급사 3D CONTENT HUB사와 5월에 150만불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시청률 경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기 쉬운 공공·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 확대 및 공적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제작여건이 열악한 지역방송사 또는 PP에게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제작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고품질의 공익적 콘텐츠를 지원받은 방송채널에서만 방송하고 타 방송채널로 송출되지 않아 고품질의 공익콘텐츠가 사장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9개 중소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및 2011년 제작지원된 공공·공익성 프로그램 103편에 대한 방영권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공익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나. 방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육성

위원회는 2012년 1월 현업 방송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방송인 육성 및 미래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최근 방송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미디어·3D방송 등 신기술 공통교육,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별 특성화 교육, 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래이동통신, 4G방송 등 미래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위원회가 추진한 방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4,153명의 방송 통신 콘텐츠 제작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목표치인 3,270명의 127%에 해당한다.

방송 신기술 공통교육은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현업방송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사, 중소벤처기업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3D콘텐츠 제작 분야, 4K카메라촬영실습, N스크린 콘텐츠 기획, 글로벌 콘텐츠 마케팅 등의 고급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2010년 평균 907명에 비해 2011년~2012년에는 평균 1,642명을 교육하여 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방송직군별 맞춤교육은 2012년 12월말 기준 2,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PD 재교육, 방송기자 재교육, 방송작가 재교육,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인재 교육, 케이블 디지털방송 기술인 재교육, 아나운서 재교육, 독립PD 재교육, 방송연기자 재교육, 성우 재교육 등 방송 각 직군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개발과 국제적인 방송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함이다(<표 III-78> 참조).

<표 III-78> 방송직군별 맞춤교육 현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교육 인원
PD 재교육	공연기획 및 연출, 라디오 다큐드라마 및 기획실무 등	275명
방송기자 재교육	수습기자 저널리즘과정 등	282명
방송작가 재교육	예능, 다큐 등 장르별 교육	159명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인 재교육	디지털 전환방송기술 이론 교육 등	408명
케이블 디지털방송 기술인 재교육	디지털케이블방송 신기술 교육 등	650명
아나운서 재교육	지역아나운서 활성화 방안 교육 등	123명
독립PD 재교육	PD Power Up 교육 등	128명
방송연기자 재교육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연기자 집체교육 등	103명
성우 재교육	다중매체 시대의 성우 역할 등	62명
방송문화산업기술인교육	조명, 음향 등 현장서비스랩 교육	92명
방송통신멘토양성교육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멘토양성	27명

미래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은 융합기술·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현직자 및 예비 취업인을 대상으로 10대 미래 서비스, 차세대 모바일 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융합기술전문인력교육의 경우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분야, 클라우드 무선 인프라 분야, 미래인터넷 분야, 임베디드 리눅스 드라이버 교육 분야 등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 644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 교육의 경우 HTML5, 안드로이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모바일 UX 디자인 기획 등의 커리큘럼으로 53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콘텐츠는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브랜드 증진 효과로 인해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는 기존 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문화현상에서, 중남미, 중동, 유럽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인접산업과 접목하여 ‘신한류’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와 아우구스타 이후에 맺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 DDA의 난항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의 FTA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2년 위원회는 국내에서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외에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수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서비스 등 전략분야에 대한 해외 로드쇼, 쇼케이스, 해외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2년 8월 중소 방송사 대상 방영권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방영권 지원은 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중소방송사에게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우수 공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청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에는 39개 중소방송사에 103편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0월에는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인 ‘아름 Down’ 운동을 추진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영화, 음악 등 불법복제로 인해 약 2조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약 10억 건의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른 다운로드를 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를 표제로 추진하는 ‘아름 Down’ 운동은 위원회와 플랫폼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방송·저작권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방송부문 굿 다운로더(Good Downloader)를 전개하는 운동이다.

원활한 운동의 추진을 위해 위원회는 ‘아름 Down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아름 Down’ 캠페인 연중 실시,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대가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아름 Down’ 캠페인에는 지상파 방송 3사,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CJ E&M, CJ Hellovision 등이 참여하였고, 향후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교육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디어관련 시민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 쇼케이스 및 해외 로드쇼 지원, 해외 컨설팅 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2년 2월에는 쇼케이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오세아니아,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행사 개최를 완료하였다. 한류 확산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지역 6개 국가에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수출상담회 및 현지 방송사 방문을 통한 한국 방송콘텐츠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방송사별 쇼케이스와 병행된 각종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1차 쇼케이스는 2월 5~11일까지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KBS ‘누들로드’ 등 총 55건의 수출 상담을 하였다. 2차 쇼케이스는 5월 20~27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MBC ‘지구의

눈물' 등 총 51건, 3차 쇼케이스는 6월 25~29일까지 헝가리와 영국에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총 122건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행사와 병행하여 각 지역의 주요 방송사를 방문하여 한국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수요조사, 향후 판매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민·관·연 협력모델로 해외 로드쇼 추진을 통해 IPTV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우리 방송통신서비스의 현지 시범서비스 및 상용서비스 실시 등 성과 확산을 모색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2월 해외 로드쇼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해외 로드쇼 관련 ICT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5월에는 카자흐스탄·러시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로드쇼 개최를 완료 하였다.

해외 컨설팅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국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다. 해외 컨설팅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2012년 4월 르완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라오스 전파감시시스템 구축의 1차 컨설팅 과제, 6월에는 벨라루스 긴급구조시스템, 이라크 정부 위성통신망 2차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한류의 글로벌 저변 확대, 방송통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 외주제작 활성화

국내 방송시장에 1991년부터 도입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최근 종편 PP 진입 등에 따라 외주제작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다원화되었다. 특히, 드라마 장르에서는 대형 외주제작사가 형성되어 방송사와의 협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이 해외에 꾸준히 수출됨으로써 한류에 기여하였다(<표 III-79> 참조).

<표 III-79> 국내 외주제작시장의 규모변화

연도	구분	외주제작비	방송3사 외주비율
1999년		380억원	5.6%
2011년		4,103억원	45.5%

그러나, 비드라마 장르에서의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외주 제작사간 불공정거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위원회는 외주제작사-방송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힘의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외주제작사 역량강화 여건 마련

위원회는 2012년 2월 편성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도입하여, 연출, 촬영 등 제작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춘 외주제작사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표 III-80> 참조).

<표 III-80> 외주제작 인정기준 주요 사항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외주제작사가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함				
① 작가계약체결	② 주요출연자 계약 체결	③ 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 제작비의 30%이상 조달	⑤ 제작비 집행 및 관리			

또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거나 주시청시간에 교양분야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편성시간량 산정시 일정 비율(110%)을 가산도록 하고, 이를 통해 촬영원본 활용을 통한 제작사의 재정적 기반 마련 및 교양분야의 외주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외주제작사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방송법」에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의무편성비율 제도 이외에는 규정이 없어 외주제작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12년 11월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사에게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주제작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방송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 외주제작 공정거래환경 조성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 제작사간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통한 상생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상파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외주제작사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간접광고의 매출액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2012년 2월 9일)하였다. 이

를 통해, 간접광고의 판매가 허용되는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동등하게 배분하게 된다(<표 III-81> 참조).

<표 III-81> 방송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양해각서 주요내용

-
-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활성화, 외주제작사의 수익기반 확대 등을 통한 양 당사자의 상생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외주제작 드라마의 수익배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 배분은 방송3사와 외주제작사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5:5의 비율로 동등하게 배분, 당사자간 별도 협의 가능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수익배분은 외주제작사에 의한 간접광고 판매가 허용되는 내용의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
-

또한, 위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하여 정화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방송법」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외주제작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마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허용 등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가.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중소방송 지원방안 마련

1)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2000년대 중반까지 지상파방송광고는 「방송법」(제73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또는 한국방송 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서만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대해,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27일 동 규정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최종 판결하였다. 더불어, 동 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시장에 독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다(<표 III-82> 참조).

<표 III-82> 현법재판소가 예시한 위헌요소 해소안

-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운영
 -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을 해할 경우 허가 취소 등
 -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체 설립을 허가
 - 방송광고 가격의 상한선 설정
 - 특정 장르 및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방송광고) 쿼터제 도입
 -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 지급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수차례의 간담회 개최, 지역방송 순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과 6명의 의원발의 법률 제·개정안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합편성사업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여부, MBC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위탁지정 여부, 중소방송의 지원방식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률 제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는 2011년 12월 27일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기초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3년여간의 법률 제정이 마무리 되었다.

제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파방송광고를 현행과 같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미디어렙)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되,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민영 미디어렙에게도 허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다만, KBS, MBC, EBS는 정부출자 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종편사업자에 대해서도 미디어렙 의무 위탁 대상에 포함하되, 시행일은 방송 승인일부터 3년 후로 정하였다.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 소유지분은 40%로 제한하되,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10% 소유규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와 중소 방송(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을 규정하였다.

국회의 법률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는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2012년 5월 22일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민영 미디어렙 허가고시(7월 26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8월 17일),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9월 11일), 회계정리기준 고시(9월 21일),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고시(12월 28일) 등 하위 고시

제정도 차례로 완료하였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유지되었던 한국방송 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전환되었고, 방송광고의 요금, 판매, 영업방식, 보상체계 또한 시청률과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한층 선진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경쟁 도입에 따라 광고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소방송사의 불안감 해소와 방송의 다양성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출범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한국방송 광고 진흥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우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 5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및 한국 방송광고공사의 실무자로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조직도·정원·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2012년 5월 23일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를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자본금 3천억원 규모의 정부 출자 주식회사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에 따라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한 재산, 채권·채무,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업무는 구공사의 업무에서 SBS 광고판매 영업 분야가 제외되었다. 대신 케이블, IPTV 등 신규매체 대행 영역이 확대되고 광고산업 진흥기능이 추가되었다. 정원은 이러한 업무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304명에서 18명(6%)이 감소한 286명으로 확정되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현재 SBS, 지역민방, O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광고 표준화, 광고산업 통계체계 구축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민영 미디어렙 허가 고시 제정이 완료(2012년 7월 26일)된 이후, 위원회는 신규 허가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등 민영 미디어렙 신규허가 절차를 추진하였다. S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해온 (주)미디어크리에이트가 민영 미디어렙 신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중소방송 지원방안의 적절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등 미디어렙법상 허가 요건을 심사하였다. 그리고, 허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민간 방송광고판매 대행사로 허가하는 것을 최종 의결하였다(2012년 8월 22일).

위원회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에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조건도 함께 부과하였다.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이로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하였고, 방송광고판매시장에서 신공사와 민영 미디어렙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4) 결합판매 지원 법제화 등 중소방송 지원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 결합 판매 지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어 지역지상파 방송사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에게 급작스런 광고매출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방송사에 대한 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연계하여 미디어렙의 허가요건·조건을 통한 지역방송 전파료 배분 지원,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 중소방송사의 자체광고판매(비결합판매) 지원 등 종합적인 중소방송 지원방향을 2012년 2월 3일 발표하였다(<표 III-83> 참조).

<표 III-83> 중소방송 지원방향 발표 주요내용

-
-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파료는 미디어렙 허가요건조건으로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이를 보장
 -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
 -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과
 -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 지원
 -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미디어렙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허가조건 등 부과
 - ④ 기타 정책적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을 자체제작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
 -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협찬 기 허용(2011년 8월)
 -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검토
-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따라, 위원회는 (주)미디어 크리에이트를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민영 미디어렙)로 신규 허가할 때 SBS - 지역민방간 합의로 마련된 네트워크 광고협약 계획 등 중소 방송 지원계획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중소방송 지원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 수준(과거 5년간 평균)으로 중소방송사 광고판매 지원 및 별도 세부시행계획 마련, 지역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지역지사 설립(10월 1일)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영 미디어렙)에 대해서도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제출받아 승인하였다.

그리고, 결합판매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을 규정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제정하였다.

위원회는 당초에 기존의 결합판매 지원구조를 유지하여 시장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 미디어렙·민영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을 정하여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중소방송사 및 국회 등에서 구조 변경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합판매 지원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2012년 9월에 고시를 제정하였다 (<표 III-84> 참조).

<그림 III-42> 결합판매 지원구조 행정예고안 및 변경 최종안



<표 III-84>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공영렙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
민영렙	지역민방, OBS

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

였다. 다만, 개국 5년 미만 신생 중소 방송사(OBS, YTN라디오, 3개 영어방송)는 그간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을 감안하여 2011년 기준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에 일정 비율(17.3%)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산정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소방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미디어렙의 결합판매지원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결합판매 지원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디어렙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다(<표 III-85> 참조).

그리고, 결합판매 이행실적 점검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사간 광고매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2013년 초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 추천위원 6인, 변호사, 회계사,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표 III-85> 결합판매 지원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
-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제4호)
 - ② 5억원 이하 과징금 (법 제38조제2항)
 - ③ 시정명령 (법 제37조)
- ※ 시정명령 위반시 허가취소·영업정지, 5억원 이하 과징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도 부과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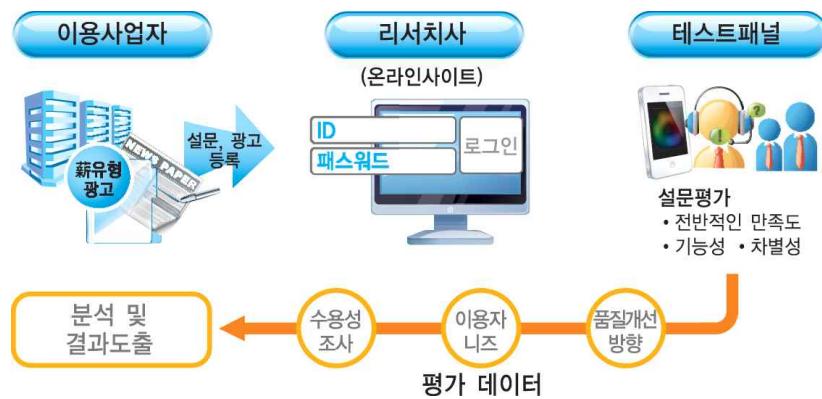
나. 인터넷광고시장의 활성화 기반 조성

1) 신유형의 인터넷·모바일광고 육성 지원

위원회는 차세대 인터넷·모바일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인터넷·모바일광고 테스트 패널’을 구축하고, 시멘틱랩홀딩스, 메조미디어 등 총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유형 광고 모델에 대한 시범서비스 및 효과측정 등 필드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창적인 모바일광고 플랫폼 모델 발굴을 위해 2012년 9월 ‘대한민국 모바일광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도전! 코카콜라 광고 만들기’ (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한국코카콜라)가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을 차지하였으며, 마케팅과 디자인 부문 금상, 크로스미디어/디바이스 부문 은상을 함께 수상하였다. 또한 특별상에는 퓨쳐스트립네트웍스의 ‘홍준 본부장’과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모바일 광고 기술·디자인·마케팅·크로스미디어 등 4개 부문 총 12편이 수상하였다.

<그림 III-49> 신유형 인터넷·모바일광고 테스트패널 조사 프로세스



인터넷·모바일광고 시장 인력수급을 통한 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10월 온라인 광고 전문 가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터넷·모바일광고 대행사, 렙사, 플랫폼사, 개발사 등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기관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실무위주의 공동 기본과정(3주), 기획·제작 심화과정(3주)을 진행하였다.

모바일광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광고집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바일광고 산업 통계 및 이용자 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등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매출 및 집행비를 조사한 광고 업종별·유형별 집행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광고시장 지표를 제시하여 광고주의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과 관련 업체의 매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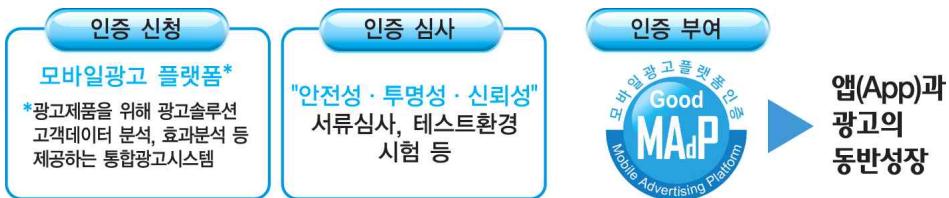
2) 인터넷·모바일광고 유통구조 및 이용환경 선진화

위원회는 기업들의 상생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광고 정책포럼’ 및 ‘스마트 애드&앱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였으며, 모바일광고 용어, 유형, 규격, 광고효과지표 기준 정립을 위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Mobile Advertising Platform) 인증제’가 2012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메조미디어의 ‘MAN(맨)’과 디엔에이오 프트의 ‘리얼클릭’을 최초로 인증한데 이어, 2012년 2월에는 애드모비의 ‘ADmobi’를 인증하였다. 2012년에는 총 13개의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여, 11월에 3개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고, 3개 업체는 심사 중에 있다. 본 사업에서는 모바일광고플랫폼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기존 ‘인앱광고’ 위주에서 ‘보상형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였다. 인증을 받고

자 하는 기업은 운영실비를 기반으로 인증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소규모 신생(Start-up) 및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아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III-44>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인증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2012년 12월 실무자를 위한 법제도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을 정리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공통적용 법률 ▶인터넷광고 품목별 법률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인터넷광고 심의세칙 등을 포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2월 ‘온라인광고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TV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디지털전환에 대비한 위원회의 2012년도 주요 활동으로는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 디지털 전환 홍보 사업, 디지털TV 방송 송·수신환경 개선,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 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등이 있다.

가.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

1) 직접수신 가구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지상파TV 방송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최소한의 시

청권 보장을 위해 DTV 구매 보조 및 디지털 컨버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7월에 수도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여 11월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지원대상을 일반가구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12년 8월에는 유료방송에 가입했거나 디지털TV를 보유했더라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여 시청하는 아날로그TV(2nd ATV)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림 III-45> 직접수신가구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65세이상)·장애인	일반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V 구매보조(10만원)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지원 •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컨버터(자부담 2만원) •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컨버터(자부담 2만원) • 안테나 개보수(자부담 3만원)

위원회는 저소득층이 선명한 HD화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DTV 구매를 지원(10만원)하고 저소득층 전용 DTV를 선정하여 보급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컨버터와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표 III-86> 참조).

<표 III-86> 직접수신가구 지원실적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저소득층	일반가구	노인·장애인	계
DTV 구매보조	71,233			71,233
디지털컨버터 또는 안테나 개보수	50,768	154,362	176,390	381,520
계	122,001	154,362	176,390	452,753

또한, 위원회는 원활한 정부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전국의 주민센터(전국 3,477개소) 및 우체국(2,661개소)과 협조 체계를 구축 하였고, 정부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디지털 TV방송전환지원센터(17개)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디지털전환 안내·상담을 위한 전국 단위 콜센터(**124**, 상담원 350명)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 28일 기준, 아날로그TV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45.2만 가구에게 정부 지원을 완료하여, 전체 가구 중 99.7% 이상 가구가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지원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통신사, 가전업체, 홈쇼핑사와 공동으로 디지털TV 6,289대와 디지털컨버터 11,910대를 무상으로 기증·설치하여 고화질 디지털TV 방송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표 III-87> 참조).

<표 III-8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단위 : 대)

구 분	지원주체	시 설	지원실적
DTV	KT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1,974
	홈쇼핑사	경로당, 마을회관 등	3,515
	하이마트	전국 독거노인	150
	엘지전자	소외계층(가평 꽃동네 등)	150
	삼성전자	전국 독거노인	500
	소 계		6,289
디지털컨버터	방통위	경로당, 마을회관 등	11,910대(7,798개소)
합계			18,199

<그림 III-46> DTV 기증사업 협약식



나. 디지털전환 홍보사업

위원회는 디지털전환 대상에게 찾아가는 광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등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디지털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1) 대상별 맞춤형 홍보

위원회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막고지방송과 함께 계층별(일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지역별(도시, 농어촌)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군·구 저소득층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정부지원신청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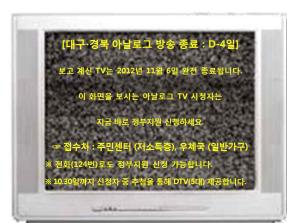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지역의 독거노인 돌보미(5,395명), 장애인 협회(239개, 3,742명) 등을 방문하여 정부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정부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문(1만 3천부)을 제작·배포하고, 시각장애인 12,904명에게 개별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독려하도록 요청하였고, 우체국(2,661개), 주민센터(3,477개), 마을회관(31,000개),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점(6,560개) 등에 정부 안내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전국의 디지털 공시청 설비 구축 대상 아파트 단지(2,669개)에 동별로 정부지원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하였다.

2) 자막고지방송 및 가상종료

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아날로그TV 방송 직접수신가구 대상으로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 정부지원 신청 등을 안내하는 자막고지방송을 지역별 종료일까지 실시하였다. 지역의 자막고지방송 추진단(방송사, 지자체 등)에서 정부지원 실적, 민원 등을 고려하여 화면크기, 일일 실시횟수·시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고, 4월부터 디지털TV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인 지역에서는 가상종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디지털전환 준비를 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종료 3~4주 전부터 화면크기 50% 상시 자막고지방송, 종료 1~2주 전부터는 상시 가상종료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III-47> 자막고지방송·가상종료 화면 사례

자막고지방송(30~50%)	상시 자막고지방송	상시 가상종료
		

3) TV 및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TV 및 신문광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중앙일간지와 TV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자발적 디지털전환과 정부지원 신청을 유도하고자 총 4차에 걸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다(<표 III-88> 참조).

<표 III-88>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구분	매체	실시기간	대상
1차 TV·신문 공익광고	TV	2.23~3.3	중앙 4사 및 지역방송사 48사
	신문	2.29~3.9	종합일간지 등 11개 매체
2차 TV·신문 공익광고	TV	6.4~6.30	중앙 4사 및 지역방송사 48사
	신문	6.1~6.30	종합일간지, 무가지 등 13개 매체
3차 TV·신문 공익광고	TV	9.2~9.30	중앙4사 및 37개 지역방송사
	신문	9.10~10.9	종합일간지 등 14개 매체
4차 TV·신문 공익광고	TV	11.23~12.30	중앙 4사 및 경인방송
	신문	12.7~12.20	종합일간지 등 21개 매체

4) 홍보비용 절감 생활 밀착형 홍보

위원회는 가전사·유통회사의 판촉 홍보와 연계하거나, 거리캠페인,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의 입간판 홍보를 실시하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림 III-48> 홍보비용 절감 생활 밀착형 홍보



5) 디지털방송 콜센터 운영

위원회는 디지털전환 방법,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디지털컨버터 설치방법, 전화신청·접수 등 디지털전환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12년 1월 전국 단위의 콜센터 1개소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부지원 상황, 인입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월 150명, 4월 200명, 7월 250명, 10월 300명)하여 2012년 12월 350명의 상담인력이 1일 09:00~22:00 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다.

다. 디지털방송 송·수신환경 개선

위원회는 디지털TV 방송 송·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였다. 2012년도 위원회의 송·수신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방송보조국 확대, 소출력 중계기 및 마을공시청 설비 구축, 공동주택 공동시청 설비 개선, 위성수신기 보급 및 무상임대 등이 있다.

1) 송·수신환경 개선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TV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난시청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원회의 송·수신환경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TV 방송보조국 확대·구축이다. 위원회는 2012년 6월까지 지상파방송사가 기존 아날로그TV 방송보조국(1,125국)을 일대일 방식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지정한 바가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디지털TV 방송보조국 111개국을 추가로 구축하여, 기존 아날로그 수준으로 디지털TV 방송 커버리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소출력 중계기 확대 구축이다. 위원회는 방송사가 난시청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출력 중계기에 대한 허가제를 2010년 12월에 폐지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0~2011년 소출력 중계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에 KBS, MBC, SBS, 지역민방과 소출력 중계기 공동 구축·운영 협약을 체결, 2012년까지 144대를 설치하여 총 99,785 가구가 디지털TV 방송을 직접 수신·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III-89> 참조).

<표 III-89> 연도별 소출력 중계기 구축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개 소	14	30	100	144
가 구	28,021	19,403	52,361	99,785

셋째, 위성방송 수신기를 이용한 난시청 대응이다. 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KBS 디지털 시청 100%재단, 스카이아이프와 공동으로 위성수신기 임대지원 공동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에 따라, 신규 디지털TV 방송 난시청 가구에 대하여 위성방송 수신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디지털 난시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12월 28일 기준으로 7,005대의 위성수신기를 지원하여 디지털 난시청을 해소하였다.

위원회는 2014년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위성수신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가구가 위성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2) 공시청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

위원회는 KBS와 공동으로 난시청 지역에 마을 공시청 서비스를 신설 및 개선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121개의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고, 10월 이후 16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2012년 12월까지 399개 지역에 대해 난시청을 해소하여 총 41,370 가구가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표 III-90> 참조).

<표 III-90> 연도별 마을공시청설비 개선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개 소	158	104	137	399
가 구	17,274	9,619	14,477	41,370

위원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시청 설비 개선사업을 SH·LH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였다. 2012년 6월말, 299단지의 공시청 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총 804단지 550,510세대가 디지털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민영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청 설비 개선사업을 통하여 2012년말 기준, 총 3,835단지 2,210,812세대가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II-91>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현황

(단위 : 단지)

구분	~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합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	단지	250	255	299
	세대	219,961	134,980	195,569
민영공동주택	단지	944	464	2,428
	세대	703,897	299,289	1,207,626
합 계	단지	1,194	718	2,727
	세대	923,858	434,269	1,403,195
				2,761,322

2011년 위원회는 아파트 수신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시청 설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국 150세대 이상 전체 아파트 12,597단지 중 2,349 단지가 디지털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2012년 전국의 디지털 공시청 설비 구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 동별로 정부지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KBS 디지털시청 100%재단의 공시청 개선 지원과 아파트의 자발적 노력 등을 통해 이 중 2,296단지가 디지털전환을 완료하였다.

또한, 150세대 미만 아파트(12,665단지)의 경우 2012년 6월에 실시한 표본설태조사 결과, 약 909단지의 공시청설비가 디지털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DTV코리아와 공동으로 공시청 설비 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12월 현재 823단지가 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전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표 III-92> 참조).

<표 III-92> 150세대 이상 민영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단지, %)

구 분	단지 수	비율
① 아날로그/디지털공시청설비	5,536	43.9
② 아날로그 공시청설비	2,349	18.7
③ 유료방송 이용 등	4,712	37.4
합 계	12,597	100

라. 아날로그방송의 지역별 순차종료

위원회는 아날로그방송 종료 직전에 디지털 전환 지원신청이 폭주하고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개선 방안’(2012년 8월 1일)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아날로그TV 방송은 대구·경북지역(11월 6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였고, 종료 이후에도 지원 신청을 받아 약 2.4만(전체 가구 대비 0.3%) 가구가 지원신청을 하였다(<표 III-93> 참조).

<표 III-93>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지역별 종료일시

울산	충북	경남	부산	대전·충남
8월16일 14시	9월24일 14시	10월4일 14시	10월9일 14시	10월16일 14시
전북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
10월23일 14시	10월25일 14시	10월30일 14시	11월6일 14시	12월31일 04시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 미전환 가구를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방송 종료 후 3개 월 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6개월까지 지역 디지털방송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 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위원회는 2012년 12월 17일 470~806 MHz 대역에 산재된 디지털방송 채널(주파수)을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470~698MHz대역 안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디지털TV 방송 주파수대역 : 470~ 698MHz, 신규 서비스용 주파수대역 : 698~806MHz) 및 이에 따른 시청자 지원 정책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림 III-49>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 개념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1,300여개 디지털 방송국 중 887개 방송국에 대하여 2013년 10월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전라권 6월 12일/경상권 7월 17일/수도권·강원권·충청권 10월 16일)으로 해당 송신설비의 송신기 부품, 안테나 케이블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채널 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가구가 정상적으로 TV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홍보·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며, 방송사, 지자체, TV제조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DTV채널재설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널 재배치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바.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위원회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을 2012년 10월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위원회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을 마련한 배경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2012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시청자 복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05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은 54.8% 수준으로, 약 1,100만에 달하는 아날로그/SD 가입자가 남아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디지털TV 구매비용 및 아날로그에 비해 높은 디지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2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방향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위원회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②저소득 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③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시청권 보호에 있다.

첫째, 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를 선정하여 시중가 대비 약 50% 정도 저렴하게 디지털TV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노인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디지털 요금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이용요금 감면 비율(30%)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위원회는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고, TV교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3~5년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제도화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SD 방송을 종료할 경우 사전에 가입자 보호 대책을 포함한 종료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사. 방송장비 산업 육성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방송통신 융합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 1.6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1년 지상파 국산장비 신규투자율은 31.8%로 아직까지도 외산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산 방송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략적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시험인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인증제 등 국산 방송장비 제조사의 품질 향상 유도 또한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방송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추진 하였다.

1) 방송장비 인증대상 선정, 규격개발 확대 및 인증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국산 방송 장비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에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는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 통해 매년 인증대상 방송장비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된 방송장비별로 시험규격을 개발하며, 인증 대상 방송장비별로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하고, 개발된 규격을 기반으로 시험인증 서비스

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위원회가 총 7종의 인증 대상 방송장비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시험인증 서비스 대상 방송기기는 2012년 기준 방송용 비디오 모니터, 변조기, 중계기, 전관방송용 앰프, N스크린용 트랜스코더, 변조기 등 22종으로 총 90종의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시험인증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다(<표 III-94> 참조). 2012년 12월 기준 총 166건의 시험인증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21개 제품에 인증서가 수여되었다(<표 III-95> 참조).

<표 III-94> 인증대상 방송장비 선정 및 시험인증 규격개발 실적

구분	2010년(9종)	2011년(6종)	2012년(7종)
인증 대상 방송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용 비디오 모니터• 그래픽 문자발생기• 비디오 서버• 디지털 방송장비(4종) : 송신기, 중계기, 변조기, 수신기• H.264 인코더• DMB 데이터 인코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 입체모니터• MPEG-2 인코더• DMB 중계기• DTV 소출력 중계기• A/V 라우터• 광전송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용 8VSB^{※1)}변조기• QAM^{※2)} 변조기• 비압축 신호변환기• N스크린용 트랜스코더• 구내/전관방송용 앰프• LED 방송조명(진행 중)• 스피커

* 주 1) 8-level vestigial sideband

2)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표 III-95> 방송장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년도	시험분야	시험항목	시험환경구축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실적
2011	6종	16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존보유장비 49종•신규구입장비 2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험인증서비스 75건•인증서수여 10건
2012	6종	1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규구입장비 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험인증서비스 83건•인증서 수여 6건

2) 국산장비 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위원회는 국산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장비 테스트와 우수 장비에 대한 인증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장비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국산 방송장비에 대한 유통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산 방송장비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http://mall.kbta.kr>)을 통한 수요·공급자 연계 강화 및 SI업체와의 협력으로, 방송장비 발주 시 인증장비 채택비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타 부처와의 연계 방안으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정 및 용도·규모별 방송시스템 구축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방송장비 Help Desk 구축·운영을 통해 은퇴 기술자,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수요기관의 방송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방송장비 산업에 있어 세계 시장진출은 국산 방송장비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위원회는 국산 디지털 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 등 개도국 수요가 높은 전파방송 장비 전반에 대한 패키지형 수출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전파관리 활동을 홍보하고, 개도국 전파방송 현황 및 서비스 도입의지 분석 등 기반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50> 방송장비 인증제품 전시홍보 사례



또한, 위원회는 공개적인 전시 기회가 부족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장비 업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요자·생산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송장비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 통해 국내 인증을 획득한 우수한 국내 방송장비를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장비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BA;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 Equipment

Show)’와 ‘북미방송장비전시회(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국제방송 박람회(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등 국내 및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분야 전시회에서 전시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인증 기기의 활발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국내 인증 제품이 해외에서도 신뢰성 있는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방송사 수요 장비 뿐 아니라, 전관방송, 스피커, 앰프 등 전체 방송장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방송사 수요 장비에 대한 인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 등 전파방송 장비 전반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4K UHD(Ultra-High-Definition) 방송 분야의 장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5.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신규채널의 출범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으로 시청자들이 시청 가능한 채널수는 증가하였으나, 시청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오히려 방송의 품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언어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품격 방송 균절 등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를 추진하였다.

방송사 사전 자체심의 기능 강화 등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사후심의 제재, 방송언어순화 캠페인·방송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언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가.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정책방향은 방송사 자율규제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 사전 자체심의 강화, 자체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정기적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등 자율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PP 자체 심의가이드(4월, 1,200부), 심의사례집(5월, 570부) 등을 발간·배포하였다.

나. 사후심의, 제재조치 등 법적 규제 강화

위원회는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막말, 선정성, 폭력성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을 강화하였다. 2010년 12월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심의하고, 드라마의 초기단계(1~3회) 및 막말, 선정성·폭력성 등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집중심의를 하는 등 품격제고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2월 기준 막말 등 방송언어관련 28건, 선정·폭력 관련 저품격 드라마 26건 등에 대한 법정제재를 실시하였다(<표 III-96> 참조).

<표 III-96> 방송언어 및 저품격드라마 법정제재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법정제재 건수 막말 (방송언어)	218	404	372
	소 계	30(13.8%)	59(14.6%)
	과징금·사과·중지	7	20
저품격 (선정·폭력)	주의·경고	23	24
	소 계	13(6.0%)	20(4.9%)
	사과·중지·징계	1	1
	주의·경고	12	18
			25

다. 건전한 언어이용 환경 조성

위원회는 건전한 언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언어순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방송 언어순화 자막고지(2012년 5월 2일~5월 13일(12일간), 10월 5일~10월 11일(7일간), 자막고지 내용 :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밝게 합니다.’ 등), 특집프로그램(10월 2일~10월 29일, ‘10대 그 바른 말길’), TV공익광고(2012년 9월 10일~11월 7일, ‘어서 말을 해’)의 제작·방영을 통해 청소년 언어순화 및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림 III-51> 올바른 우리말 사용

< TV 자막고지 캠페인 > < TV 특집 프로그램 > <TV 공익광고: ‘어서 말을 해’>



둘째,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바른방송 언어상’을 2011년부터 특별상 부문으로 신설하였다. ‘바른방송 언어상’의 초대 수상팀은 SBS 아나운서팀이었으며, 2012년에는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학회가 수상하였다.

셋째,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환경조성 및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방송PD·작가, 방송기자, 성우,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2012년 12월말 기준, PD 240명, 방송작가·기자 441명, 성우·아나운서 185명 등 총 1,444명을 교육하였다(<표 III-97> 참조).

<표 III-97> 2012년 방송종사자 언어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과정명 연도별	방송기술 공통교육			PD 교육			방송 작가			방송 기자			성우, 아나운서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교육과정		22	20	16	7	13	7	4	2	2	5	8	1	5	
목표인원		400	480	580	200	200	195	80	140	141	150	150	—	80	
교육인원		556	546	578	219	296	240	80	140	159	216	282	22	185	
수행기관		RAPA			한국PD 교육원		RAPA	한국방송 작가협회		RAPA	방송 기자 연합회		RAPA	RAPA	RAPA

라. 방송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전년도 한 해 동안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2011년부터 대상의 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방송인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는 우수 프로그램 469편이 출품되었다.

'대상' 수상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문명과 수학」(기획:이연규, 연출:김형준)으로 본격적인 문명이 탄생되기 이전에 출현한 수의 개념부터 현대 수학에 이르기까지 수학사의 주요 이정표를 알기 쉽게 구현해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시도로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과 대중성을 실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 방송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기리는 공로상은 1970년 MBC TV드라마 PD로 시작해 방송과 인연을 맺은 후 지난 42년간 <허준>, <상도>, <이산>, <동이> 등 많은 작품을 제작하여 한국 드라마를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이병훈PD가 수상하였다.

<그림 III-52>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제4절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1. 통신이용 편의 및 선택권 제고

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6.7% 감소 하였으며, 특히, 이동전화료는 서민생활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이후 가입비·기본료 인하, 초당 과금 시행 등으로 2007년 10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2년 말 기준 92.3으로 △11.0% 감소하였다(<표 III-98> 참조).

<표 III-98> 통신분야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구분	물가지수(2010=100)						2007~2012년 증감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물가지수	90.3	94.5	97.1	100.0	104.0	106.3	16.0%
통신 ^{주1)}	102.6	101.1	101.0	100.0	98.4	95.9	△6.7%
이동전화료	103.3	101.5	101.4	100.0	97.0	92.3	△11.0%
스마트폰이용료	-	-	-	100.0	99.5	98.2	-

주 1) 통신(우편서비스, 전화 및 팩스장비, 전화 및 팩스 서비스)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전도시 기준)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고 음성통화 외에 데이터 사용을 위해 통합형 정액 요금제 가입이 보편화되면서, 실질적인 통신요금 지출 감소 효과는 둔화되었다. 통합형 정액 요금제는 음성, 데이터 사용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저 요금이 34,000원 이상으로 다소 높아, 소량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요금부담 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3G에서처럼 LTE에서도 고령자와 청소년 등 특수계층을 위해 기본료가 낮은 노인층 요금제와 요금상한이 정해진 청소년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각 사별로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요금 한도를 낮춘 15,000원의 정액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청소년은 최저 요금이 20,000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는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음성과 데이터 양을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의 음성통화 최저 사용량을 기존 150분에서 100분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LTE용 선택형 요금제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정소비층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상품도 인가되어 출시되었다. SKT의 결합 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이 결합되는 형태로, 이동전화(1회선)는 LTE 데이터무제한 옵션상품(9천원)이 무료로 제공되고, 인터넷은 기본료 2천원이 할인(이동회선 추가시 할인 확대)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KT가 출시한 상품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IPTV와 집전화 결합시 집전화 기본료 3천원이 할인되는 구조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대폭 낮춘 알뜰폰 서비스도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별정통신은 선불서비스 위주로 판매 되고 기본료가 저렴한 대신 통화료가 비싸 이용자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고 여러 종류의 후불·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되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돋고 있다. 이용이 저조했던 선불 요금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 선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대리점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선불데이터 요금제도 출시되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 되었다(<표 III-99> 참조).

<표 III-99> 기존 이동통신사 및 MVNO 요금상품 비교

구분	이동통신사(SKT 기준)	알뜰폰 사업자
후불서비스	기본료 11,000원 통화료 1.8원/초	기본료 5,500원(50% ↓) 통화료 1.8원/초
선불서비스	통화료 4.8원/초	통화료 3.8원/초(21% ↓)
스마트폰 요금	기본료 34,000원 (음성150분, 데이터100MB, SMS 200건 기준)	기본료 17,000원(50% ↓) (음성150분, 데이터100MB, SMS 200건 기준)

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 구축

과거에 통신요금은 표준요금제 위주로 단순 했으나, 최근에는 요금구조가 복잡해지고 매우 다양한 요금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통신 요금 절감을 위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성이나 데이터 사용량 중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기본 제공량이 함께 증가하는 정액 요금제보다 선택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음

성통화 위주로 사용하는 소량 이용자의 경우 약정이나 기본료가 없는 선불 요금제가 더 편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신요금 관련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편의성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전담기관으로 하고,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참여하여 통신요금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 (www.smartchoice.or.kr)를 구축하여 2012년 12월 오픈하였다.

‘스마트 초이스’는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맞춤형 요금추천(스마트 가이드), 통신서비스 간편 조회 시스템(스마트 라이프), 통신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스마트 리포트) 등 3가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00> 참조).

<표 III-100>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http://www.smartchoice.or.kr)) 서비스 개요

스마트 가이드	통신요금 추천서비스, 통신정보 알리미, 이용약관 안내서비스
스마트 라이프	미환급액, 모바일 상품권 조회, 명의도용·분실단말기 조회 등
스마트 리포트	통신 이용자 블로그, 주부 모니터단, 전문가 칼럼 등

‘스마트 가이드’는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최적의 통신요금 가이드로서, 요금제 추천, 알리미 서비스, 약관안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요금제 추천서비스는 자신의 이용패턴을 입력하면 최적의 요금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연령, 서비스 종류(피처폰, 3G스마트폰, LTE), 약정기간, 이용량(음성·데이터·문자)을 입력하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MVNO) 4개 사의 요금상품 중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여 보여준다.

<그림 III-53> 스마트 초이스 요금제 추천 서비스

이용패턴으로 찾는
요금제 추천

이용 패턴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가장 최적화 된 요금제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용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용중인 통신사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일반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SKT LGU+

연령	성인	청소년 (만 18세 이하)	실버 (만 65세 이상)	전용 요금제	어린이 (만 12세 이하)	복지 (장애인)
서비스	일반 (피처폰 요금제)	스마트폰 (3G)	LTE	약정기간	무약정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음성	65분	150분	300분	500분	700분	300 분
데이터						
문자						

고객님이 선택한
월별 이용량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성인 스마트폰 24개월 300분 500MB 50건

RESET (선택 초기화)
요금제 검색 결과

알리미 서비스는 약정기간 등 이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정보나, 신규 요금제 출시 등 이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소식을 등록해 두면 SMS, 이메일, SNS로 자동전송해 준다. 이용약관 안내 서비스는 통신사별 각 서비스 상품의 이용약관을 모아 한 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 라이프’는 통신서비스 관련 통합·간편 조회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모바일 상품권 조회 ▶명의도용 조회 ▶분실단말기 조회서비스 등 4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리포트’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의 칼럼, 파워 블로거 포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통신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주부 모니터단(링더밸)’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소개해주는 ‘파워통신’ 등 통신요금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스마트 초이스 구축을 통해 통신 요금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스마트초이스 정보제공 대상을 유선통신 및 결합 서비스로 확대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모바일 버전으로 확장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 전국 대표번호 제도 개선

위원회는 2012년 9월에 이용자 편의 제고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사용자) 전화를 실제 수신자에게 연결해 주는 가상 전화번호로, 현재 KT(1588, 1577, 1899), LG U+(1544, 1644, 1661), SKB(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이 대표번호를 사용 중이다. 우선, 유선전화 사용자가 모든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 통화연결 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삽입하였다. 또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어 ARS 용도로 사용하는 대표번호 이용시 기준에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사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용 약관을 개선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다.

카드결제처리서비스 요금도 기존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해 7개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카드결제 건당 24원 이하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에 음식점, 수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는 점포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 카

드를 결제하면서 39원/3분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 보다 짧았다. 이에 대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카드결제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받고, 지능망이용대가, 망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카드결제호 건(件)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데 동의하였다(<표 III-101> 참조).

<표 III-101> 전국 대표번호 제도 개선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표번호 통화가 시외전화인 경우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삽입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히 고지
ARS 용도로 사용하는 대표번호의 통화요금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초과요금은 대표번호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개선
카드결제호 처리서비스 요금 합리화	건당 처리 비용을 39원/분에서 24원/건 이하로 인하 (카드결제처리용 대표번호로 1639번을 새롭게 부여)

가맹점의 카드결제호를 모아 금융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결제대행사(VAN 사업자), 특히 후발 대행사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1639 번호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1588 등 대표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호이동을 통해 1639번을 사용하면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외요금을 부담하거나 대표번호 가입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경감하였다. 위원회는 ARS 대표 번호 이용자의 시내통화 요금 부과 조치로 연간 약 9억 원, 카드결제호 처리서비스를 위한 대표번호 이용으로 연간 약 140억 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 통신요금 관련 이용자 불만 해소

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고시는 2012년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우선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WiBro)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전고지는 이동 전화, WiBro,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에 적용 되며,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지 기준은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문자메세지, 전자메일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최대 5만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WiBro 및 국제로밍서비스(데이터)는 이동전화 고지 기준과 동일하며, 국제전화와 국제로밍서비스(음성)는 과금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월 1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하여 표시하였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으며,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되어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은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기본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초과사용량 추가요율에도 적용되어, 최종 지불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III-54> 참조).

뿐만 아니라,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제시되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 만족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54> 통신요금 표시방법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표시방법 개선 이전	표시방법 개선 이후																																																
이동통신 요금표 (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요금제</th> <th>월정액</th> </tr> </thead> <tbody> <tr> <td>B LTE 34</td> <td>34,000원</td> </tr> <tr> <td>B LTE 42</td> <td>42,000원</td> </tr> <tr> <td>B LTE 52</td> <td>52,000원</td> </tr> <tr> <td>S LTE 62</td> <td>62,000원</td> </tr> <tr> <td>LTE 스마트폰</td> <td>72,000원</td> </tr> <tr> <td>LTE 전용</td> <td>85,000원</td> </tr> <tr> <td>LTE 요금제</td> <td>100,000원</td> </tr> <tr> <td>B LTE ①ing 34</td> <td>34,000원</td> </tr> <tr> <td>S LTE ①ing 42</td> <td>42,000원</td> </tr> <tr> <td>E LTE 끌든 에이지 15</td> <td>15,000원</td> </tr> <tr> <td>B LTE 끌든 에이지 34</td> <td>34,000원</td> </tr> </tbody> </table>	요금제	월정액	B LTE 34	34,000원	B LTE 42	42,000원	B LTE 52	52,000원	S LTE 62	62,000원	LTE 스마트폰	72,000원	LTE 전용	85,000원	LTE 요금제	100,000원	B LTE ①ing 34	34,000원	S LTE ①ing 42	42,000원	E LTE 끌든 에이지 15	15,000원	B LTE 끌든 에이지 34	34,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요금제</th> <th>월정액 (부가세 포함가)</th> </tr> </thead> <tbody> <tr> <td>B LTE 34</td> <td>34,000원 (37,400원)</td> </tr> <tr> <td>B LTE 42</td> <td>42,000원 (46,200원)</td> </tr> <tr> <td>B LTE 52</td> <td>52,000원 (57,200원)</td> </tr> <tr> <td>S LTE 62</td> <td>62,000원 (68,200원)</td> </tr> <tr> <td>LTE 스마트폰</td> <td>72,000원 (79,200원)</td> </tr> <tr> <td>LTE 전용</td> <td>85,000원 (93,500원)</td> </tr> <tr> <td>LTE 요금제</td> <td>100,000원 (110,000원)</td> </tr> <tr> <td>B LTE ①ing 34</td> <td>34,000원 (37,400원)</td> </tr> <tr> <td>S LTE ①ing 42</td> <td>42,000원 (46,200원)</td> </tr> <tr> <td>E LTE 끌든 에이지 15</td> <td>15,000원 (16,500원)</td> </tr> <tr> <td>B LTE 끌든 에이지 34</td> <td>34,000원 (37,400원)</td> </tr> </tbody> </table>	요금제	월정액 (부가세 포함가)	B LTE 34	34,000원 (37,400원)	B LTE 42	42,000원 (46,200원)	B LTE 52	52,000원 (57,200원)	S LTE 62	62,000원 (68,200원)	LTE 스마트폰	72,000원 (79,200원)	LTE 전용	85,000원 (93,500원)	LTE 요금제	100,000원 (110,000원)	B LTE ①ing 34	34,000원 (37,400원)	S LTE ①ing 42	42,000원 (46,200원)	E LTE 끌든 에이지 15	15,000원 (16,500원)	B LTE 끌든 에이지 34	34,000원 (37,400원)
요금제	월정액																																																	
B LTE 34	34,000원																																																	
B LTE 42	42,000원																																																	
B LTE 52	52,000원																																																	
S LTE 62	62,000원																																																	
LTE 스마트폰	72,000원																																																	
LTE 전용	85,000원																																																	
LTE 요금제	100,000원																																																	
B LTE ①ing 34	34,000원																																																	
S LTE ①ing 42	42,000원																																																	
E LTE 끌든 에이지 15	15,000원																																																	
B LTE 끌든 에이지 34	34,000원																																																	
요금제	월정액 (부가세 포함가)																																																	
B LTE 34	34,000원 (37,400원)																																																	
B LTE 42	42,000원 (46,200원)																																																	
B LTE 52	52,000원 (57,200원)																																																	
S LTE 62	62,000원 (68,200원)																																																	
LTE 스마트폰	72,000원 (79,200원)																																																	
LTE 전용	85,000원 (93,500원)																																																	
LTE 요금제	100,000원 (110,000원)																																																	
B LTE ①ing 34	34,000원 (37,400원)																																																	
S LTE ①ing 42	42,000원 (46,200원)																																																	
E LTE 끌든 에이지 15	15,000원 (16,500원)																																																	
B LTE 끌든 에이지 34	34,000원 (37,400원)																																																	

마.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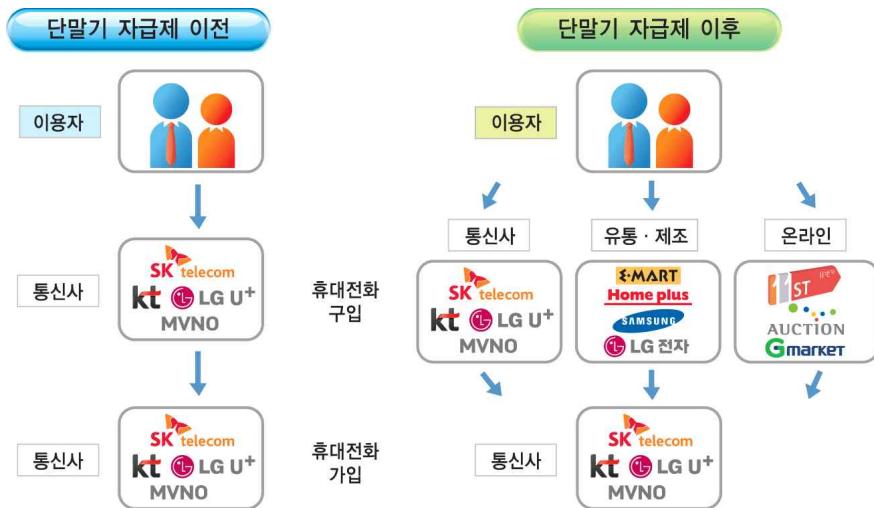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는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하고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식별번호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유통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에 논란이 야기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제약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고가 단말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단말기 구입비용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는 제조사의 장려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고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중고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이동통신 재판매,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

도개선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동통신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였다.

<그림 III-55>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후 비교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다만, 이동 통신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 유통지원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온 경우, 위원회(국립 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 제출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둘째,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방식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관리함에 따라 국산 단말기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출시되는 단말기에 대해 국내 제조사도 IMEI번호를 단말기 내부와 외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이동통신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 3사와 MVNO사업자 간 분실/도난된 휴대전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고, 휴대전화 식별번호의 해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가 출시하는 단말기는 서로 다른 MMS규격을 사용하여,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규격을 국제 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기구)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개선 하였다.

다섯째, 이동통신사가 신규 유통한 단말기에만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 없이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 (약 25%-35%)을 자급 단말기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별로는 KT(심플할인)와 LG U+가 5월말부터, SKT는 6월부터(5월 이용분은 소급 적용) 자급폰 이용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중고 단말기 이용자 ②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중고 단말기 거래건수²⁵⁾는 2012년 1월 26,000건에서 6월 58,000건으로 126%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망적합성시험(IOT: Interoperability Test) 환경을 구축하였다. 자급제 단말기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단말의 이동통신망 위해(危害) 가능성, 서비스 품질 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별 망적합성 시험을 모두 거칠 경우 비용 및 시간 부담(수 개월)이 크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이 원활히 출시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외 제조사의 다양하고 품질이 보장된 중저가 단말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통합적인 망적합성 시험 환경 구축을 추진하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9월부터 정식 시험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 제조사, MVNO사업자, 소비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켜, 국내 이동통신 환경에 맞게 시험인증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일곱째로, 이용자의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단말기의 분실·도난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구축하고, 2012년 5월부터 서

25) 세티즌, 옥션, G마켓, SKT(T에코폰), KT(올레그린폰)의 중고 단말기 거래건수의 합계치임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시 주의 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중고폰 구매 시 분실·도난폰인지 조회할 수 있으며, 2012년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로, 2012년 5월 이전 출시 단말기는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분실·도난폰 구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구매(에스크로)²⁶⁾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 유통망, 마트 등에 홍보 포스터 (약 4만부)와 리플렛(약 46만부)을 배포하고, 2012년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지하철 액자형 광고를 게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그림 III-56> 단말기 자급제 시행 지하철 홍보 포스터



자급제 시행에 맞추어 삼성전자는 2012년 7월에 자급제 단말인 ‘갤럭시 M 스타일’, 11월에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를 출시하였고, LG전자는 2012년 9월에 ‘옵티머스 L7’을 출시하였다. 국내 중소제업체인 프리피아는 2012년 11월에 저가의 피처폰인 ‘세컨드폰’을 출시하고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외국 제조사의 경우 2012년 11월에 중국의 제조사 ZTE에서 ‘제트폰’을 자급제용으로 출시하여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의 애플은 12월부터 자신의 아이폰5, 4S, 4를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다.

26) 안전구매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시, 식별번호 조회시)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함

<그림 III-57>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 현황

구 분	삼성전자 (M Style)	LG전자 (옵티머스 L7)	ZTE (V889F)	삼성전자 (Ace Plus)	프리피아 (PPA-810)
사진					
형태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피처폰
통신방식	WCDMA/GSM	WCDMA/GSM	WCDMA/GSM	WCDMA/GSM	WCDMA/GSM
가격	489,500원	390,000원	239,000원	270,000원	84,900원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동통신사 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의 제조·유통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강화

위원회는 2012년도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이라는 취지 아래 ‘함께 누리는 방송통신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시청자 권리보호 활동 개선 등의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선불통화 활성화,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스마트폰 요금체계 개편 등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유도, 기본료가 낮은 노인층 요금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요금제, 요금상한이 정해진 요금제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막·화면해설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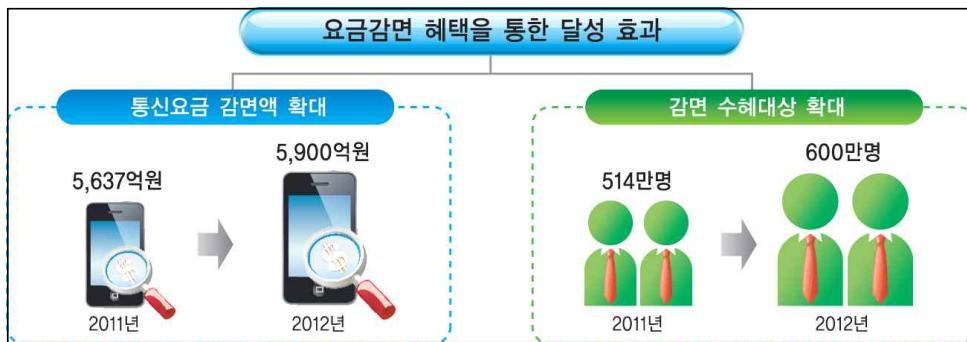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장애인 방송접근 환경조사를 시행하였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센터(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Center) 운영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청자들의 방송참여 및 권리 신장을 위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활성화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시청자불만처리, 의견수렴 등 시청자의 이익침해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제작 지원을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정·노인 등 방송 소외계층 방송환경조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

2012년에는 국민들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추진되었다. 먼저,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입자가 1,000만을 넘어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로 인식되고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을 넘은 가운데, 인터넷전화 및 스마트폰 정액형 요금제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2년 2월 28일)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2012년 4월 18일)하여 인터넷전화의 요금감면 및 스마트폰 등 정액형 요금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제 등을 제도화하였고, TV방송, 포스터, 전단지, 포털사이트, 반상회 자료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책시행이 널리 알려지도록 접근성 제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접근성 및 취약계층 요금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통신사 및 대상자별로 통계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인터넷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통화료의 50%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그리고 통화료 150도수 (최대450분)가 감면되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던 차상위계층 이용자도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인터넷전화 연 215억 원(77만 가구), 이동전화 연 57억 원(5만 5천 명)의 통신비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요금 감면액 확대(2011년 5,637억 원 → 2012년 약 5,900억 원), 감면 수혜대상 확대(2011년 514만 명 → 2012년 약 600만 명)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III-58> 이용자보호 업무 추진체계



<표 III-102>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개선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관련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자격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 감면신청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사 대리점 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사 대리점 내방 ○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동전화 요금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LTE에서도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기본료가 낮은 노인층 요금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요금제, 요금 상한이 정해진 요금제 등 특수 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기존 선택형 요금제의 최소사용량 보다 적게 이용하는 소량이용자(예: 음성통화 100분)를 위한 최저구간을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LTE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자신의 이동전화 이용패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요금절감 등의 효과를 제고하였고,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완화되었으며, 최소사용량의 하향 조정으로 이용량이 적은 계층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12년도에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 요금제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학생·노인층 등 음성통화 소량이용자의 통신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불요금제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 도입을 추진하고,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선불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음

성, SMS 이외 무선인터넷, MMS등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표 III-103> 국내 선불가입자 현황 비교

구 분	주요내용
국내 선불가입자 수	o 2012년 11월말 기준 152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345만 명)의 2.85%에 불과
OECD 선불요금제 이용률	o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선불요금제 이용률은 평균 47%, 이탈리아 80%, 영국 56%, 스페인 36%, 미국 23%, 호주 44%, 일본 2% 등

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 강화

위원회는 2012년도 핵심적인 정책방안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마트 등으로 다양화하여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추진 하였다. 효과적인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을 위해 3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MVNO,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상황 점검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이동통신사, 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여 2011년 12월부터 월 2회 간격으로 단말기 자급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2012년 5월 이후에 출시되는 신규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 식별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 S/W에 관련정보 삽입과 더불어 단말기 뒷면과 박스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사 변경에 따른 MMS 이용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OMA-MMS 규격을 탑재하여 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 LG, 팬택 등에 2012년 5월부터 생산·출시되는 모든 기기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자급단말에 대한 IMEI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II-59>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방법



더불어, 위원회는 이용자가 중고폰을 포함한 해당 폰의 분실·도난폰 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조회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제공하였다. 이용자들은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의 IMEI와 5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통해 분실, 도난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그림 III-60> 참조).

<그림 III-60> 자급 단말 분실·도난 조회 서비스



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제조사의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유통망간 경쟁 촉진과 중저가 단말기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적 기대효과

를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판매 사업자(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MVNO 서비스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확대를 통한 사업자간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MVNO간 번호이동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 12월 이후부터 번호이동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선불서비스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자격 부여, 신청절차 개선, 번호이동 시행시기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2012년 4월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MVNO 및 이동통신 3사 등의 번호이동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해당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 1월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와 재판매사업자 간 번호이동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에는 기존 이동통신 3사 및 재판매사업자(MVNO) 등의 번호이동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번호이동성제도는 설비 미보유에 해당하는 A유형 재판매 사업자(2012년 1월), B유형인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자(2012년 4월), C유형에 해당하는 전산보유 재판매 사업자(2012년 10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 되었다(<표 III-104> 참조).

<표 III-104> MVNO 사업자 유형별 번호이동 현황

유형	영업전산	HLR ^{주1)}	MVNO사업자	KTOA 연동주체	비고 (MNO사업자)
A	X	X	CJ헬로비전 등	MNO	SKT, KT, LG U+
B	○	○	한국케이블텔레콤	MVNO	SKT
C	○	X	현재 사업자 없음	MVNO	SKT, KT, LG U+

주1) HLR(Home Location Register,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 : 가입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장치로서 교환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수행

이와 같이, MVNO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으로 통신이용자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MVNO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전화 유통망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판매, 수입판매점, 편의점 등으로 다변화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단말기의 제조·유통이 가능하여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도에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와 함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구축하였다. 과거 통신요금은 표준요금제 위주로 단순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노인·청소년 대상 전용요금

제, 선불, 결합상품 등 매우 다양한 요금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 신규 요금제, 약정기간 등 통신요금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신요금 절감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II-61> 요금제의 변화 추이 비교



이러한 스마트 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음성 소량이용자에게 가입비와 기본료 부담이 없는 ‘선불요금제’를 추천하고,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추천을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 제공량을 모두 쓰지 못하는 이용자에게는 하위구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표 III-105> 참조).

<표 III-105> 정보제공을 통한 통신요금 절감사례

- ▲ 음성을 소량 이용할 경우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가 적합
(표준요금제 기본료 1만1천원+통화료 4천원 ⇒ 선불요금제 월 5천원)
- ▲ 만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 전용요금제’에 가입 가능. 노인 요금제는 표준요금제 대비 평균 2천원 정도 저렴하고, 일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한(3만4천원) 보다 낮은 1만5천원 요금제부터 제공
- ▲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추천을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 제공량을 모두 쓰지 못하는 이용자가 하위구간(6만4천원⇒5만4천원)으로 변경할 경우 약 12% 요금 절감 가능

다.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위원회는 2000년부터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 교육방송을 보급, 장애인방송 접근 환경 조사 등 다각도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확대 보급하는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도 전년대비 10.4% 증가한 총 68억 7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다(<표 III-106> 참조).

<표 III-106>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지원액	2012년 지원액	사업내용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916	3,416	
-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1,888	1,898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2011년 8,134대 → 2012년 9,170대)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753	1,313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2011년 4,300대 → 2012년 7,500대)
-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165	165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2011년, 2012년 3,000대)
- 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40	-	- 수신기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70	40	- 장애인 방송접근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지원
o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3,307	3,457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3,140	3,212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비 지원(2011년 53개사 → 61개사 이상)
-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137	155	-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EBS 교육방송물을 보급 2011년 2040편 → 2,300편
- 장애인방송접근 환경조사	30	90	- 장애인방송 편성 실태조사, 편성실적 모니터링 및 점검
합 계	6,223	6,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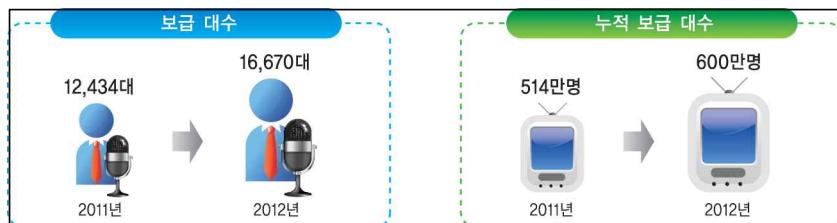
<그림 III-62>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수신기 보급 및 지원 현황



첫째, 2012년도 장애인 방송수신기(자막방송 · 화면해설 · 난청노인용) 보급은 전년 대비 34.1% 증가한 16,670대를 보급하여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방송 수신기 성능개선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TV시청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그림 III-63>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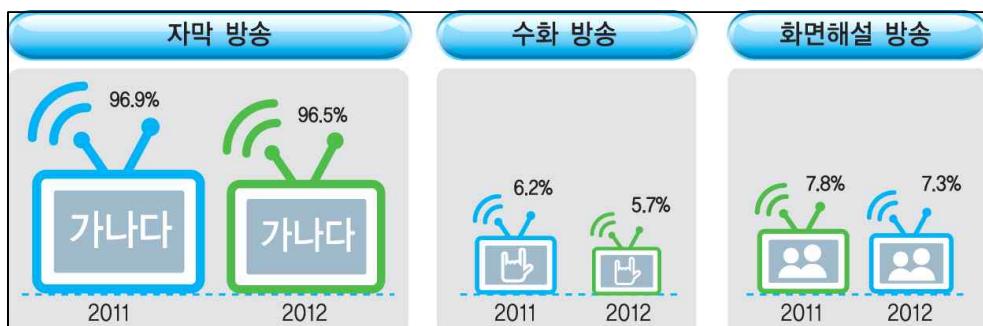


둘째, 개정된 「방송법」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이고 제작지원도 확대하였다. 이러한 방송제작 지원에는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지역지상파 방송사(KBS 지역총국, 지역 MBC, 지역민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총 61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하였고, 시청각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 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다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표 III-107> 참조).

<표 III-107> 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방송유형별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자막방송	100.0	100.0	100.0	100.0	92.0	93.0	93.5	89.3	98.7	99.9	96.9	96.5
수화방송	9.0	9.0	4.5	4.8	5.5	3.8	6.1	5.8	5.7	5.5	6.2	5.7
화면해설방송	8.3	10.5	11.6	11.7	6.3	6.2	5.2	5.7	7.3	8.1	7.8	7.3

<그림 III-64> 지상파 4사 평균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셋째, 방송환경조사 단체(총 6개 주제 : 장애인2, 다문화 가정2, 노인1, 활용격차1)를 선정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이용행태 등 방송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정책실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 단체 대상 사업점검 및 중간보고(2012년 7월)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회 고시에 따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2012년 2월)하고 5회의 전체 회의, 9회의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 승인·공표(2012년 4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인 정기준 마련(2012년 6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마련(2012년 9월)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교육강화 및 인력양성 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통신 가이드 라인’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2012년 6월) 하였다. 또한, 수화방송 및 통신중계서비스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통역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방송사 및 통신중계센터 소속 수화통역사 14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2012년 6~7월)하였으며, 장애인 방송 접근기회 제공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화면해설방송 정규편성 지원(2012년 1월) 및 지역대학(영산대, 광주대)과 협력하여 화면해설방송 제작 전공교과 과정을 운영(2012년 3월)하였다.

라.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1) 농어촌 망 구축

위원회는 도·농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및 보편적 방통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망 투자를 기피 하는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BcN 구축 확대를 위한 효율적 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전국 농어촌 지역 BcN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구축비용 융자지원 및 망 구축 의무부과 등의 정책도 추진하여 2012년 12 월 기준, 농어촌은 89%, 도시는 98%에 BcN을 구축하였다(<표 III-108> 참조).

<표 III-108> 도·농간 광대역통합망(BcN) 가입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어촌	56	63	76	86	89
도시	74	83	90	98	98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규모 농어촌 지역 BcN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망 구축을 촉진하고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 서민들도 언제든지 BcN을 통해 다양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와 같은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위원회는 2012년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BcN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 관광명소 Wi-Fi 무선 서비스, 마을회관 주민소통 서비스, 지역정보 서비스 등의 BcN 서비스 모델을 발굴 및 보급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 모델 4종을 발굴·개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망 구축 확대 및 광대역망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발굴·보급하여 도·농간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 시청자 권리보호 활동 개선

위원회는 시청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지원, 시청자 권리증진 활동지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운영과 시청자 평가원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및 추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2012년 4~10월)하였다. 2012년 1월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 7월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표 III-109> 참조).

<표 III-109>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지원액	2012년 지원액	주요내용
o 미디어교육 지원	500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재 재발간, 미디어교육 창의적 활동 지원 o 미디어교육 저널 발간,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운영 등
o 시청자 권리증진 활동지원	20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청자 및 소외계층 방송환경 조사 지원
o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4,140	3,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o 교육 및 제작사업, 건물 운영관리비 등 o 제작 장비 디지털 전환 등
o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16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청자 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동에 대한 지원 o 2011년도 한 개사 당 100만원 → 46만원 지원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함양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디어 교육 지원 활동을 추진 하였으며, 2012년에는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해당 교재의 보급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자료 및 교육성과 정보를 웹 아카이브에 DB화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소외계층 등 시청자 대상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미디어교육 관련 저널을 발간하였으며, 소외계층 등의 방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청자의 방송이용실태 및 시청자 참여 정도 등의 환경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부산과 광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일반인·학생·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전 연령·계층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참여와 시민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일반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쉬운 영상촬영, 영상편집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시민제작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획·촬영·편집의 제작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과 방송 액세스의 행정적 절차 등 관련 프로세스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방송제작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방송사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디어특강, 영상 공모전, 우수 영상물 상영회 등 시청자 참여 관련 지역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미디어 강사양성 및 강사 풀(pool)구축, 교원 직무연수 등 미디어 교육체계구축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 예산(146 억 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춘천시·대전시·인천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며, 지역 균형발전 및 미디어 접근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2월 개관에 맞추어 이용자 간 만

남·소통·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간 중심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표 III-110> 참조).

<표 III-110>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개요

구 분	수도권(인천)센터	충청권(대전)센터	강원권(춘천)센터
조성위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3, 4층	대전시 유성구 EXPO 과학공원 대전CT센터 1, 4층	춘천시 퇴계동 770-3번지 강원향토공예관
제작시설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TV조정실, 장애인방송 제작실, 장비대여실 등		
교육시설	미디어체험관, 디지털교육실, 일반교육실, 영상자료실, 동아리·세미나실, 소품실 등		

시청자 미디어 이해도 증진 및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6월 까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공모전은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상의 훈격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장상으로 격상하여 시행하였으며, 146편의 응모작 중 최종 10편의 작품에 대해 시상하였다. 2012년 대상(방송통신위원회장상)은 어울림 합창단(김선영·지주엽)의 “희망을 노래하다”가 선정되었다.

또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영,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롯한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지역의 독특한 문화, 풍습 등을 소재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방송물에 대해 방송채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다채널, 양방향화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맞추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방송사 선정은 지상파, 공동체라디오,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SO)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진행 되었으며,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이 결정되었다.

2012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모는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41개의 제작지원 방송사에 대해 총 지원금의 70%에 달하는 8억 5천만 원을 1차 지원금으로 지급하였고, 지원금의 30%에 해당 하는 3억 6천만 원을 2차 지원금으로 각각 교부하였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월과 6월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되었고, 7월에는 사업추진실적, 회계 관리 등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 8월과 9월에는 하반기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되었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주요내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지원액	2012년 지원액	사업내용
o 지상파방송 지원	500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지역지상파, 공동체라디오 포함 17개사 지원 (1,256편) ※ 2011년도 18개사 553편 지원
o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1,000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 위성방송 25개사 지원(1,265편) ※ 2011년도 26개사 1,396편 지원
합 계	1,500	1,350	

한편, 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법조계, 방송,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아홉 차례의 시청자권익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월에는 IPTV 사업자 위약금, 6월에는 케이블TV 단체수신 계약, 9월에는 케이블TV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관련 불만의 안건을 채택하여 경고 8개사, 주의 8개사, 권고 7개사 등 행정지도·제재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각 방송사가 선임한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방송 3사인 KBS, MBC, SBS를 포함하여 JTBC, TV조선, MBN,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총 1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20개사를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시청자들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해 장애인(3개), 다문화(4개), 노인(1개), 아동·청소년(6개) 관련 단체를 선정하여 미디어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다. 총 103여개 학교에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였고, 2012년 6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공주, 순천, 부산, 창원, 대구)에서 방과 후 미디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생 대상 미디어 교육 전공교과 과정을 3개 대학(전남대, 목포대, 부산교대)에서 운영하였다.

바.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0호는 보편적역무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3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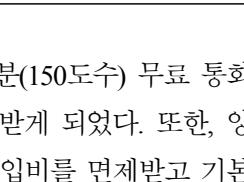
보편적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편적역무의 내용을 유선전화 서비스와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및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마련된 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2년 2월 28일에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우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2012년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 하였다. 기존에는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개별기관에서 자격서류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 간소화시스템), 이동통신사 요금감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요금감면 절차간소화로 이용자는 별도 자격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특히,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 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라디오·신문·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KBS, IPTV(3개사), YTN, 국회방송 등 11개 공공·공익 채널에 TV 광고와 라디오 공익 광고를 송출하고, 중앙일간지, 지하철 객차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주민센터, 보육시설, 통신사 대리점 등 15,700여 개소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표 III-112> 참조).

<표 III-112>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홍보 현황

구분		기간 및 매체, 배포처							홍보물				
공익 광고	TV	기간	방송국		송출 횟수								
		3.1~3.30	KBS1TV		15회				 				
		9.1~9.30	YTN		30회								
		3.10~3.23	IPTV (KT, SKB, LGU+)		1,042,966회 가구 시청 (VOD 시청전 방영)				 				
	라디오	3.15.~5.6 9.10~11.30	공공·공익채널 (11개)		총 3,815회 송출								
		9.10~10. 9	KBS2-AM(전국권)		116				-				
신문광고 (총 25개 매체)		3.5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3.12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프라임경제, 아주경제, 이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전자신문										
지하철 (액자형 광고)	9.15~10.15	계재 수량(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합 계					
홍보 포스터 /전단지	구분	2,080	290	150	40	110	30	2,700					
		배포처	3,800	2,100	1,170	8,600	15,680						
	수 량	포스터	7,600	4,200	2,330	15,000	29,130						
		전단지	38,000	21,000	12,750	166,000	237,750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터넷전화의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되었다. 또한, 양육 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 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 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 5천명이 총 57억 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 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514만 명의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유·무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약 5,637억 원의 요금감면을 받았다(<표 III-113> 참조).

<표 III-113>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및 기준

구 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 이하인 자 ※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495,55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794,660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무료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무료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35% 감면 ·통화료 35%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 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기본사용료 30% 감면	-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

한편, 2012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편의 및 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유공자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하여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동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의 범위를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 명확화하고,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를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스마트폰 보급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 위주 (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 감소가 예상되어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기존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 1/4분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 명 중 35.4만 명(95.7%)이 연 84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통신중계서비스 추진

위원회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었고, 위원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란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화통역사에게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전달하면 수화 통역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통역)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림 III-65> 통신중계서비스 개요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직 상담, 상품 문의나 주문, 금융 처리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처리할 수 있어 27만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2011년에 총 505,478건의 중계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중계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6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통신중계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국내통화, 한국어 음성과 문자 및 수화(영상통화)에 대한 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무휴(365일 24시간)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을 부담하고 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수번호 107로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통신중계서비스에 ‘107 손말이음’이라는 알기 쉬운 새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가. 전자파 대응체계 강화

1)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도입

위원회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등급제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국회에서 등급제 관련 「전파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법」 제47조2제1항에 의거하여 전자파 등급 기준, 등급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등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위원회가 마련한 전자파등급 고시(안)은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을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의 경우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박스에 등급을 표시도록 하였으며,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경우는 「전파법」에 명시된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해

당 무선설비,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4>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단위: W/kg, 1g 평균 기준)

구분	등급 분류	표시방법
1등급	전자파흡수율 0.8이하	 
2등급	전자파흡수율 0.8~1.6	

*전자파 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현행 국내 기준은 1.6W/kg으로 초과 시 제조/판매 불가

<표 III-115>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구분	등급 분류	표시방법
1등급	일반인 기준의 1/2	  
2등급	일반인 기준 이하	
주의등급	일반인~직업인 기준	
경고등급	직업인 기준 초과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 기준 초과 시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

위원회는 2012년 9월 공청회 개최와 행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1월에 전자파 등급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2) 전자파 관련 연구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

위원회는 2012년 2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 5,552곳과 전기장판 등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의 전자파 방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나 가전제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 레인지 우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장이 측정되어 30cm 이상 이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

다. 또한 전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수립하였던 ‘전자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5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표 III-116> 참조).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어린이를 포함한 전자파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대한 전자파 영향 연구, 중장기적인 전향적 역학연구, 휴대전화 사용이 어린이 뇌 암에 미치는 다국적 역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III-116>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대상	연구 결과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주파수대역에서 성인에 비해 전자파가 더 잘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 휴대전화 사용이 많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가능성 높음(전자파 연관성은 미확인)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 사용은 영유아의 운동, 인지기능 등 신경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생물학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주파수의 전자파를 동시 노출한 경우 세포·태아·정자·면역체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휴대전화 27개 업체 409개 모델을 대상으로 전자파 흡수율 관련 정보를 2012년 7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RRA)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전자파 강도 또한 이미 2007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홈페이지 상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값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델별, 제조회사별로 메뉴를 구성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매 달 공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과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값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국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III-66> 전자파 관련 정보공개

전자파흡수율 측정결과 공개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공개

3)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제정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2012년 9월 위원회는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우선,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 및 학부모가 교육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로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그림 III-67> 참조).

<그림 III-67>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홍보자료



나. 3D 시청 안전성 제고

3D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실험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의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시각적 피로나 두통 등 3D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3D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과 ‘3D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1)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2차 개정

그간 위원회는 3D 영상 시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Ver 1.0)²⁷⁾’을 제정(2010년 12월 20일)하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Ver 2.0)²⁸⁾’을 1차 개정(2011년 12월 23일) 하였다.

2012년에는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한 뇌 반응 실험, 3D 자극지표 기준에 따른 3D 콘텐츠 분석 등을 통해 3D 시청에 따른 시각피로를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3D 시청 취약군(파킨슨병 환자, 치매 환자, 또는 성안뇌전증 환자, 학동기 아동 등) 대상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취약군의 3DTV 시청 이상증상(어지럼, 구토, 시각피로 등) 유발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2012년 12월 28일에 2차 개정본인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Ver 3.0)’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표 III-117> 참조).

<표 III-117>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3.0)’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 시청자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청자 개인 특성을 고려한 시청방법(3D TV를 시청하기 위한 방의 조명, 음향, 환기, 시청 높이, TV의 밝기, 초점 등), 시청거리 및 각도(수직각도, 수평 각도), 시청시간, 시청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권고
취약군의 시청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아/어린이의 시청, 반응행동에 대한 지도정상군의 과시청 및 단기반복 시청이 미치는 영향도사시/부등시/야시/파킨스병/치매환자의 시청 방법에 대한 권고학동기 (6세~12세) 아동의 눈조절과 모음에 미치는 영향

<그림 III-68>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Ver3.0) 홍보자료



27)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 1.0) : 3D 영상 시청 시 불편감을 주는 요인과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조명, 화면밝기 등 일반적인 3D 시청 방법, 어린이, 노인, 안과질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권고안, 그리고 3D 시청으로 인한 인체영향성 등 4가지로 나누어 인체 영향성에 대해 설명

28)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 2.0) : 양안 시차 크기, 3D 콘텐츠 품질 평가 기술 방법론, 생리적 영향 관련 임상실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상인, 어린이, 취약계층(안과질환자, 뇌 질환자 등) 대상 임상실험으로 구체화된 인체 영향성 분석결과를 제시

2)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3D 콘텐츠 제작이 3D 시청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3D 콘텐츠 입체 효과에 따른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Ver 1.0)²⁹⁾’을 제정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그 간의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이드라인(Ver 1.0) 상의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 허용범위를 도출하는 ‘3D 콘텐츠 제작가이드라인(Ver 2.0)’으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가이드라인(Ver 1.0)에서 제시한 3D 콘텐츠 제작 품질 요인에 대한 영상콘텐츠 개발과 임상시험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청불편감이 없는 입체 감각의 허용범위, 크기오차, 수직오차, 포커스 오차 등 9개 항목의 구체적인 정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2년 12월 28일, 양질의 3D 품질이 보장되는 품질 요인별 범례적 수치를 제공하는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Ver 2.0)’을 발표하였다(<표 III-118> 참조).

<표 III-118>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Ver 2.0)의 개정 내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제정 (Ver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작 관련 권고 항목 도출 등	정성적 권고
1차 개정 (Ver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3장 가이드라인 수치 결정 방법 내용 수정4장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 수정 : 10개 항목 실태실험 결과 반영(양의 시차, 음의 시차, 최대상대시차, 밝기 일치, 컬러특성 일치, 초점 일치, 피사계 심도 일치, 수직오차, 줌오차, 회전 정렬오차)	정량적 권고

3) 3D 방송기술 국내외 표준화 추진

위원회는 3D 방송제작 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을 추진하여 3D 방송 관련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실감형 차세대 방송 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 선도 및 미래 디지털 라이프 사회 구현에 필요한 원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4월 ITU-T에 3D 시청 안전성 연구의 실험결과 등을 ITU-T SG9에 기고하여 신규보고서 초안(DNR; Draft New Report) 문서(J.3D-Fatigue)에 반영하였고, 10월에는 ITU-R SG6의 3DTV 방송시스템 특성 보고

29)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1.0) : 고품질의 실감나는 3D 콘텐츠가 제작·방송되고 시청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3D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3D 촬영, CG, 편집 등의 지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3D 용어 정의 및 촬영 준비단계, 촬영, 편집 등 프로세스별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음

서(BT.2160)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3D 시청 안전성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3D 방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도 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3D 방송 프로그램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3D 방송 시청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구체적 표준 제시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3D 방송 서비스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3D 콘텐츠 제작, 압축 및 전송, 디스플레이, 시청자 및 시청자 환경에 대한 3D 방송 전반에 대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회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이하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기통신망의 기술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검·경찰청 등의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얻어내는 사기 수법을 사용함에 따라 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입법화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담은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을 2012년 6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국제전화번호 앞에 00X(001, 002, 005, 006, 008, 009), 00XXX(00755, 00770 등)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이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 번호로 변작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전기통신망에서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통신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 외에는 발신번호를 변경

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발신 전화 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 마련한 대책들이 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집중되어 있어, 문자, 메신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 수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의 관련 부서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의 전문인력과 함께 공동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표 III-119> 참조).

<표 III-119>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대책

4대 중점분야		13개 세부 추진과제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문자피싱	①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제한
		② 인터넷 발송 피싱 문자 차단
		③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 및 번호체계정비
	보이스피싱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메신저피싱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서비스 정책 개선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2. 법제도 개선	⑨ 피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약관 개정
3. 피싱대응기반 구축	⑪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⑫ 통신사업자 이행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4. 대국민 인식제고	⑬ 피싱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출시되는 국산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송신 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전달과정에서 차단하고 그 사실을 문자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내용에 ‘보안승급’과 같이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도록 하였고, 2013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통신사업자의 이행실태 점검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한국 인터넷진흥원 내에 ‘피싱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피싱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피싱수법들이 진화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싱대응센터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4. 인터넷 문화선진국 구현

가.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1)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범국민운동 전개

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 교육계, 언론사, 정보통신사업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범국민협의회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연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범국민협의회는 매년 참여기관 수를 확대하여 2010년 55개 기관에서 2012년 7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모바일앱·UCC·표어·포스터 등 우수한 인터넷 윤리 콘텐츠를 공모, 시상하는 인터넷 윤리대전 등 아름다운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범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2012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선포식’ 및 주간행사를 2012년 6월 11~16일까지 개최하였다. 동 기간 중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거리캠페인, 사랑의 PC보내기, 온·오프라인 서약 캠페인, 골든벨 윤리교실, 인터넷 효앨범 증정식, 선플달기 캠페인, 인터넷 윤리강화 세미나, 인터넷 윤리체험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노인, 일반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52,970명이 동참하였다.

2)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교실’ 교육 사업을 추

진하여 인터넷의 주 이용계층인 학생들이 이를 통하여 자발적 학습과 체험을 통해 인터넷 사회의 진입단계에서부터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011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초·중·고 정규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진행하는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해왔다. 2012년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20개교에서 3,1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보안, 소셜미디어 특성, 바람직한 댓글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III-121> 참조).

<표 III-120> 2012년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육인원 (명)	6,798	3,289	10,087
학교수 (개)	190	79	269

<표 III-121> 2012년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 (명)	2,355	328	477	3,160
학교수 (개)	87	14	19	120

<그림 III-68>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교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우리는 인터넷보안 요원	SMART한 소셜미디어 친구되기	UCC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댓글이야기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체험활동 교사 지도서
우리는 인터넷보안 요원	SMART한 소셜미디어 친구되기	초·중·고 교육 통합 지도서

이와 더불어, 인터넷 윤리교육 저변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교육, 장학관, 교장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많은 교원이 인터넷 윤리 및 미디어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원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2012년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유치원

교원 총 2,22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인터넷 윤리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리더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전략 수립방안, 스마트기기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전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콘텐츠 개발 후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 서비스(www.netethics.kr)에서 수업지도안 형식으로 배포되어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 정립을 위해 유아 미디어 체험교실을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 및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하여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여,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개교 355명의 장애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가중시키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위해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 지키기, 사이버 공간의 위험으로부터 자녀 보호하기,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기르기’ 등 3개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홍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이 찾아가는 집체교육 방식의 순회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저작권 보호 등 생소한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골든벨 형식의 퀴즈와 시청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2012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17,649명(70개교)을 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보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대해 강화된 교육 자료를 통해 교육 대상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표 III-122> 참조).

<표 III-122> 2012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운영 현황

구분	수도권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계
교육인원(명)	11,274	1,080	415	1,257	1,972	1,651	17,649
학 교수(개)	44	4	2	7	7	6	70

이와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2009년 개발된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기존 문항의 신뢰도를 높이고 변화

하는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였다.

3) 인터넷 윤리 로고/캐릭터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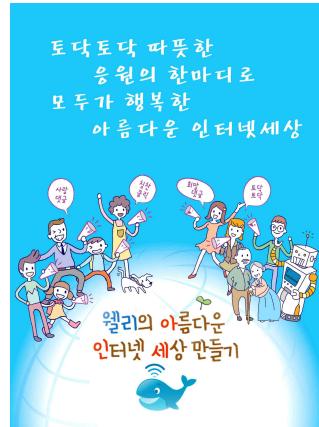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인터넷윤리 로고 ‘토닥이’와 캐릭터 ‘웰리’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시 초·중·고 1,284개교에 인터넷 윤리 실천수칙 포스터를 배포하였다.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이 있는 2012년 6월에는 서울시내 주요 버스, 지하철, 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및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윤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그림 III-70> 참조).

<그림 III-70> 인터넷윤리 홍보



인터넷윤리 실천수칙 포스터



인터넷윤리 신문 지면 홍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보고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해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건전한 인터넷 윤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 하였다. 이 밖에도, 언론사와 협력하여 ‘매월 말일은

악풀지우는 날’, ‘U클린 토크콘서트’, ‘스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응원 영상’ 등 인터넷 윤리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 협력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인터넷 윤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전국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드림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선도하고 활성화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2010년 1기 831명 → 2011년 2기 2,853명 → 2012년 3기 5,598명). 또한, 지역별 드림단 발대식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전국 16개 지역, 20개 학교).

연간 활동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침해사고 예방 학습을 위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 센터(KISC) 및 NHN, DAUM 등 인터넷 관련 기관을 탐방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등) 멘토링 및 ‘꿈 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또한, 인터넷 리더 육성 캠프, 드림단 활동 내역 및 지역사회 소식 등을 알리는 드림단 기자단 운영, 인터넷 문화 및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인터넷 환경 개선 활동으로서 유해물 신고 게시판 운영(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터넷 효(孝)앨범’ 제작 및 중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남을 돋고 배려하는 소양 배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부산 및 광주, 여수(여수세계박람회)에서 체험형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운영하여 드림단원, 학생 및 일반인 등 약 23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강화

1)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P2P/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음란동영상 유통에 대해 음란동영상DB를 구축 하여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정보 유통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크게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관리하는 DB와 파일공유사이트에 제공하여 실제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링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트 단위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 단위의 DB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DB와 그 성격이 구분된다.

파일공유사이트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터링 모듈 제공절차를 마련 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스템 구성 및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음란동영상의 삭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5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9만 9천여 건의 음란동영상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음란동영상DB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용을 위하여 보급방식을 파일공유사이트 대상 필터링 모듈 제공방식에서 필터링 S/W 사업자 대상 동영상DB 제공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음란동영상 차단을 위한 필터링 S/W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파일공유사이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음란물 필터링 S/W를 사용하는 일반 정보이용자까지 음란물 차단효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음란동영상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린i-Net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통해 동영상DB 활용 및 수요 등을 검토한 후, 기존의 사이트 단위 내용등급DB와 함께 보급하여 좀 더 많은 필터링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지속적인 음란동영상DB 구축 및 보급 노력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음란물 차단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예정이다.

2) 스팸 감축 및 대응체계 강화

위원회는 스팸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스팸 방지 기술 개발·보급 및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스팸방지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도 대비 2012년도의 이용자 1인당 스팸수신량은 휴대전화 84.7%, 이메일 89.9%가 감소하였다(<그림 III-71> 참조).

<그림 III-71>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2012년 스팸 수신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 유통현황 측정 및 공개(2012년 9월)’와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가입자 지속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최초 측정·공개한 ‘스팸 유통현황 측정 및 공개’의 시행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 등 관련 정보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스팸 감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스팸 유통현황 측정 결과는 정기적으로 공개(연 2회) 될 예정이며, 2012년 하반기 측정결과는 2013년 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2012년은 국민에게 최종 도착하는 스팸 수신량 중심의 스팸 대응정책에서 스팸이 전송되는 네트워크 단계부터의 대응으로 변화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그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정책으로서,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팸이 전송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중간단계에서의 분석·차단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확대 또한 직접적으로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동 서비스가 최초 제공되었던 2010년도 대비 가입자 수는 약 82%가 증가해, 2012년 기준,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약 51%가 사용 중에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 시 기본 가입을 시행하고 있어 기기 교체 등의 신규 가입자 수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II-123> 참조).

<표 III-123>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 만명)

이 통 사	SKT	KT	LG U+	합 계
제공 시기	2007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월	-
전체 이용자	2,692	1,657	1,008	5,357
서비스 가입자 수 (전체 대비)	1,531 (56.87%)	1,00 (66.38%)	83 (8.23%)	2,714 (50.66%)

그 외 위원회는 웹상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스팸발송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서 스팸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규제가 약한 서비스로 스팸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왔다.

이메일 스팸방지를 위해서는 주요 ISP와 스팸발송에 취약한 이메일발송포트 25번을 발신자 인증기능이 있는 대체포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행의 첫

단계로서 메일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메일 발송포트 외에 보안이 강화된 대체포트를 제공하도록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서비스를 대상으로 스팸 대응 범위를 확대하여 게시판, 팩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스팸글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영세한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자체 게시판 개발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게시판 스팸 차단도구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배포하였다. 팩스 스팸의 감축을 위해서는 국내 주요 웹팩스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송 팩스 내 발신업체 의무 표기,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팩스 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스팸을 예방하기 위해 여신 금융협회 등과 협의하여 대출상담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 신규 서비스를 대상으로 스팸방지 지침을 개발·배포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현재보다 다양한 스팸 발·수신 경로가 나타나고, 보다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스파미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유기적 스팸대응체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확립

1) DDoS 대응 및 사이버대피소 운영

최근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정상적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7일 발생한 7.7 디도스 침해사고를 통해 위원회는 사이버대피소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9월 28일에 디도스 공격방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피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사이버대피소는 디도스 공격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24시간 상시운영실을 통해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방어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012년까지 총 329개 업체가 사이버대피소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223건의 디도스 공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표 III-124> 참조).

<표 III-124> DDoS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개, 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서비스 이용업체수	52	101	176	329
DDoS 공격방어건수	25	60	138	223

디도스 공격방어를 통해 확보한 좀비PC의 IP와 공격명령서버(C&C)에 대한 치료 및 차단 등 후속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 재발방지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4일 발생한 3.4 디도스 침해사고에 사용된 총 116,299대의 좀비PC 중 71,508대(약 61%)를 사이버대피소를 통해 탐지하였고, 2011년은 약 97,400여대, 2012년은 162,500여대에 이르는 좀비PC를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탐지되는 좀비PC의 증가는 매년 디도스에 사용되는 좀비PC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0년의 서비스 구축경험과 2011년의 본격적인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2012년에는 단순한 디도스 공격방어에서, 디도스 공격 대상의 다변화(홈페이지 대상 → 도메인네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대상)에 따른 도메인네임시스템 대상 디도스 공격 대응책과 사이버대피소에서 방어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 탐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디도스 공격대응 유관기관 및 정보보호 전문업체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디도스 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함께 디도스 공격의 근본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향후 스마트워크 환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의 보안수준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연동구간에서 DDoS 공격 트래픽을 신속하게 탐지·차단하기 위한 DDoS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ISP·MSO 사업자의 보안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7 DDoS(2009년), 3.4 DDoS (2011년) 등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신속한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2개 ISP·MSO 사업자의 인터넷 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여 DDoS 공격 탐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DDoS 공격 대응

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이용자 및 웹사이트 보안수준 강화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10년부터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 웹사이트 내 악성코드 은닉여부 알림 등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고, 신규 취약점, 웜·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관련 예방·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웹 체크(Web-Check)’ 서비스를 툴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웹 체크’는 여러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좀비PC 감염여부 확인, 악성코드 탐지 능력 등이 강화되었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안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3) 감염 PC 사이버치료체계 운영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치료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KT, SKB, 티브로드와 공조를 통해 구축한 ‘감염PC 사이버치료체계’는 2011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후 발생한 3.4 DDoS 사고, EBS 수능강의 사이트 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좀비PC 이용자에게 인터넷 팝업창을 통해 악성코드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전용백신을 보급하며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였다.

2012년도에는 DDoS 공격을 시도한 좀비PC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 등 해킹된 웹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대해서도 감염 사실을 알리고 전용백신을 보급하였다. 특히,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Adobe 플래시 플레이어 보안 취약점 프로그램 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유도하였다.

7월에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사용자의 PC를 해커가 운영하는 DNS 서버로 연결하여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는 DNS 체인저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내PC 1,798대를 대상으로 감염사실을 알고, DNS체인저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DNS 설정 정상화 방법을 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제공하였다. 그 결과, 미연방수사국(FBI)이 임시적으로 운영해오던 DNS 임시 서버가 중단되었음에도 국내 피해사례는 단 한건만이 접수되는 등 해외에 비해 국내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침해사고 대응 효율화를 위해 감염PC 치료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좀비PC에서 악성코드 샘플을 채집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치료할 수 있는 전용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하였다.

2013년도에는 주요 ISP 3사중에서 치료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LG U+와 공조하여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KISA의 DNS 싱크홀 시스템에서 탐지된 좀비PC, 이메일 트랩 시스템을 통해 탐

지된 스팸발송 좀비PC를 자동으로 치료체계와 연동하여 감염 사실을 알려, 백신으로 치료 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도에 전용백신 악성코드 치료결과 여부 수집 등 개선된 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중복으로 악용되는 좀비PC에 대한 치료 조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민간업체와 공조를 통해 좀비IP를 더 많이 확보하고 대국민 좀비PC를 치료하여 인터넷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III-125> 2012년 악성코드 감염사실 통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감염사실 통보 수	9,400,000	356	945	21,146	664	1,285	672	21,690	1,357	1,890	3,075	2,807	5,372	61,347

* 2011년도는 3월 4일에 발생한 DDoS 악성코드로 인해 감염사실 통보가 급증

4)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위원회는 기업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 보호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권장하고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해왔다.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기업은 2013년에 대부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권고 제도도 유지되어 의무 대상자가 아닌 기업도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는 기업 정보보호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기업은 정보 보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보호 인력채용, 컨설팅 및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등 정보보호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보보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지속적 투자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사들의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1.25 사태 이후 사이버침해 및 DDoS 공격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 통신시설사업자(IDC), 쇼핑몰,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보호 조치를 위하여 2004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매년 받도록하여 검증된 정보보호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 및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하여 수검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연말 쏠림 현상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2년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는 325개(2012년 10월) 업체로 2011년 (292개)에 비해 11.3%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을 통하여 제도 시행 초기 (2004년)에 39%에 머물던 안전진단 대상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2011년 평가결과 99%로 개선되었으며,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운영을 통하여 최소 61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였다 (<표 III-126> 참조).

<표 III-126>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구 분		내 용
고용 창출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 기술인력	최소 285명(19개 수행기관 x 최소 15명) ※ 수행기관은 법률에 따라 15명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 정보보호 인력	최소 325명(325개 대상기업 × 최소 1명) ※ 보호조치 항목에 따라 대상자는 정보보호 책임자·관리자·담당자를 지정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및 2012년 2월 17일 공포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 2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3년 2월 18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6) 암호이용활성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999년 국산암호 SEED³⁰⁾, 2009년 경량암호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를 개발하고 국제표준화함으로써 다양한 IT 서비스에 국산 암호기술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기가 과거 PC 중심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확대되고 있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에 암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개인정보 암호화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암호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암호기술 구현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암호소스코드 및 스마트폰용 암호 라이브러리,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등을 보급하고 있다(<표 III-127> 참조).

<표 III-127> 국산 암호 라이브러리 보급현황

(단위 : 건)

구분	1999~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SEED	2,380	645	1,150	1,370	1,995	6,846	14,386
HIGHT	-	-	166	333	103	954	1,556
스마트폰용 암호 라이브러리	-	-	-	-	669	3,190	3,859
총계	2,380	645	1,316	1,703	2,767	10,990	19,801

특히, 암호기술 구현 및 솔루션 도입이 어려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암호화 관련 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오피스, 운영체제 등의 상용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암호 기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2012년 말부터 배포 하였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송수신 구간에 적용되는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 소켓 계층) 등 암호화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개발된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선택 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이 최신 IT기술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적절한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산 암호알고리즘 및 키 길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추가 진행하여 안전한 암호 알

30) SEED는 메시지를 128비트 크기로 나눠서 암호화하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KISA와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명됨

고리즘 및 키 길이³¹⁾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7)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10년부터 국민들의 인터넷침해사고의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과급효과가 높은 매체인 TV를 중심으로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TV방송 부문에서는 교양정보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의 피해와 예방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방송 주제는 방송사와의 미팅을 통해 정보보호 취약계층인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정보보호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부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침해사고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사례를 전달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상파 방송사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TV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할 예정이다.

또한, ‘얼굴 없는 침입자, 악성코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악성코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인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안 동향 및 위협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방송 이후에는 각급 정부기관, 기업체의 내부직원 보안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화질 영상 DVD를 별도로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나. 모바일 보안 위협 대응

1) 스마트폰 보안강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2년 12월 기준 3,273만 명을 돌파하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의 약61%를 차지하였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인터넷 사용 등 ‘손안의 PC’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PC 보다 더 민감한 개인정보

31) 암호화에 있어 ‘키 길이’는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크기를 의미하며 암호화 시 사용되는 암호알고리즘의 종류와 암호 키 길이에 따른 보안강도에 비례한다.

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3천여 종(2012년 6월 기준)의 스마트폰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보안 검증이 취약한 해외 블랙 앱 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바일 환경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스마트폰 침해사고 피해발생 시 정부, 이동통신사, 제조사, 백신사 등 관련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2010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보안인식 제고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App)’의 기능강화 버전을 2012년에 새롭게 보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무선랜 보안 강화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무선랜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원회는 인터넷전화기용 무선공유기, 사설 무선 공유기 등 800만 대 이상의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일반 이용자들의 무선랜 보안에 대한 인식조사(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결과에 따르면, 무선공유기 보안설정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53.7%(2011년, 45.0%), 무선랜 보안 설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81.8%(2011년, 78.2%)로 무선랜 이용자의 보안인식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82,260대의 무선랜 AP에 대한 보안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안적용 비율은 81.6%로 2011년의 73.8%에서 7.8%가 향상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무선랜 보안강화를 위하여 무선공유기 보안의 중요성, 보안 설정방법, 무선랜 보안 실천수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보호나라 및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무선 공유기 제조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유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무선공유기 보안 실천수칙 홍보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온·오프 라인 상에서 다양한 무선랜 보안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였다(<표 III-128> 참조).

<표 III-128>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단위 : 대)

구 분		상용 무선랜 AP		인터넷전화용 AP		사설 무선랜 AP (가정용, 기업용)		합 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조사대수		17,106	27,156	14,333	16,333	32,348	38,771	63,787	82,260
보안 적용	有	17,106	27,156	13,799	15,571	16,171	24,397	47,076	67,124
	無	-	-	534	762	16,177	14,374	16,711	15,136
보안적용 비율		100%	100%	96.3%	95.3%	50.0%	62.9%	73.8%	81.6%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중 무선랜 보안 운영 현황 조사」

이 외에도, 향후 무선랜 이용자가 자신의 무선공유기 보안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무선랜 지킴이(Secure Wi-Fi)’ 앱을 개발 및 배포할 예정으로, 무선랜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1)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1년 8월에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강화방안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요구 증대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강화 및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강화, 과도한 개인정보 보관 제한, 이용자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관련 규정 신설을 주요 개정방향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등의 신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기 정보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PIMS)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제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 분리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돋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및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증보판 발간 및 신규제도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병행하였다.

2) 개인정보 유·노출 등 사고대응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마련,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법률은 2012년 8월 시행되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012년 5월 사업자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시 고려사항, 대체수단의 도입 등 전환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이핀(i-PIN)으로 전환하는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없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2년 7월 KT에서 해킹으로 불법 텔레마케팅(TM)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2012년 8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터넷 전송구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수단인 보안서버를 보급해 오고 있다. 매년 영세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무료보급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개선 안내를 하여 보안서버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운영된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8개 항목의 개인정보와 이미지(주민등록증, 여권),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노출되는 개인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노출 발견 즉시 삭제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주요 개인정보 관련 단어(이력서, 주민번호 등)를 추가 검색하여 삭제 조치하였다.

아울러,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노출 개인정보 삭제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및 원격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성을 교육하였다. 국제협력의 경우 한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등과 핫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발생 시 긴급히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 및 이슈를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제도를 중심으로 일반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강화하였다.

전국의 초·중·고생, 유아, 학부모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사진이 찾아가서 집체 및 방송교육을 병행하는 순회교육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66,250명(622회)을 교육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전달하여 신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을 대상 '2012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과 공모전'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중 이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신고' 등 5대 항목의 세부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버스·지하철 등 일상생활의 접점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경품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소재와 장르의 제한 없이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공모전 결과, 방송통신위원장상(대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선정되었다.

<그림 III-72> 2012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특히, 2012년 8월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및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제도를 소개하고,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과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유관협회와 연계하여 신규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는 총 498명의 사업자가 참가하여 신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5월부터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 1,20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게시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사이버 보안 글로벌 리더십 확보

1) 국내외 침해사고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의거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은 ‘정보보호 정책’, ‘DDoS’, ‘융합보안’, ‘포렌식’ 등 4개 분과로 구성하고, 약 12회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제4기 전문가 임기(2010년 10월~2012년 9월)가 종료됨에 따라, ‘제5기 민·관 합동 조사단 전문가 풀(2012년 10월~2014년 9월)’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제16회 해킹 방지워크숍(2012년 11월 21일)’을 주최하여 국내 침해사고대응팀(CERT)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기술 및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FIRST; 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아·태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APCERT; Asia 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등 침해사고 관련 국제 협의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태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 부 의장국으로 당선되어 주도적으로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루마니아 침해사고대응팀(CERT-RO)’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글로벌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과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06년부터 ‘대학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은 전국 37개, 대학 40개의 우수 정보보호동아리를 선정하여, 정보보호 실습교육 기회 및 세미나, 학습 기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해킹방어대회 참가 동아리 중 대학부 입상 우수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외컨퍼런스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 록

1. 2012년도 회계 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전 목록
3. 2012년도 주요 연월표
4. 영문 약어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부 록

1. 2012년도 회계 결산

□ 결산 총괄

〈부록 표-1〉 2012년도 회계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결산액(C)	집행률(%) (C/B)
세 입	계	1,161,504	1,161,504	1,149,391	99.0
	일반회계	335,650	335,650	267,913	7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세 출	방송통신발전기금	825,854	825,854	881,478	106.7
	계	1,120,314	1,136,226	1,173,970	103.3
	일반회계	284,395	286,146	279,298	97.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065	23,483	13,194	56.2
방송통신발전기금		825,854	826,597	881,478	106.6

주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아전을 위한 정시 신축공사 지역 때문임 (미집행액 10,237백만원 → 2013년도 이월)

□ 방송통신발전기금

(1) 재정상태

〈부록 표-2〉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A)	2011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646,524	699,119	△52,595	△7.5
부 채	380,120	422,445	△42,325	△10.0
적립금 및 잉여금	254,738	267,304	△12,566	△4.7

(2) 재정운영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A)	2011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프로그램순원가	445,354	399,001	46,353	11.6
비 용	449,029	414,475	34,554	8.3
수 익	436,463	257,666	178,797	69.4
재정운영결과	12,566	156,809	△144,243	△92.0

□ 프로그램별 총괄표

〈부록 표-4〉 프로그램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1,136,226	1,173,970
〈일반회계〉		
10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1,524	1,524
1200항 방송인프라개선	15,557	15,557
13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678	577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23,777	21,844
3100항 통신서비스고도화	24,103	24,072
41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089	2,052
4300항 네트워크고도화	13,509	13,502
4400항 정보보호강화	53,035	52,996
51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1,726	11,723
7100항 방송통신행정지원	140,148	135,451
소계	286,146	279,2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00항 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23,483	13,194
〈방송통신발전기금〉		
1100항 방송통신융합촉진	73,559	41,185
1400항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20,756	19,746
16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	118,238	90,514
1700항 방송진흥기반구축(융자)	17,000	15,631
2100항 방송인프라개선	64,906	63,699
4200항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1,332	21,329
4400항 네트워크고도화	14,638	14,638
5200항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822	2,814
6100항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R&D)	210,548	210,548
7200항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3,754	3,673
9000항 내부거래지출	20,000	20,000
9700항 여유자금운용	259,044	377,701
소계	826,597	881,478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부록 표-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1차 (시면)	1.4(수)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보고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제2차	1.16(월)	의결	KBS-2TV 송출중단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제3차 (서면)	1.20(금)	의결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2012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
		의결	(주)KT 등 15개 기관통신사업자의 201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모바일 광개토 플랜(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제4차 (시면)	1.20(금)	보고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계획(안)에 관한 사항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케이비에스엔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6개사
		의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제5차 (시면)	2.1(수)	의결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청주방송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Trace TV S.A 등 2개사
		의결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합병 신고지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한국사이버결제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통화권별 행정구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5차 (온라인)	2.1(수)	의결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설비설치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제 2 장 국회 회기 및 회기 운영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6차	2.3(금)	의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보고	중계유선방송(RO)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미디어렙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제7차	2.15(수)	의결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와이티엔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엠비엔미디어
		보고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	(주)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차 (서면)	2.17(금)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40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신라케이블방송 등 3개사
		의결	민원사무 정비를 위한 행정규정 일괄개정에 관한 건
		의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씨엠비대전방송의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 주식취득
		의결	기간통신사업(위성후대통신)의 양수 인가에 관한 건 – 에이피위성통신(주)의 에이피시스템(주) 위성후대통신사업 양수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제9차	2.22(수)	의결	「방송통신설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오쇼핑, (주)지에스홈쇼핑
		보고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안)」에 관한 사항
		보고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보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계획(안)에 관한 사항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케이엠에이치
제10차 (서면)	3.6(화)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CCTV
		의결	800/900MHz대역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설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등 35개사
		의결	이용약관 변경신고 위반 방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제11차	3.6(화)	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건
제12차	3.16(금)	의결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12차	3.16(금)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 (주)인솔라인 등 10개 법인
		보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13차 (서면)	3.22(목)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주)씨유미디어 등 2개사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건
		의결	허가조건 및 시장명령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담양케이블방송 등 4개 법인
제14차	3.23(금)	의결	「방송통신설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와이티엔의 'YTN 24' 재심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의 'VJ 특공대' 재심에 관한 건
		보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15차 (서면)	3.27(화)	의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건
제16차	3.29(목)	의결	「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KT의 Olleh TV SkyLife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보고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17차 (서면)	4.2(월)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대구케이블방송(주) 등 5개사
제18차 (서면)	4.4(수)	의결	방송설비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씨비에스기독교방송
제19차 (서면)	4.4(수)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
제20차	4.10(화)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티켓몬스터 등 13개 사업자
		보고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20차	4.10(화)	보고	조립PC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21차 (서면)	4.13(금)	의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제22차 (서면)	4.25(수)	의결	(재)테인협력센터 사무총장 선임에 관한 건
제23차	4.27(금)	의결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DTV 차널재배치 변경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 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이동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24차 (서면)	4.30(월)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엔앰경기케이블티비 등 45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현대아이치씨엔충북방송 등 6개사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SK브로드밴드(주), (주)LG유플러스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이비루시장
		의결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주)동서디지털네트워크 등 3개 법인
제25차	5.4(금)	의결	(주)케이티의 삼성스마트TV 서비스접속 제한행위 관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 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제26차 (서면)	5.15(화)	의결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의결	2012년도 지상파·지상파DMB 방송사업 자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제27차	5.18(금)	의결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의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 U+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27차	5.18(금)	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사항
제28차 (서면)	5.21(월)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우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씨제이헬로비전의 ㈜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등 4개 계열사 주식취득
		보고	제18대 국회 폐기법안 일괄 재입법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제29차 (서면)	5.22(화)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하가신정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30차	5.30(수)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재송신 승인제 운영방안에 관한 건
		보고	시·청각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에이클라인티티엔트
제31차 (서면)	6.4(월)	의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NBA properties, Inc 등 2개사
		의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건
		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공익채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종합우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 – ㈜현대HCN의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경영권 지배
제32차	6.7(목)	의결	종합우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영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의결	(자)CBS기독교방송의 「김미희의 여러분 1부」 재심에 관한 건
		보고	도시계획시설 중 「통신시설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2013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제33차	6.14(목)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넥슨코리아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34차	6.21(목)	의결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관련 위치정보보호법 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의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생활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
제35차 (서면)	6.26(화)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엔앰 등 16개사
		의결	공익채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건
		의결	「요금한도 조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제18대 국회 폐기법안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
제36차	6.28(목)	의결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의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의결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제37차	7.5(목)	의결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보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 – (주)SK텔링크
		보고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제38차 서면	7.10(화)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유미디어 등 5개사의 코미디TV 등 7개 채널
		의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역방송빌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39차	7.12(목)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 – JCN울산중앙방송(주)의 (주)씨엔앰울산케이블티비 주식 취득
		의결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차세대 웹 표준(HTML5) 확산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40차	7.18(수)	의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사
제41차 (서면)	7.19(목)	의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41차 (서면) 7.19(목)		의결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 변경등록 및 승인에 관한 건 – (주)머니투데이 방송 등 3개사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건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티켓조이스 등 106개사
		보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하위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42차	7.27(금)	의결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에 관한 건
제43차 (서면) 8.1(수)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5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8개사
		의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신우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너동방송의 (주)동서디지털방송 합병
		의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건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의 'KBS 뉴스 9' 자심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에 관한 건
제44차 (서면) 8.3(금)		보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등 일괄개정에 관한 사항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우리홈쇼핑
제45차 (서면) 8.21(화)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경기방송
		의결	470~806MHz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2차 공고(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주)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대한리치 주식소유
제46차	8.22(수)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제47차 (서면) 8.30(목)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의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47차 (서면)	8.30(목)	보고	방송업무용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8차	8.31(금)	의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인성데이터(주) 등 8개 법인
		의결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사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보고	「정보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차	9.5(수)	의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KT, SKB(주), (주)LG U+
제50차	9.7(금)	의결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에 관한 건
		의결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1차	9.13(목)	의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건
		보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제52차 (서면)	9.14(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현대미디어 등 6개사
		의결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의 양수 인가에 관한 건 – (주)무진이엔엠의 (주)설성방송 초고속인터넷 사업 양수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제52차 (서면)	9.14(금)	보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3차	9.20(목)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보고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보고	「방송통신설비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4차 (서면)	9.24(월)	의결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씨엔앰강남케이블티비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대구케이블방송(주) 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엔앰 등 25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금강방송(주)의 (유)군산유선방송 합병
		의결	보편적사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의결	방송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54차 (서면) 9.24(월)		의결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도시계획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55차	10.5(금)	의결	방송업무용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보고	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안에 관한 사항
제56차 (서면) 10.10(수)		의결	방송통신법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의결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등 일괄개정에 관한 건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High tv, Inc 등 2개사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KT, SKB(주), (주)LG U+
제57차	10.19(금)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주)케이티의 티온텔레콤(주) 주식소유
		의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위한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처분 처리에 관한 건 – (주)엘르티브이코리아
제57차	10.19(금)	보고	디지털방송 난시청/수신환경 개선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	유로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제58차 (서면) 10.26(금)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강원방송 등 50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와이즈피어 등 3개사
		의결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주)우리홈쇼핑의 '선풍기' 고장도 오렌지' 재심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무선설비규칙』 및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59차	10.30(화)	의결	재허가조건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경영권 지배 인가에 관한 건 –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영서방송 경영권 지배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BM)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 – 광주문화방송(주) 등 4개사
		보고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안)에 관한 사항
제60차	11.7(수)	의결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제61차 (서면) 11.9(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엠비씨 등 3개사
		의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의결	선거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의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61차	(서면) 11.9(금)	보고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62차	11.20(화)	의결	휴대인터넷(WBro)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관한 건
		의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등(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위한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의결	2012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역무의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케이티의 (주)케이티샛 법인 설립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제63차	(서면) 11.23(금)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보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현대HCN 등 27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2개사
		의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제64차	11.27(화)	의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제65차	11.29(목)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 법인합병 인가에 관한 건 – JCN울산중앙방송(주), (주)씨엔앰울산케이블티비와 합병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 (주)씨엔앰, (주)한국유선미디어 및 (주)디지털미디어넷 합병 등
		의결	WRC – 12 결과 및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등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이용약관 인기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등(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2~2013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제66차	12.13(목)	보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의결	(주)케이티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66차	12.13(목)	의결	(주)케이티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7차 (시면)	12.14(금)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Discovery Networks Asia-Pacific Pte, Ltd
		의결	「사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씨제이시스템즈 등 3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하오티비 등 5개사
		의결	2013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제68차	12.17(월)	의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의결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 디지털방송국 채널 재배치 세부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지상파 디지털방송국 채널 재배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W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보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빌진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연구시험망(KOREN/TEIN)을 활용한 미래인터넷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69차	12.20(목)	의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춘천문화방송(주)
		보고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보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및 공중전화 적정대수에 관한 사항
제70차	12.24(월)	의결	SK텔레콤(주), (주)KT와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71차 (시면)	12.26(수)	의결	「무선설비규칙」(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한국방송공사의 「KBS 뉴스광장」 재심에 관한 건
		의결	(주)문화방송의 「MBC 뉴스데스크」 선거방송 재심에 관한 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이한오의 금강방송(주) 주식취득

회 차	일자	구분	안 건 명
제71차	(서면) 12.26(수)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법인설립 등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홀딩스의 (주)티브로드전주방송 설립, (주)티브로드전주방송의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주식소유(최대주주) 및 (주)티브로드전주방송의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실질적 지배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72차	12.28(금)	의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의결 「2014 ITU 전권회의」 종합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의결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춘천문화방송(주) 의결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3. 2012년도 주요 연월표

〈부록 표-6〉 2012년도 주요 연월표

● 2012년 1월

일자	추진 내용
1월 10일	김충식 상임위원, 'CES 2012' 참가
1월 10일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1월 16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마련 · 시행
1월 17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
1월 17일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1월 18일	국산 4G기술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
1월 19일	'201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
1월 19일	ITU-R 국내 전문가 4명 부의장 진출
1월 20일	'모바일 광개도 플랜' 의결
1월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M/W산업 활성화 지원
1월 26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본격화
1월 30일	'HTML5 활성화 Leaders Camp' 발족
1월 30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시청 환경 대폭 개선
1월 31일	'3대 新성장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협약식 >



< HTML5 활성화 Leaders Camp 발족 >



● 2012년 2월

일자	추진 내용
2월 2일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최
2월 6일	양문석 상임위원, 베트남과 정보보호 협력
2월 6일	홍성규 부위원장, 국제방송통신기구(ITU) 총재와 면담
2월 7일	2012 오세아니아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2월 9일	방송3사 – 한국드리마제작사협회,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통한 상생기반 마련에 합의
2월 9일	미디어렙법 국회 통과
2월 16일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설명회 개최
2월 18일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성공적인 마무리
2월 22일	'미래 글로벌 IT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바일·홈·이웃도어, 3대 신성장 생태계 본격 조성
2월 23일	김충식 상임위원, MVNO CEO와 간담회 개최
2월 23일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서비스 출발
2월 27일	'201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개최
2월 27일	양문석 상임위원 스페인 'MWC 2012' 참가
2월 27일	'찾아가는 디지털전화 홍보단' 활동 개시
2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통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 감면
2월 28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이용자의 선택권 부여 권고

<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



< 김충식 상임위원, MVNO CEO와 간담회 >



● 2012년 3월

일자	추진 내용
3월 2일	분격적인 우주전파환경 예보 시대 개막
3월 6일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3월 9일	이계철 위원장 취임식 개최
3월 15일	이계철 위원장, 방송 관련 협회장과 간담회 개최
3월 19일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3월 2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합동 착공식' 개최
3월 26일	이계철 위원장 첫걸음, 대한민국 성장동력 구로디지털밸리로
3월 28일	웹하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3월 29일	7대 ICT 신산업 해외진출에 앞장
3월 29일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20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합동 착공식 >



● 2012년 4월

일자	추진 내용
4월 1일	신용섭 상임위원, 프랑스 'MIPtv 2012' 참가
4월 3일	세계 최초 지상파 고화질 3D 시범방송 개시
4월 5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4월 5일	'제3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
4월 9일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출범식 개최
4월 16일	홍성규 부위원장, 'NAB Show 2012' 참관
4월 16일	이계철 위원장, '주요 인터넷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4월 17일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발족
4월 18일	인터넷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육 참고자료집 개발
4월 20일	'UX / UI 전문가 포럼' 출범
4월 26일	이계철 위원장, 디지털 방송장비와 디스플레이업체 방문

< 제3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



< 주요 인터넷기업 오찬 간담회 >



● 2012년 5월

일자	추진 내용
5월 1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5월 2일	'방통위·전북도·NS소평' 공동,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DTV 기증
5월 2일	'LBS 상생전략 포럼' 출범
5월 7일	IT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5월 11일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개소
5월 14일	한국-뉴질랜드 간 정보보호 및 IPTV방송 협력 강화
5월 14일	총성규 부위원장, 리オス 우정통신부 장관과 양자회담
5월 14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와 MOU 체결
5월 15일	'2012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5월 15일	'2012 세계 방송통신장관회의' 개최
5월 15일	'제19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5월 16일	양문석 상임위원, 몽골 정보통신기술우정청장과 ICT 분야 협력 방안 논의
5월 16일	'미래 ICT융합 발전' 청사진 제시
5월 17일	'미래인터넷 컨퍼런스 2012' 개최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출범
5월 22일	CIS 방송통신시장 개척 추진
5월 23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출범
5월 30일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 개최

< 제19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식 >



<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 >



● 2012년 6월

일자	추진 내용
6월 4일	김충식 상임위원, 제1회 ICT INDABA 국제회의 참석
6월 6일	김충식 상임위원, ICT외교 지원
6월 8일	'IT 나눔 캠페인 행사' 개최
6월 11일	'2012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식 개최
6월 13일	ITU전권회의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회 개최
6월 19일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6월 20일	'청렴한 방통위' 선포
6월 26일	영국 런던, 방송콘텐츠 소케이스 개최
6월 26일	헝가리, 신생 방송콘텐츠 거래시장(NATPE Budapest 2012)에 참가
6월 26일	'그린 ICT 포럼 청립총회' 개최
6월 28일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제정 · 발령
6월 28일	이계철 위원장,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회담

< 2012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식 >



< ITU전권회의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회 >



● 2012년 7월

일자	추진 내용
7월 1일	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시행
7월 4일	이계철 위원장, 정보보호업계 CEO 간담회 개최
7월 4일	'201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 개최
7월 4일	한국 대표단, 2012년 ITU 이사회 참석
7월 11일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관계부처 합동 개최
7월 11일	정보보호의 달 주간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7월 12일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 발표
7월 12일	CEO 초청 정보보호 전략 간담회 개최
7월 13일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출범
7월 16일	이계철 위원장, 우루과이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7월 19일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오픈
7월 25일	사물지능통신(M2M) 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 oneM2M 공식 출범
7월 27일	방문진 이사 9명, 감사 선임 및 KBS 이사 11명 추천

< 정보보호업계 CEO 간담회 개최 >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



● 2012년 8월

일자	추진 내용
8월 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지역별로 순차 종료
8월 2일	'스마트 클라우드 소 2012' 개최
8월 6일	이계철 위원장, 미국 국무부 대사와 양자회담
8월 7일	'제9차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 개막
8월 8일	2012년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 선정시상
8월 9일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8월 16일	'빅데이터 포럼 장립총회' 개최
8월 22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8월 24일	홍성규 부위원장, 미국 시스코 부사장과 ICT 발전 방향 논의
8월 30일	'EMC KOREA 2012' 개최
8월 31일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

< 제9차 APEC 정보통신 장관회의 개막 >



< 홍성규 부위원장, 미국 시스코 부사장과 ICT 발전방향 논의 >



● 2012년 9월

일자	추진 내용
9월 1일	2012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추진
9월 3일	제9기 KBS 이사진 임명장 전수
9월 3일	'제2차 해외한인방송인대회' 개최
9월 5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
9월 7일	자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영 허용
9월 10일	제19차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9월 13일	'글로벌 미래인터넷 서밋 2012' 개최
9월 13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 감사 선임
9월 17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9월 17일	제5기 EBS 이사진 임명장 수여
9월 18일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국무회의 통과
9월 18일	'미래인터넷지원센터' 개소
9월 20일	'2012 대한민국 모바일광고 대상' 개최
9월 20일	어린이·청소년 유통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9월 24일	'The Clouds 2012' 행사 개최
9월 27일	'독거노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DTV기증사업 협약식' 개최

< 제2차 해외한인방송인대회 >



< 독거노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DTV기증사업 협약식 >



● 2012년 10월

일자	추진 내용
10월 8일	'제4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 개최
10월 10일	'장애인용 디지털TV 기증' 행사 개최
10월 11일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발간
10월 11일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10월 12일	이계철 위원장, 영국 Ofcom(방송통신규제기관) CEO와 면담
10월 17일	글로벌 K-스타트업 2012, 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시상식 개최
10월 18일	NFC 기반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10월 19일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마련
10월 22일	신용설 상임위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관계자와 면담
10월 25일	'2012년 단막극 페스티벌' 개최
10월 25일	스마트TV 앱 개발 전문가 양성 본격화
10월 26일	전국에 걸친 지상파 고화질 3D 시범방송 실시
10월 30일	방송통신분야 지정시험기관 CEO 간담회 개최
10월 30일	ICT 중소기업 동남아 시장 공략 지원
10월 30일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개최

< 제4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 >



<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



● 2012년 11월

일자	추진 내용
11월 1일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
11월 2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MS) 인증기준 세계 최초 국제표준 신규 과제 채택
11월 2일	방통위-앱센터운동본부-구글,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
11월 6일	클라우드 서비스 우수 SLA 인증 부여
11월 7일	방송제도연구반 공개토론회 개최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 선정
11월 12일	글로벌 K-스타트업, 영국 런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서비스 설명회 개최
11월 15일	김대희 상임위원, ASEAN 방송통신장관회의 참석
11월 20일	ICT 국제표준화 올림픽 대표단 파견
11월 20일	'2012년 방송평가' 결과 공개
11월 22일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1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도약
11월 26일	'2012 전파방송통신산업진흥주간' 행사 개최
11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시장에 신용설 씨 선임
11월 27일	'방송통신 R&D 미래 트랜드 2012' 컨퍼런스 개최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사랑의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개최

< 2012 전파방송통신산업진흥주간 행사 >



< 방송통신 R&D 미래 트렌드 2012 컨퍼런스 >



● 2012년 12월

일자	추진 내용
12월 3일	6대 新 방송통신 융합 시범 서비스 개통
12월 3일	세종시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 개통 기념식 개최
12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보자식인대회 최우수성적 달성
12월 5일	'사물인터넷 세미나' 행사 개최
12월 5일	'2012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매우우수기관 획정'
12월 6일	'International 3D 페스티벌 2012' 개최
12월 6일	'제1회 TV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10일	'제1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개최
12월 11일	민간 부문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12일	이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2012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12월 17일	'2012년 제11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
12월 20일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12월 21일	'제1차 2014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12월 23일	'Viva! LBS 페스티벌' 개최
12월 31일	중소PP 방송광고료 결제기한 가이드라인 제정

< 제1회 TV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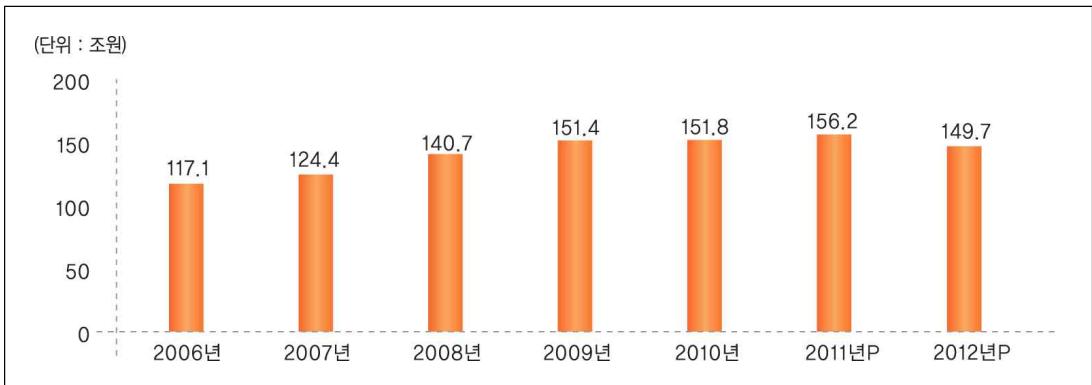


< 2012년 제11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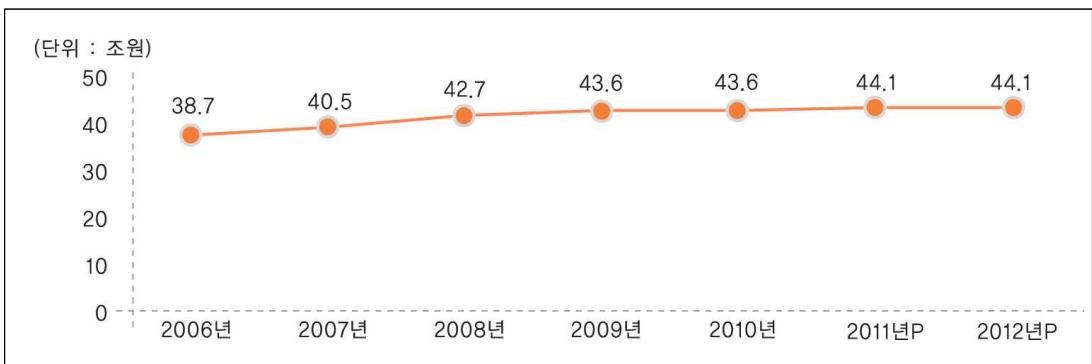


4.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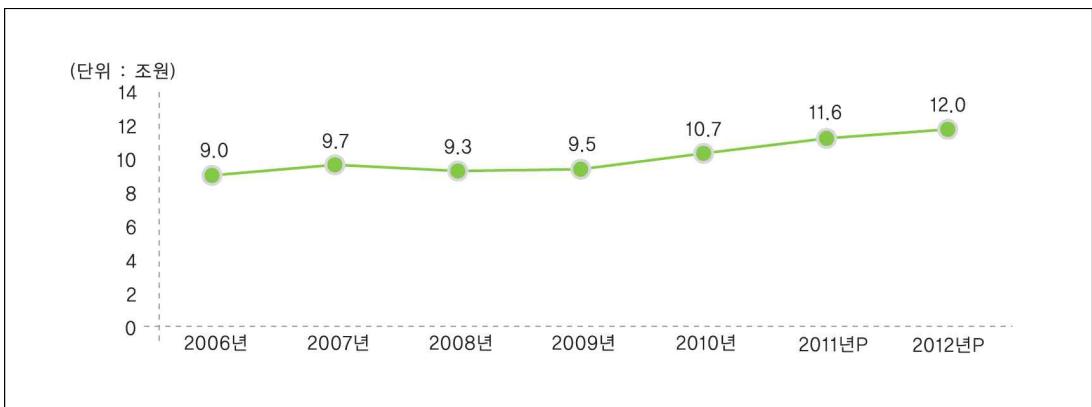
| 방송통신산업 전체 생산액



| 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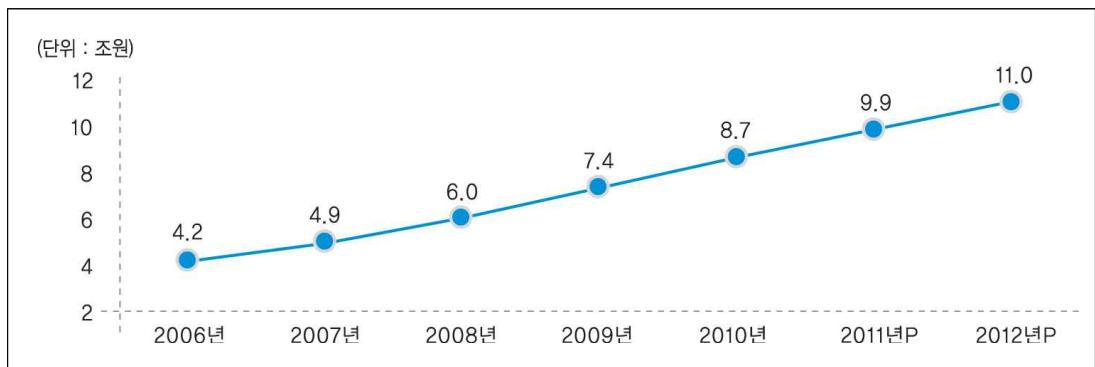


| 방송서비스 매출 규모



*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201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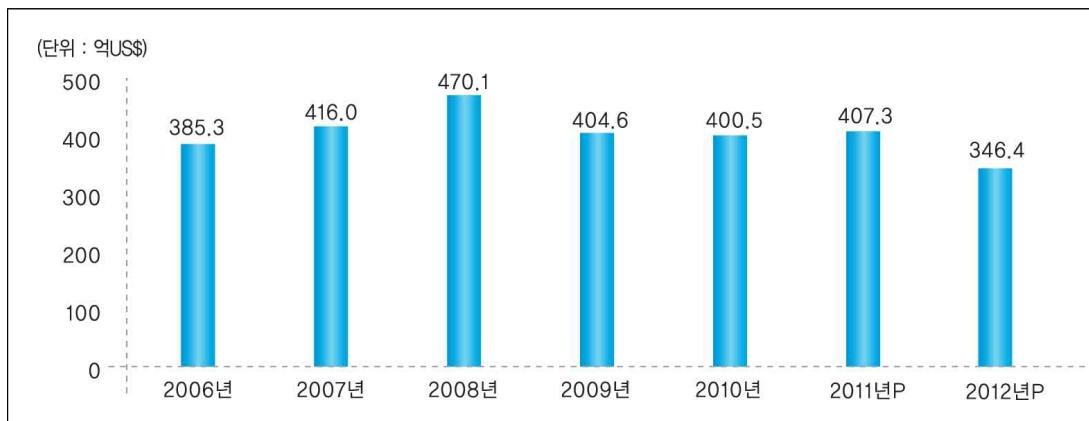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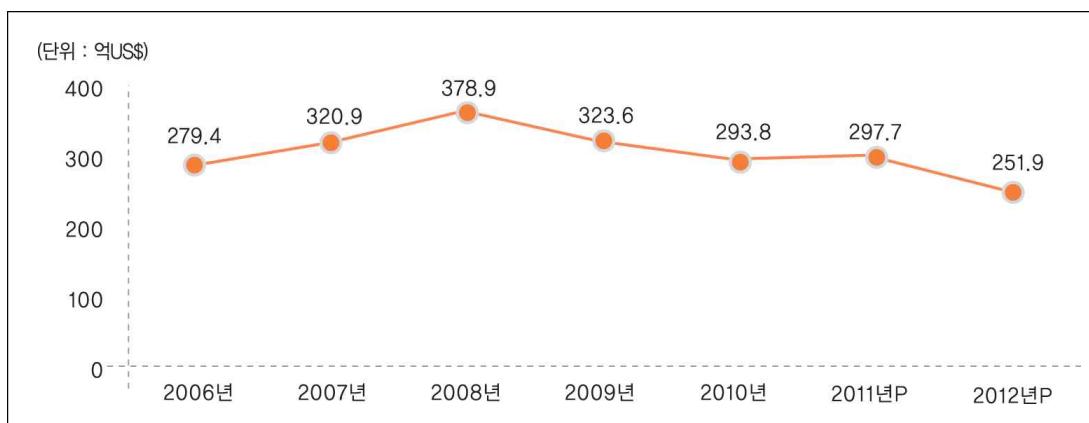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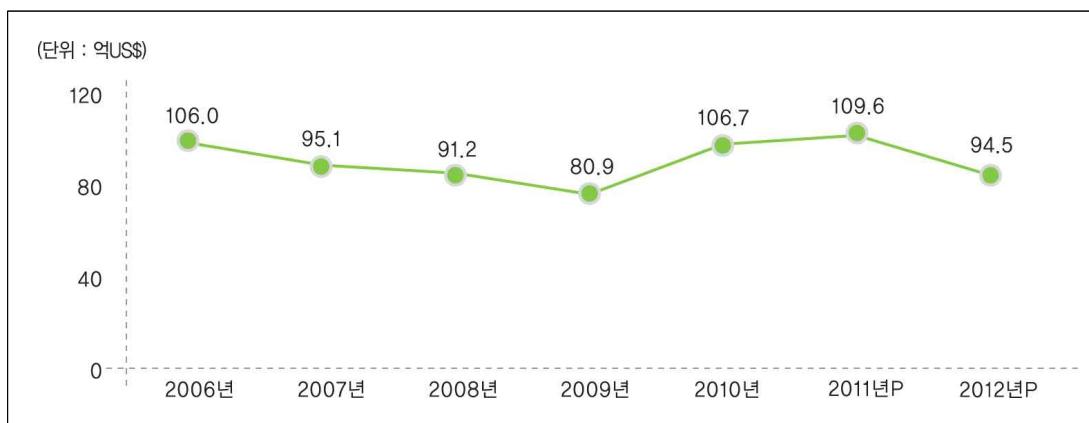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전체 수출액



| 방송기기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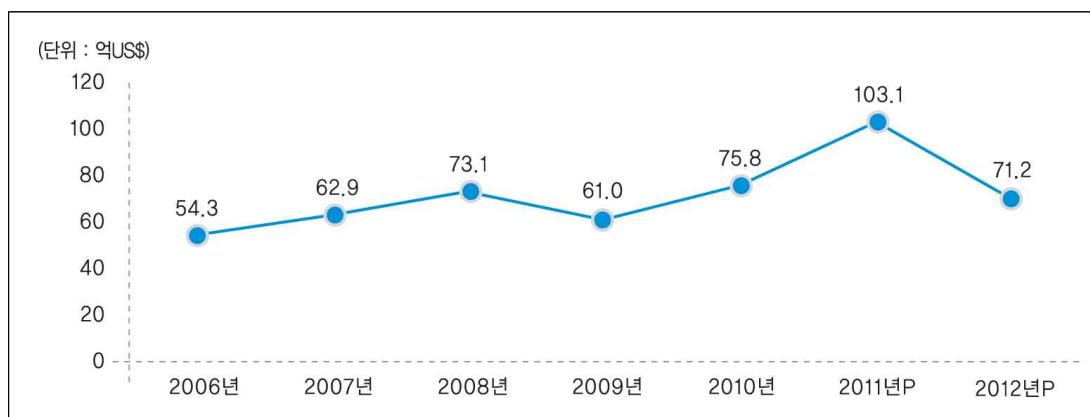
| 방송기기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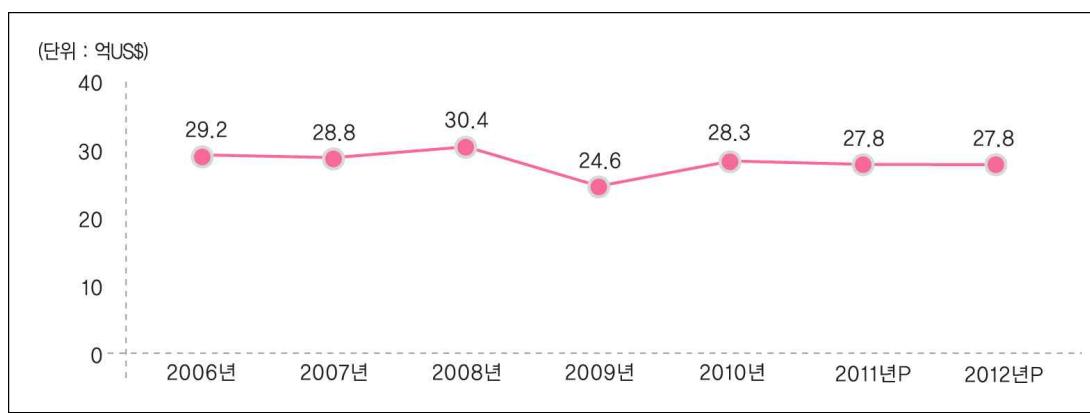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수입액



| 방송기기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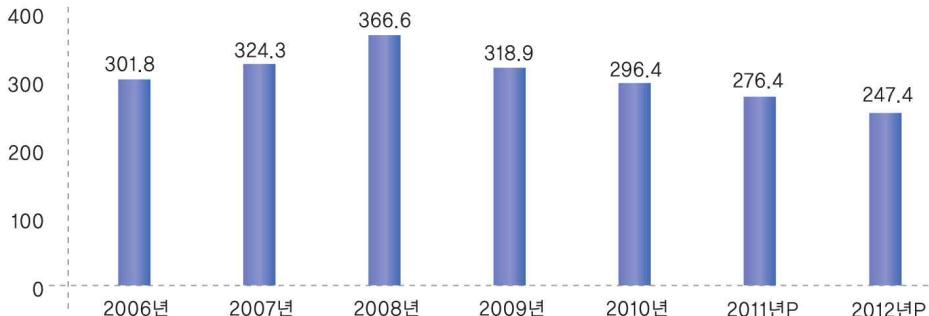


| 방송기기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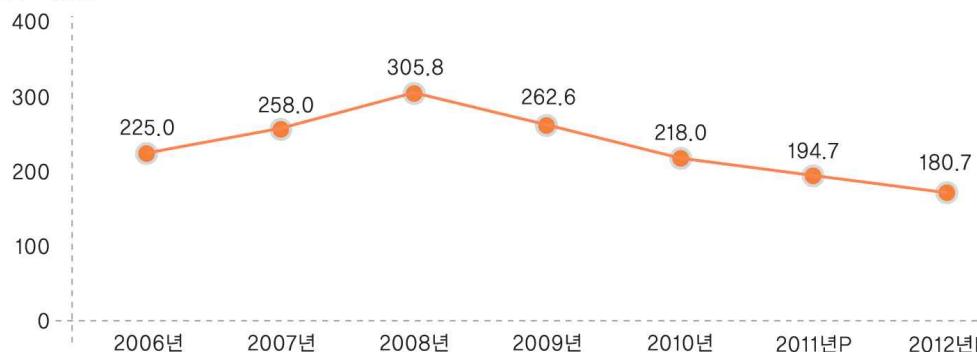
| 방송통신기기 무역수지

(단위 :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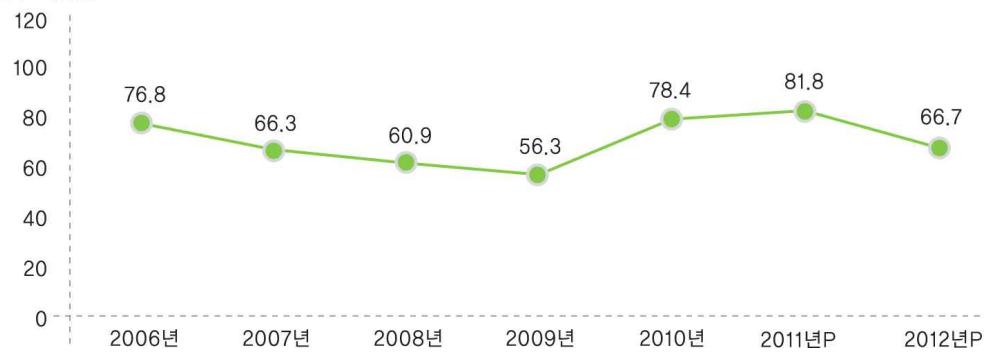
| 통신기기 무역수지

(단위 :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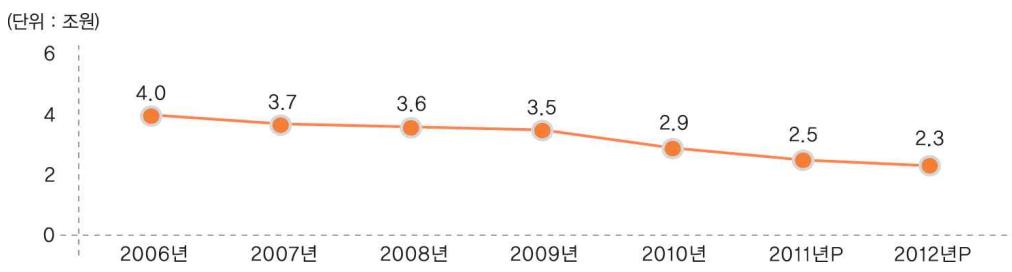


| 방송기기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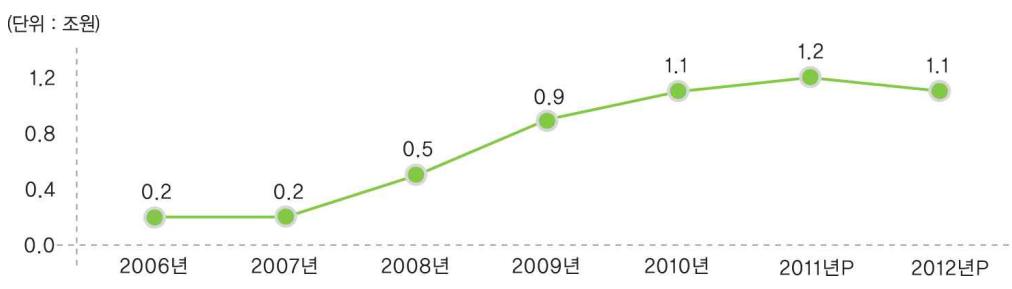
(단위 : 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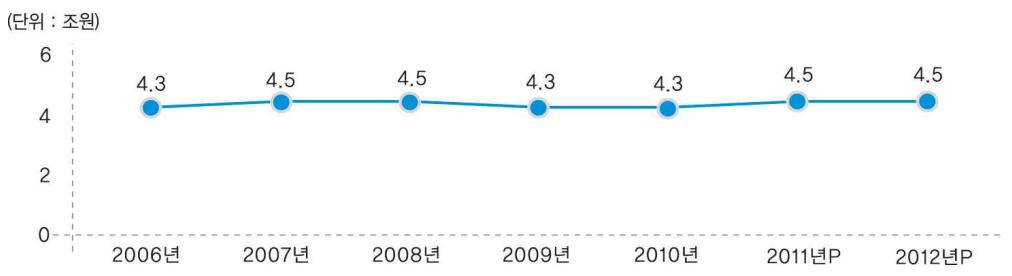
| 시내전화 매출 규모



| 인터넷전화 매출 규모



| 초고속인터넷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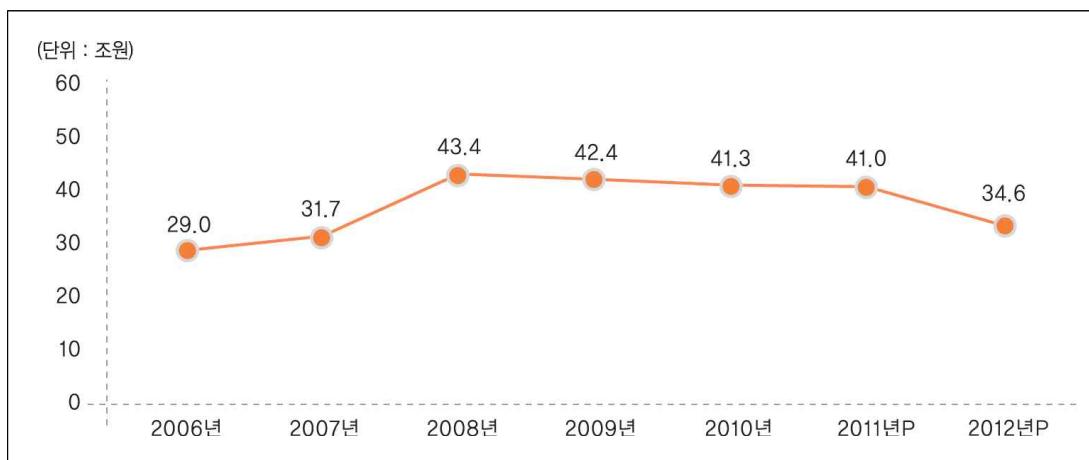


| 이동전화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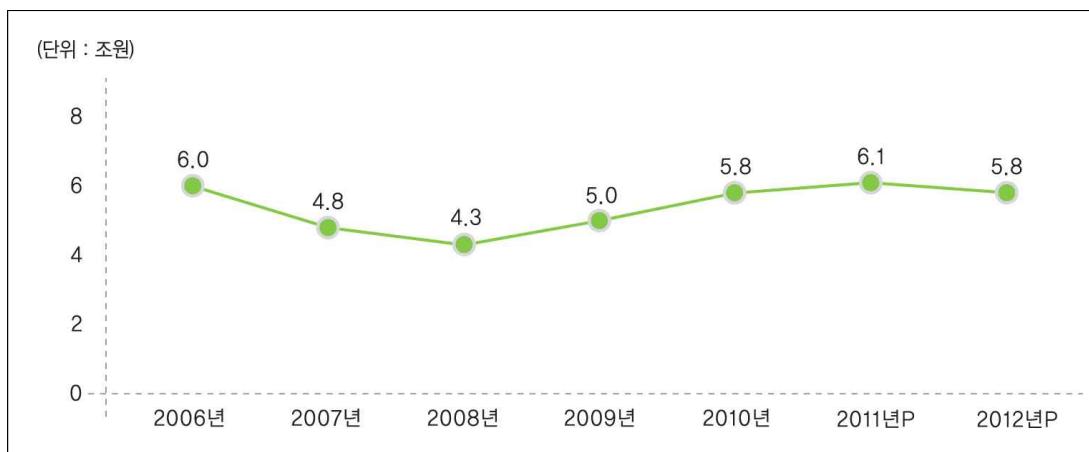


※ 무선망 접속료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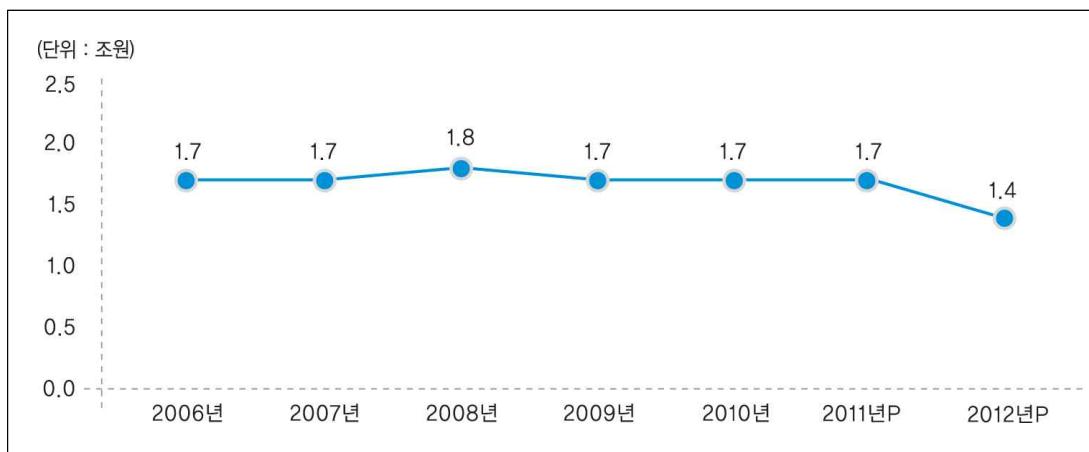
| 휴대단말기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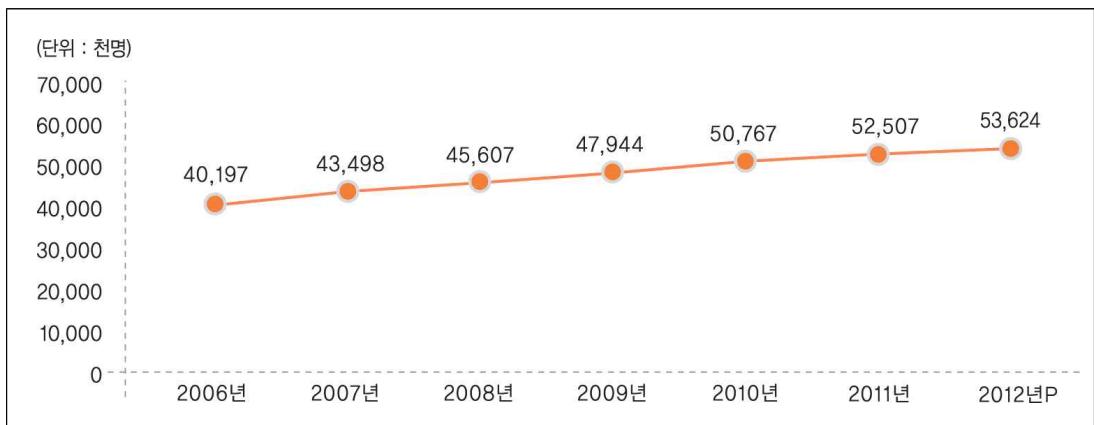
| DTV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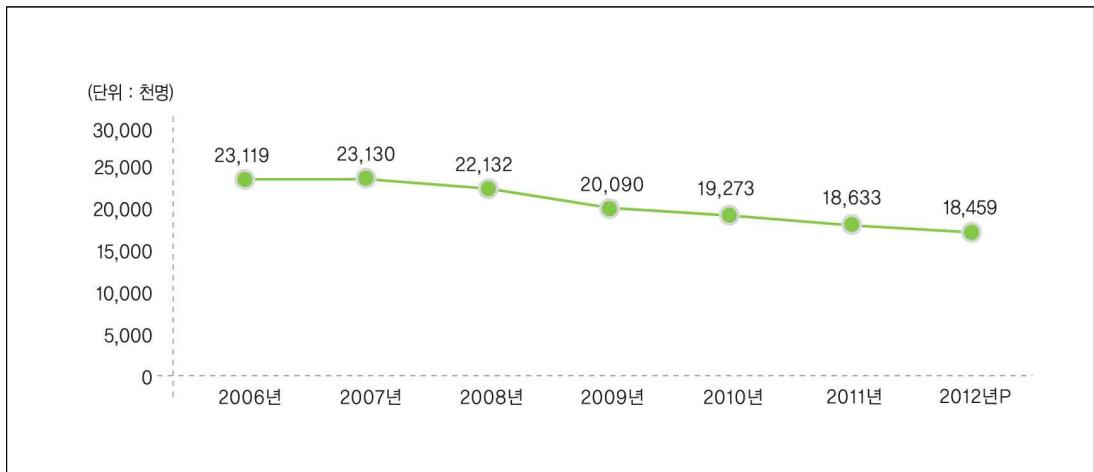
| 전체 셋톱박스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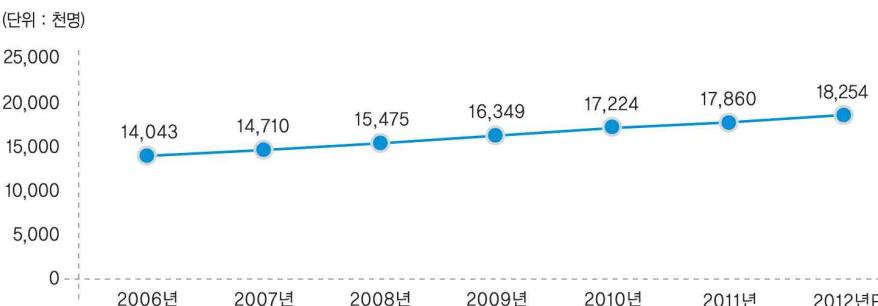
| 이동전화 가입자수



| 시내전화 가입자수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xDSL, HFC(케이블모뎀) 가입자수



| 아파트랜, FTTH(광케이블) 가입자수



2012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발 행 일 2013년 2월

발 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비매품